

발간등록번호

11-1790387-100026-10

Vaccination for Tomorrow
건강한 내일을 여는 예방접종

2025년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

의료기관용 - 1권



질병관리청

지침 안내문

본 지침은 국가예방접종사업의 관리 및 예산지원 업무를 안내하기 위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본 지침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과 그 외 예방접종을 지원하기 위한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 처치 및 HPV 여성청소년 건강상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인플루엔자·코로나19 등 절기접종 사업의 세부적 변동사항은 각 사업 시작 전 공문을 통해 별도 안내될 예정이며, 아울러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지침에 대한 오류정정, 내용 수정, 보완 및 제언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① 예방접종관리 → 화면 좌측의 질문과 답변)에 남겨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지침내용 및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련 문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 043-913-2258)

시스템 이용 및 오류 관련 문의 (☎ 043-913-2352)

국가예방접종 용어

국가예방접종 백신

두문자어(약어)	백신
HepB	Hepatitis B vaccine
BCG(피내용)	Intradermal Bacille Calmette-Gúerin vaccine
DTaP	Diphtheria and tetanus toxoids and acellular pertussis vaccine adsorbed
Tdap	Tetanus toxoid, reduced diphtheria toxoid and acellular pertussis vaccine, adsorbed
Td	Tetanus and diphtheria toxoids adsorbed
DTaP-IPV	Diphtheria and tetanus toxoids and acellular pertussis vaccine adsorbed and inactivated poliovirus vaccine
IPV	Inactivated poliovirus vaccine
Hib	<i>Haemophilus influenzae</i> type b vaccine
DTaP-IPV/Hib	DTaP, IPV, <i>Haemophilus influenzae</i> type b conjugate vaccine
DTaP-IPV-Hib-HepB	DTaP, IPV, <i>Haemophilus influenzae</i> type b, Hepatitis B conjugate vaccine
PCV	Pneumococcal conjugate vaccine
PPSV	Pneumococcal polysaccharide vaccine
RV1	Rotavirus vaccine(monovalent)
RV5	Rotavirus vaccine(pentavalent)
MMR	Measles, mumps, and rubella vaccine
VAR	Varicella vaccine
HepA	Hepatitis A vaccine
IJEV(불활성화 백신)	Inactivated Japanese encephalitis vaccine
LJEV(약독화 생백신)	Live-attenuated Japanese encephalitis vaccine
HPV	Human papillomavirus vaccine
IIV	Inactivated Influenza vaccine
ViCPS(주사용 다당백신)	Vi capsular polysaccharide (Inactivated typhoid) vaccine
Ty21a(경구용 생백신)	Typhoid vaccine
HFRS	Haemorrhagic fever with renal syndrome vaccine (Hantavirus vaccine)
COVID-19	Coronavirus Disease-2019 vaccine
Mpox	Monkeypox vaccine

약어

ACIP		Advisory Committee on Immunization Practices		(美)예방접종자문위원회
HBIG		Hepatitis B Immunoglobulin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IR		Immunization Registry		예방접종등록
IRIS		Immunization Registry Information System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NIP		National Immunization Program		국가예방접종
PHIS		Public Healthcare Information System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VIS		Vaccine Information Statements		예방접종안내문
WAO		World Allergy Organization		세계알레르기학회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I 사업운영

1. 개요	012
가. 추진 배경	012
나. 주요 내용	015
다. 추진 체계	019
2. 위탁계약	024
가. 사전 교육	024
나. 계약 체결	026
다. 계약 관리	028
라. 계약 해지	030
3.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	032
가. 국가예방접종사업	032
나. 국가예방접종 부대사업	045
4. 비용상환	050
가. 상환 절차	050
나. 상환 기준	055
5. 예방접종 안전관리	066
가. 예방접종 일반 주의사항	066
나. 이상반응 관리	068
다. 아나필락시스 대응 매뉴얼	075
6. 백신관리	084
가. 백신 공급 방식별 구매 방법	084
나. 백신 인수·보관 및 관리	087

II 접종력 관리

1. 예방접종 미접종자 관리	098
2. 국외 예방접종기록 관리	099

III 시스템 매뉴얼

1. 예방접종 전산등록기관(IR) 권한 신청 및 승인방법	103
2. 예방접종업무 계약 신청방법	108
3. 예방접종내역 전산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124
4. 자율점검 신청 매뉴얼	135
5.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시스템 사용방법	139
6. HPV 국가예방접종사업 시스템 사용방법	142
7. 65세 이상 폐렴구균 시스템 사용방법	143
8.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시스템 매뉴얼	150
9.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접종 등록 매뉴얼	164
10. 예방접종 교육시스템 사용방법(학습자)	169
11. 전자예진표 사용 매뉴얼(대국민, 의료기관용)	171

IV 부록

1. 관련 법령	179
2. 참고 자료	195
가. 주요 서식	195
나. 예방접종 관련 정보 안내	232
3. 민원사례집	260
가. 공통 문의	260
나. 예방접종 교육 문의	265
다.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 문의	268
라. 비용상환 문의	305
마. 백신 수급관리 문의	312
바. 이상반응 관리 문의	314
사.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문의	317

주요 변경사항

구분	주요 변경사항
지침통합	• 국가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책자) 통합하여 단권화 - 임시예방접종(코로나19, 엠폭스) 내용 포함
사업운영	• 위탁계약-사업관리-비용상환 등 절차별 안내 • 사업별 다르게 규정하고 있던 사항의 일괄 통합 - (계약체결) 계약 전 보건소 현장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 시스템 등록 후 계약 체결 완료, 의료기관은 계약 체결 후 자율점검표를 시스템에 등록 - (점검) 의료기관 자율점검(반기별 1회 실시) 보건소 현장점검(격년 1회 실시) - (예진표) 별도 존재하던 코로나19 예진표 폐지 및 일괄 통합 - (교육) 기본교육, 심화(어린이, 성인)교육으로 통합 • 각 사업별 특이사항(B형간염 항원·항체검사, HPV 건강상담 등)의 경우 3. 사업관리 (나) 수록 • 사업 외 기타사항(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국외 예방접종기록 전산 등록 등) 별도 챕터로 구분
백신관리	• 인플루엔자·코로나19 등 계절성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의 관리방법(전배, 폐기 등) 포함
실시기준	•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 질병에 한하여 지침 내 실시기준 수록 - 접종 대상* 및 방법, 접종 시기, 주요 이상반응 등 *고시가 권고하는 접종 대상과 일치 - 기존 지침에서 미포함되었던 장티푸스·신증후군출혈열·엠폭스 내용 포함 (대상포진·수막구균 등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이 아닌 질병은 제외)
신규백신	• ‘6가 혼합백신(DTaP-IPV-Hib-HepB)’ 추가

I

사업운영



1

개요



가. 추진 배경

(1) 목적

예방접종비용(백신비·예방접종시행비용)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으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

(2) 정의

- (국가예방접종사업) 국가 및 지자체가 비용을 보조하는 예방접종에 대해 국가에서 지정한 백신으로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맞을 경우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 감염병 >

구분	정의	대상 감염병
필수예방접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필수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해야 하는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제24조)	디프테리아 / 폴리오 / 백일해 / 홍역 / 파상풍 / 결핵 / B형간염 / 유행성이하선염 / 풍진 / 수두 / 일본뇌염 /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폐렴구균 / 인플루엔자 / A형간염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 장티푸스 / 신증후군출혈열 (총 19종)
임시예방접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하는 예방접종 (제25조)	코로나19 / 엠폭스 (총 2종)

(3)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3조, 제18조, 제18조의4,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2조의2, 제33조의4, 제40조, 제40조의6, 제46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 제71조, 제72조, 제72조의2, 제73조, 제76조, 제79조의4, 제81조, 제83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6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1조의5, 제21조의6,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2조의3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0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5조, 제26조, 제27조의3, 제31조의6, 제34조, 제47조
-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 기준에 관한 고시」(질병관리청고시 제2020-4호)
- 「임시예방접종 후 신고하여야 하는 이상반응 범위 등에 관한 고시」(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1호)
-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3호)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6호)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7호)
- 「모자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47호)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36호)

(4) 추진 경과

- (사업 대상)

연도	내용
'97.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보건소 실시
'02. 7.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시행
'09. 3.	12세 이하 국가필수예방접종 보건소, 민간의료기관 지원
'13. 5.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보건소 지원
'16. 6.	12세 여성 청소년 대상 HPV 예방접종 및 건강상담 지원
'18. 1.	생후 6개월~12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19. 10.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20. 10.	13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21. 2.	전국민 코로나19 예방접종
'22. 3.	13~17세 여성 청소년 및 18~26세 저소득층 여성 HPV 예방접종 지원
'24. 10.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 고위험군으로 전환

• (사업 대상 백신)

연도	추가 백신
'09. 3.	BCG(결핵, 피내용), HepB(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IJEV(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VAR(수두), Td(파상풍·디프테리아)
'10. 12.	ViCPS(장티푸스) 추가
'11. 10.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추가
'12. 1.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추가
'13. 3.	Hib(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추가
'13. 3.	HFRS(신증후군출혈열) 추가
'13. 5.	PPSV23(폐렴구균) 추가
'14. 2.	LJEV(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 추가
'14. 5.	PCV(폐렴구균) 추가
'15. 5.	HepA(A형간염) 추가
'16. 6.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추가
'16. 10.	IIV(인플루엔자 불활성화 백신) 추가
'17. 6.	DTaP-IPV/Hib(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추가
'21. 2.	COVID-19(코로나19) 추가
'22. 6.	Mpox(엠펙스) 추가
'23. 3.	RV(로타바이러스) 추가
'24. 4.	PCV(15) 추가
'25. 1.	DTaP-IPV-Hib-HepB(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B형간염) 추가

- (민간의료기관 접종비용)

연도	상세내용
'09. 3.	12세 이하 백신비 지원
'12. 1.	12세 이하 백신비 및 시행비 일부 지원(본인부담금 5,000원)
'14. 1.	12세 이하 백신비 및 시행비 전액 지원(본인부담금 폐지)
'15. 10.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확대 지원
'21. 1.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확대 지원
'22. 1.	외국인 관리번호발급자 민간의료기관 확대 지원

나. 주요 내용

(1) 사업내용

- 필수 및 임시예방접종의 접종비용(①백신비, ②예방접종 시행비용) 전액 지원
- 그 외 예방접종과 관련된 부대 비용(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 치료 및 HPV 여성청소년 건강상담료) 지원을 포함

(2) 국가예방접종 대상 감염병별 지원 백신 종류

구분	대상 감염병	지원 백신
필수예방접종	B형간염*	HepB
	결핵	BCG(피내용)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DTaP/Tdap/Td
	폴리오*	IPV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Hib
	폐렴구균	PCV13/15, PPSV23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RV1/5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MMR
	수두	VAR
	A형간염	HepA

필수예방접종	일본뇌염	IJEV(불활성화 백신), LJEV(약독화 생백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HPV4
	인플루엔자	IIV
	장티푸스	ViCPS
	신증후군출혈열	HFRS
임시예방접종	코로나19	COVID-19
	엡폭스	Mpox

*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또는 DTaP-IPV/Hib(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또는 DTaP-IPV-Hib-HepB(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B형간염) 혼합 백신으로 접종 가능

(3) 국가예방접종 연령별·시기별 지원대상

• 신생아기

출생시	
B형간염(HepB)	1차
1개월	
결핵(BCG, 피내용)	1회(4주 이내)
B형간염(HepB)	2차

• 영유아기

2·4·6개월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1~3차 (혼합백신 접종가능)
폴리오(IPV)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Hib)	
폐렴구균 감염증(PCV)	1~3차
로타바이러스 감염증(RV)	
B형간염(HepB)	3차 (혼합백신 접종가능)

12~15개월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Hib)	4차
폐렴구균 감염증(PCV)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1차
수두(VAR)	1회
12~23개월	
A형간염(HepA)	1~2차
일본뇌염 불활성화백신(IJEV)	
일본뇌염 약독화생백신(LJEV)	1차
15~18개월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4차
24~35개월	
일본뇌염 불활성화백신(IJEV)	3차
일본뇌염 약독화생백신(LJEV)	2차

• 아동기

4~6세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5차
폴리오(IPV)	4차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2차
6세	
일본뇌염 불활성화백신(IJEV)	4차
11~12세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dap)	6차
12세	
일본뇌염 불활성화백신(IJEV)	5차

- 청소년, 성인

12~17세 여성 청소년 및 18~26세 저소득층* 여성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HPV)	1~2차 또는 1~3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접종 당일 자격 확인

65세 이상	
폐렴구균 감염증(PPSV)	1회

- 고위험군

고위험군 해당자	
장티푸스(ViCPS)	1회(필요시 3년마다)
신증후군출혈열(HFRS)	1~3차
엠폭스(Mpox)	1~2차

- 절기 접종

인플루엔자	
65세 이상, 임신부, 6개월~13세 어린이*	1회

* 9세 미만 어린이가 인플루엔자 백신을 처음 접종하는 경우 2회 접종

코로나19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1회

* 단, 아직 기초접종을 미완료한 12세 미만 고위험군의 경우, 기초접종 완료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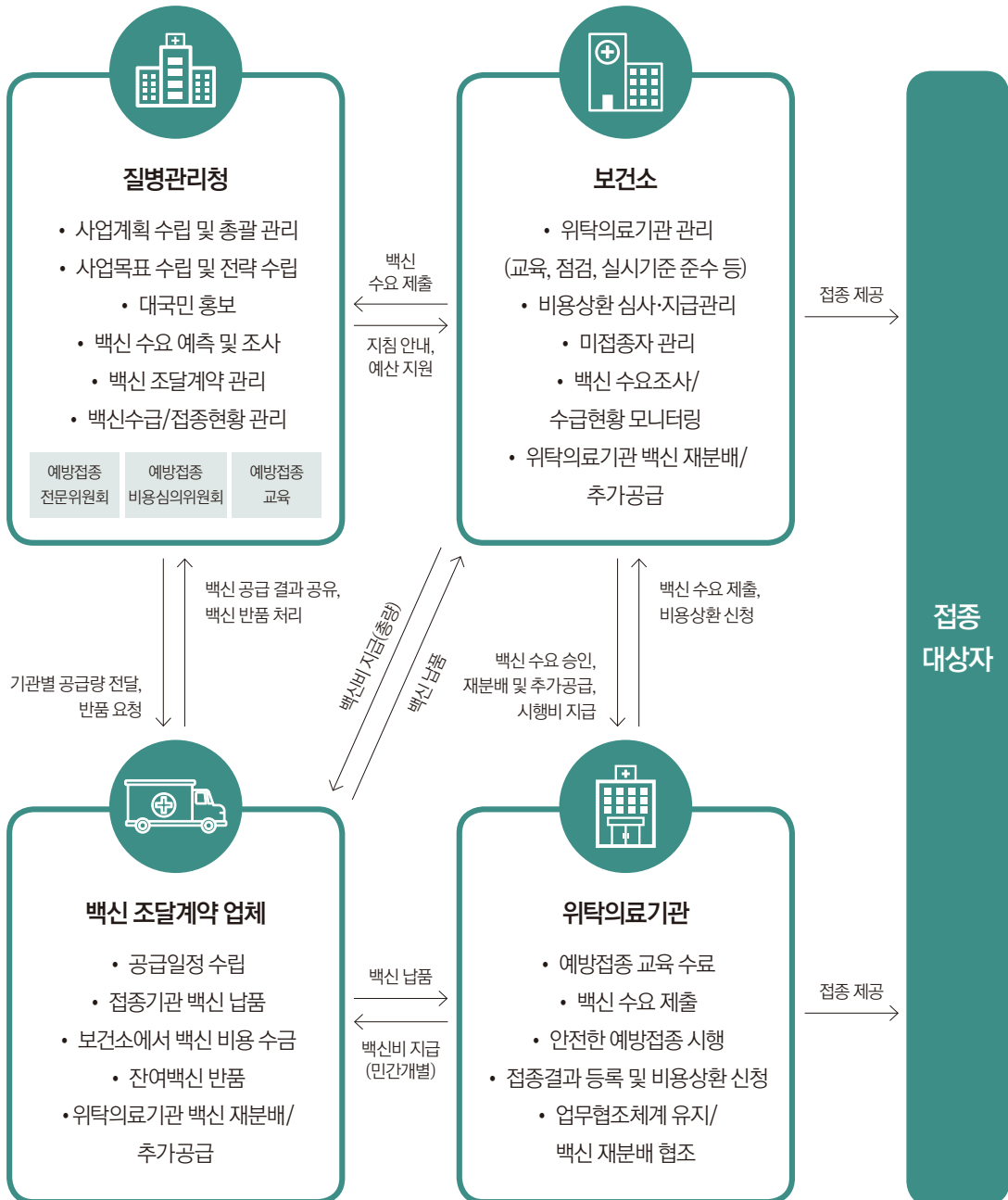


< 참고 : 국가예방접종 사업대상 나이 판단 기준 >

- 국가예방접종 사업대상은 「민법」상 만나이 기준이 아닌,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기준연도 11.~12.31. 출생자까지를 포함 [IV. 부록 3. 민원사례집](#)
 - 단, 절기접종(인플루엔자(IV), 코로나19(COVID-19)) 사업 대상자는 사업시작 전 별도 안내
- (참고) 어린이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과 실제 생년월일이 다른 경우
 - 실제 생년월일 기준으로 접종 및 비용지원하며, 보호자가 실제 생년월일로 적용하고자 한다면, 보건소에서 증빙서류로 실제 생년월일을 확인 후 시스템 변경 가능

다. 추진 체계

(1) 체계도



(2) 기관별 역할

구분	질병관리청	시·도	시·군·구(보건소)	위탁의료기관
사업 관리	- 국가예방접종사업 운영 총괄 - 법적 근거 및 지원 기준 마련 - 접종률 분석 등 현황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효과 평가·환류 - 미접종자 관리방안 마련 - 예방접종교육 운영 - 대국민 홍보 - 예방접종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 개인정보관리	- 시·도 예방접종 계획 수립 - 시·도 의사회 등 관련기관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 유지 - 시·군·구 예방접종 계획 점검·지원 - 시·군·구 사업현황 관리 - 미접종자 관리 방안 마련 - 예방접종교육 이수 - 지역주민대상 홍보 계획 수립·시행 - 시·군·구 비용상환 관리 - 지역사회 예방접종률 분석 - 개인정보관리	- 관내 예방접종계획 수립 및 시행 - 지역의사회 등 관련 기관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 유지 - 사업 시행·모니터링 - 예방접종 실시기준 숙지·접종 실시 - 비용상환 심사·지급 - 지역사회 접종관리 - 접종내역 등록·관리 - 예방접종교육 이수 - 위탁의료기관 교육 등 관리 - 관내 지역주민·유관 기관 대상 홍보 - 예방접종 사전알림 실시 - 개인정보관리	- 안전한 접종환경 구비 - 예방접종교육 이수 - 예방접종 실시 전 대상 여부 및 과거력 반드시 확인 - 예방접종 실시기준 숙지·접종 실시 - 접종내역 전산 당일 등록 및 관리 - 접종 비용상환 신청 - 예방접종 사전알림 관리 - 개인정보관리
계약 관리	위탁의료기관 현황 및 관리현황 모니터링	지역 위탁의료기관 현황 모니터링 및 관리	- 계약 체결·관리 - 위탁의료기관 공고 - 위탁의료기관 관리 및 점검	- 계약 체결 - 자율점검 실시 및 방문 점검 협조 - 업무협조체계 유지 - 참여 백신 시행 확인증 현행화
백신 관리	- 백신조달계약 체결 - 백신 수급 관리 - 현황 모니터링, 접종률 관리 등 - 긴급도입 등 추가·대체 백신 확보	지역 내 백신 수급 관리(보건소 백신 재분배)	- 백신 구매 및 관내 백신 수급 관리 - 위탁의료기관 백신 재분배, 입출고 모니터링 등	백신 관리 철저 (백신별 분리 및 적정온도 보관)
예방 접종 안전 관리	-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감시체계 운영 - 시·도 이상반응 역학조사반 지원 -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운영 -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운영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보고 - 시·도 이상반응 역학조사반 운영 - 예방접종 피해조사 실시 - 예방접종 소액 피해보상 심의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신고·보고 - 시·군·구 이상반응 역학조사반 운영 (기초조사) - 예방접종 피해조사 접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신고·보고

질병관리청

- 국가예방접종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등 운영 총괄
- 관련 법 제개정 등 사업 시행 근거 및 지원 기준 마련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국가예방접종사업 교육과정 운영 및 홍보
- 국가예방접종사업 운영 관련 현장점검 실시
- 사업별 접종률 모니터링 및 관리
- 백신 수요 예측 및 조사
- 백신 조달계약 체결, 체결결과 안내, 공급방식 특성에 따른 접종기관(보건소, 위탁의료기관) 백신 공급 등
- 백신 수급 현황 관리
-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백신 시·도 간 백신 재분배 및 질병관리청 추가공급용 백신 공급·관리 등
- 백신 수급 모니터링 및 접종률 관리
- 백신 부족 상황(예상) 시 긴급도입 등 추가·대체 백신 확보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감시체계 및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 운영

시·도

- 관할 지역의 국가예방접종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 지역 의사회 등 유관기관 업무 협조체계 유지
- 사업 추진 현황 모니터링 및 접종 관리
- 예방접종 담당자 전문교육과정 이수
- 보건소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 및 점검(지역 내 접종 현황 및 접종률 관리, 백신 수급관리, 위탁의료기관 관리 등)
- 지역 내 백신 수급 현황 모니터링 및 관리
 - ※ 보건소 수요량 검토, 관할 보건소 내 백신 재분배, 총액계약 백신 추가공급 요청(필요시)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 및 피해조사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소액 심의

시·군·구(보건소)

- 관할 지역의 국가예방접종사업 계획 수립 및 실시
- 위탁계약 체결 및 위탁의료기관 관리(교육, 시행비 및 백신비 지급, 점검 등)
 - ※ 보건소는 의료기관의 사전점검을 실시한 후 계약 체결
 - ※ (위탁의료기관의 공고) 위탁의료기관명, 위탁기간, 참여 백신명 등을 시군구 및 보건소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 필요
- 예방접종 실시 및 예방접종 내역 전산 등록
- 관내 사업 현황 모니터링 및 접종 관리
 - ※ 사업 대상자의 예방접종 기록·인적정보 관리 등 포함
- 관내 백신 관리(수요조사, 현황 모니터링, 백신 재분배, 추가공급 등)
 - ※ 백신의 원활한 공급 및 안전 접종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지자체-지역의사회 협의체 구성·운영을 권장



[참고] 지자체-지역의사회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안

- (목적) 현장 상황을 고려한 원활한 백신 공급 및 안전 접종을 위해 지역사회 공공-민간(의료계) 간 협력 강화
- (구성) 시·도-지역의사회, 시·군·구 보건소-지역의사회
- (운영 시기) 사업 시행 전 협의체 구성 완료 및 1차 회의(8월), 지역 여건에 따라 사업 기간 내 필요 시 회의 개최, 사업종료 후 평가 회의
- (주요 기능)
 - 지자체 예방접종 계획 안내 및 독려
 - 안전 접종 관련 교육 등 실시
 - 지역 내 의료기관 건의사항 논의
 - 보다 정확한 지역 내 의료기관별 초기 분배량 결정
 - 현장 중심의 신속, 정확한 추가공급 방안 논의
 - 원활한 재분배 및 회수를 위한 지역 내 협력방안 논의
 - 백신 폐기 최소화 방안 논의
- (협의체 구성원별 역할)
 - (시·도) 시·도-지역의사회 협의체 운영 및 관리, 시·도 예방접종 계획 안내 및 독려, 시·군·구 보건소-지역의사회 협의체운영 지원
 - ※ 질병관리청 요청 시 시·도는 시·도-지역의사회 협의체 운영 결과 제출
 - (시·군·구(보건소)) 시·군·구 지역의사회 협의체 운영 및 관리, 시·군·구 예방접종 계획 안내 및 독려
 - ※ 시·도 요청 시 시·군·구 보건소는 보건소-지역의사회 협의체 운영 결과 제출
 - (지역의사회) 지역 내 의료기관 의견수렴 및 공유, 지역 내 의료기관 예방접종 독려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관리 및 국가피해 보상 접수
- 예방접종 후 중증이상반응 기초조사

위탁의료기관

- 사업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 시행(위탁계약 체결, 교육 이수 등 포함)
 - ※ 위탁계약의 범위는 사업별 사업참여확인증 제출을 통해 확인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현행화 필요
-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을 위한 환경 구비
 - 접종 시행 전 예진표 작성, 대상자 본인 여부 및 과거 접종력 확인, 예진 및 접종 후 이상반응 설명 등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등을 준수하여 사업 대상 예방접종 실시
- 예방접종 내역의 전산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 ※ 내역 등록 시 개인정보 관리 철저
 - ※ 예방접종 내역 등록, 비용상환 신청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리지침 준수
- 예방접종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요청 또는 자료요구 적극 협조
- 백신 수요 제출, 백신 회수 및 재분배(사전현물공급 백신) 등 적극 협조
 - ※ 총량구매-사전현물방식 백신은 수요량 입력 전까지 자율점검표 제출
- 백신 관리 철저(백신 보관 온도 관리, 유효기간 만료 백신 투여 금지 등)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신고

2

위탁계약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필수예방접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따라 의료기관의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지자체에서 판단 및 고려하여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

<위탁의료기관 계약 절차>

1

예방접종 교육 이수(의료기관)

- 사업 참여 전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https://edu.kdca.go.kr>)을 통해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 과정 이수
- ※ 위탁의료기관 예진의사는 사업 실시 이전에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2

계약체결(보건소, 의료기관) 및
위탁의료기관 지정서 발급

- 보건소 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날인하여 위탁계약 체결
- 계약체결 후 보건소에서 교부한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 수령 및 비치

3

위탁의료기관 공고(보건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의거, 위탁의료기관 공고

가. 사전 교육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지자체와 위탁계약 체결 전 기본교육 및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별 심화교육(온라인) 이수 필요

(1) 위탁의료기관

- (이수 대상)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예방접종 예진을 시행하는 모든 의사를 대상으로 함
- (신청 방법)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개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 → ‘교육관리 User(학습자)’ 권한신청
 - ※ 해당 권한은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98, 8399, 8382)에서 승인함
- (이수 시기) 지자체-희망 의료기관 간 위탁계약 체결 전 또는 사업갱신 시
 - (기본교육) 신규 위탁계약 체결 전 또는 위탁계약 갱신 6개월 이내에 이수
 - (심화교육) 참여하는 사업(어린이 또는 성인)에 한해 ①신규 위탁계약 체결 전 또는 위탁 계약 갱신 6개월 이내에 이수하고, ②계약 후 2년 0개월~12개월에 추가 이수
 - ※ 온라인교육 과정은 매년 3월~다음해 2월 운영
 - ※ 심화교육은 어린이 또는 성인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교육으로 구성
- (이수 방법) 온라인교육(기본교육 +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별*(어린이 또는 성인) 심화교육)
 - * (어린이 심화교육) : 어린이, B형간염 주산기, HPV 사업, 어린이 인플루엔자사업
 - (성인 심화교육) : 성인(임신부,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65세 이상 폐렴구균, 코로나19 사업
 - ※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https://edu.kdca.go.kr>)

구분	신청대상
기본교육	① 신규 위탁계약 체결을 희망하는 경우 ② 위탁계약 갱신을 희망하는 경우 ※ 기한 만료 6개월 전부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접종등록 시 팝업창을 통해 의료기관에 안내됨
심화교육	• 참여하는 사업(어린이 또는 성인)에 한해 ① 신규 위탁계약 체결 또는 갱신 전 이수 ② 신규 위탁계약 체결 또는 갱신 후 추가 이수 ※ 기한 만료 6개월 전부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접종등록 시 팝업창을 통해 의료기관에 안내됨 ※ 교육 미이수시 비용상환 신청이 불가능하며, 교육이수 및 계약갱신 후 비용상환 신청 가능

(2) 보건소

- (교육이수관리) 위탁계약 체결(사업갱신) 및 비용상환 신청을 위해 관내 위탁의료기관 예진 의사 교육 이수 관리
 - ※ 해당 업무를 위해서는 ‘교육관리 User(학습자관리)’ 권한 필요(보건소 당 위탁계약 및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 1~2인에게 해당 권한 부여)

나. 계약 체결

(1) 신규 계약

- (위탁의료기관 공고) 시·군·구 및 보건소 누리집 등을 통해 위탁의료기관 현황을 게재(연1회, 매년 1월 첫째주를 원칙으로 하며, 변동사항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위탁의료기관 찾기)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함을 공지)
※ (공고내용) 위탁의료기관명, 위탁기간, 참여 백신명 등
- (계약신청)
 - (신청주체)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의 경우 「의료법」 제43조제2항에 근거, 별도의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사업 참여 가능
 - (신청내용) 참여 희망 사업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HPV 국가예방접종사업, 성인 국가예방접종사업,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중 희망 사업별 신청
 - (신청방법)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또는 코로나19예방접종등록시스템*에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계약 신청 **III. 시스템 매뉴얼 1**
* 위탁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 위탁의료기관 기관(기관장)인증서로 계약 신청(전자서명)

<위탁계약 신청 시 필요 서류>

1. 교육수료증: 기본교육 및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의 심화교육 수료증
- 전산으로 계약신청 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교육수료증 좌측 상단의 수료번호를 입력하여 수료 여부 검증 및 성명 입력 필요
2. 통장사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기 위한 통장 사본으로 예방접종 비용상환용 별도 계정의 통장 개설 권고
3. 예방접종 사업별 참여 확인증 또는 참여백신 시행확인증 **IV. 서식 1-3, 4, 5, 6, 8**
 -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은 B형간염 접종 시행 필수
 - * 'HPV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 시 'HPV 도매상 협약서' 함께 제출
 - 시행확인증에는 의료기관에서 실제 접종 중인 모든 백신을 표기하여야 하며, 표기한 백신 정보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일반인에게 안내되므로 변동 발생 시 즉시 현행화* 필요
 - * 현행화 누락시 비용상환 신청 불가

※ 신청 전 반드시 예방접종 교육 이수 후, 사업 취지, 위탁계약 조건 및 의료기관 준수사항,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침 및 예방접종 실시기준, 관련 시스템 사용법 등을 숙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 조건]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1.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준수
2. 예방접종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요구시 업무협조
3. 예방접종에 관한 교육과정 이수
4. 과거예방접종력 조회 및 접종기록 등록, 비용상환 신청
5. 접종기록 등록, 비용상환 신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리지침 준수
6. 개인의 과거접종력 등은 진료 이외 목적으로 사용 금지
7. 사업 참여 확인증 제출을 통한 위탁계약범위 확인 및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현행화

- (계약승인) 보건소 승인한 날로부터 계약은 체결되어 유효한 것으로 보며, 비용상환 신청 가능
 - (승인주체) 위탁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 ※ 해당 시·군·구로 발급된 인증서로 계약승인(전자서명)
 - ※ 지자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업무(계약포함)'가 보건소장에게 위임되면 보건소 기관(기관장) 인증서 사용 가능
 - (승인방법) 의료기관의 계약 신청에 따라 관할 보건소는 신규 위탁의료기관을 방문점검*하여 시설 및 업무 수행 능력을 점검하고 시스템에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승인
 - *일반사항 및 접종관련 점검사항, 백신관련 점검사항, 예방접종 사업별 점검사항 철저히 확인
 - ※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은 계약 체결 전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조회 및 현장방문으로 예방접종 가능한 의사의 고용, 업무 여부를 확인
 - (지정서 발급 및 위탁의료기관 공고) 계약 체결 후 보건소는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 의료기관 내 지정서를 비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시·군·구 및 보건소 누리집 등을 통해 위탁의료기관명, 위탁기간, 참여백신명 등의 위탁의료기관 현황을 공고 **IV. 서식 I-2**

(2) 재계약(갱신)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위탁의료기관은 5년마다 위탁계약의 갱신 필요

- (갱신신청)
 - (신청주체) 위탁의료기관 중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참여를 지속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 (신청시기) 계약만료 2개월 전부터 계약만료까지
 - (신청방법) 기본교육, 사업별 심화교육 등 필요한 교육과정의 이수를 완료한 후, 시스템을 통해 갱신 신청(신규계약 신청 방법과 동일) **III. 시스템 매뉴얼 1**
 - ※ (의료기관 대표자명 변경) 별도의 해지·신규계약·갱신 등의 절차 없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나의 정보에서 변경 가능하며, 이 경우 변경사항은 계약갱신(5년 후) 의료기관지정서 및 위탁계약서에 반영됨
 - ※ (의료기관 정보(요양기관번호, 관할 보건소) 변경) 기존 계약을 해지한 후 신규계약 체결

- (갱신승인)
 - ※ 갱신 승인일을 기준으로 하여 시스템 내 자동으로 갱신일 반영
 - (승인주체) 위탁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 (승인방법) 교육 이수 등의 갱신 요건 확인 후 시스템을 통해 갱신 신청 승인(신규계약 승인 방법과 동일)

다. 계약 관리

(1)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실적 등과 관계없이 참여 중인 사업별 자율점검표를 통합 작성하여 제출 (상·하반기 각 1회)

- (점검항목) **IV. 서식-13, 14**
 - (일반사항) 위탁의료기관 지정서 게시, 계약 체결한 백신 사전 구비, 예방접종 예진표 및 예방접종 안내문(VIS) 비치 등
 - (예방접종 실시) 예진표 비치 및 작성, 접종력 확인(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IRIS) 및 예방접종 수첩), 백신종류 및 투여방법 설명,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 및 이상 반응 설명,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준수, 접종 후 20~30분간 이상 반응 관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안내문 제공, 이상 반응 신고제도 설명, 접종기록 전산등록 등
 - (백신 관리) 백신관리 전담자 지정, 백신 구입시 생물학적 출하증명서, 백신 전용 냉장고에 백신만 보관, 백신 보관 온도 2~8℃ 유지, 온도 점검(1일 2회), 유효기간 확인, 백신 폐기 처리 등
 - (기록 보존) 예진표 보관(5년), 생물학적 출하증명서 보관(5년), 백신 보관 냉장고 온도기록지 보관(5년), B형간염사업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보관(5년), 건강상담 체크리스트 보관(5년), 코로나19 백신 보관냉장고 체크리스트 보관(5년)
 - (비용상환) 접종 후 전산등록 지연하여 중복접종 등록 시 먼저 전산등록한 의료기관에 비용상환
- (자율점검표 작성 및 제출 방법)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코로나19예방접종등록시스템 → 행정업무/기관관리 → 점검관리 → 자율점검등록관리 메뉴에서 [점검표 등록] 클릭 및 작성 → [확인 및 서명] 클릭 → 서명 → 저장(제출 완료)
- (자율점검표 수정을 원하는 경우)
 - ① (보건소 승인 전) 위탁의료기관에서 점검표를 삭제 후 재작성하여 제출
 - ② (보건소 승인 후) 관할 보건소에 점검표 삭제 요청 후 삭제 완료 시 재작성 및 제출

(2) 보건소 방문점검

보건소는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참여 중인 모든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점검 실시(2년에 1회 이상(수시))

※ 보건소는 사전 예고 없이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점검가능하며, 사전자율점검 내용이 허위인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계약 해지 가능

※ 미흡사항에 대한 조치 완료 확인 등 방문점검을 여러 번 실시했다면 결과 중복등록 가능

- (점검항목)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준수 여부 확인
 -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였는지 등 확인
 - 사업 지침 등 변경사항 준수 관리 철저(필요 시 자체교육 실시)
 - 백신 보관 냉장고의 청결 상태 및 콜드체인 유지 등 점검
 - 비용상한 및 기록보존 현황(예진표, 생물학적 출하증명서, 온도 기록지, 건강상담 체크리스트, B형간염사업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코로나19 보관냉장고 체크리스트 5년 보관)
 -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의료인 현황 파악 및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모든 의사의 예방접종 교육과정(기본·심화교육) 이수 여부 확인
- (방문점검표 시스템 등록 방법)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코로나19예방접종등록시스템 → 행정업무/기관관리 → 점검관리 → 방문점검관리 메뉴 [점검표 등록] 클릭 → 점검내용 등록
 - ※ 위탁기관의 방문 시 참여하는 사업별 점검 후 등록

[온도 이탈 주의사항]

- (온도 이탈 주요사례) 냉장고 고장 및 이상, 멀티탭 사용 등으로 인한 전원 미공급
- (온도계 문제) 온도계 고장, 디지털온도계, 자동온도기록계 미보유 등
- (관리 부주의) 알람온도 오 설정 및 온도계 알람 무시(알림 off), 냉장고 온도조절 미숙, 백신 상온 방치, 냉동보관, 백신관리 담당자 주관의 육안 모니터링 미실시 등

[방문점검에 따른 행정조치 예시]

- (주의) 담당자의 부주의로 인한 백신 파손, 경미한 온도이탈* 등의 사고 1회 발생한 경우
 - *사고보고서 제출 후 사용 가능 판정을 받은 사례
- (경고) 온도 이탈 사고가 2회 반복 발생 또는 백신관리담당자가 지침 숙지 부족 등 직무 수행에 태만한 경우
- (해지) 온도 이탈 사고가 1~2회 이상 반복 발생 또는 대량의 백신에 대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 해지 등

라. 계약 해지

(1) 위탁의료기관

- (전체 사업 해지) 위탁의료기관은 '전체 계약 해지 신청서'를 제출, 보건소 승인 없이 참여 중인 모든 사업 자동으로 해지 **IV. 서식-11**
 - ※ 해지 이후 전산 등록 누락된 접종기록에 대한 비용 청구 추가 등록 불가
- (일부 사업 해지) 해지할 사업(백신)의 '시행확인증 정보'에서 '해지신청'을 작성하여 기관 인증서 서명 후 제출, 나머지 사업은 유지
 - ※ 의료기관은 전산누락된 접종기록이 없는지 확인 후 시행확인증 수정 제출 → 보건소 승인 필요
- (폐업) 위탁의료기관이 계약 해지의 절차 없이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위탁계약 해지를 한 것으로 같음
 - ※ 해지 처리 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사용권한이 소멸되므로 반드시 폐업 전 예방접종 내역의 전산등록, 비용상환 신청 완료 및 잔여백신 확인
- (휴업) 6개월 이상의 휴업 시에는 계약을 해지한 후, 추후 신규계약 체결
 - ※ 폐업 및 의료기관 이전에 따른 휴업 등 정당한 사유로 위탁의료기관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추후 신규계약의 체결 가능

(2) 보건소

- (계약 해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보건소는 위탁의료기관에 사전통지 없이 계약 해지 **IV. 서식-12**
 - 보건소는 고의·중과실 여부, 위반 횟수(반복성)를 반영하여 주의·경고·계약 해지 등을 판단하여 행정 조치 실시
 - ※ 이 경우 계약이 해지된 의료기관은 해지일로부터 1년간 모든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 불가
 - ※ 예시 : 위탁계약 해지일(2024. 9. 19.) → 2025. 9. 19.부터 계약진행 가능
 - ※ 방문점검 또는 사업운영에 미협조하는 경우가 잦은 경우, 위탁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할보건소에서 위탁계약 해지 가능
 - 추후 재계약 진행 시 이전 발생사항 안내 및 재발 방지 확인 후 계약 진행 필요
- (정보 관리) 추후 재계약 의사가 없는 위탁의료기관과 계약을 해지한 때는, 관련 서류(예방접종 실시기록, 기록지 보관 등)를 관할 보건소가 이관 받아 보관하여야 함

[참고]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6호)」

제3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의료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
2. 위탁의료기관이 제2조제3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때
3. 기타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위탁계약조건 위반 예시]

1. 사업 시행 전 접종을 실시하였으나 접종일을 사업 기간 중으로 등록
→ 확인된 즉시 계약 해지 및 백신 회수, 계약 해지 이후 접종 건에 대해 비용상환이 불가능하며, 사용한 백신은 기관 자체 백신으로 반납, 예방접종 시행비 상환 불가
2.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접종 내역 허위 등록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83조제3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 위탁계약 해지, 계약 해지 이후 접종 건에 대해 비용상환 불인정
3. 총액계약-사전현물공급 백신과 민간 개별구매 백신의 혼용
4. 1일 예진 의사 1인당 100명 초과 접종 2회(2일) 적발(해당연도)
5. 무료접종 시행 후, 피접종자에게 예방접종 비용 청구한 경우
6.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 백신 외의 백신을 접종한 후 보건소에 허위 청구
7. 백신 냉장고에 음식물 보관 및 적정온도(2~8℃) 유지 이탈 등
8. 의료기관의 부주의로 인하여 오접종이 발생한 경우(위탁의료기관에서 오접종 발생 시 신고하지 아니하여 뒤늦게 보건소에서 알게 된 경우 위탁계약 해지 가능)
9. 예진표 보관(5년), 생물학적 출하증명서 보관(5년), 온도 기록지 보관(5년), B형간염 사업 참여 개인 정보제공동의서 보관(5년), 표준여성청소년상담체크리스트 보관(5년), 코로나19 백신보관용 냉장고 체크리스트(5년) 상기 문서를 미 보관 시
10. 유효기간 지난 백신 접종 사례 1~2회

3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



가. 국가예방접종사업

(1) 접종대상자 관리

- (사업대상자 관리) 예방접종은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본인 확인 후 시행
 - (행안부 오류내역 확인) 위탁의료기관에서 사업대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오등록한 경우로 행안부 오류내역 확인하여 등록된 의료기관에서 정정
 -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팝업창 오른쪽 상단에 해당 의료기관의 '행안부오류내역'을 제공하니 잘못된 인적정보를 반드시 정정(등록한 의료기관에서 정정 가능)
- (임시신생아번호)
 - (정의) 출생신고 전 접종(B형간염 1차, BCG) 기록 등록을 위해 사용하는 임시번호, 생년월일-성별의 7자리로 등록하며, 추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으로 전환
 - (관리주체) 신생아번호를 처음 등록한 접종 기록의 인적 관할 보건소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후 1개월 내 출생신고를 완료하여 주민등록번호로 전환 시, 익일 행안부 연계되어 인적 관할 보건소 변경
 - (관리방법) 출생신고 기한이 지난 임시신생아번호의 경우, 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전환 가능한 대상을 확인하여 정기적 관리
 - ※ 전환방법: 등록시스템 신생아(주민번호없음) 체크박스를 해제(□)한 후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여 저장
 - ※ 등록된 정보(보호자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생년월일)를 기반으로 출생연도 및 월 단위로 조회하여 동일한 대상자를 선택 후 전환 가능
 - ※ 전환되지 않은 대상자 중 내국인의 경우 생후 2개월까지는 행안부 연계되어 인적 자동 보완(단, 임시신생아번호 인적정보와 출생신고 후 인적정보(생년월일, 보호자 정보 등)가 불일치하는 경우 자동보완 불가능)
 - ※ 생후 3개월 이상 전환되지 않은 대상자는 보건소에서 보호자와 유선통화하여 출생신고 지연 사유를 확인 후 상담 내용을 관리이력에 등록
- (임시관리번호 관리)
 - (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대상의 예방접종 기록 관리를 위해 임시로 발급하는 인적 번호로, 추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으로 반드시 인적정보 통합 필요
 - (발급유형)
 - ① 내국인 : 시설아동번호가 없는 시설아동, 북한이탈주민 등
 - ② 외국인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에 따른 주한외국공관직원자녀 등 외국인 등록번호 발급 면제자, 미등록 외국인 중 3개월 이상 장기체류자

* (내국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를 신고한 외국국적동포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자(면제자 포함)는 보건소·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가능(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

- (발급절차) 피접종자(보호자)는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한 후 보건소 방문하여 발급 신청
(유선발급 불가) → 보건소는 보호자 정보(이름·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확인 후 먼저
발급된 관리번호가 없다면 관리번호를 발급 및 안내

※ 임시관리번호는 1인 1개 발급이 원칙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행정업무 → 관리번호발급관리를 통해 생년월일·발급기관을 입력하여 타기관
발급 관리번호 조회 가능

※ 보호자는 모(母) 등록을 원칙으로 하되 확인 불가능한 경우 신원 확인이 가능한 다른 보호자 등록 가능,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 연락 가능한 휴대번호, 국내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보호자 이름·주소가 표시된
우편물 주소 등으로 정확한 정보 인증



[개인식별정보 전환 안내]

임시번호대상의 예방접종 기록 지속 관리를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전환을 문자서비스로 안내(2024. 4. 시행)

- 임시신생아번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알림 주체
(문자발송예시) (시군구청장)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자녀 000의 접종기록(B형간염 1차, BCG)이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아 안내드립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출생신고 지연 시 예방접종 기록 관리를 위해 보건소에서 임시관리번호(13자리)
를 발급받으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무료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 보건소에 방문 전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 후 방문 필요

추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임시관리번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알림 주체(임시관리번호
발급 기관명)

(문자발송예시) (시군구청장) 알려드립니다.

000님은 000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임시관리번호에 접종력이 등록되어 안내드립니다.

임시관리번호는 예방접종 기록 관리용입니다.

추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 임시관리번호 발급받은 보건소에 방문하여
접종력을 이전하시기 바랍니다.

(2) 예방접종 시행

(접종대상자·보호자) 통합 예진표 작성
예방접종 예진표를 비치하고, 접종 전 대상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에게
직접 예진표를 작성하도록 안내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 고시 제2023-17호)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보건 의료기관과 의료인, 접종대상자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는 예방접종 시행 전 예방접종 예진표(영문서식, 전자문서 포함)를 작성하여야 함



피접종자 본인 확인* 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과거 접종력 확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확인

※ 오접종 사례 중 접종력 미확인으로 중복접종, 접종 간격 미준수, 동시 접종 시 다른 백신 사용, 유효기한 지난 백신 접종 등 사례가 많으므로 반드시 접종력, 백신 유효기한 등 확인 후 접종



접종대상자 예진 및 예방접종 실시에 대한 동의 확인



예진 결과·접종 후 이상반응 설명 및 예방접종 실시*
* 예방접종은 의료기관 내에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동불편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을 때는
보건소 관리하에 안전한 예방접종 환경을 확보한 후 방문접종 시행 가능

※ 접종 후 20~30분 간 접종기관에서 머무르며 이상반응 발생을 관찰
※ (안전한 예방접종 환경) ①백신 콜드체인 유지, ②접종 후 대기장소 확보, ③응급처치 세트·구급차 등의 안전장비 구비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설명 및 다음 예방접종 일정 안내
*지역주민 중 보건소 이용자의 접종기관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해 지역 특성에 따라
일정 비율의 보건소 접종 권장

(3) 방문 예방접종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동불편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을 때는, 보건소의 관리하에 안전한 예방접종 환경을 확보한 후 방문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음

구분	방문 예방접종 가이드라인							
접종 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등에 준하는 거동불편자로 독립적으로 의료기관 왕래가 불가능한 자							
접종 인력	• 예진 및 접종,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대응을 위해 의사*, 간호사를 포함해 최소 3인 이상 방문 * 협약의료기관 의사, 시설 계약의사, 촉탁의사 등 포함							
접종 시 유의사항	<백신 콜드체인 유지> • 「백신 보관 및 관리 가이드라인」 참고하여 2~8℃ 유지 - 온도계가 부착된 아이스박스 등 이동 중 백신 온도관리 철저 * 시설 관할 보건소와 방문 예방접종 시행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가 다를 경우, 시설 관할 보건소에서 백신 및 방문 예방접종 관리							
	<대상 및 백신 확인> • 방문 의사는 접종 시행 전 예진을 철저하게 하고, 접종 시행 직전까지 접종 대상 백신 확인							
	<이상반응 관찰> • 접종 후 20~30분 머무르며 접종자의 이상반응 등을 관찰							
	<응급상황 대비> ①아나필락시스 대응을 위한 사전 준비 약품 및 장비 구비* 후 실시 - 사전 준비 약품 : 에피네프린 등 - 사전 준비 장비 : 청진기, 혈압계, 산소포화농도 측정기, 산소 마스크, 산소발생기 및 산소공급장치, 정맥주사세트, 기도확보장치 등 * 단, 구급차를 대동하는 경우, 구급차에 구비된 약품 및 장비로 대체 가능 ②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반드시 구급차 대동 또는 119 사전협조 후 실시							
	<table><tr><th>구분</th><th>우선순위</th></tr><tr><td>보건소</td><td>① 보건소 구급차 → ② 119 사전협조*</td></tr><tr><td rowspan="2">위탁 의료 기관</td><td>구급차가 있는 기관 ① 위탁의료기관 구급차 → ② 119 사전협조*</td></tr><tr><td>구급차가 없는 기관 ① 보건소 구급차 → ② 119 사전협조*</td></tr></table>	구분	우선순위	보건소	① 보건소 구급차 → ② 119 사전협조*	위탁 의료 기관	구급차가 있는 기관 ① 위탁의료기관 구급차 → ② 119 사전협조*	구급차가 없는 기관 ① 보건소 구급차 → ② 119 사전협조*
	구분	우선순위						
보건소	① 보건소 구급차 → ② 119 사전협조*							
위탁 의료 기관	구급차가 있는 기관 ① 위탁의료기관 구급차 → ② 119 사전협조*							
	구급차가 없는 기관 ① 보건소 구급차 → ② 119 사전협조*							
* (119 사전협조): 보건소는 접종계획(장소 및 일정)을 공유하고 이상반응 응급환자 발생 시 가장 가까운 구급차가 신속하게 출동하도록 사전 협조								
<응급상황 발생> • 관내 이송 가능한 의료기관 현황을 파악하고 전화번호, 위치, 이송거리 등을 확인하여 즉시 이동 가능하도록 준비 - 접종 후 응급상황 발생 시 방문 의사는 환자 상태 평가 및 응급처치 지휘, 간호사는 응급처치 보조, 응급구조사 또는 행정요원은 이송 - 이외 아나필락시스 대응 관련 내용은 「아나필락시스 대응 매뉴얼」 참고								

(4) 예방접종 유의사항

• 예방접종 전 유의사항

-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를 확인 후,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접종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안내
-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예진 시 접종 전후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
- 다문화가정 접종 방문시, 12개 언어*(예방접종 절차 안내서, 예진표, 자녀의 예방접종기록 확인, 연령별·시기별 권장 예방접종) 번역된 설명자료를 참고 안내

* 제공언어 : 네팔어, 라오스어,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영어, 우즈베키스탄어, 일본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필리핀어

※ 다운로드 경로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 예방접종관리 → 관련자료('안내서' 검색) 다운로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 → 예방접종관리 → 각종서식('안내서' 검색) 다운로드

• 예방접종 시 유의사항

1. 최소접종 연령 및 최소접종 간격 준수

- 최소접종 연령 및 최소접종 간격을 준수하여 접종함
- 5일 이상 이룬접종은 무효이며, 해당 접종 이후 다음접종과의 접종간격 확인 후 재접종

2. 약독화 생백신 간 접종간격 준수

- 수두, MMR, 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 간 동시접종이 가능하나 각 약독화 생백신을 따로 접종할 경우 최소 4주 이상의 간격 준수(4일 이하의 오차(grace period) 적용 제외)

3. 권장하지 않는 교차접종 지양

- 우발적인 교차접종의 접종력은 인정되는 접종(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 DTaP, DTaP-IPV, DTaP-IPV/Hib, DTaP-IPV-HepB-Hib 기초접종의 교차접종(기초 3회는 동일 제조사의 백신으로 접종)
 - HPV4, HPV9* 백신의 교차접종
- * 단, HPV9 백신은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 백신은 아님
- 영유아용 모더나/화이자 백신의 교차접종(기초는 동일 제조사의 백신으로 접종)
- 교차접종 시 접종력이 인정되지 않는 접종
 - 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과 불활성화 백신 간 교차접종

4. 권장하는 접종 연령 준수

- DTaP 백신은 7세 미만에서 접종, DTaP 접종을 미완료한 7세 이상에서는 Tdap/Td 백신으로 따라잡기 일정에 맞춰 접종
 - DTaP 접종력이 불완전한 7~10세 연령에서 Tdap 백신으로 접종 후(11~12세 Tdap 백신 추가 접종 가능)
- 수두, MMR 1차 최소접종 연령(생후 12개월) 단축인정기간(4일 이하 오차(grace period)) 인정 제외(2023. 8. 7. ~)

5. 불필요한 추가접종 지양(자연접종시 추가접종 생략)

- DTaP : 4차 접종이 지연되어 4세 이후에 실시된 경우 5차 접종 생략
- IPV : 3차 접종이 지연되어 이전 접종과 6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4세 이후에 실시된 경우 4차 접종 생략

* 단, 이전 접종과 6개월 이상 간격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4차 접종 필요

-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 3차 접종이 지연되어 4~9세에 실시된 경우 6세 추가접종은 생략 후 12세에 접종
 - 3차 또는 4차 접종이 지연되어 10세 이후에 실시된 경우 추가접종 불필요
- Hib, PCV 접종 시작 연령에 따라 필요한 접종횟수가 다르므로 주의
 - Hib 접종 시작 연령에 따른 권장 접종일정

백신 종류	첫 번째 접종 시 연령	기초접종	추가접종
PRP-T 또는 HbOC	생후 2~6개월	3회	12~15개월에 1회
	생후 7~11개월	2회	12~15개월에 1회
	생후 12~14개월	1회	2개월 후 1회
	생후 15~59개월	1회	-

- Hib 자연접종 시 따라잡기 접종일정

최소 접종연령	1~2차 최소 접종간격	2~3차 최소 접종간격	3~4차 최소 접종간격
생후 6주	4주 : 생후 12개월 미만에 1차 접종한 경우	4주 : 현재 연령이 생후 12개월 미만이고 1차 접종을 생후 7개월 미만에 한 경우	8주(마지막 접종) : 생후 12개월 이전에 3번의 접종을 한 생후 12~59개월 소아만 필요
	8주(마지막 접종) : 생후 12~14개월 사이에 1차 접종을 한 경우	8주(마지막 접종) : - 1차 접종을 생후 7~11개월에 한 경우로 생후 12개월 이후 실시 - 또는 현재 연령이 생후 12~59개월이며 1차 접종을 생후 12개월 미만에 하고 2차 접종을 생후 15개월 미만에 한 경우	
	더 이상 접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생후 15개월 이후에 1차 접종을 한 경우	더 이상 접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이전 접종을 생후 15개월 이상에서 한 경우	

• PCV 접종 시작 연령에 따른 권장 접종일정

백신 종류	첫 번째 접종 시 연령	기초접종	추가접종
PCV13 PCV15	생후 2~6개월	3회	12~15개월에 1회
	생후 7~11개월	2회	12~15개월에 1회
	생후 12~23개월	2회	-
	생후 24~59개월(건강한 소아)	1회	-
	생후 24~71개월(폐렴감염 감염 고위험군)	2회	-

• PCV 지연접종 시 따라잡기 접종일정

최소 접종연령	1~2차 최소 접종간격	2~3차 최소 접종간격	3~4차 최소 접종간격
생후 6주	4주 : 생후 12개월 미만에 1차 접종한 경우	4주 : 현재 연령이 생후 12개월 미만이며 이전 접종을 생후 7개월 미만에 한 경우	8주(마지막 접종) : 생후 12개월 이전에 3번의 접종을 한 생후 12~59개월 소아 또는 접종연령에 관계없이 3회 접종 받은 고위험군
	8주(마지막 접종) : 건강한 소아로 생후 12개월 이후에 1차 접종을 한 경우	8주(마지막 접종) : - 건강한 소아로 이전 접종을 생후 7~11개월에 한 경우로 생후 12개월 이후 실시 - 또는 현재 연령이 생후 12개월 이상이며 1회 이상 생후 12개월 이전에 접종한 경우	
	더 이상 접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건강한 소아로 1차 접종을 생후 24개월 이후에 한 경우	더 이상 접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건강한 소아로 이전 접종을 생후 24개월 이후에 한 경우	

6.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예방접종 일정

백신	이식 후 첫 접종시기	기초접종		추가접종
		횟수	최소접종 간격	
불활성화 백신				
B형간염 ¹⁾	6개월	3	1차-2차 4주, 2차-3차 8주 (1차-3차 16주)	-
DTaP/Tdap/Td ²⁾	6개월	3	1차-2차 4주, 2차-3차 6개월 ²⁾	- ²⁾
폴리오 ³⁾	6~12개월	3	4주	- ³⁾
페렴구균 ⁴⁾	3~6개월	3	4주	이식 후 ≥12개월
Hib	6~12개월	3	4주	-
인플루엔자 ⁵⁾	4~6개월	1	-	매년 ⁵⁾
A형간염	6~12개월	2	6개월	-
일본뇌염 ⁶⁾	6~12개월	2	1차-2차 4주	2차 접종 후 ≥11개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⁷⁾	6~12개월	3	1차-2차 4주, 2차-3차 12주 (1차-3차 5개월)	-
약독화 생백신				
MMR ⁸⁾	24개월	2	4주	-
수두 ⁹⁾	24개월	2	13세 미만 : 3개월 13세 이상 : 4주	-

1) B형간염 백신은 조혈모세포이식 6개월 후부터 0, 1, 6개월 일정으로 접종한다.

2) 나이에 관계없이 DTaP 백신으로 3회 접종할 수 있으며 7세 이상에서는 Tdap 백신 1회 접종 후 Td 백신 2회 접종으로도 가능하다. 1차와 2차 접종 사이의 최소간격은 4주이며, 2차와 3차 접종 사이의 최소 간격은 최소 6개월 간격을 둔다. 단, 7세 미만의 소아는 2차와 3차 접종은 최소 4주 간격을 두며, 4차 접종을 3차 접종과 최소 6개월 간격을 두어 접종한다. 이후 연령에 따라 권장 접종 횟수로 접종한다.

3) 폴리오는 4세 이전 접종하는 경우 연령에 따른 접종 스케줄을 따르며, 4세 이후 3차 접종 시 2차와 6개월 이상의 간격을 준수하여 4차를 생략한다.

4) 페럼구균에 대한 기초접종은 페럼구균 단백질합 백신으로 접종하며 필요한 경우 조혈모세포이식 3개월 후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 추가접종은 페럼구균 다당백신으로 접종하되 이식편대숙주병이 있으면 페럼구균 단백질합 백신으로 접종한다.

5) 인플루엔자 불활성화 백신은 조혈모세포이식 6개월 후부터 접종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식 4개월 후부터 접종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4주 간격으로 1회 더 접종하여야 한다. 인플루엔자 백신을 처음 접종받는 생후 6개월~9세 미만의 소아는 4주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접종받아야 한다. 인플루엔자 불활성화 백신으로 매년 접종하여야 한다.

- 6)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은 조혈모세포이식 후 6~12개월부터 0, 1, 12개월 일정으로 3회 접종한다. 1차와 2차 접종 사이의 최소 간격은 4주이며, 2차와 3차 접종 사이 최소 6개월 간격을 두어 접종한다. 이후의 추가접종은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의 일반적인 접종 일정을 따른다. 3차 접종이 4세 이후에 시행되었다면 12세에 1회 추가 접종하여 완료한다. 10세 이후에 3번째 또는 4번째 접종을 하였다면 더 이상 추가접종을 실시하지 않고 완료한다. 11세 이후 처음 접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0, 1, 12개월의 3회 접종으로 완료한다.
- 7)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은 조혈모세포이식을 받고 6~12개월 이상 경과한 후의 11세~26세의 여성에게 0, 2, 6개월 (HPV 4가 또는 9가)의 일정으로 접종한다.
- 8) MMR 백신은 조혈모세포이식 24개월 이후에 환자가 면역학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접종하여야 하며 최소 4주 이상의 간격으로 2회의 접종을 추천한다.
- 9) 수두 백신은 조혈모세포이식 전 수두에 대한 면역의 증거가 없는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에서 이식 2년 후, 이식 편대 숙주 반응이 없는 상태에서 면역억제제 중단 1년 후, 마지막 IVIG 투여 후 최소 8개월이 지나서, 면역학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접종한다(2-1-8 원칙).

• 예방접종 후 유의사항

- 접종 후 20~30분 동안 접종기관에 머무르면서 건강상태를 관찰
 - 귀가 후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고열과 경련이 있을 때에는 바로 의사에게 진찰을 받도록 안내
 - 접종 부위는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안내
 - 예방접종 후 보호자 및 접종자에게 백신별 예방접종 안내문(VIS)을 설명하고 필요시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내려 받도록 안내
-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관리 → 자료실 → 각종서식(“안내문” 검색) 다운로드

(5) 예방접종 기록 전산 등록

- (전산 등록) 접종 누락·중복접종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예방접종을 실시한 당일에 자체전산시스템 또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 등록된 예방접종 기록은 전 접종기관 간 공유되며, 해당 개인정보를 예방접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철저한 개인정보 관리 필요
- (전산 등록 기준) 표준예방접종시기에 맞춰 접종한 내역의 차수를 순차적으로 등록

- (DTaP-IPV, DTaP-IPV/Hib, DTaP-IPV-Hib-HepB 혼합백신)

- DTaP-IPV 4가 혼합백신으로 기초접종(1~3차) → 'DTaP-IPV 1~3차'에 등록
- DTaP-IPV/Hib 5가 혼합백신으로 기초접종(1~3차) → 'DTaP-IPV/Hib 1~3차'에 등록
- DTaP-IPV-Hib-HepB 6가 혼합백신으로 기초접종(1~3차) → 'DTaP-IPV-Hib-HepB 1~3차'에 등록
 - DTaP 기초접종은 동일 제조사의 백신으로 접종
 - DTaP-IPV, DTaP-IPV/Hib, DTaP-IPV-Hib-HepB 혼합백신과 DTaP, IPV 단독백신을 중복등록 하지 않도록 주의
 - DTaP 4차 접종은 DTaP 단독백신으로 접종 → DTaP 4차에 등록
- DTaP 4차, IPV 3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4~6세 어린이가 DTaP-IPV 혼합백신으로 추가접종 → 'DTaP-IPV 추가(4차)'에 등록
 - DTaP-IPV 추가(4차) 접종 전 DTaP 4차 단독백신 접종력 확인
 - DTaP-IPV 추가(4차) 접종은 DTaP 5차, IPV 4차 접종과 동일

- (Tdap, Td 백신)

- DTaP 접종을 완료*한 11~12세 어린이가 Tdap** 백신 접종 → 'Tdap 6차(Td 6차)'에 등록
 - *DTaP 5차 접종 완료자 또는 4세 이후 DTaP 4차 접종자(5차 접종 생략 대상)
 - ** 단, 백일해 포함 백신(aP) 금기자의 경우, Tdap 백신을 해당 연령에 허가된 Td백신으로 대체 가능)
- DTaP 접종력이 불완전한 7세 이상 어린이가 'Tdap/Td 따라잡기 일정'에 맞춰 접종 → Td 백신은 'Td 그 외 1차'에, Tdap 백신은 'Tdap 6차(Td 6차)'에(적합한 의학적 소견 선택 후 중복등록 가능)
 - (의학적 소견) 7~9세 따라잡기 일정 접종, 10세 이상 따라잡기 일정 접종 중 선택
- DTaP 기초접종을 한번도 받지 않은 7세 이상 어린이가 Td 백신으로 3회 기초접종(1차는 Tdap 백신 접종 권고) → ①Tdap 백신 접종은 'Tdap 6차'에 등록, ②Td 백신 접종은 'Td(그외) 1, 2차'에 순차적으로 등록
 - 1~2차는 4주, 2~3차는 6개월의 접종간격을 준수하고 첫 1회 때 Tdap 백신으로 접종

- (Hib, PCV 백신)

- 접종시작 연령에 따라 필요한 접종횟수가 달라지더라도 1차부터 순차적으로 등록

- (MMR 백신)

- 홍역 유행으로 생후 6~11개월 영아에게 접종 → 'MMR 1차'에 등록(의학적 소견 등록)
- 생후 12개월 이전 1차 접종,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따라 생후 12~15개월에 접종 → 'MMR 1차'에 중복등록(의학적 소견 '이전 접종력 불인정으로 인한 재접종' 선택·입력)

- (일본뇌염 백신)

-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3차 접종을 4~9세에 실시(6세 추가접종 생략)하고 12세에 추가접종 →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에 등록
- 약독화 생백신 1차 접종 후,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으로 교차접종 →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1차'에 등록
 - * 이후 접종은 예방접종일정에 따라 완료하고 등록
- 약독화 생백신 간 교차접종 → 교차시행한 2차에 순차적 등록

- (로타바이러스 백신, HPV 백신)

- 1차 접종 후 교차접종 → 교차시행한 백신의 2차에 순차적 등록

- (인플루엔자 백신)

- (2회 접종 대상) '인플루엔자(처음접종)'칸에 1차와 2차 순차적 등록
- (1회 접종 대상) 조희 접종 이후 처음 1회 접종은 '인플루엔자(매년접종)'칸 '매년'에 등록하고 이후 매 절기 접종은 '접종추가' 칸에 접종력 등록

- (코로나19 백신)

- (기초 접종 대상) 주민번호 조회 → 1차~3차 순차적 등록
- (1회 접종 대상) 주민번호 조회 → 접종력 등록
 - * 기초 접종완료 후에는 매 절기 접종으로 접종력 등록

(6) 예방접종 전산등록자료 데이터 품질 및 비용지급 적합성 관리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등록 데이터 품질관리
 - (관리 내용) 보건소는 분기별로 전산등록자료를 등록기준 준수 여부, 비용상환 내역 등*을 확인 후, 오등록·오접종으로 추정되는 자료는 의료기관으로 필요한 조치 요청
 - * (예시) 출생신고 전 신생아번호(7자리), 주민등록번호(13자리) 중복등록 추정내역, 동일백신 동일차수 등록 내역, 동일백신 다른차수 동일접종일자 등록내역, BCG 경피접종, 피내접종 중복등록내역, DTaP 단독백신, DTaP 포함 혼합백신(DTaP-IPV, DTaP-IPV/Hib, DTaP-IPV-Hib-HepB) 중복등록내역, Tdap 백신 6차, Td 백신 6차 중복등록내역, Tdap 백신 최소접종 연령 미준수 내역,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과 약독화 생백신 간 교차접종, 약독화 생백신 간 최소접종 간격 미준수 접종내역, 불필요한 추가접종 내역 등
- 예방접종 비용지급 적합성 관리
 - (관리 내용) 보건소는 의료기관에 지급된 국가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적합성을 평가*하여 부당 청구여부, 환수대상 파악, 불필요한 추가접종 및 중복접종 등의 자료를 모니터링하고 지속 관리
 - * 월 첫주 관리가 필요한 자료 업로드(질병관리청)
 - ※ (경로안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관리 → 행정지원 → 비용관리 → 비용지급 적합성 관리

(7) 필수예방접종 사전알림 및 지연접종 안내

- ※ 해당 서비스는 '예방접종예진표'에 문자수신 동의자에 한해 발송
- ※ (문자발송 채널 추가) 보호자가 국민비서알림서비스(카카오톡, 네이버앱 등)에서 '필수예방접종 알림 받기'를 신청 시 국민비서알림서비스 채널로 발송('24.1.1~). 미신청자는 기존 문자메시지 채널로 발송 예정

- (필수예방접종 사전알림)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적기에 접종할 수 있도록 자녀의 다음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안내
 - (사전알림 주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사전알림 공고) 지자체장은 해당 지자체의 인터넷 누리집 공고를 통해 사전알림을 공고. 매년 1월 첫째 주 월요일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전알림 방법) 보호자가 접종기관에서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 시 사전알림 서비스 수신에 동의하고, 접종기관에서 휴대전화번호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면 서비스 제공
 - ※ 다음 접종 일정을 예약한 경우 : 접종기관에서 보호자와 다음접종일을 사전 예약했다면, 예약일 2일 전에 접종기관명의로 문자 발송

(문자발송 예시) 안녕하세요. 000님 다음 예방접종일 안내입니다.

다음 예방접종 : B형간염(유전자재조합) 2차

예방접종 예약일은 2000년 0월 00일입니다.

예약일에 접종기관 방문이 어려울 경우, 접종기관에 문의하여 예방접종일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방접종 등과 관련한 통역이 필요한 경우 다누리콜센터(☎1577-13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약한 기관명>

※ 다음 접종 일정을 미예약한 경우 : 접종기관에서 보호자와 다음접종일을 사전 예약하지 않으면 표준예방접종일정의 접종시기 시작일에 지자체장 명의로 문자 발송

(문자발송 예시) (시·군·구청장) 필수예방접종 사전알림

000 어린이의 다음 접종 시작시기를 안내드립니다.

○ 다음 예방접종: IPV(폴리오) 1차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접종일정을 문의한 후 방문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 누리집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다국어 다음접종 사전알림) 접종기관에 휴대전화번호 및 희망언어(12개 언어)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등록 요청 시 서비스 제공(2016. 7. 시행)

- 제공언어 : 네팔어, 라오스어,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영어, 우즈베키스탄어, 일본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필리핀어

- (필수예방접종 지연접종 안내) 표준예방접종일정보다 1개월 이상 지연하면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누락접종을 안내(2013년 이후 출생아에 적용)

- (안내 주체) 질병관리청

(문자발송 예시) 질병관리청에서 알려드립니다.

000 어린이의 다음 예방접종이 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아 안내드립니다.

○ 전산 미등록 내역

- DTaP 1차

이미 접종을 완료한 경우 접종받은 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고, 미완료한 경우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접종일정을 문의한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

※ 「감염병예방법」 제24조제3항 및 제28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사전알림에 동의한 보호자에게 안내

나. 국가예방접종 부대사업

(1)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 (대상)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 또는 e항원(HBeAg)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
※ 단, 산모의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7일 이내 시행한 (산전)검사결과지를 제출하고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만 사업 참여 가능
- (내용) B형간염 예방접종 외에도, 면역글로불린 투여(1회) 및 재접종(최대 3회), 항원·항체 검사(최대 3회) 등의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 처치 지원

※ (예방처치 일정 알림) 기초접종 이후 항원·항체 검사 일정부터 예방처치 일정 사전알림, 미완료자 알림 문자 발송

- (1차 검사 안내) 3차 접종 후 생후 9개월 도래 시 또는 지연접종은 기초 3차 접종 후 1개월 경과 시
- (재접종) 검사일 기준 7일 이내 재접종 미등록 시 / (재검사) 검사일 기준 1개월 경과 시
- (미완료자 알림) 전산 미등록자 대상, 권장기간으로부터 1개월 경과 시

접종 및 검사		권장 시기	비고
기본 일정	1~3차 기초접종*	예방접종의 실시기준에 따라 실시	
	1차 항원·항체 검사	생후 9~15개월	최소 연령 : 생후 9개월 이상 권장되는 검사방법으로 실시한 경우에만 비용지원 가능
추가 일정	1차 재접종(백신)	1차 항원·항체 검사일로부터 7일 이내	1차 항원·항체 검사 결과 항체 미형성자 실시 (HBsAg(-), anti-HBs(-))
	2차 항원·항체 검사	접종 1개월 후	-
추가 일정	2차 재접종(백신)	2차 항원·항체 검사일로부터 7일 이내 (1차 재접종일로부터 1개월 후)	2차 항원·항체 검사 결과 항체 미형성자 (HBsAg(-), anti-HBs(-))
	3차 재접종(백신)	2차 재접종일로부터 5개월 후	
	3차 항원·항체 검사	접종 1개월 후	-

※ 항원·항체 검사 결과 '항체 미형성'인 경우 추가접종 및 검사 결정

※ 예방처치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산 등록된 경우에만 비용지원이 가능하므로, 누락된 검사 및 재접종 내역 없이 등록을 완료하도록 안내 필요

- (항원·항체 검사) 면역글로불린(HBIG) 투여에 의한 수동항체가 아닌 예방접종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생후 9~15개월 항원·항체 검사를 권장하며, 표면항원 및 항체검사 방법 중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은 검사를 권장

※ 접종이 지연되었을 경우 3차 접종 후 최소 1개월의 간격을 두고 검사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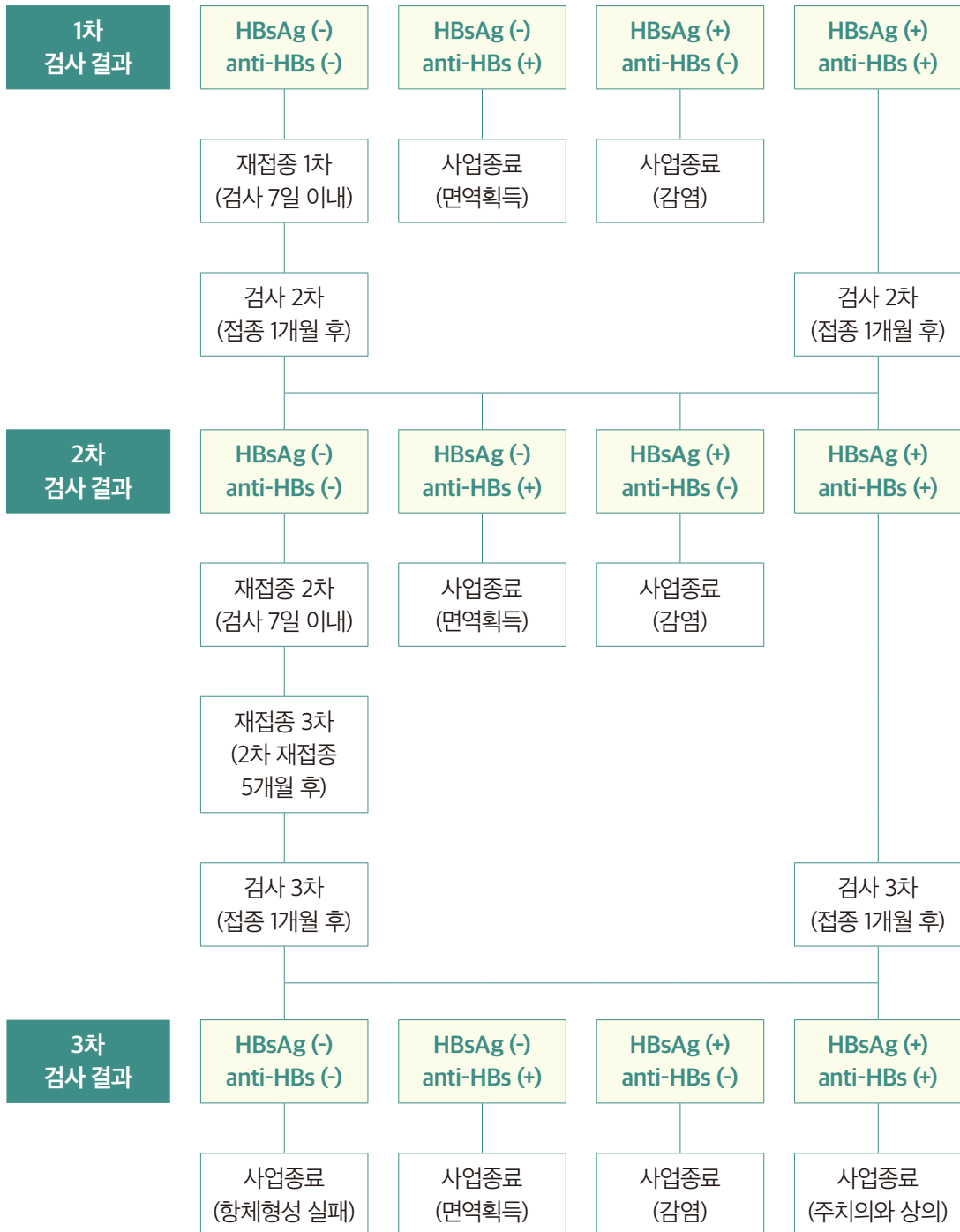
검사방법		인정여부
권장	효소면역검사법 (Enzyme immunoassay, EIA) : EIA는 RIA와 비슷한 민감도와 특이도를 가지고 있으나 항체량의 정량적인 측정이 가능하여 권장됨 - 미세입자효소면역검사법(microparticle enzyme immunoassay, MEIA) - 형광효소면역측정법(fluorescent enzyme immunoassay, FEIA) - 효소면역측정법(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O
	화학발광 미세입자 면역측정법 (Chemiluminescent microparticle immunoassay, CIA, CLA, CLIA 등) : CLIA는 고형물로 크기가 작은(microparticle) 자석성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검사의 전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결과보고가 가능	O
	전기화학발광 면역측정법 (Electrochemiluminescence immunoassay, ECL)	O
비권장	방사면역측정법 (Radioimmunoassay, RIA) : 효소 대신 방사선동위원소를 표지자로 이용하여 반응시킴으로써 항원-항체 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방사선동위원소를 사용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항체가 측정을 위한 별도 검사단계가 필요함	X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 (Immunochromatography assay, ICA) : 검사실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도 간단히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나 민감도가 많이 떨어짐	X
	수동혈구응집법 (Passive hemagglutination, PHA) : EIA나 RIA보다 민감도가 1,000배 정도 낮아 최근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음	X

※ (자문기관) 대한진단검사의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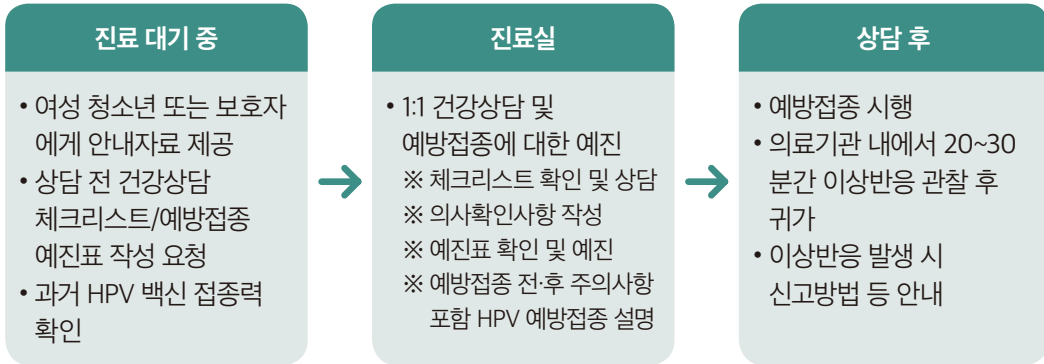
※ (결과판독) 정량검사 결과 ①항체가가 양성(10mIU/mL 이상)인 경우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보며, ②항원이 음성이고 항체가가 음성(10mIU/mL)인 경우 재접종 필요

※ (결과등록) 모든 항원-항체 검사 결과(양성/음성) 및 정량 결과(항원-항체가/단위)는 전산 등록 및 시스템상 결과지 파일 업로드 필요(업로드된 파일에서 대상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개인정보는 생년월일까지만 표기)

• (검사 결과에 따른 처치 일정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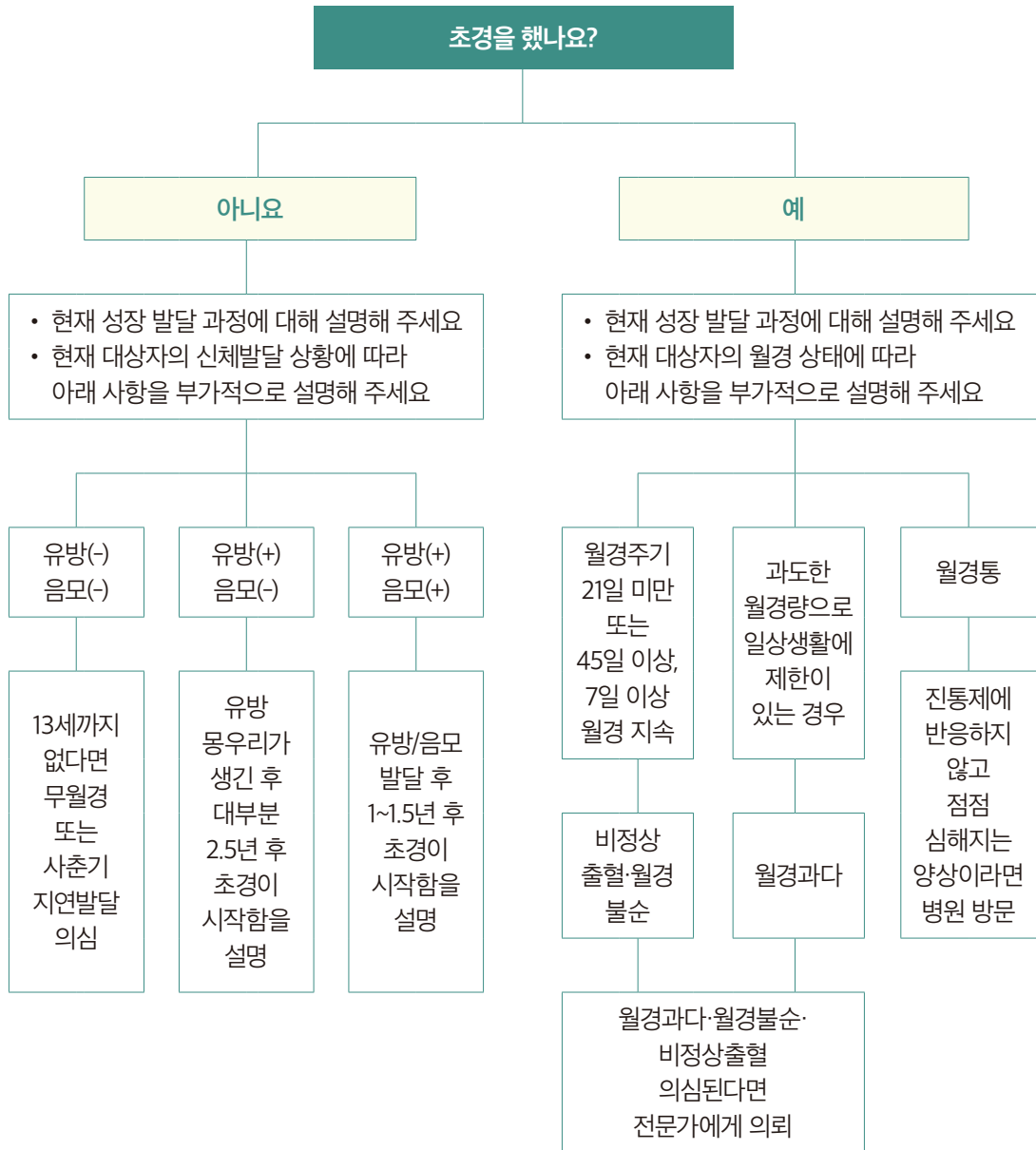
(2) HPV 여성청소년 건강상담



- (대상) 12세 여성 청소년
- (내용) HPV 백신 접종과 함께 사춘기 성장 발달·초경 등에 대한 상담을 접종과 함께 제공하며, 대상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생략 가능하나 의료기관에서 선택적 제공은 불가함. 건강보험 공단부담금 외 본인부담금 지원
※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자는 의료기관이 아닌 보건소에서만 가능

상담 내용	• 대상자·보호자 진료 대기 시 사업 안내 자료(보호자용 리플렛, 건강상담 대상자용 안내문, HPV 예방접종 안내문)를 제공하고 ‘표준여성청소년 건강상담 체크리스트’ 작성 안내 ※ 예진표와 함께 작성 및 보관(5년) • 사춘기 성장 발달·초경 등 상담 ※ 대상자가 작성한 ‘건강상담 체크리스트’ 내용을 토대로 건강상담 제공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관리 → 자료실 → 프로그램/매뉴얼에 게재된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의료인용 상담 교육자료’ 숙지 및 활용 • 인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상담은 진료실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며, 대상자가 작성한 체크리스트 확인 후 의사 확인사항을 작성하고, 건강상담 업무 흐름도를 활용하여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성장발달 내용이 빠지지 않도록 상담 시행 ※ 사춘기 성장발달 개요, 대상자의 성장발달 상황, 여성 청소년에게 흔한 부인과적 질환(무월경, 월경통, 월경 이상) 설명, 질환 유무 확인 등 ※ 상담 내용에 따라 필요 시 추가 검사 또는 전문가 의뢰 등 조치 (이 경우 추가 검사·진료 등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함을 대상자·보호자에게 설명 및 동의 구득 필요) ※ 상담에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와 자궁경부암, 암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백신 안전성과 권장 접종 시기 등 보호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
시행 기관	• (국민건강보험급여대상자)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국민건강보험급여대상 외) 보건소

• (건강상담 업무 흐름도)



※ 1차·2차 상담 시 동일한 건강상담 업무 흐름도에 따라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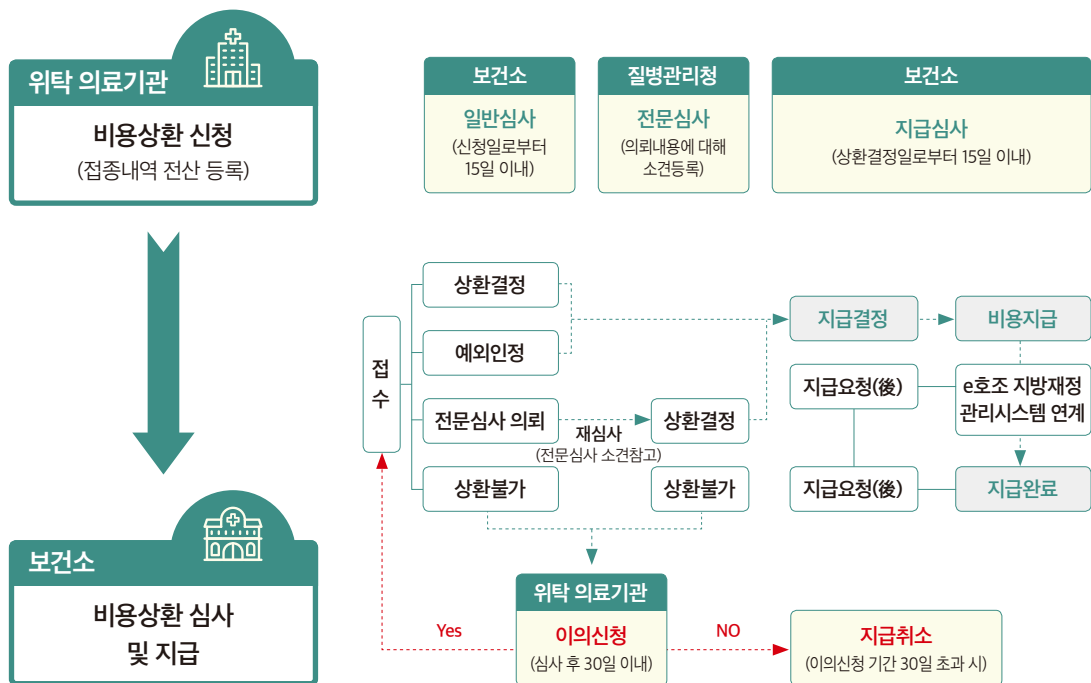
4

비용상환



가. 상환 절차

<비용상환 체계 흐름도>



- (위탁의료기관)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 사업 대상에게 실시기준을 준수하여 접종한 내역 당일 전산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 (지자체)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비용 지급 심사* 후 비용 지급
-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준수 여부 심사

<비용상환 업무처리 기한>

구분	내용	처리기한	처리기관	법적근거*
비용 상환	신청	- 비용상환 신청기한(접종 후 30일 이내) 폐지(2015년) - 단, 중복접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접종당일에 전산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 중복접종 발생 시 먼저 전산 등록한 기관에 비용지급 ※ 접종 전 시스템 및 예방접종수첩 등을 통해 과거 접종력 반드시 확인	의료기관	제6조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심사 결과 통보	-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단, 신생아 제외) ※ 위탁의료기관에서 보완 자료 제출에 소요된 기간 (10일)은 제외됨	보건소	제7조 (예방접종 비용상환 심사) 제8조 (심사관련 보완자료 요청) 제9조 (예방접종비용 심사결과의 통보)
	비용 지급	- 예방접종비용 상환 인정사실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단, 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지급이 어려운 경우 제외	보건소	제10조(예방접종비용의 지급)
이의 신청	신청	비용상환 불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의료기관	제11조(비용상환 이의신청)
	심사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보건소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6호)」

(1) 비용상환 신청(의료기관)

- (신청방법) 실시기준을 준수한 예방접종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시 자동으로 '위탁의료기관 비용상환 신청비용' 생성 → 신청 금액 확인 후 등록

※ 표준여성청소년 건강상담비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신청

- (적용수거) 「행위 급여·비용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가-1-가. 초진 진찰료

- (지급절차) 상병분류기호 R688(기타 명시된 전신 증상 및 징후)로 기재하고, 청구 명세서의 특정 내역구분 (MT002)에 F012를 기재하여 청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결정 완료 자료를 받아 검토 → 질병관리청에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본인부담금 반영 후 지급요청 → 피접종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지급

*상담을 시행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금 외 본인부담금은 전액 국가지원

(2) 심사 및 지급 관리(보건소)



- ※ 위탁의료기관에서 신청한 비용상환 내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1일 소요) 후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서 비용 심사
- ※ 관내 주민이 관할 보건소와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타 시·군·구의 위탁의료기관 이용 시에도 보건소는 국가예방접종 비용 전액 지급

- (접수원칙) 피접종자의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서 비용상환 확인 및 접수
- (비용상환 심사)

구분	내용
일반심사	• 접수내역의 비용상환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상환결정, 상환불가, 예외인정으로 판정
이의심사	• 심사결과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이의신청하면 재심사 후 상환여부 결정
전문심사	• 피접종자의 기저질환 등으로 보건소에서 심사가 어려운 경우 질병관리청에 전문심사의뢰 후 심사소견을 참고하여 상환여부 결정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을 참고하여 예방접종비용 적합성 판단이 가능한 단순 이른접종, 지연접종 등은 제외 ※ 전문심사의뢰건은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심사
전문심사 FAQ	• (지연접종) 사업대상범위 내에서 권장접종연령 및 권장접종간격을 지연하여 접종한 경우라도 백신별 실시기준을 준수하여 접종 시 비용상환 가능 • (이른접종) 최소접종 연령 및 최소접종 간격을 준수한 접종은 비용상환 가능 - 최소연령 및 최소간격에서 4일 이하의 오차 범위 내 접종은 단축인정기간 적용으로 비용상환 가능(단, 생백신과 생백신 접종 사이의 최소접종 간격, MMR 1차와 수두접종의 최소접종 연령에는 적용 불가) • (B형간염 재접종) 건강한 소아가 B형간염 '항체 미형성' 사유로 재접종 시 비용상환 불가 • (재접종) 이전 접종력이 최소접종 연령 및 최소접종 간격을 미준수한 접종이라면 재접종 시 의학적 소견을 입력 후 비용상환 가능 • (DTaP 3~4차 간격) 최소접종 간격은 6개월이나 4차 접종이 생후 12개월 이상에서 4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실시되었으면 재접종 불필요하므로 비용상환 가능 • (교차접종) DTaP 기초접종은 동일 제조사 백신으로 접종 가능하고, PCV 및 HPV 백신은 동일 백신으로 접종해야 하나 우발적인 접종의 경우 의학적 소견을 입력 후 비용상환 가능 → 교차 접종을 지양해야 하므로 동 사례 반복 발생하는 의료기관은 관리 필요

전문심사 FAQ	• (일본뇌염 교차접종) 일본뇌염 백신의 접종을 완료하기 위해 불가피한 교차접종 시 의학적 소견을 입력 후 비용상환 가능 • (조혈모세포이식 후 재접종)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예방접종 일정표'를 준수한 접종은 비용상환 가능 ※ 조혈모세포이식 환아는 '비용지원 기간 예외 적용' 고려, 조혈모세포이식일로부터 3년 (36개월 하루 전)까지 비용지원 기간 연장 ※ 조혈모세포이식 후 HPV 재접종 시 상담비는 추가로 지원하지 않음
-------------	---

• (심사결과)

구분	심사결과
상환결정	• 사업 대상에 적합하며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 시행한 접종 • 보건소에서 비용지급 완료 시 심사결과에 지급완료 표시
상환불가	• 중복접종, 이른접종(최소접종연령 또는 최소접종간격 미준수) • 불필요한 추가접종(자연접종으로 생략되는 접종을 시행한 경우) • 일본뇌염 교차접종 등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지 않은 접종
예외인정	• 의학적 소견이 타당한 중복접종 및 이른접종 등(의학적 소견 입력 필수)
전문심사의뢰	• 보건소에서 질병관리청으로 전문심사를 의뢰한 접종
인증오류	• 피접종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입력된 경우 ※ 행정안전부에서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정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안내

• (지급심사 및 비용지급)

구분	내용
지급심사	• 지급결정, 지급보류, 지급불가로 판정하며 지급불가 판정 시 상환심사 결과가 상환불가로 자동 변경
심사결과 통보	• 비용상환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비용상환 인정여부 통보 - 예산부족 등으로 비용지급이 어려운 경우라도 비용심사결과는 반드시 15일 이내 통지 - 신생아번호는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으로 전환 후 접수 및 심사 가능
비용지급	• 비용상환 심사결과 상환결정, 예외인정 내역에 대해 위탁의료기관 비용지급 - 지자체(보건소)별 지급일자 지정 운영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으로 비용 자동지급 • 예방접종비용 상환 인정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탁의료기관 또는 위탁의료기관으로 백신을 공급하는 기관에 비용 지급 - 다만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제외 • 중복접종 발생 시 먼저 전산 등록한 위탁의료기관에 예방접종 비용 지급

비용환수	• 비용지급 완료 후 부당지급이 확인되면 비용 환수 - 동일대상의 중복인적 또는 이중지급, 예방접종 실시기준 미준수 접종 등 • 당해연도 지급액에서 비용환수금액이 발생하였으면 해당 위탁의료기관에 지급될 금액에서 차감하여 지급 가능 • '사전현물공급' 방식으로 공급한 백신의 적합하지 않은 접종 및 파손(폐기) 등 발생 시 보건소-위탁 의료기관 간 협의하여 위탁 의료기관 자체보유 백신으로 접종 또는 반납 및 백신 비용환수 가능
-------------	---

• (비용상환 미접수·미지급 내역 관리)

구분	내용
시스템 경로	• 예방접종지원사업 → 비용상환현황 → 미접수/미지급내역
사도 및 보건소	• 15일 이내 미통지 및 미지급률 현황 모니터링 → 비용처리 누락이 없도록 정기 관리 • 미접수건수 = 총 신청건수 - 접수건수 • 미지급건수 = 총 접수건수 - 지급건수 ※ 월별 미접수·미지급 건수 및 상세내역을 엑셀 양식으로 내려받아 확인 가능
중복지급 주의	• 동일대상으로 이중인적이 생성되어 접종내역 등록 시 이중지급 될 수 있으므로 주의 - 신생아번호, 주민등록번호, 관리번호, 시설번호 등 여러 인적으로 이중 등록 주의 당부 - 예방접종등록창에서 검색 조건을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변경하여 확인 필요 - 인적등록 의료기관 및 신생아의 보호자와 유선 통화로 확인 후 인적통합 처리 당부 - 이중인적 및 중복지급 확인 시 필요한 조치 시행(인적통합 및 비용환수 등)
행안부 오류내역 점검 및 관리	• 존재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피접종자 및 보호자) 대상은 비용처리 진행 불가 → 오류사항 정정 후 접수 • 행안부오류내역 메뉴에서 존재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행안부) 대상 확인 및 관리 ※ 예방접종지원사업 → 비용상환현황 → 행안부 오류내역

• (방문접종의 예방접종 전산등록 및 비용상환)

- 실시기준에 준한 접종 시행 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당일 등록. 사업참여하는 접종 기관은 비용상환 신청 가능
- ※ 만약 촉탁의가 없거나 개인자격의 경우 보건소가 접종관리 후 접종기록 전산등록

(3) 예방접종 비용상환 시 주의사항

- 외국인에 대한 예방접종 시행비 상환 심사 및 지급
 - 외국인 등록증, 여권 등을 통한 본인 확인 후 사업대상자에 대해 실시한 접종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서 비용상환 심사 및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
 - ※ 단,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면제자인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발급한 관리번호를 전산 등록시스템의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에 기입 후 비용상환 신청
 - ※ 재외교포의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대신 국내 거소 신고 번호 기입 후 비용상환 신청

(4) 신청 결과 조회(의료기관)

- ① 상환결정, ② 예외인정, ③ 상환불가, ④ 전문심사의뢰, ⑤ 인증오류로 분류

나. 상환 기준

1. 접종 대상자 기준

(1) 기본 대상

- 주민등록번호 발급자에게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고시)을 준수하여 접종한 경우 비용 지원이 원칙

(2) 예외적 추가 지원 대상

- 출생신고 전 신생아

구분	기준
접종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 신생아 비용상환 신청 시 보호자 '모(母)'의 인적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반드시 함께 등록하여 비용상환 신청 - 부득이하게 '모(母)'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다른 보호자의 인적정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반드시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로 확인 필요 - 신생아번호는 생후 1개월 이내 전산 등록 및 비용신청 가능(B형간염 1차 및 BCG)
비용지급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임시관리번호) 등으로 전환 후 비용지급 가능
신생아번호관리 시스템 활용	- 검색조건 : 출생연도 및 월 단위로 선택하여 관할 내 미전환 대상 조회 가능 - 관할 보건소 : 신생아번호로 처음 등록한 접종내역 인적 관할 보건소 기준 - 생후 3개월 이상 출생 미신고 → 신생아번호 관리시스템에 사유등록 및 비용지급 가능
시설아동	시설아동번호(의료급여 관리번호)로 등록하고 비용상환 신청

- 외국인

구분	기준
지원대상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 발급자(면제자 포함)는 내국인에 준하여 예방접종 등록 및 비용상환 가능 -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대상은 보건소에서 임시관리번호 발급기준에 부합 시 임시관리번호 발급 후 예방접종 등록 및 비용상환 가능 ※ 여권 등으로 대상자 반드시 확인 필요(여권이 없는 아동은 보호자 여권 등으로 확인)
접종기관	-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해당 사업 참여) ※ 외국인 임시관리번호 발급자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 비용상환 가능('22.1.18.~)

• 조혈모세포이식 후 접종자

구분	기준
지원대상	• 19종 백신 : 2012년~2013년 출생자가 2025년 조혈모세포이식을 한 경우
예외적용 지원기간	• 조혈모세포이식 후 접종 : 조혈모세포이식일로부터 3년까지 지원 - 예외적용 대상이 다시 시작하는 접종일정을 완료하기 위해 조혈모세포이식일로부터 3년(36개월 하루 전)까지 비용지원 기간을 연장함 ※ 예시 : 2012년 출생아 2025.3.3일 조혈모세포이식 → 접종 시 2028.3.2일까지 연장
HPV 상담비	• 조혈모세포이식 후 재접종 시 상담비는 지원하지 않음
유의사항	• 접종등록 시 의학적 소견 '조혈모세포이식 후 재접종' 대분류 선택하여 이식 일을 등록 후 비용신청 가능(해당 경로로 입력하지 않으면 비용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대상이 지원기간 내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예방접종 일정을 준수하여 접종 시 비용지원 가능

2. 상환 대상 접종 기준

(1) 기본 인정 접종 기준

- 백신별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준수하여 접종

(2) 예외 인정 접종 기준

- 의학적 소견이 타당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접종

구분	대분류	소분류(의학적 소견)
공통	• 이전 접종력 불인정으로 인한 재접종	• 이전 접종 최소접종 연령 미준수 사유 • 이전 접종 최소접종 간격 미준수 사유
	• 조혈모세포이식 후 재접종	• 이식일자
	• 면역저하 상태 동안 받은 접종의 재접종(항암치료 후 등)	• 면역저하 상태일 때 접종했음을 알 수 있는 상세사유작성
B형간염	• 고위험군 재접종	• HBsAg 양성 산모의 출생아 • B형간염 만성 감염자의 가족 • 혈액제제 수혈 환자 • 혈액투석 환자

BCG	• 미숙아 출생 후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 ※ 생후 3개월 내에는 TST 없이 접종 가능	• 입원일 및 퇴원일 ※ 생직후 NICU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BCG 접종한 경우 TST 결과 없이 비용지원 가능
	• BCG 생후 3개월 이상 TST 결과 음성	-
Tdap 6차 Td 6차	• 7~9세 따라잡기 일정 접종	-
	• 10세 이상 따라잡기 일정 접종	-
일본뇌염 (IJEV, LJEV)	• 과거 교차접종 시행으로 접종을 완료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시행된 교차접종	-
IJEV	• 일본뇌염 유행국가에 30일 이상 체류 예정으로 가속접종이 필요한 경우 1~2차 최소접종 간격 7일 이상적용	• 의학적 소견 입력 시 ‘방문국가 및 체류 기간’ 입력 후 비용상환 가능
Hib	• 고위험군 접종(침습Hib 감염 고위험군 소아에 해당) ※ Hib 접종력이 없는 고위험군 소아는 5세 이상에도 접종	• Hib 감염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상세사유 작성
PCV	• 고위험군 접종 ※ PCV 접종력이 없는 고위험군 소아는 5세 이상에도 접종 ※ 접종연령에 관계없이 3회 접종받은 고위험군은 8주 간격을 두고 4차 접종	• 폐렴구균 감염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상세사유 작성
PPSV	• 고위험군 접종 ※ 2세 이상 침습 폐렴구균 질환 고위험군 소아에 해당	
MMR	• 생후 6~11개월 가속접종	• 홍역 확진 환자 접촉자(국내 유행상황 시, 확진자 명단확인) • 홍역 유행지역 거주자(국내 유행상황 시) • 홍역 유행 국외지역 여행(출국일, 국가명 등 기재)
HPV	• 면역저하소아 ※ HPV 백신 면역저하자는 총 3회 접종 지원	• HPV 면역저하자에 해당하는 상세사유 작성
RV	• 과거 교차접종 시행으로 접종을 완료하기 위한 불가피한 교차접종 ※ RV5가로 한 번이라도 접종되면 총 접종 횟수가 3회가 되도록 접종	-

주의사항	• 접종등록 팝업창에 의학적 소견 입력 시 사유입력 버튼 클릭하여 비용신청 사유에 맞는 대분류를 선택 후 비용상환 신청되므로 주의 필요 ※ 일부 3차 의료기관의 자체 웹서비스 시스템으로 연계 등록 시 비용신청이 누락될 수 있으니 예방접종통합관리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안내 필요 ※ (예시) 조혈모세포이식 후 접종 등록을 의학적 소견 대분류 '기타'로 등록 시 비용 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의학적 소견 하위분류 선택 항목 외 '기타'로 작성한 경우는 비용기준 적합성 검토 및 의학적 소견 누락 내용 수정하도록 한 후 심사 시행(백신별 실시기준 준수) • Hib, PCV, PPSV 고위험군 및 HPV 면역저하소아 대상 확인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의 해당 백신별 고위험군 또는 접종 시작 연령에 따른 권장 접종일정표 참조 ※ 고위험군 접종은 해당 사업대상 연령 범위 내에서 접종 시 비용지원 가능
------	--

(3) 상환 신청을 위한 추가 요건

※ 비용 상환을 위해서는 (1)기본 인정 접종 기준 또는 (2)예외 인정 접종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 외에도 백신별 추가 요건 준수 필요

구분	기준
BCG (피내용)	• 생후 59개월까지 지원 - 3개월 이상 영유아는 TST 결과 음성일 때 비용지원(의학적 소견 입력 필수) - 다인용 BCG 피내 백신은 실제 사용한 백신 수량을 공급하므로 백신 개봉 후 첫 접종에 대해서만 백신 청구 ※ 예시 : 1vial 개봉 후 5명 접종 시 백신은 최초 접종건만 비용상환 인정(시행비는 건당 지급)
HepB	• 10세 이하: 0.5ml 백신 사용 • 11세 이상: 1.0ml 백신 사용 • (면역글로불린 및 백신) 면역글로불린 1회 및 기초접종 3회(1~3차) 지원 • (항원·항체 검사) 기초접종 후 1회 검사비 공통 지원, 검사결과에 따른 재검사 시 1~2회 추가 지원 ※ 항원·항체검사는 반드시 정량검사법(EIA, ECL, CIA 등)으로 시행 ※ 정성검사 또는 항원·항체 중 한 가지만 검사했다면 비용상환 불가하며 재검사 필요 • (추가 예방접종) 검사결과에 따른 재접종 시 1~3회 추가 지원 ※ 접종 및 검사 진행 순서는 예방접종 및 항원·항체 검사 예방처치일정(실시기준)에 따르며, 진행 순서가 다르면 비용상환 불가 ※ 접종/검사 등록 시 이전 단계 시행내역 전산등록이 누락됐다면 전산등록은 가능하지만 비용상환 신청 불가(이전 내역 시행기관에서 전산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보호자에게 요청하도록 안내)
Hib, PCV	• 생후 59개월까지 지원 - 백신별 고위험군 소아는 5세 이상에서도 비용지원 ※ '접종시작 연령에 따른 권장 접종일정' 및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 Hib, PCV 백신 접종 고위험군

IJVE	• 베로세포 유래 불활성화 백신 접종 시 3세 미만 : 0.4mℓ(0.25mℓ 접종) 백신 사용 3세 이상 : 0.7mℓ(0.5mℓ 접종) 백신 사용
HPV	• (저소득층 자격 여부) - 비용상환 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등록창에서 행복e음을 통해 확인 ※ 자격확인서류 : 당일 발급된 자격확인서류로 자격여부를 확인했는지를 확인(자격확인서류로 대상자 자격여부를 확인한 경우 시스템에서 조회 불가능)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HPV 국가예방접종사업 → 비용상환심사 → 일반내역, 이의내역 심사 → 의료기관 행복e음 확인내역 클릭 → 접종일자가 의료기관 확인일자와 같은지,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값이 Y인지를 확인
IIV, COVID-19	• 사업기간 연령구분 예외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적합한 사유가 있을 시 65세 이상 사업 시작 이후부터 접종 가능 ※ 절기사업 시작 전 시행한 모든 65세 이상 접종 건 비용 상환 불가 <사업기간 연령구분에 대한 예외인정기준> • (지역 특성)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의료취약지)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 심·벽지 지역이 포함된 시군구에 거주, 예방접종 시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 해당 지역은 65세 이상 접종 시기 연령 구분에 따른 지역 특성 예외 인정 가능 지역 확인 ※ 대상자는 접종 전 시스템을 통해 사전 확인 가능 • (당일 진료 발생)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의 기저질환 또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질환으로 당일 진료가 이루어져 진찰비용이 발생한 경우(단, 금연, 건강검진, 비타민 주사제 처방, 단순 혈당검사 및 혈압검사 등은 제외) • (방문접종)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동불편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건소의 관리하에 안전한 예방접종 환경을 확보한 후 방문하여 접종하는 경우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의 종류 15종,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의료기관 재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의 편의성을 위해 시행 ※ 「장애인복지법」 외 타법에 명시된 장애인은 해당하지 않음 ※ 대상자는 행복e음과 실시간 연계를 통해 파악된 명단으로 접종 전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3. 상환 불가 접종 기준

(1) 상환 기준에 부적합하여 비용상환이 불가한 경우

구분	기준
동일백신 및 동일차수 중복접종 (2009. 3.~)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중복접종 - 접종차수가 중복되어 등록되었다면 이전 접종력 확인(차수 오류, 유효여부) 필수 - 중복접종은 등록칸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식별 가능
단축인정기간보다 이른접종 - 최소 접종연령 5일 이상 앞당긴 접종 (2012. 7.~) - 최소 접종간격 5일 이상 앞당긴 접종 (2013. 10.~)	• 최소 접종연령보다 5일 이상 앞당긴 이른접종 - 이른접종 여부는 2017년부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으로 적용 ※ 보호자가 실제 생년월일로 변경을 희망하면 출생증명서류 확인 후 보건소에서 변경 ※ 단축인정기간(grace period : 4일 이하의 오차) 적용 제외 접종 주의 ⇒ VAR, MMR 1차 접종 시 최소접종 연령 단축인정기간 적용 제외(2023.8.7.~) • 최소 접종간격보다 5일 이상 앞당긴 이른접종 - 이른접종은 무효접종으로 재접종이 필요하며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른 재접종 시 비용상환 가능 예) 최소 접종간격 또는 최소 접종연령에 해당되는 날짜가 10월 9일이라면 10월 5일에 접종한 것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여 비용상환 가능하고, 이보다 이르게 접종한 경우는 비용상환 불가 ※ 단축인정기간(grace period : 4일 이하의 오차) 적용 제외 접종 주의 ⇒ 약독화 생백신 간 최소접종 간격 4주(2019.7.2.~)
서로 다른 LJEV의 교차접종 (2014. 8. 1. ~2023. 8. 6.)	• 일본뇌염 생백신 사이의 교차접종 - 2023. 8. 7. 이후 일본뇌염 생백신 사이의 교차접종 건 비용상환 가능(국가지원 백신에 한함)
불필요한 추가접종 (2014. 8.~)	• 지연접종 등으로 다음 차수의 생략되는 접종을 시행한 경우 - DTaP 4차를 4세 이후에 접종(5차 생략) - DTaP 4차를 생후 12개월 이상에서 3차 접종과 4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실시한 경우 재접종 불필요 - IPV 3차를 2차와 6개월 이상 간격을 두고 4세 이후 접종(4차 생략) - IJEV 3차를 4~9세에 접종 시 4차를 12세에 실시하여 완료(5차 생략) - Hib 및 PCV 백신은 접종 시작 나이 및 중간에 접종이 지연되면 해당 나이에 따라 필요한 접종 횟수가 다름에 주의 → '미접종 소아의 예방접종 일정표' 및 '접종 시작 연령에 따른 권장 접종 일정표'를 참고 • 첫 접종 나이에 따라 총접종 횟수가 다른 경우 - HPV 1차를 9~14세에 접종 시 2차로 완료(3차 불필요) - 65세 이상 연령에 PPSV23 1회 접종하였으면 추가접종 불필요
LJEV와 IJEV의 교차접종 (2014. 8.~)	• 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과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사이의 교차접종
서로 다른 IJEV와 IJEV의 교차접종 (2015. 5. 1.~ 2017. 1. 31.)	• 일본뇌염 불활성화-베로세포 유래 백신과 쥐뇌조직 백신 사이의 교차접종 - 2017. 2. 1. 이후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사이의 교차접종 건 비용상환 가능

구분	기준																										
4세 이후 IPV 3차 접종 (2019. 4. 23.~)	• 4세 이후 IPV 3차 접종 시 이전 접종과 최소 접종간격(6개월) 미준수한 경우																										
DTaP 1~5차 접종 완료자의 Td 백신 접종 (2020. 1. 1.~)	• DTaP 1~5차 접종 완료한 7~10세 대상에게 Td 백신을 접종한 경우																										
허가기준 이외 사용 시	• DTaP-IPV 백신(보령디티에이피아이피브이) - 기초접종으로 허가된 백신을 추가접종에 사용 시 비용상환 불가																										
	<table><tr><th>제품명</th><th>용법·용량</th><th>허가 범위</th><th colspan="2">비용상환</th><th>시행일</th></tr><tr><td rowspan="2">보령디티에이피아이피브이 (보령바이오파마)</td><td rowspan="2">• 기초 : 1회 용량 0.5ml씩 생후 2, 4, 6개월에 3회</td><td rowspan="2">기초 접종</td><td>기초</td><td>○</td><td rowspan="2">'20. 7. 1.</td></tr><tr><td>추가</td><td>×</td></tr><tr><td>테트락심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td><td>• 기초 : 1회 용량 0.5ml씩 생후 2, 4, 6개월에 3회 • 추가 : 4~6세 0.5ml 1회</td><td>기초 및 추가 접종</td><td>기초 및 추가</td><td>○</td><td>-</td></tr><tr><td>인판릭스아이피브이주 (GSK)</td><td>• 기초 : 1회 용량 0.5ml씩 생후 2, 4, 6개월에 3회 • 추가 : 4~6세 0.5ml 1회</td><td>기초 및 추가 접종</td><td>기초 및 추가</td><td>○</td><td>-</td></tr></table>	제품명	용법·용량	허가 범위	비용상환		시행일	보령디티에이피아이피브이 (보령바이오파마)	• 기초 : 1회 용량 0.5ml씩 생후 2, 4, 6개월에 3회	기초 접종	기초	○	'20. 7. 1.	추가	×	테트락심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 기초 : 1회 용량 0.5ml씩 생후 2, 4, 6개월에 3회 • 추가 : 4~6세 0.5ml 1회	기초 및 추가 접종	기초 및 추가	○	-	인판릭스아이피브이주 (GSK)	• 기초 : 1회 용량 0.5ml씩 생후 2, 4, 6개월에 3회 • 추가 : 4~6세 0.5ml 1회	기초 및 추가 접종	기초 및 추가	○	-
	제품명	용법·용량	허가 범위	비용상환		시행일																					
	보령디티에이피아이피브이 (보령바이오파마)	• 기초 : 1회 용량 0.5ml씩 생후 2, 4, 6개월에 3회	기초 접종	기초	○	'20. 7. 1.																					
				추가	×																						
	테트락심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 기초 : 1회 용량 0.5ml씩 생후 2, 4, 6개월에 3회 • 추가 : 4~6세 0.5ml 1회	기초 및 추가 접종	기초 및 추가	○	-																					
인판릭스아이피브이주 (GSK)	• 기초 : 1회 용량 0.5ml씩 생후 2, 4, 6개월에 3회 • 추가 : 4~6세 0.5ml 1회	기초 및 추가 접종	기초 및 추가	○	-																						
• 보령A형간염백신프리필드시린지주 - 2세 이상에서 1차 접종 시 비용상환 불가(2022. 3. 21. ~)																											
RV1과 RV5 백신 교차접종 (2023. 3. 6.~)	• RV1 백신과 RV5 백신을 교차하여 접종한 경우 - 교차접종 시행으로 접종을 완료(총 3회)하기 위해 이전 발생한 백신으로 접종했다면 비용상환 신청 가능																										
RV 백신 최대접종연령 초과 (2023. 3. 6.~)	• 생후 14주 6일 초과하여 1차 접종한 경우 • 생후 8개월 0일 초과하여 접종한 경우																										
IIV과 COVID-19 백신 사업기간 시작 전·후 접종	• 절기사업 시작 전 접종 등은 시행비 상환 불가, 사용한 백신은 의료기관 자체 백신으로 대체 접종 • 사업종료 후 별도 공지기간까지만 접종력 등록이 가능하며, 사업기간 이후 접종은 비용상환 불가																										
IIV 백신	• 일양플루백신프리필드시린지주(0.5ml), 코박스인플루PF주(0.5ml) - 6~35개월 대상에게 접종한 경우																										

구분	기준		
COVID-19 백신 오접종	• 코로나19 백신을 오접종한 경우		
	내용	접종력	조치사항
	▶ 허가된 접종 간격보다 빨리 접종	×	최소접종간격을 두고 재접종
	▶ 허가 연령에 맞지 않는 대상자 접종	○	재접종 필요 없음
	▶ 중복접종	○	재접종 필요 없음
	▶ 접종 금기 대상자에 접종 (아나필락시스 발생이력이 있는 사람 등)	○	재접종 필요 없음
	▶ 생후 6개월 이하 영아 접종	×	생후 6개월이 되는 날 이후 다시 접종* * 유효하지 않은 접종으로부터 4~8주 접종 두고 접종
	▶ 허용되지 않는 백신으로 교차접종	○	재접종 필요 없음
	▶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 주입	×	최소접종간격을 두고 재접종
	▶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 주입 의심 사례 (동일한 로트번호 등 정상 백신과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 접종의 구분이 불가한 경우)	○	재접종 필요 없음
	▶ 보관 방법이 잘못된 백신 주입 (온도이탈 등)	△	제조사사의 가이드라인에 따름, 관련 데이터가 없는 경우 즉시 재접종* *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최소접종간격을 두고 재접종 가능
	▶ 허가된 정량보다 많이 주입	○	재접종 필요 없음
	▶ 허가된 정량보다 적게 주입	△	- 절반 이상 접종: 재접종하지 않음 - 그 외의 경우: 인지 즉시 허가된 용량으로 반대쪽 팔에 재접종* *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최소접종간격을 두고 재접종 가능
	▶ 적합하지 않은 부위에 접종 (삼각근 또는 대퇴부전외측 근육주사 원칙)	○	재접종 필요 없음
	▶ 잘못된 방법으로 접종 (피하·정맥주사, 여러 바이알 잔량을 모아 접종 등)	○	재접종 필요 없음

- 백신별 예방접종의 실시기준을 미준수한 접종은 비용지원이 불가하므로 심사에 유의
 - 예시(HepB 재접종) : ‘항체 미형성’ 사유로 재접종은 비용지원 불가(필요시 고위험군에 한하며 적합한 의학적 소견 입력 필수)
 - 예시(Tdap/Td 따라잡기 일정) : 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7세 이상 소아에게 ‘Tdap/Td 따라잡기 일정’에 따라 반드시 Tdap 백신 접종력이 필요한 대상에게 Td 백신 접종 시 접종력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지원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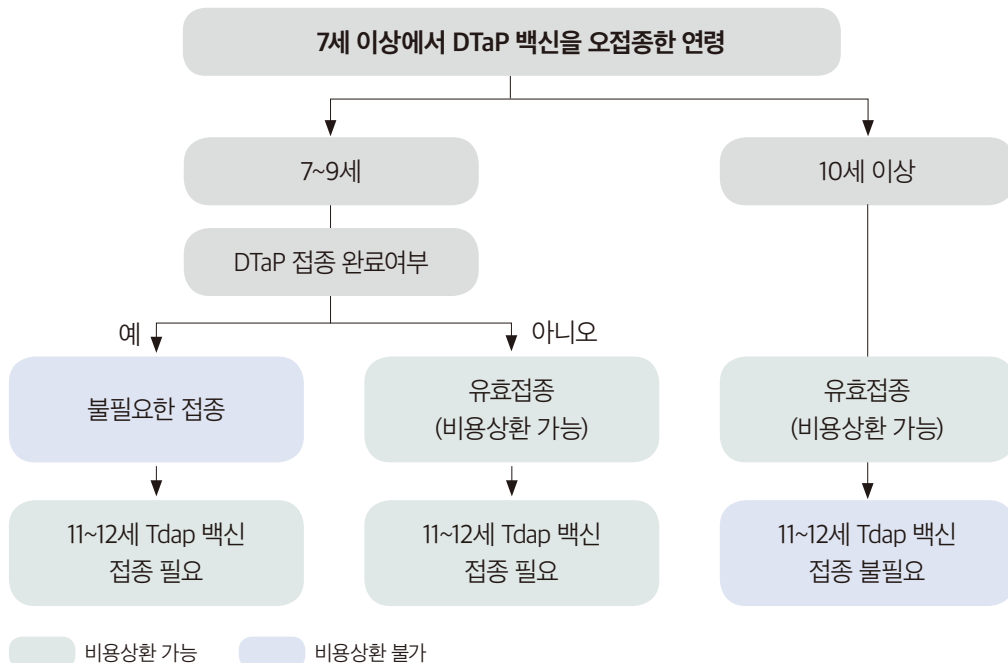
(2) 상환 기준에 적합하나 비용상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구분	사유	해결방법
주민등록번호	• 행안부 인증오류	• 주민등록번호 오등록 의료기관에 정정요청 후 비용상환 가능
임시신생아번호	• 생후 1개월 이후 접종 등록 시	• 신생아번호관리시스템 관리이력 등록 - 관리이력 등록 후 생후 3개월 경과 시 비용상환 가능
온라인교육	• 교육 미이수	• 교육이수(수료) 정보 입력
참여백신	• 시행확인증 미등록	• 시행확인증 현행화(의료기관) → 승인(보건소) 후 비용상환 가능
폐업기관	• 폐업 이후 전산등록이 누락된接种의 추가청구를 진행하는 경우	• 폐업 전 반드시 전산등록

< 참고 : DTaP 및 Tdap 백신의 접종연령 미준수 시 비용상환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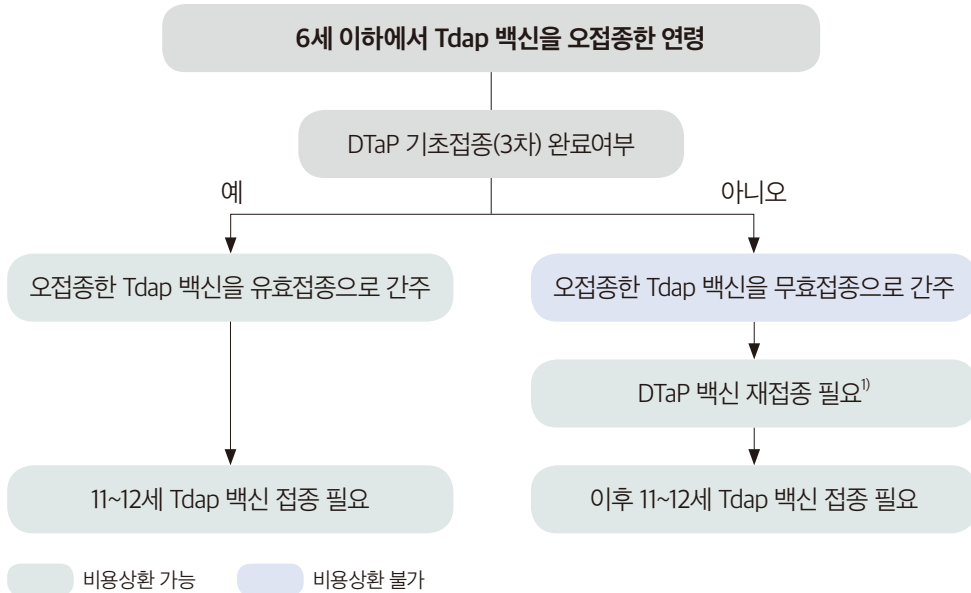
기준

- 7세 이상에서 DTaP 백신을 접종한 경우



* DTaP 접종 완료 : DTaP 5차 접종 완료자 또는 4세 이후 DTaP 4차 접종자(5차 접종 생략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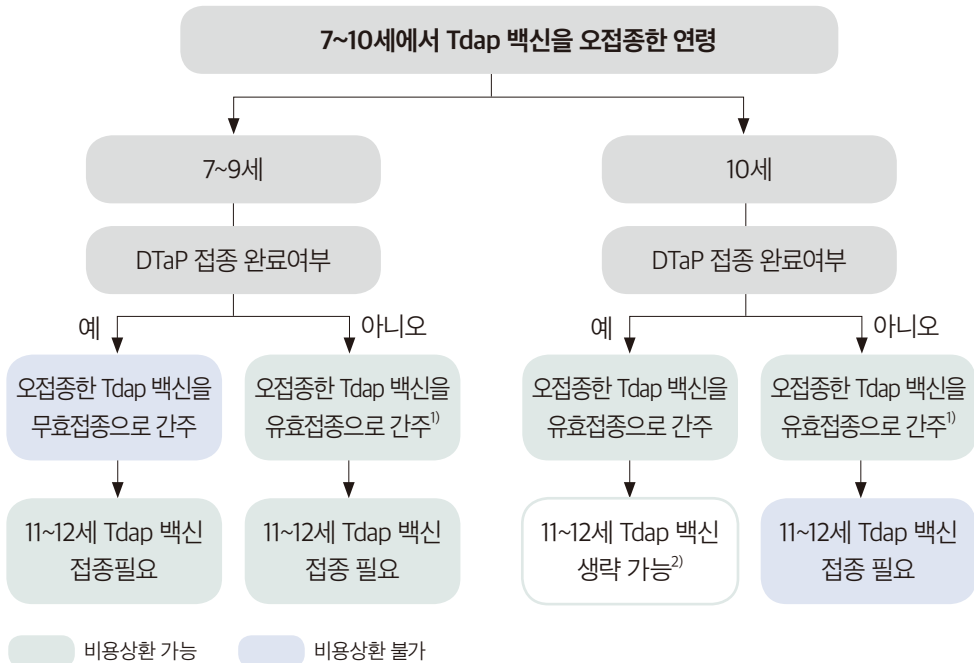
• 6세 이하에서 Tdap 백신을 접종한 경우



1) DTaP 백신은 7세 미만에서만 접종 가능(비용상환 가능)

* DTaP 기초접종 완료 : DTaP 3차 접종 완료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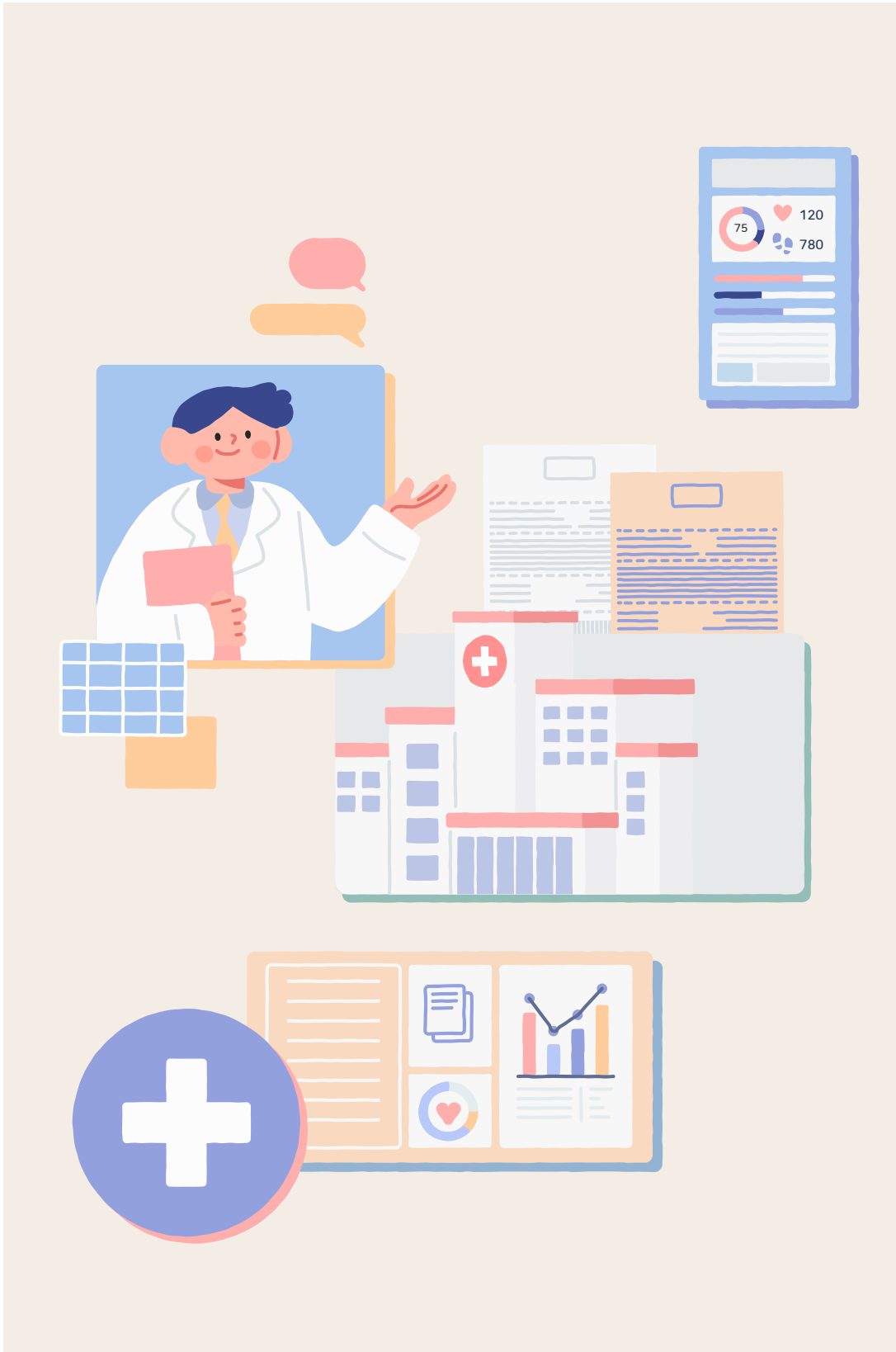
• 7~10세에서 Tdap 백신을 접종한 경우



1) 기초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Tdap 및 Td 백신으로 접종 완료

2) 10세에 Tdap 백신 접종 시 11~12세 Tdap 백신 접종은 생략할 수 있으나, 접종시에도 비용상환 가능

* DTaP 접종 완료 : DTaP 5차 접종 완료자 또는 4세 이후 DTaP 4차 접종자(5차 접종 생략 대상)



5

예방접종 안전관리



가. 예방접종 일반 주의사항

- 「의료법」 제33조제1항 및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7호)」 제3조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은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시행
※ 단, 필요에 따라 안전한 예방접종 환경을 확보한 후 보건소 관리하에 방문접종 시행 가능
- 예방접종에 사용되는 백신의 보관상태 및 유효기간 확인 등 철저한 백신 관리
- 예진 시 예방접종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과거 병력 확인
- 예방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해 충분히 설명
- 백신 제품별 허가된 용법·용량을 준수하여 접종
- 접종자에게 접종 후 접종 기관에 약 20~30분간 머물러 급성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 후 귀가 하고, 접종 부위의 청결한 유지 및 접종 당일 음주·지나친 운동·샤워 등을 피하고 반나절 이상 안정을 취하도록 안내

(1) 사업 기간 관리

- 절기 예방접종(인플루엔자·코로나19)은 사업 첫날 접종자 쏠림 방지를 위해 연령별 3개 구간으로 사업 시작일을 구분하여 시행

- 접종 시작일에 따라 1구간 : 75세 이상, 2구간 : 70~74세, 3구간 : 65~69세
- 사업기간 연령구분에 대한 예외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적합한 사유가 있을 시 65세 이상 사업 시작 이후부터 접종 가능(예 : 3구간 대상이 1, 2구간에 접종 가능, 2구간 대상이 1구간에 접종 가능)
- 75세 이상은 사업기간 예외인정기준 적용 대상 아님
- 3구간 시작일 이후부터 예외인정기준은 유효하지 않음

[예외인정기준]

- (지역특성) 섬·벽지지역*이 포함된 시군구에 거주(주민등록상 거주지)하는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의료취약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의 보험료 경감 대상 지역
- (당일진료)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이나 갑작스럽게 발생한 질환 등으로 당일진료가 발생한 경우
- (방문접종)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방문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건소의 관리하에 안전한 예방접종 환경을 확보한 후 방문하여 접종하는 경우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15종),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나 의료기관 재방문이 어려운 장애인 해당

(2) 1일 접종 인원수 제한

-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예진 의사 1인당 1일 최대 접종 인원을 100명으로 제한
※ 단, '사업기간 예외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 및 유료 예방접종을 실시한 인원의 경우 제한 인원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절기 접종(인플루엔자·코로나19)의 백신별로 구분하여 각각 100명 적용
※ '방문 접종' 사유로 등록한 정보를 기준으로 인원수 제한 제외 적용

(3) 오접종 예방

- (오접종 정의) 백신별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을 미준수한 예방접종
※ 절기 예방접종 사업기간 미준수 또는 지원대상 외 연령 일반 접종은 오접종이 아님
- (예방대책) 이름·생년월일 등 2가지 이상의 정보로 접종 대상자를, 백신별 고유색 스티커·목걸이 등으로 접종 백신 종류/유효기간을 접수-예진-접종 단계별로 반드시 확인
- (오접종 발생 시 보고 체계)
 - (접종기관) 피접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발생 즉시 보건소에 유선 보고
※ 위탁의료기관에서 오접종 발생 시 신고하지 아니하여 뒤늦게 보건소에서 알게 된 경우 위탁계약 해지 가능
 - (보건소) 접종기관에 행정지도하고 '의료기관 관할보건소'가 시스템에 오접종 등록하여 시도 보고
※ 접종기관에서 피접종자에게 오접종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 '의료기관 관할보건소'가 오접종 사실 안내

- 시스템 오접종 신고 : 절기 예방접종 오접종 발생 당일 시스템 등록
①(인플루엔자)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등록업무 → 예방접종조회/접종관리 → 오접종 등 관리
②(코로나19) 코로나19예방접종등록시스템 → 접종관리 → 오접종 등 관리

- (시·도) 보건소에서 등록한 오접종 발생 보고서 조회 및 관리
- (오접종 이상반응 관리 및 후속 조치) 보건소는 접종 7일 후 대상자 이상 반응 발생 여부를 확인 및 신고하며, 오접종 발생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재교육, 주의 등의 후속 조치
 - ※ 단, 이상반응 발생 시 이상반응 신고 절차는 별도로 진행

(4) 의료 관련 감염 예방

- 접종을 시행하는 의료인은 예방접종 전·후 반드시 손위생을 실시하며, 주사제 준비·투여 등 모든 과정에서 손위생 및 무균술 준수
 - 장갑을 착용한 경우 장갑은 환자마다 바꿔 착용하며, 장갑 교체 시 마다 손위생 실시
 - 사용한 주사기(Syringe) 및 주삿바늘(Needle)의 재사용을 금지하며, 주사기의 피스톤과 주삿바늘의 연결부위, 주삿바늘의 삽입 부위가 손이나 기타 물체에 닿았을 경우 오염된 것으로 간주하여 즉시 폐기
- 접종 전 적절한 소독제(알코올 솜 등)를 사용하여 예방접종 대상자의 주사 부위를 소독하고 자연건조를 통하여 완전히 건조시킨 후 접종
- 대기 → 접종 → 접종 후 공간으로 구분·운영하며(대기 공간과 접종 후 공간은 가급적 대상자 간 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별도의 공간이 없을 경우 겸용 가능하나 대기자와 접종완료자가 구분되어야 함

나. 이상반응 관리

(1) 개요

- (정의) 접종 후 예방접종으로 발생 가능한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
- (분류)

구분		정의
발생 부위	국소 이상반응 (Local reactions)	예방접종 받은 부위와 그 주변에 국한된 이상반응 ※ 예) 접종부위의 통증, 발적, 발진, 종창, 가려움증 등
	전신 이상반응 (Systemic reactions)	예방접종 받은 부위에 국한되지 않고, 전신에 나타나는 이상반응 ※ 예) 발열, 권태감, 근육통, 메스꺼움 등

중대한 이상반응 (Serious Adverse Event Following Immunization, AEFI)	①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②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③ 지속적 또는 중대한 장애나 기능저하를 초래하는 경우 ④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하는 경우 ⑤ 영구적 장애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개입이 필요한 경우
중증도(Severity)	특정 증상/징후의 강도를 설명하는 데 사용(경증, 중등도, 중증) ※ 예) 발열은 흔하고 그 정도에 따라 경도 열 또는 중증도 열로 분류될 수 있음

(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 (신고방법)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안전관리 → 병원/보건소 신고관리
 ※ 코로나19의 경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코로나19예방접종관리 → 이상반응관리 → 병원/보건소 신고관리
- (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별표3,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고시(질병관리청 고시 제2023-13호) 별표, 임시예방접종 후 신고하여야 하는 이상반응 범위 등에 관한 고시(질병관리청 고시 제2023-11호)
 ※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 시 변경된 내용으로 적용

예방접종 종류	이상반응의 범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Tdap)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디프테리아, 파상풍 (Td)	2. 뇌염, 뇌증	7일 이내
	3. 위팔신경총 말초신경병증	28일 이내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DTaP-IPV)	4.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DTaP-IPV/Hib)	5.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폴리오 (IPV)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뇌염, 뇌증	21일 이내
	3.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7-30일
	4. 만성 관절염	42일 이내
	5.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6.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결핵 (BCG)	1. 림프절 부기(지름 1.5cm 이상)	1년 이내
	2. 골염, 골수염	6개월 이내
	3. 전신 파종성 비씨지 감염증	6개월 이내
	4. 국소 이상반응	6개월 이내
	5.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B형간염 (HepB)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수두 (VAR)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뇌염, 뇌증	7일 이내
	3.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4.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일본뇌염 (IJEV, LJEV)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뇌염, 뇌증	7일 이내
	3.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4.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Hib)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페렴구균 (PCV, PPSV)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인플루엔자 (IIV)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위팔신경총 말초신경병증	28일 이내
	3.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4.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5. 제1호부터 제4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A형간염 (HepA)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사람유두종 바이러스감염증 (HPV)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RV)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장중첩증	21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장티푸스(주사용) (ViCPS)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신증후군출혈열 (HFRS)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COVID-19)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42일 이내
	4. 심근염	42일 이내
	5. 심낭염	42일 이내
	6.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7.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엠폭스 (Mpox)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법 제24조제1항 제18호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감염병	감염병의 특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이상반응	감염병의 특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시간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시예방접종을 하는 감염병	감염병의 특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이상반응	감염병의 특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시간

(3) 이상반응 역학조사 및 중증이상반응 신속대응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
- (조사대상) 예방접종 후 접종받은 자에서 중증이상반응* 발생사례

※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다음과 같은 중대한 이상 반응을 말하며, 예방접종의 종류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 1)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 2) 입원 또는 입원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 3) 지속적 또는 중대한 장애나 기능 저하를 초래하는 경우
- 4)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하는 경우
- 5) 영구적 장애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개입이 필요한 경우
- 6) 아나필락시스, 심각한 신경계 증상, 건강상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또는 위원회에서 이에 준한다고 인정된 경우

*임신부의 유산, 사산 또는 출생아의 사망 등 산과적 합병증의 경우는 미해당

-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사례 발생 시 기관별 조치 사항)

조치 사항	담당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사례 발생 인지	
↓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개요 파악	보건소 담당자
↓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발생 유선 및 시스템 보고 (이상반응 신고, 중증이상반응 신고(기초조사 포함))	보건소 담당자
↓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역학조사 및 시스템 보고 - 예방접종 시행한 의료기관 방문 조사 - 내원한 의료기관 방문 조사 - 접종 받은 자 또는 보호자 면담 - 발생 경과 및 동일 백신 접종자 이상반응 발생 확인 사항 등	시·도 담당자 및 역학조사관
↓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 개최(필요시)	질병관리청
↓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 결과 통보	질병관리청

※ 사인 및 접종 후 이상 반응 발생 시간과 관계없이 접종받은 자의 사망에 대한 전화 연락 및 보고를 받으면 반드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정책과(043-913-2288, 2218)에 보고

- (보건소(이상반응 담당자)) 중증이상반응 사례에 대한 시스템 신고
 -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 안전관리 → 중증이상반응 신고 관리
- (시·도 역학조사반)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역학조사 실시 및 분석
 - ※ 해당 백신과 피해 발생 경과 등 피해사례에 관한 확인
 - 질병 과거력, 가족력 등 인적 특성 조사
 - 이상 반응 발생 후 임상 양상 및 검사 자료 및 관련 의무기록 수집
 - 백신 보관상태, 접종 과정, 기록 관리 상태 등 조사
 -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자 이상 반응 여부 확인
 - 주치의, 예방접종 관련자 등 면담
 - 과거 유사사례 여부에 대한 문헌 고찰
-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이상반응과 예방접종 간 인과성 검토

(4) 이상반응 피해조사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
- (조사대상)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
- (사례 발생 시 기관별 조치사항)
 - (시·도 역학조사반) 보상신청 사례에 대한 기초피해조사 실시
 -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해당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 검토

(5)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 (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 고시 제2023-17호)에 명시된 백신을 접종받은 대상자
 - ※ 임신 중 모체가 예방접종을 받을 당시 태아였던 출생아에서 발생한 질병, 장애에 대해서 피해보상 신청 가능
- (보상신청 기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 (보상신청 횟수)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 추가 보상은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한 내에 신청 가능함
- (보상신청 방법) 접종받은 자 또는 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관련 서류* 제출

[보상신청시 구비해야하는 서류]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사망/장애인 일시보상금(및 장제비) 신청서, (이의신청 시) 이의신청서 1부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1부
-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1부

※ 의무기록 사본은 초진 기록(문진(history taking)과 신체검진(physical examination)), 입원 경과, 시행한 검사 결과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방문한 진료 기관별로 의무기록 사본과 진료비 상세내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백신 접종 2~3개월 전의 의무기록 사본 1부(있을 경우)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서(입원, 외래, 약제) 1부
- (30만원 미만인 경우) 국가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1부

다. 아나필락시스 대응 매뉴얼

(1) 개요

- (정의) 급격하게 진행되는 전신적인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며, 단시간 내에 여러 가지 장기의 급격한 증상을 유발하여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음
 -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극히 드물지만 치명적일 수 있고, 발병은 일반적으로 몇 분 이내에 빠르게 진행되며 다양한 중증도와 임상특징으로 경과를 예측하기 어려움*

*The Green Book. Vaccine safety and adverse events following immunisation chapter 8. Public Health England, 2013

- 아나필락시스 반응의 예측할 수 없는 특성으로 인해 관찰해야 하는 특정 기간을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주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므로 예방접종 후 최소 20분간 접종기관에 머무르며 아나필락시스가 나타나는지 관찰해야 하며, 이전에 다른 원인(약물, 음식, 주사 행위 등)으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험에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30분간 관찰하도록 함*

*미국 CDC. <https://www.cdc.gov/vaccines/covid-19/clinical-considerations/managing-anaphylaxis.html>

(2) 증상 및 징후

- 피부/점막, 호흡기, 심혈관, 위장관 등 2가지 계통 이상의 전신적인 증상 또는 징후가 나타나는 것이 전형적
 - 피부-점막 증상(80-90%) : 가려움증, 두드러기, 홍조, 입술, 혀, 입 안 등의 부종

- 호흡기계 증상(70%) : 코막힘, 콧물, 재채기, 기침, 호흡곤란, 가슴답답함, 천명 등
- 소화기계 증상(30~45%) :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등
- 심혈관계 증상(10~45%) : 가슴통증, 빈맥, 저혈압, 쇼크, 심장마비 등
- 신경계 증상(10~15%) : 실신, 의식저하 등
- 다음의 세 가지 증상이 모두 있을 경우 아나필락시스 의심
 - 증상의 갑작스런 발병 및 급속한 진행
 - 기도와/또는 호흡과/또는 순환기 문제
 - 피부 또는 점막 변화(가려움증, 홍조, 두드러기, 혈관부종)

기도(Airway) 문제	호흡(Breathing) 문제	순환기(Circulation) 문제
• 기도 부종(목과 혀가 부어 호흡 및 삼키기 어려움, 기도가 막히는 느낌) • 쉼 목소리 • 협착음(기도 폐쇄로 인한 고음의 흡기 소음)	• 숨가쁨(호흡수 증가) • 쌕쌕거림(기관지 경련)과/또는 지속적인 기침 • 인후부종이나 조임	• 쇼크징후 : 창백하고 끈적함 • 두드러진 빈맥 • 부정맥 • 저혈압 : 실신(현기증), 허탈 • 의식수준 감소, 의식소실 • 심장마비

- (고려사항)
 - 피부 또는 점막 변화만으로 아나필락시스 반응의 징후가 아니며, 피부나 점막 변화 없이 기관지 경련 또는 저혈압만 나타날 수 있음
 - 국소적인 이상반응이더라도 증상이 나빠질 수 있어 면밀히 관찰 필요
 - 특히, 아나필락시스의 증상은 인지장애가 있는 장기요양시설 거주자, 신경질환자 등 소통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인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증상과 징후를 면밀히 모니터링

[참고] 아나필락시스 진단을 위한 수정된 기준

(World Allergy Organization Anaphylaxis Guidance 2020)

- 다음 두 가지 기준 중 하나가 충족되면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피부, 점막 조직 또는 둘 다의 동시 침범(전신 두드러기, 가려움증 또는 홍조, 부어오른 입술-혀-목젖)과 함께 급성 발병(몇 분에서 몇 시간)
- 그리고 다음 중 적어도 하나 :
- 호흡기 손상(호흡곤란, 천명, 기관지경련, 협착음, 최대호기유속(PEF) 감소, 저산소혈증 등)
 - 혈압 감소 또는 말단 기관 기능 장애 관련 증상(긴장 저하[허탈], 실신, 요실금 등)
 - 특히 비식품 알레르겐에 노출된 후 심한 위장 증상(심한 경련성 복통, 반복적인 구토)

- 전형적인 피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환자에 대해 알려 지거나 가능성이 높은 알레르겐¹⁾에 노출된 후(몇 분에서 몇 시간) 저혈압²⁾ 또는 기관지 경련³⁾ 또는 후두 침범⁴⁾의 급성 발병

- 1) 알레르겐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면역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일반적으로 단백질)임. 대부분의 알레르겐은 IgE 매개 경로를 통해 작용하지만 일부 비 알레르겐 트리거는 IgE와 독립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예 : 비만 세포의 직접 활성화를 통해)
- 2) 그 사람의 기준선에서 30% 이상으로 수축기 혈압이 감소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저혈압 또는
 - ①10세 미만의 영유아 : 수축기 혈압 (70mmHg + [2x연령]) 미만, ②10세 이상의 성인 및 소아 : 수축기 혈압이 90mmHg 미만
- 3) 일반적인 섭취가 없을 때 “흡입”반응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흡입 알레르겐 또는 음식 알레르겐에 의해 유발되는 하기도 증상은 제외됨
- 4) 후두 증상은 다음과 같음 : 협착음, 음성 변화, 연하통

(3) 감별 진단

- 접종자의 불안감과 과호흡으로 인한 기절이나 실신과 아나필락시스는 구분 필요

구분		미주신경 반응-실신	아나필락시스
발병		갑작스럽고, 예방접종 전, 도중 또는 직후(대부분 수초~5분 미만)에 발생	대부분 예방접종 후 수분 이내 발생(일반적으로 5분 후에 발생하지만 지연 발생 가능)
양상	피부	식은땀, 일반적으로 창백하며 차고 축축한 피부	전신 두드러기 또는 전신 홍반, 혈관 부종, 국소 주사 부위 두드러기, 충혈 및 가려운 눈, 가려움증(피부 발진 유무에 관계없음), 전신의 따끔거리는 느낌(prickle)
	호흡	정상 호흡부터 심호흡까지 다양 (불안을 동반하면 호흡수 증가 가능)	짧은 호흡, 거친 호흡, 쌉쌉거림 또는 천명음(wheezing), 협착음(stridor), 지속적인 기침, 산소포화도 저하
	심혈관	서맥(느린 맥박), 간헐성 저혈압 가능	빈맥(빠른 맥박), 저혈압, 심장마비
	위장관	구역, 구토	구역, 구토, 복부 경련(쥐어짜는 듯함), 복통, 설사
	신경계	어지러움, 현기증, 일시적인 기절(실신), 무력증, 시력(섬광, 터널시야 등)/청력 변화	어지러움, 현기증, 불안, 안절부절 못함, 동요, 심한 경우 의식소실로 진행
회복		머리를 아래로 하거나 누운 자세에서 좋아짐 *눕히는 자세만으로 특별한 치료 없이 빠른 회복	머리를 아래로 하거나 누워도 좋아지지 않음 *눕히는 자세만으로는 호전 없고, 에피네프린 투여 후 몇 분에서 몇 시간 후 회복
검사 (트리타제)		정상	증가(증상 발생 2~3시간까지 최고 수치, 그 이후 감소)

※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검토(2021.7.14.)

- 기절이나 실신 경험이 있는 경우 미주신경반응-실신 예방을 위해 누운 자세의 접종을 고려

(4) 환자의 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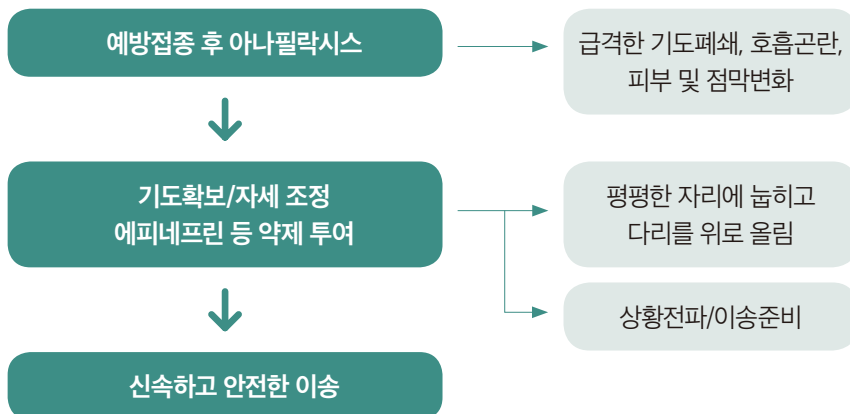
환자가 급작스럽게 일어나거나 걷거나 혹은 앉을 시 수 분 이내로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환자는 회복된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걷거나 일어서서는 안 됨

- 환자를 평평한 장소에 눕힐 것
 - 심장으로 혈액 환류량이 개선되며, 환자를 똑바로 일으킬 시 심장을 통해 순환하는 혈액량의 감소 및 저혈압을 유발함
- 구토 시, 환자를 옆으로 눕힘
- 호흡 개선을 위해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환자들은 주로 앉기를 원함
 - 이때 환자는 의자에 앉지 말고 바닥에 양쪽 다리를 앞으로 쭉 편 상태로 앉아야 하며, 앉을 시 저혈압이 유발될 수 있을 것임을 인지하고 지속 관찰 필요
 - 의식 상태나 혈압 하락 시 즉시 환자를 평평한 장소에 눕혀야 함
 - 안정화되기 전까지 환자를 일어서거나 걷게 하면 안 되며, 안정화되기까지 보통 최소 1시간(에피네프린 1회 투여)에서 4시간(에피네프린 2회 이상 투여) 소요
- 들것 혹은 스트레처 카(Stretcher car)를 이용해 환자를 이동시켜야 함

(5) 아나필락시스 관리

-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각 장소에서 즉시 아나필락시스 응급처치를 할 수 있어야 함
- 응급처치를 위한 의약품 및 장비의 사용 만료일 및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 필요

- (아나필락시스 대응 흐름도)



- (상황평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징후를 조기에 인지하고 아나필락시스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 이를 위해 예방접종 담당의료인은 접종 후 20~30분간 백신 접종부위에 부종, 발적 등이 발생하면 전신 과민반응으로 진행되는지 여부 관찰
- (도움요청) 전신 과민반응 발생 시 상황을 접종기관 내 신속 전파, 도움 요청 및 담당의 호출
- (응급처치) 담당의사는 환자를 평평한 곳에 눕히고, 의식과 맥박, 호흡을 확인한 뒤 간호사의 보조를 받으면서 기도확보, 산소공급, 에피네프린 투여, 수액요법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시행
 - 에피네프린은 아나필락시스 응급처치에 필요한 1차 약제이고 호흡곤란을 완화시키며 적절한 심박출량을 유지시킴(에피네프린 보관방법은 반드시 사용설명서 참고)
 - 에피네프린 투여 후에도 증상 및 혈압 조절이 안 되는 경우 구급차가 올 때까지 매 5~15분 간격으로 투여가 가능
 - 항히스타민제와 스테로이드는 아나필락시스의 1차 약제가 아님
- (의료기관 이송) 응급처치는 담당의사 주도하에 진행하고 구급차로 지정된 응급의료센터로 이송

(6) 사전 준비 사항

- (이송체계 마련) 응급환자 발생시 관내 이송 가능한 의료기관 현황을 파악하고 전화번호, 위치, 이송거리 등을 확인
- (사전준비 약품 및 장비)

반드시 구비	가능하면 구비
에피네프린 또는 자가주사용 에피네프린	맥박산소측정기(Pulse oximeter)
혈압계	산소(Oxygen)
청진기	기관지 확장제(예 : albuterol)
연속맥박측정기(timing device to assess pulse)	H1 항히스타민(예 : diphenhydramine)
-	H2 항히스타민(예 : famotidine, cimetidine)
-	정맥수액(IV fluid)
-	기도삽관 키트
-	심폐소생술 마스크

※ 미국 CDC. <https://www.cdc.gov/vaccines/covid-19/clinical-considerations/managing-anaphylaxis.html>

- (담당자별 역할 마련) 접종 후 관찰 구역에서 접종 후 대상자를 모니터링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행정요원은 도움을 요청하고, 의사는 환자 상태 평가 및 응급처치 지휘, 간호사는 응급처치 보조, 응급구조사는 즉시 이송

구분	역할
의사	• 환자 상태 평가 • 기도, 호흡 확보·유지, 순환기 및 의식상태 파악 • 약제 투여 필요성 판단 및 지시 • 심폐소생술 시행 필요성 판단 및 시행 • 이송 시 동행(필요 시)
간호사	• 약제 준비 및 투여 • 응급간호관리 • 이송 시 동행(필요시)
행정요원	• 상황 전파 및 도움 요청 • (대기중) 구급차 준비 요청 • 기관내 상황전파
응급구조사(구급차)	• 환자 이송

(7) 아나필락시스 치료

- 환자가 위를 바라보도록 평평한 곳에 눕히고 발을 높게 해줌
 - 에피네프린 1:1000, 0.01ml/kg(maximum 0.5ml) 또는 필요시 자가주사용 에피네프린 성인용(0.3mg)을 즉각 근육 주사
 - (성인) 호전이 없는 경우 5~15분 간격으로 반복 근육주사하며, 2~3회 투여 후에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맥주사(0.05~0.1mg) 고려(정맥주사는 충분한 경험이 있는 의사만 사용)
 - (6~12세) 에피네프린 0.3mg을 근육 주사 후 호전이 없는 경우 5~15분 간격으로 반복 근육주사
 - (1~5세) 에피네프린 0.15mg을 근육 주사 후 호전이 없는 경우 5~15분 간격으로 반복 근육주사
 - (10kg 미만 영유아) 에피네프린 0.01mg/kg을 근육 주사 후 호전이 없는 경우 5~15분 간격으로 반복 근육주사
- *연령별 예시 : WAO 아나필락시스 가이드라인 2020
- 자가주사용 에피네프린은 1회용이며, 유효기간과 약물 용액이 투명한 상태인지를 주기적으로 확인

- 기도를 유지하고 산소 공급
 - 쉼 목소리, 혀 부종, 협착음, 인두부종 등이 있을 때에는 기도 폐쇄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관 내 삽관 고려
- 활력 징후(혈압, 심박동, 호흡수)를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에피네프린 주사 이후에도 수축기 혈압이 80mmHg 이하이면 수액제제를 정맥 주입
- 에피네프린 주사 이후에도 수축기 혈압이 80mmHg 이하이거나 쇼크가 지속되면 혈관 수축제(노르에피네프린, 바소프레신, 페닐에프린) 등을 추가로 투여
- 초기 소생술 후 혈액학적으로 안정되면 항히스타민제(두드러기·가려움증 완화), 스테로이드제 투여
- 아나필락시스 발생 시 증상 종류에 상관없이 의료기관으로 이송

구분	증상 및 처치
진단	가장 흔한 징후와 증상은 피부증상(두드러기, 혈관 부종, 홍조, 가려움증)
	위험징후 : 증상의 급속한 진행, 호흡곤란(협착음, 천명, 호흡곤란, 지속적인 기침, 청색증), 구토, 복통, 저혈압, 부정맥, 가슴 통증, 실신
응급관리	아나필락시스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는 에피네프린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에서 에피네프린 투여의 절대 금기는 없음
	기도 유지 : 혈관 부종에서 압박한 기도방해의 증거가 있는 경우 즉각적인 기도 삽관
	에피네프린 근육주사 : 필요에 따라 5~15분 간격을 반복할 수 있음
	자세 조정 : 환자를 눕히고 하지를 올림
	산소 : 필요에 따라 안면 마스크를 통해 8~10L/min을 제공 또는 최대 100% 산소제공
	생리식염수 : 1~2L를 급속히 정맥주사하고 저혈압을 치료
보조치료	H1 항히스타민제(두드러기와 가려움증 완화)
	모니터링 : 지속적인 비침습적 혈액 모니터링 및 맥박 산소 측정 모니터링을 수행

- 백신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경험하는 환자는 다음 접종을 하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처치 및 추가 상담 필요

(8) 발생 보고

- (아나필락시스 발생 시 이상반응 신고 및 아나필락시스 발생 보고) 아나필락시스양 반응 및 아나필락시스 쇼크 신고 후 반드시 기초보고서 제출(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발생 시 해당)
 - 증상과 징후, 발생 시간(분), 처지내용, 활력징후, 병원방문 여부 등 작성

(9) 심폐소생술(필요시)

- 환자가 의식이 없어지면 환자를 두드리며 큰 소리로 반응을 확인. 환자가 반응이 없으면 주변에 심장정지가 발생했다고 알리고(구급차가 없는 경우에는 119에 신고) 즉시 가슴압박 등 심폐소생술 시작
 - 의료인의 경우 맥박과 호흡을 10초 이내로 동시에 확인해야 하며, 심장정지가 의심되면 맥박을 명확히 확인 못한 경우에도 가슴압박을 실시하도록 권고
 - 맥박 확인 위치는 성인에서 목동맥을 만져서 확인
- 순환 : 가슴압박은 가슴 정중앙(흉골의 아래쪽 1/2지점)을 압박, 성인 5cm 깊이로 분당 100~120회 압박
 - * 영아(1세 미만)는 젖꼭지 연결선 바로 아래의 흉골을 약 4cm 깊이로 압박
 - * 소아(1세부터 8세 미만)는 흉골 아래쪽 1/2 지점을 약 4~5cm 깊이로 압박
- 기도유지 : 머리기울임-턱 들어올리기 방법으로 기도유지
- 인공호흡 : 인공호흡량은 1초에 걸쳐 환자의 가슴이 부풀어 오를 정도(500~600ml, 6~7ml/kg)로 시행
-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 : 가슴압박을 30회 한 후 인공호흡을 2회 실시(30:2)
 - 전문기도가 삽입된 경우에는 가슴압박 중단 없이 10초/1회 간격으로 인공호흡시행

< 8세부터 >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을 30:2로 유지한다.



머리기울임-턱들어올리기 방법

< 1세 미만 >



영아의 가슴압박
(두손가락 가슴압박법)



영아의 가슴압박을 위한 손 모양



양손 감싼 두 엄지 가슴압박법

< 1세부터 8세 미만 >



소아의 가슴압박

※ 출처 : 질병관리청, 한국심폐소생협회, 2020년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2021

- 약물
 - 에피네프린은 모든 심장정지 환자에게 투여
 - 심폐소생술 중에는 1.0mg의 에피네프린을 IV로 투여
 - 1~2L의 균형 정질용액(balanced crystalloid)이나 생리식염수 투여를 고려
- 산소투여 : 심폐소생술 중에는 가능한 100% 산소 투여
- 자동제세동기 사용
 - 심폐소생술 중 자동제세동기가 사용 가능하면 즉시 사용
 - 자동제세동기는 전원을 켜 후 자동제세동기로부터의 음성 신호에 따라 사용(전극 부착-심전도 분석-제세동 순서로 진행)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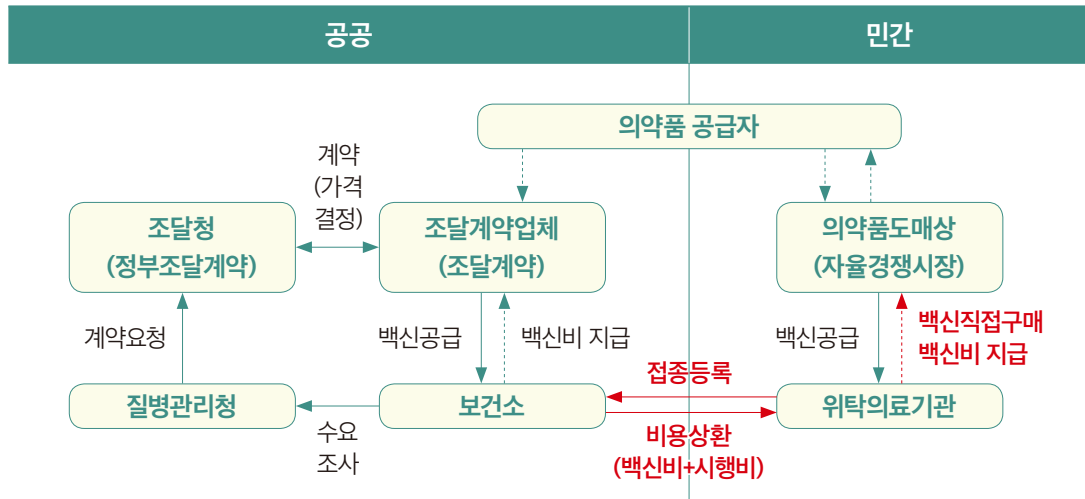
백신관리



가. 백신 공급 방식별 구매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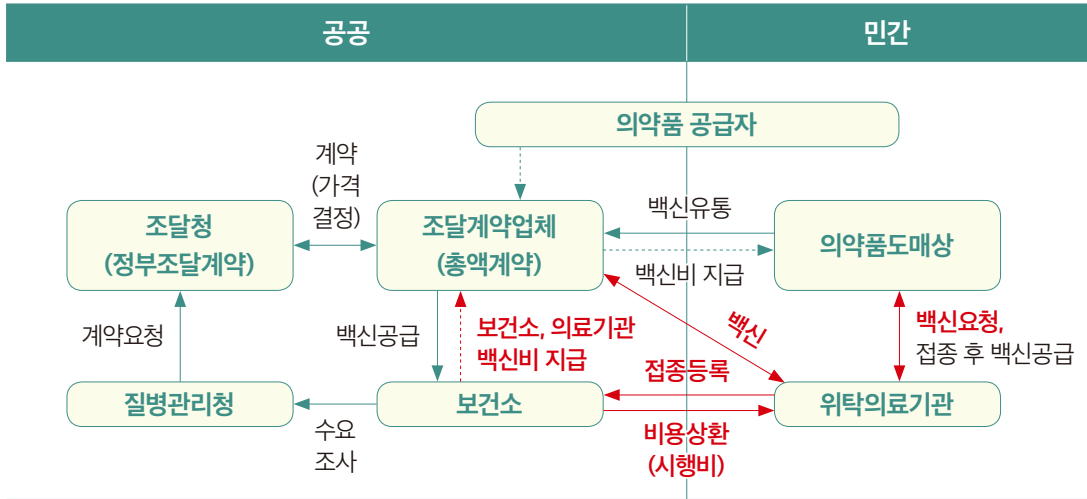
(1) 민간개별구매

- 위탁의료기관이 백신 물량을 개별 확보하고, 정부 사업에 사용된 물량에 대해 정부에서 정한 가격으로 위탁의료기관에 백신 비용을 상환하는 방식
 - 해당 백신 : HepB, DTaP, IPV, Hib, DTaP-IPV, DTaP-IPV/Hib, DTaP-IPV-Hib-HepB, Td, Tdap, MMR, IJEV, LJEV, VAR, RV1·5가, HepA(소아용), IIV(어린이·임신부 대상 의원급 소아 청소년과 소요 물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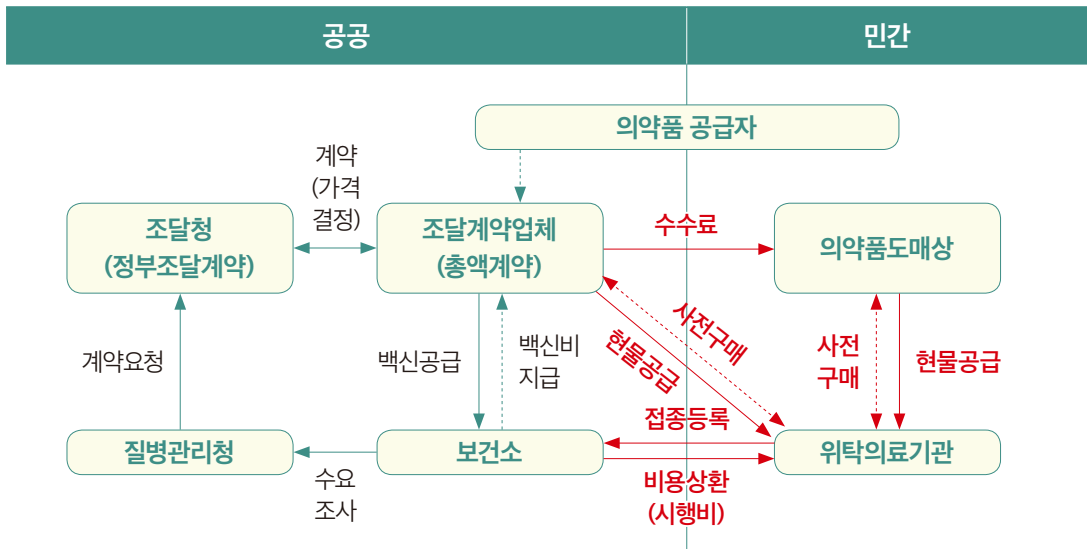


(2) 정부총량구매

- (사후비용차감) 정부에서 특정기간 동안 사용할 물량을 일괄 구매해 확보하고, 위탁의료기관에서 정부사업에 사용한 물량의 백신비에 대해 국가가 업체로 지원, 업체는 위탁의료기관으로 백신 구매비용을 환급하는 방식
 - 해당 백신 : HPV 4가



- (사후현물공급) 정부에서 특정기간 동안 사용할 물량을 일괄 구매해 확보하고, 위탁의료기관에서 정부사업에 사용한 물량을 사후 현물로 공급하는 방식
- 사후현물공급 방식을 통해 백신을 공급받아 보건소에서 조달업체로 백신비를 지급하였으나,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내역 삭제(오접종, 중복접종, 등록오류 등) 시 보건소는 해당 백신비에 대하여 위탁의료기관으로 백신비 환수 처리
 - 해당 백신 : PCV 13:15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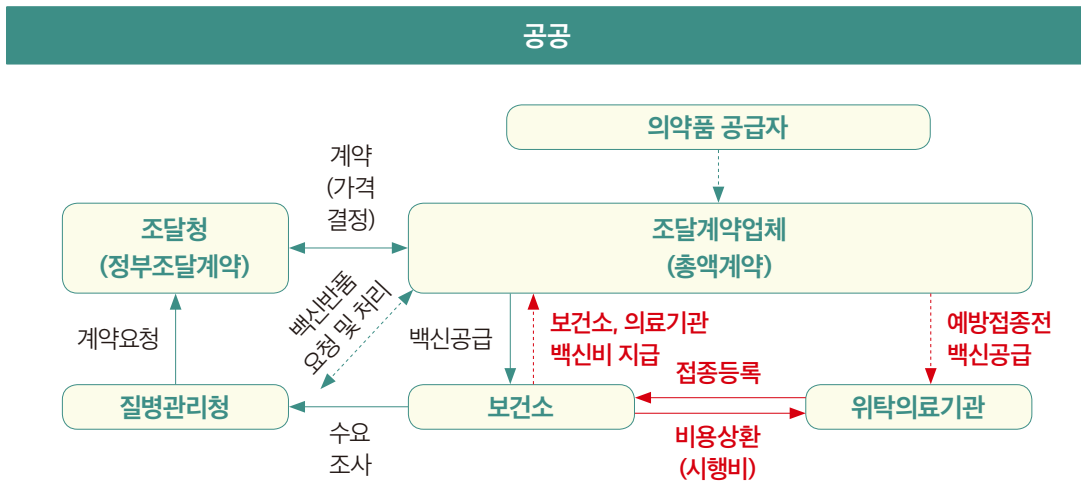


(3) 사전현물공급

- 정부가 사업 물량을 일괄 구매 확보해, 사업 전·후로 정해진 규칙과 방법에 따라 위탁의료기관에 현물 백신을 배분하고 재분배하는 방식
- 사전현물공급 방식으로 공급한 백신을 위탁의료기관의 부주의로 인한 폐기(파손, 유효기간 미관리로 인한 폐기 포함), 오접종, 중복접종 발생 시 의료기관에서 자체 보유한 백신으로 대체하여 접종 또는 반납

※ 대체 접종 또는 반납 불가능할 경우 보건소에서 백신비 환수 처리

- 해당 백신 : BCG(피내용), PPSV, ViCPS, HFRS, IIV(어린이·임신부 대상 의원급 소아청소년과 소요 물량 제외), COVID-19, Mpox



[현물비축] 수급불안 대비 현물비축 사용체계 구축 및 운영

- (대상)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백신으로 집단유행 발생 가능성 및 국외상황(국외 수요 증가 및 생산 여건) 등에 따라 수급 불안의 가능성이 있는 백신
- (구축방식) 국가예방접종 실시를 위한 조달계약에 수요기관으로 공급하는 현물공급물량의 납품과 비축 백신 보관 및 순환교체 관리 구분
- (운영방식) 조달업체는 비축 백신을 보관·관리, 수급불안 발생 시 보건소 등에 백신을 공급

※ 비축 백신 중 유효기간 도래 백신(6개월 이하)에 대해 현물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 전환된 수량만큼 '현물공급 물량'에서 '비축물량'으로 전환하여 비축물량 유지

나. 백신 인수·보관 및 관리

※ 백신 보관 및 관리 가이드라인(2021) 참고

(1)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백신 재고 관리

- PHIS 백신재고관리 메뉴에 입고량·폐기량 등의 수급내역 등록 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으로 자동 전송 및 조회 가능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백신수급관리'의 재고량·사용량 등의 자료는 등록된 입·출고 및 접종내역으로 자동 계산되며, 시스템 연계 시점인 2017. 1. 2. 이후의 자료부터 조회 가능
- ※ 2016년 이전 자료는 별도 메뉴를 통해 조회 가능

(2) 준비사항

- (백신 접종기관 준비사항)
 - 백신 보관·관리·접종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백신 관리담당자)과 예비담당자에 대한 연락처 및 역할 분담
 - 지역 보건당국의 연락처
 - 백신 제조(수입)사 및 공급업체 연락처
 - 백신 보관 장비의 유지, 보수 담당 회사 연락처
 - 백신 냉장고에 사용하는 온도계의 회사 연락처
 - 백신과 첨부 용제의 보관 방법 및 보관 온도에 대한 정리된 내용
 - 백신 보관 냉장고에서 백신의 위치
 - 백신의 보관·관리 시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대처방안(사고 발생 시 보고 절차 등)
 - 백신 재고 관리에 대한 내용
 - 백신 이송 및 인수 절차(제조·수입사 및 공급업체)에 대한 내용
 - 백신별 접종 방법에 대한 내용
 - 백신 접종 후 조치 및 주사기 등의 접종과 관련된 물품의 관리에 대한 내용
 - 사용 백신에 대한 설명서
- (백신 관리담당자 지정) 접종기관에서는 백신의 재고 관리, 현황, 보관 등 백신의 전반적인 관리를 위한 백신 관리담당자를 지정
 - 보통 1명을 관리담당자로 지정하고 관리담당자의 부재 시를 대비한 대체(예비) 담당자 1명을 지정하여 모든 백신이 올바르게 보관되고 취급되는지 확인
 - 백신 관리담당자와 예비담당자는 평상시 충분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 필요



[백신 관리담당자의 구체적 역할]

- 백신 주문, 백신 입고 시 검수 및 관리
- 백신 보관 장비 내부 정리
- 백신 보관 장비 온도설정
- 백신 보관 장비의 온도 변화 관리를 위하여 최소 주 1회 온도 기록지 검토 및 분석 시행
- 백신 보관 장비 문의 닫힘 상태 확인(냉장고 문의 패킹 확인) 및 문에 대한 추가 고정장치 설치 권장 (자물쇠, U자형 고리 등)
- 유효기간이 만료일이 도래하는 백신을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 주 1회 재고 확인 및 재배치
-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 및 첨부용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폐기
- 백신 보관 장비의 온도 유지에 이상이 있을 시 비상대응
- 백신 운반 시 적정온도 유지 및 백신 파손 방지 등 관리·감독
- 국가예방접종 업무위탁 의료기관 자율점검 실시 및 관리(연 2회)
- 백신 보관 장비의 성능 적정성 확인 등 유지 관리

(3) 백신 인수 시 인수자 확인 사항

- 백신 및 첨부된 희석액(첨부 용제, 용해제)의 입고는 백신 관리담당자 또는 예비담당자 입회하에 실시하며, 아래의 사항 확인 필요
 - 백신이 물에 젖었거나 상표가 훼손된 경우, 백신 병(Vial, 바이알)이나 주사기가 균열이 발생한 경우 등 물리적 손상 흔적이 있는지 수송 용기와 내용물 조사
 - ※ 백신의 상표가 훼손되었거나, 백신 파손·불량 등 물리적 손상을 확인한 경우 공급업체에 교환을 요청하며, 파손된 백신의 경우 자체 폐기해서는 안 되며 공급 업체가 회수 전까지 보관
 -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되었거나 곧 만료 예정인 백신이 있는지 확인
 - 냉동 건조(동결 건조) 백신의 경우 백신과 첨부 용제 수량이 동일하게 입고되었는지 확인
 - 냉동 백신의 경우 배송날짜를 기준으로 운송 기한 내에 도착하였는지 확인
 - 백신 콜드체인 온도 감지 표시라벨이 있는 백신의 경우 라벨 확인
 - 운송을 위해 사용된 콜드체인 모니터링 장치를 확인하여 운송 중 온도이탈 등이 있었는지 확인
 - ※ 백신 수송 용기에 들어있는 온도기록계의 온도와 백신 배송 기사가 보유한 단말기를 이용하여 수송 중 온도기록이 적정한지(2~8℃) 확인
 - 생물학적제제 등 출하증명서 및 거래명세서 등의 내역과 내용물이 일치하는지 확인

[참고] 생물학적제제 등 출하증명서

- 백신 판매자(제조업자·수입자·의약품도매상 및 약국개설자)는 백신 수송에 있어서 유통경로와 그 책임한계를 명백히 하기 위해 수송자로 하여금 생물학적제제 등 출하증명서를 지니고 백신을 수송하도록 하고 있다.
- 의료기관 또한 백신 구입 시 제조연월일, 제조회사, 제조번호, 유효기한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제제 등 출하증명서를 확인하고 수령해야 하며, 5년간 보관 필요

- 코로나19 백신의 보건소 → 위탁의료기관 전환배정 시, 코로나19 백신 수령 및 확인양식 작성하여 함께 보관 필요
- 주문 수량과 인수받는 백신의 수량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일치시 인수증에 서명. 일치하지 않는 경우 추가공급 요청 후, 주문한 전체 수량을 인수한 뒤에 인수증에 서명해야 함
- ※ 만약 수량 확인 없이 인수증에 우선 서명하고 백신을 수령하였으나 추후 공급량의 차이를 발견한 경우 추가 공급 불가

(4) 백신 보관 및 관리

- (관리 원칙) 접종기관은 당일의 접종계획을 수립하여 계획한 수량에 대해서만 개봉 및 접종하고, 1바이알 당 접종횟수를 준수하여 잔여백신의 발생을 최소화하며, 백신 관리담당자 및 예비담당자는 정기적인(월 1회)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재고 현황을 점검하고 아래의 내용을 기록, 재배치 및 폐기 여부를 결정
- 백신 및 첨부 용제의 입고량, 사용량, 폐기량, 손상된 수량, 재고량 등
- 유효기간 만료일이 가까운 백신 및 첨부 용제의 수량
- 유효기간이 지나 폐기해야 할 백신 및 첨부 용제의 수량
- 주문한 백신 및 첨부 용제의 수량, 반품 가능한 백신 및 첨부 용제의 수량
- 주문해야 할 백신 및 첨부 용제의 수량
- ※ 재고조사 시 백신의 유효기간 및 보관조건*을 확인,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첨부용제는 접종 대상자에게 투여되지 않도록 즉시 보관 장비에서 제거한 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폐기
- *식약처 허가사항(<https://nedrug.mfds.go.kr>) 참고
- ※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백신과 첨부 용제를 보관 장비 앞쪽으로 옮겨 배치하고, '우선 사용' 표시를 하여 먼저 사용
- “총량구매-사전현물”로 공급받은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백신은 민간개별(자체) 구매한 백신과 분리 보관하여야 하며, 사업 대상 외 사용불가

-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백신 부족 시 보건소는 질병청이 보유한 추가 물량 공급 요청 가능
 - 지자체 사업용 백신을 국가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질병관리청과 사전 협의 후 시스템 내 전환등록 후 사용
- 사전현물 공급 백신의 위탁의료기관에서 사업 시행 이전 접종이 시행된 경우 사용한 백신 및 위탁 의료기관 부주의로 인한 폐기(파손) 백신 등에 대해 보건소-위탁 의료기관 간 협의 하여 위탁 의료기관 자체보유 백신으로 접종 또는 반납 및 백신 비용환수
 - 보건소는 관할 지역 내 위탁 의료기관의 사전현물 공급 백신 입고 사용량, 백신 부족 등 수급 현황 관리 및 폐기 백신 최소화를 위한 백신 재분배 등 실시
- 전배 등의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미협조 시 백신 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백신을 부적절하게 보관할 경우 보건소 판단에 따라 계약 해지 가능

[백신 보관 및 관리계획 수립]

- 일상시 및 비상상황 발생 시를 대비하여 백신 보관 및 관리일지를 작성, 정기적으로 관리
 - 백신 보관 및 관리일지에는 백신과 첨부용제의 도착일시, 수량, 인수자 및 점검자의 이름, 도착 시의 백신과 용해제의 상태(도착 당시 백신을 보관한 용기의 온도, 백신의 손상 등), 인수한 백신의 이름, 각각의 백신의 회사 이름, 백신의 종류(1회용 백신, 다인용 백신, 프리필드 백신), 백신 제조 번호(lot number), 각각 제조번호에 따른 유효기간, 인수한 백신의 수, 사용, 폐기, 손상 백신 수량·남은 수량이 포함되도록 함
- 업무 시간 외에 발생하는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업무 시간 외에도 건물을 출입할 수 있는 방법이 미리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백신 관리담당자를 비롯한 전 직원이 숙지 필요

- (백신 보관 장비(냉장고) 관리) 백신 보관 장비(냉장고/냉동고)는 백신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장비이므로 올바르게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유지·보수
 - ※ 전원 차단에 대비하여 발전기 또는 무정전전원장치를 갖출 것을 권장

[백신 보관 냉장/냉동고 기준]

- 디지털온도제어, 자동 온도기록, 온도이탈 시 알람, 냉장고/냉동고 문잠금 경보기능 등 구비
 - 강력한 팬(Fan) 또는 여러 개의 통풍구가 있는 팬으로 공기 순환을 하여 균일한 온도를 유지하고 온도 적정 범위 이탈 시 적정온도로 빠르게 회복 가능해야 함
 - 백신 보관 온도(일반적으로 2~8℃, 평균 5℃ 유지)를 항상 유지 필요
 - 연중 백신 재고가 가장 많은 경우에도 백신을 정리하여 보관할 수 있고, 온도 안정을 위한 물병, 아이스팩 등을 보관할 수 있을 만큼의 공간 구비



- 냉장과 냉동 기능이 분리된 일반 냉장/냉동고를 사용할 수 있으나, 아래와 같이 냉장/냉동이 일체형으로 문이 하나인 기숙사형 냉장고는 백신을 냉동시킬 우려가 있어 백신 보관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국내에서 유통되는 백신 냉장고 혹은 의료 전용 냉장고 중에는 냉장고 문이 유리로 된 것이 있는데 수두백신(Varicella),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easles, mumps, and rubella, MMR), 로타 바이러스 백신(Rotavirus) 등 약독화 생백신은 일광에 노출되면 백신 역가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
- 새로 설치하거나 수리한 보관 장비의 경우 냉장고는 2일에서 7일, 냉동고는 2일에서 3일 관찰 하며 온도 안정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
 - 매일 최저/최고 온도를 확인하고 기록해야 하며, 온도를 디지털 방식으로 기록할 수 없는 경우 매일 최소 두 번 온도를 확인하고 기록
- 권장하는 설치 조건 - 환기가 잘 되는 방
 - 직사광선, 외부의 온도 영향을 피하기 위하여 창문 부근은 피해야 함
 - 백신 보관 장비의 주변과 윗부분의 여유 공간 확보
 - 백신 보관 장비와 벽 사이는 최소 10cm 이상의 여유 공간
 - 모터 부분을 막는 덮개 등이 없을 것
 - 바닥과 백신 보관 장비 밑 부분은 최소 2.5~5cm 간격을 두고 수평을 유지하며 단단히 고정
 - 냉장/냉동고 문이 부드럽게 열리고 닫히면서 장비 본체와 똑바로 맞도록 설치
 - 대부분의 백신 보관 장비는 20~25℃ 사이의 실내온도에서 가장 잘 작동하므로 실내온도를 확인 하여 설치

- (백신 보관 온도 관리) 백신 보관 장치의 온도는 백신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온도를 준수하며, 냉장고의 온도변동($\pm 3^{\circ}\text{C}$)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냉장고는 $2\sim 8^{\circ}\text{C}$ (평균 5°C), 냉동고는 $-50\sim -15^{\circ}\text{C}$ 유지
 - 백신보관 장비에는 내부 온도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동온도기록장치(DDL, Digital Data Logger)를 부착하여 관리, 장비의 온도기록관리대장, 백신보관용 냉장고 체크리스트(코로나19의 경우 해당) 점검결과를 5년간 보관
 - 자동온도기록장치가 없을 경우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온도를 기록하는 디지털 온도 기록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최고/최저온도를 표시할 수 있는 모델을 선택
 - 그 외 일반 온도계를 이용할 경우, 백신 보관 장비의 온도는 최소 매일 2회 점검(오전 1회, 업무 종료 전/후 1회)하고, 보관 장치의 문에 온도 기록서를 비치하여, 일 2회의 온도 점검 결과를 기록
 - 디지털온도계·자동온도기록계의 온도센서는 냉장고의 내벽이 아닌 백신을 보관하는 장소에 인접하게 설치하여 백신의 온도를 실질적으로 관리
 - ※ 연속 자동 온도 기록 모니터링 장치 또는 디지털 온도 기록기가 있는 냉장고/냉동고를 구비하여 온도 모니터링을 시행하더라도, 해당 장치의 고장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소 매일 2회는 수동 온도 모니터링을 시행
 - ※ 백신 보관 장치의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계로는 “교정 증명서(Certificate of Traceability and Calibration)”를 갖춘 교정된 온도계를 사용하고 사용 중인 온도계는 제조업체의 제안에 따라 주기적 재교정 필요

[자동온도기록장치]

- ①냉장고 내부온도 기록·보관, ②설정 온도 이탈 시 알람*, ③이탈시간 정보 알림, ④문 잠금 불량 경보 등의 기능을 갖추고 백신 보관 장비의 온도이탈 정보를 포함한 장비의 온도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기록, 제공
 - 일정 간격마다 온도 변화를 자동 기록하고, 최고/최저온도, 설정온도 범위 이탈시간 정보 및 경보 알람의 기능 포함
 - 설정온도에서 이탈하는 즉시 설정된 담당자(백신 보관 담당자를 포함한 3명 이상)에게 알람이 갈 수 있어야 하며 백신 관리담당자는 백신 알람기능의 정상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함



- 장비의 온도변동이 심한 경우 소형 스티로폼 박스(보냉팩), 물병 등을 활용한 적정온도 유지 권고

[온도 조절]

- 백신 보관 장비의 온도 조절은 백신 관리담당자 또는 예비담당자만이 수행하며, 실온 변화에 따라 여름 또는 겨울에 온도계를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온도 조절 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
 - 백신 보관 장비의 플러그가 전원에 꽂혀 있는지 확인
 - 백신 보관 장비 내 온도 점검
 - 온도를 재설정하고 최소 30분간 안정되게 한 후 내부 온도를 측정하고 안정화될 때까지 30분마다 온도 재측정
 - 연속 데이터 기록기(해당하는 경우)에서 얻은 온도 데이터를 점검하여 온도 조절 장치의 재설정이 적절한지 확인
 - 냉장고 문에 도어 개스킷(접합부에 끼워 물이나 가스가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는 패킹)에 새는 것이 없는지 확인

- 백신 보관장비 고장·이상 등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하여, 임시로 백신을 보관할 수 있는 물품(아이스박스, 냉매, 에어캡, 온도계 등)을 기관 내 구비

※ 백신 임시보관장비 활용 방법

- 냉동보관 중이던 냉매를 아이스박스에 넣어 백신 보관이 가능한 온도 형성(적정 보관온도는 2~8℃이나 가급적 5℃로 형성할 것을 권고)
- 아이스박스의 온도가 형성되는 동안 수송해야 하는 바이알은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고정(처음 배송 시 사용된 소분박스를 활용)
- 아이스박스의 온도가 일정범위에서 유지됨을 확인 후, 아이스박스의 냉매 위에 에어캡 등을 깔아 냉매와 백신이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 백신 소분상자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아이스박스에 넣은 후, 온도 유지 및 흔들림에 유의하면서 보관
- 백신의 포장을 개봉한 상태로 백신 냉장고에 보관할 경우 오염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사용 직전에 개봉하여 접종
- (백신의 배치 및 정리) 백신은 투여 시점까지 최초 포장 상태를 유지하여 백신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따라 보관
 - 유효기간 만료일이 가까운 백신을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
 - 동일한 종류의 백신은 가능한 같은 위치에 보관하며 비슷해 보이는 백신을 인접하게 보관하는 경우 백신 오접종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슷해 보이는 백신은 가능한 한 인접하게 보관하지 않음

(5) 백신 폐기

- (접종에 사용된 백신(개봉백신) 처리)
 - (접종완료) 백신을 개봉한 후 규정된 도즈 이상 추출하거나, 당일 접종계획에 따라 접종이 완료된 백신 바이알은 약액이 일부 남아있더라도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여 의료폐기물로 분류하여 접종 기관에서 폐기
 - (실온 노출 허용시간 경과) 백신을 개봉한 후 백신별 실온노출 가능시간이 경과한 경우, 해당 백신 바이알은 접종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로 분류하여 접종 기관에서 폐기
- (계절성 예방접종 사업 전 백신 관리)
 - 백신 공급 이후 예방접종 전까지 백신 보관, 취급 중 콜드체인 미준수 등으로 인해 백신 폐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계절성 예방접종 사업 종료 후 백신 처리)
 - (위탁의료기관) “사전현물” 백신은 예방접종사업 종료 시 잔여 백신은 보건소로 반납, 반납 수량은 시스템 재고량과 동일하여야 함
 - ※ 보건소로 반납한 수량이 시스템 재고량보다 적은 경우 보건소-위탁 의료기관 간 협의하여 위탁 의료기관 자체보유 백신으로 반납 및 백신 비용환수 가능
 - (보건소) 잔여 백신은 「물품구매 특수조건」에 따라 조달계약업체로 반품이 가능하므로 임의 폐기 처리하지 않고 조달계약업체로 반품
 - ※ 조달계약업체 미 반품 수량(반품 초과량)은 보건소에서 자체 폐기 실시

II

접종력 관리



1

예방접종 미접종자 관리



- 보건소는 관내 거주하는 사업대상자의 예방접종 미접종자를 확인하여 접종 안내 및 접종 실시 필요
 - 다문화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점관리대상자의 적극적인 접종을 관리
 - 미접종 사유를 파악하여 대상자 특성에 맞는 접종을 안내
 -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 등재된 다국어 예방접종안내서 등을 활용

2

국외 예방접종기록 관리



- 불필요한 예방접종을 방지하기 위해 귀국 시 영문 예방접종증명서*를 지참하도록 안내 후, 서류를 확인하여 보건소에서 전산등록 실시

*접종기관의 직인이나 공식 사인된 서류도 함께 인정

※ 우리나라는 어린이집 입소 또는 초·중학교 입학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국외 예방접종기록의 등록 필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3 (예방접종 여부의 확인), 「학교보건법」 제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 「모자보건법」 제9조에 의한 모자보건수첩 또는 민간에서 발급한 아기수첩은 보호자의 자녀의 접종 내역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예방접종증명서 대체 불가



III

시스템 매뉴얼





1	예방접종 전산등록기관(IR) 권한 신청 및 승인방법	103p
2	예방접종업무 계약 신청방법	108p
3	예방접종내역 전산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124p
4	자율점검 신청 매뉴얼	135p
5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시스템 사용방법	139p
6	HPV 국가예방접종사업 시스템 사용방법	142p
7	65세 이상 폐렴구균 시스템 사용방법	143p
8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시스템 매뉴얼	150p
9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접종 등록 매뉴얼	164p
10	예방접종 교육시스템 사용방법(학습자)	169p
11	전자예진표 사용 매뉴얼(대국민, 의료기관용)	171p

1

예방접종 전산등록기관(IR) 권한 신청 및 승인방법



■ (예방접종기록 전산등록기관(IR) 사용자 권한 신청)

<의료기관 신규가입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첫 페이지의 사용자 가입 신청 → 개인정보수집동의 및 인증서, 사용자정보 등록 → '권한신청' 단계에서 예방접종관리 User 항목 조회* → 승인기관(관할 보건소) 선택 → 예방접종관리 User 권한 신청* → 가입신청 및 권한 승인 후 로그인 → '예방접종관리' 메뉴 클릭 → 의료기관 부가정보(기관 종별구분, 관할 보건소, 사용 의료정보시스템명, 예진의사명, 접종자명, 기관 E-mail, 핸드폰번호 등) 입력

*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참여시 권한신청 단계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팀 User' 권한 신청

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에 접속하여 사용자 가입 신청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 문의: 043-719-8272, 8282(정보화T/F HelpDesk)



<그림 1.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접속 및 사용자 가입 신청>

- ② 개인정보수집동의, 인증서 및 사용자정보 등록 후 '권한신청' 단계에서 '예방접종관리 User' 항목의 '승인기관'을 클릭하여 관할 보건소를 선택하고 권한 신청하여 가입 완료
 ※ 보건소에서 권한신청을 승인하면 권한상태가 '신청중'에서 '승인'으로 변경되고 가입 완료됨

<그림 2. 예방접종관리 User 승인기관 지정 및 권한신청>

<그림 3.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팀 User 승인기관 지정 및 권한신청>

③ 권한 승인 및 가입 완료 후 ‘예방접종관리 → 국가예방접종사업 → 계약·점검관리 → 의료기관 부가정보관리’에서 부가정보 입력

※ (부가정보) 기관 종별구분, 관할 보건소 사용 의료정보시스템명, 예진의사명, 접종자명, 기관 E-mail, 핸드폰번호 등

<그림 4. 예방접종관리 User 권한 승인 후 부가정보 입력>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기존 사용자 권한 신청

<의료기관 기존가입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화면 좌측의 ‘권한정보’ → 좌측 상단 ‘승인신청가능’ 선택 후 조회 → 승인기관(관할 보건소) 선택 → 예방접종관리 User 권한 신청* → ‘권한신청’ 버튼 클릭 → 권한승인 후 로그인 → ‘예방접종관리’ 메뉴 클릭 → 의료기관 부가정보 입력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사용 가능

*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참여시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팀 User’ 권한 신청

※ 의료기관 부가정보 입력 완료 후 관할 보건소와 국가예방접종사업 계약 진행 가능

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화면 좌측의 ‘권한정보’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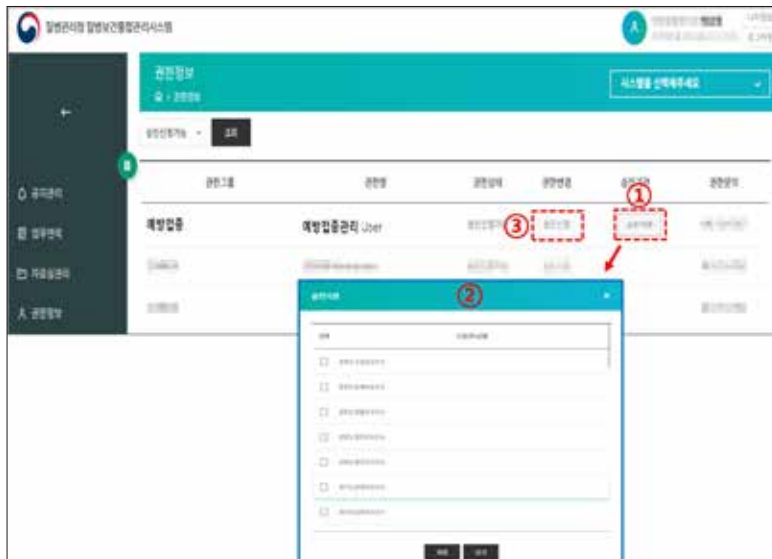
<그림 5. 예방접종관리 User 권한신청(1)>

- ② 권한정보 화면 좌측 상단에서 '승인신청가능'을 선택하고 조회 버튼 클릭 → 권한그룹선택에서 '예방접종' 선택 또는 '예방접종관리 User 권한신청' 항목에서 예방접종관리 User의 '승인기관'을 클릭하여 관할 보건소를 선택한 후 권한 신청

※ 보건소에서 권한신청을 승인하면 권한상태가 '신청중'에서 '승인'으로 변경



<그림 6. 예방접종관리 User 권한신청(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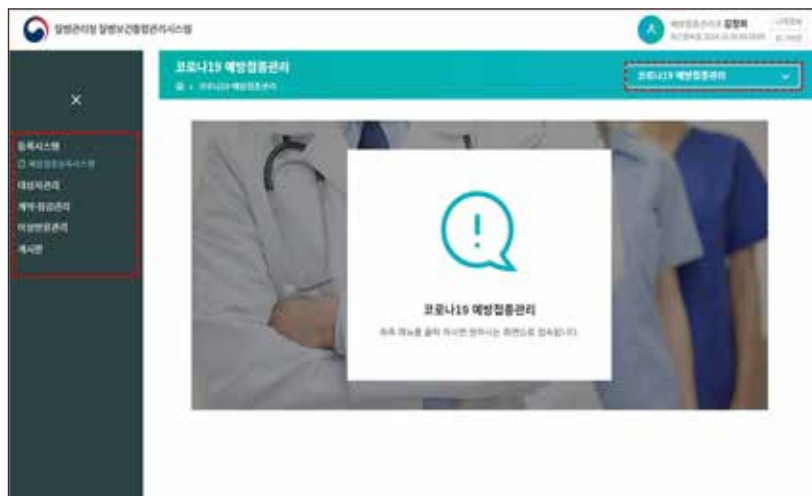
<그림 7. 예방접종관리 User 권한신청(3)>

- ③ 권한 승인 후 '예방접종관리 → 국가예방접종사업 → 계약·점검관리 → 의료기관 부가정보관리'에서 부가정보 입력

※ (부가정보) 기관 종별구분, 관할 보건소 사용 의료정보시스템명, 예진의사명, 접종자명, 기관 E-mail, 핸드폰번호 등



<그림 8. 예방접종관리 User 권한 승인 후 메뉴>



<그림 9.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팀 User 권한 승인 후 메뉴>

2

예방접종업무 계약 신청방법



-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전자계약 '예방접종관리 User 또는 코로나19 권한 승인' 후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에 필요한 서류 제출

(국가예방접종)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관리' → '국가예방접종사업' → '등록시스템'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행정업무' → '계약관리' → '계약신청관리' 메뉴에서 신청(코로나19 예방접종)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코로나19예방접종관리 → '등록시스템' → '예방접종등록시스템' → '기관관리' → '계약관리' → '계약신청관리' 메뉴에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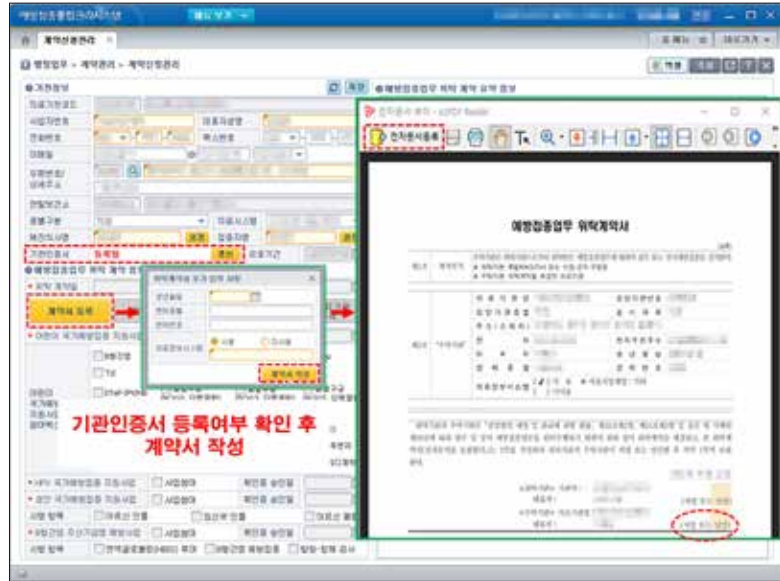
가.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계약 신청

- 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우측 상단의 '예방접종관리'를 선택하고 화면 좌측에서 '국가예방접종사업 > 등록시스템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순으로 클릭합니다.



<그림 1.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들어가기>

- ②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화면 상단 메뉴보기에서 '행정업무 > 계약관리 > 계약신청관리' 메뉴 순으로 클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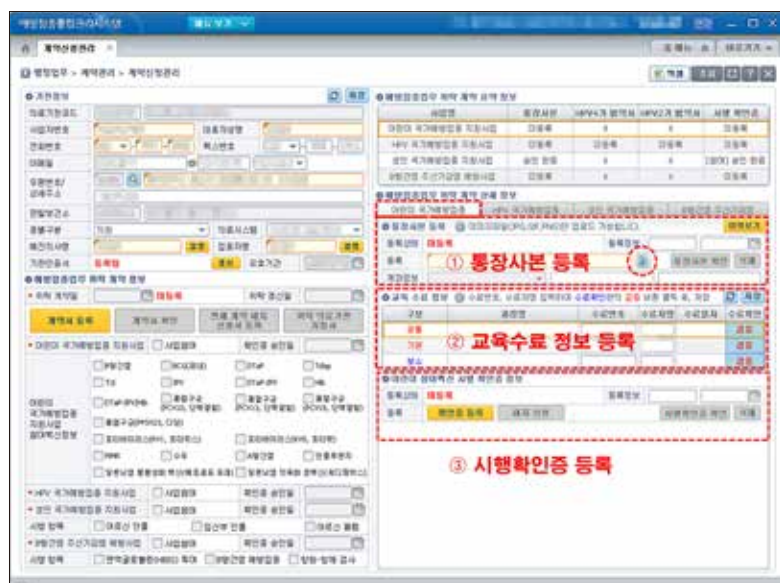


<그림 2. 국가예방접종 계약신청관리.계약서 등록>

③ 의료기관 기본정보 및 기관인증서 등록 유무를 확인하고 [계약서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 대표자 생년월일, 면허종별, 면허번호 등 입력 후 [계약서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전자문서 열기' 팝업창이 보이고 노란색 [전자문서 열기] 버튼을 클릭하면 위탁계약서가 새창으로 나타남
- 위탁계약서 내용 확인 후 서명(기관인증서) 및 문서 좌측 상단 [전자문서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최종 제출

※ 각 사업별 계약 관련 문서는 보건소 '승인완료' 후 사업 참여 및 비용상환 신청 가능



<그림 3. 국가예방접종 계약신청관리.어린이 국가예방접종>

④ (위탁사업 참여)어린이 국가예방접종)

- 통장사본 등록 : 폴더모양 아이콘 클릭하여 통장사본 이미지 업로드
- 교육 수료 정보 : 수료번호(10자리)와 수료자명 입력 후 검증, 수료확인에서 '수료'로 확인되면 [저장] 버튼 클릭
- 어린이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 정보: [확인증 등록] 버튼 클릭하여 참여 백신 정보를 체크하고 서명(기관인증서) 후 [전자문서 등록] 버튼 클릭

〈그림 4. 국가예방접종 계약신청관리.B형간염 주산기감염〉

⑤ (위탁사업 참여.B형간염 주산기감염)

- 통장사본 등록 : 폴더모양 아이콘 클릭하여 통장사본 이미지 업로드
- 교육 수료 정보 : 수료번호(10자리)와 수료자명 입력 후 검증, 수료확인에서 '수료'로 확인되면 [저장] 버튼 클릭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확인증 정보 : [확인증 등록] 버튼 클릭하여 참여 백신 정보를 체크하고 서명(기관인증서) 후 [전자문서 등록] 버튼 클릭

<그림 6. 국가예방접종 계약신청관리_성인 국가예방접종>

① (위탁사업 참여) 성인 국가예방접종

- 통장사본 등록 : 폴더모양 아이콘 클릭하여 통장사본 이미지 업로드
 - 교육 수료 정보 : 수료번호(10자리)와 수료자명 입력 후 검증, 수료확인에서 '수료'로 확인되면 [저장] 버튼 클릭
 - 성인 국가예방접종 확인증 정보 : [확인증 등록] 버튼 클릭하여 참여 백신 정보를 체크하고 서명(기관인증서) 후 [전자문서 등록] 버튼 클릭
- ※ 성인국가예방접종 :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임신부 인플루엔자, 65세 이상 폐렴구균

■ 위탁계약 갱신(갱신기간 5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관리 → 국가예방접종사업 → 등록시스템 → 예방접종통합 관리시스템 상단 메뉴보기 → 행정업무 → 계약관리 → 계약신청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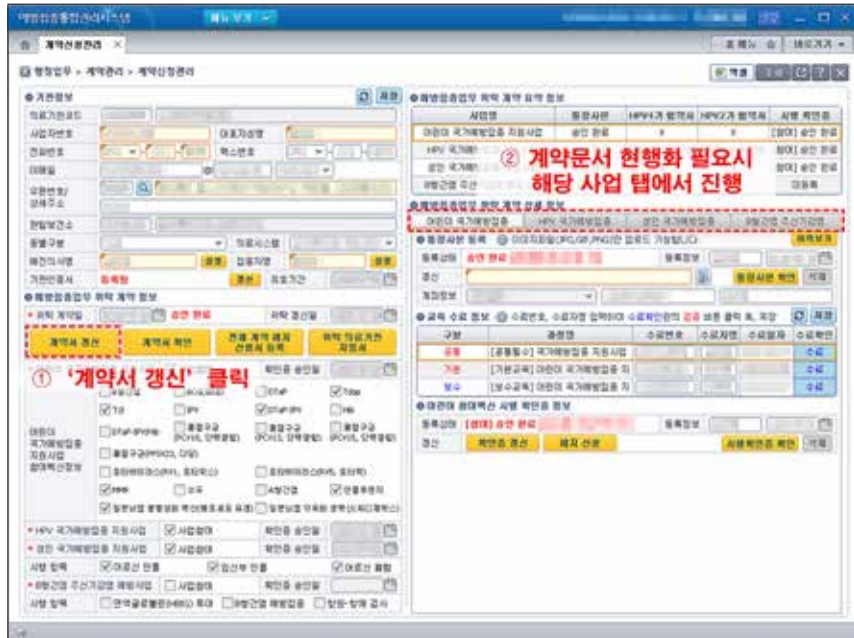
① (계약서 갱신)

- [계약서 갱신] 버튼을 클릭하고 대표자 생년월일, 면허종별, 면허번호 등 입력 후 [계약서 작성] 버튼을 클릭
- '전자문서 열기' 팝업창에서 노란색 [전자문서 열기] 버튼을 클릭하면 위탁계약서가 새창으로 나타남

- 위탁계약서 내용 확인 후 서명(기관인증서) 및 문서 좌측 상단 [전자문서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최종 제출

② (참여 사업별 계약문서 현황화)

- 현재 참여 중인 사업에서 계약서 이외 문서 현황화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 탭에서 교육수료 정보 입력 및 관련 문서 제출



<그림 7. 위탁계약 갱신>

■ 위탁계약 해지

① 참여사업 전체 계약 해지

- [전체 계약 해지 신청서 등록] 버튼 클릭하여 해지사유 입력 후 [신청서 작성] 버튼 클릭
- '전자문서 열기' 팝업창이 보이고 노란색 [전자문서 열기] 버튼을 클릭하면 '계약 해지 신청서'가 새창으로 나타남
- 해지 내용 확인 후 서명(기관인증서) 및 좌측 상단 [전자문서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최종 제출
- ※ 전자문서등록 완료 즉시, 참여 중인 예방접종 위탁사업이 모두 계약 해지되므로 작성 전, 전산등록 누락된 접종이 없는지 재확인 필요(해지 후 전산등록 누락 건 비용청구 불가)



<그림 8. 위탁계약 해지신청(1)-참여사업 전체 계약 해지>

② 참여사업 중 일부 계약 해지-어린이 국가예방접종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탭에서 확인증 정보의 [해지 신청] 버튼 클릭
- ‘전자문서 열기’ 팝업창이 보이고 노란색 [전자문서 열기] 버튼을 클릭하면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이 새창으로 나타남(시행여부는 자동으로 ‘시행하지 않음’으로 체크되어 보임)
- 시행확인증 내용 확인 후 서명(기관인증서) 및 좌측 상단 [전자문서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해지 신청

※ 계약해지 후 전산등록 누락 건 비용청구 불가하므로 해지 전, 누락접종 여부 확인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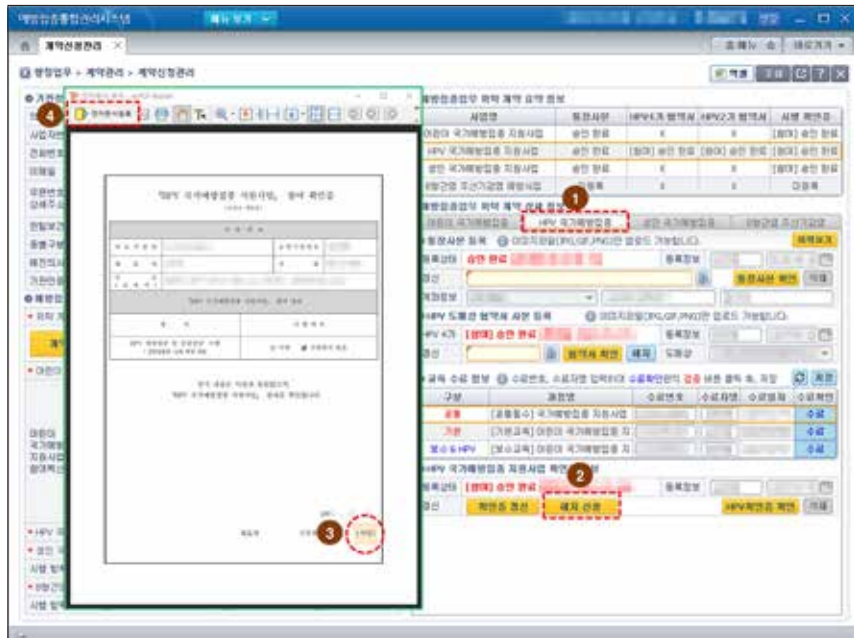


<그림 9. 위탁계약 해지신청(2)-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사업 해지>

③ 참여사업 중 일부 계약 해지-HPV 국가예방접종

- 'HPV 국가예방접종' 탭에서 확인증 정보의 [해지 신청] 버튼 클릭
- '전자문서 열기' 팝업창이 보이고 노란색 [전자문서 열기] 버튼을 클릭하면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이 새창으로 나타남(시행여부는 자동으로 '시행하지 않음'으로 체크되어 보임)
- 시행확인증 내용 확인 후 서명(기관인증서) 및 좌측 상단 [전자문서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해지 신청

※ 계약해지 후 전산등록 누락 건 비용청구 불가하므로 해지 전, 누락접종 여부 확인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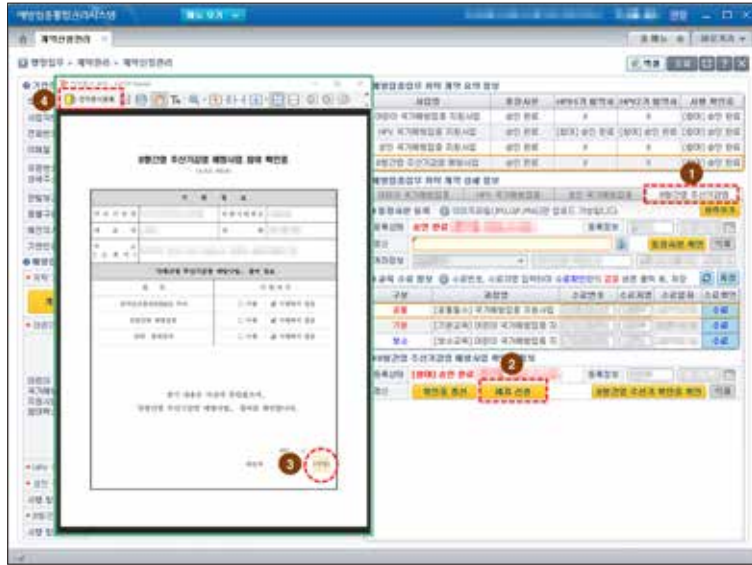


〈그림 10. 위탁계약 해지신청(3)-HPV 국가예방접종 사업 해지〉

④ 참여사업 중 일부 계약 해지-B형간염 주산기감염

- 'B형간염 주산기감염' 탭에서 확인증 정보의 [해지 신청] 버튼 클릭
- '전자문서 열기' 팝업창이 보이고 노란색 [전자문서 열기] 버튼을 클릭하면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이 새창으로 나타남(시행여부는 자동으로 '시행하지 않음'으로 체크되어 보임)
- 시행확인증 내용 확인 후 서명(기관인증서) 및 좌측 상단 [전자문서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해지 신청

※ 계약해지 후 전산등록 누락 건 비용청구 불가하므로 해지 전, 누락접종 여부 확인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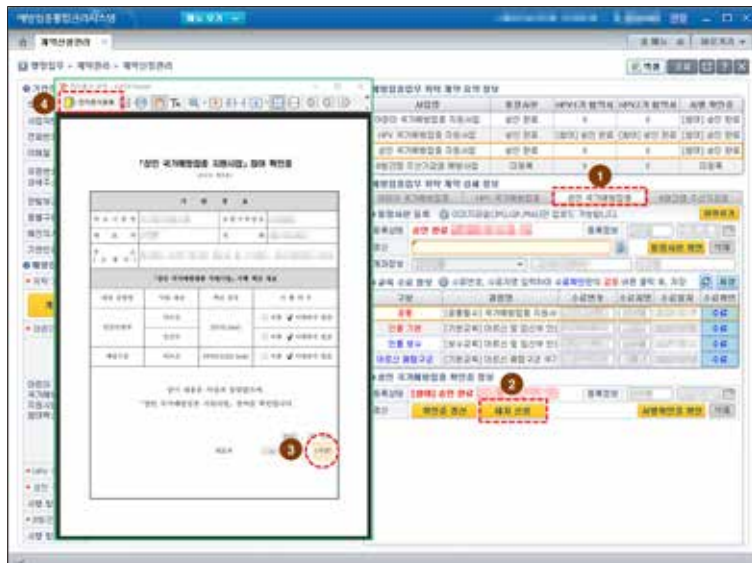


<그림 11. 위탁계약 해지신청(4)-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접종 사업 해지>

⑤ 참여사업 중 일부 계약 해지-성인국가예방접종

- '성인 국가예방접종' 탭에서 확인증 정보의 [해지 신청] 버튼 클릭
- '전자문서 열기' 팝업창이 보이고 노란색 [전자문서 열기] 버튼을 클릭하면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이 새창으로 나타남(시행여부는 자동으로 '시행하지 않음'으로 체크되어 보임)
- 시행확인증 내용 확인 후 서명(기관인증서) 및 좌측 상단 [전자문서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해지 신청

※ 계약해지 후 전산등록 누락 건 비용청구 불가하므로 해지 전, 누락접종 여부 확인 필요



<그림 12. 위탁계약 해지신청(5)-성인 국가예방접종 사업 해지>

나. 코로나19 예방접종업무 계약 신청, 갱신 및 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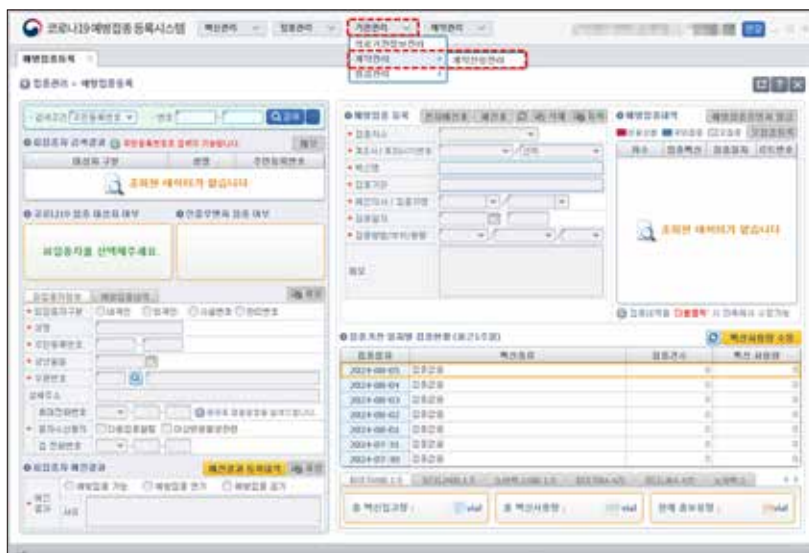
■ 위탁계약 신청

- 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우측 상단의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를 선택 화면 좌측에서 등록시스템 > 예방접종등록시스템 순으로 클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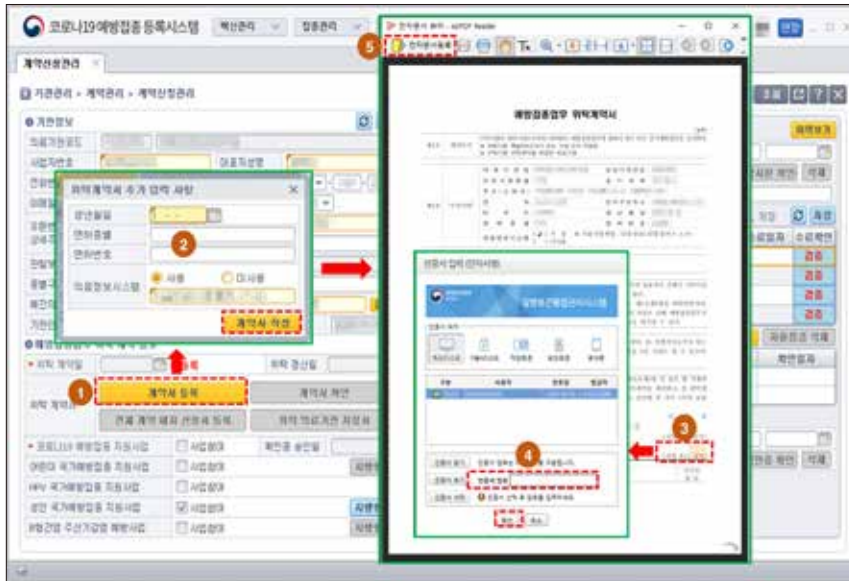
<그림 1. 코로나19 예방접종등록시스템 들어가기>

- ② 코로나19 예방접종등록시스템 화면 상단 메뉴에서 '기관관리 > 계약관리 > 계약신청관리' 순으로 클릭합니다.



<그림 2. 의료기관 계약신청관리>

- '전자문서 열기' 팝업창이 보이고 노란색 [전자문서 열기] 버튼을 클릭하면 '예방접종 업무 위탁계약서'가 새창으로 나타남
-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하단의 [서명] 부분 클릭
- 인증서 암호 입력 후 [확인] 버튼을 선택하고 좌측 상단의 [전자문서 등록]을 클릭하면 계약서 작성 완료



<그림 3. 위탁계약서 작성>

- ④ ‘통장사본 등록’에서 파란색 폴더 아이콘 클릭 후 통장사본 이미지를 업로드합니다.
※ 통장사본 이미지는 5MB 이하의 파일 확장자(JPG, PNG, GIF)만 허용합니다.
- ⑤ ‘교육수료정보’에서 해당 교육 수료정보와 수료자명 입력 후 [검증]을 선택하고, ‘수료확인’란에서 ‘수료’ 상태를 확인합니다. 수료정보 최종 반영을 위해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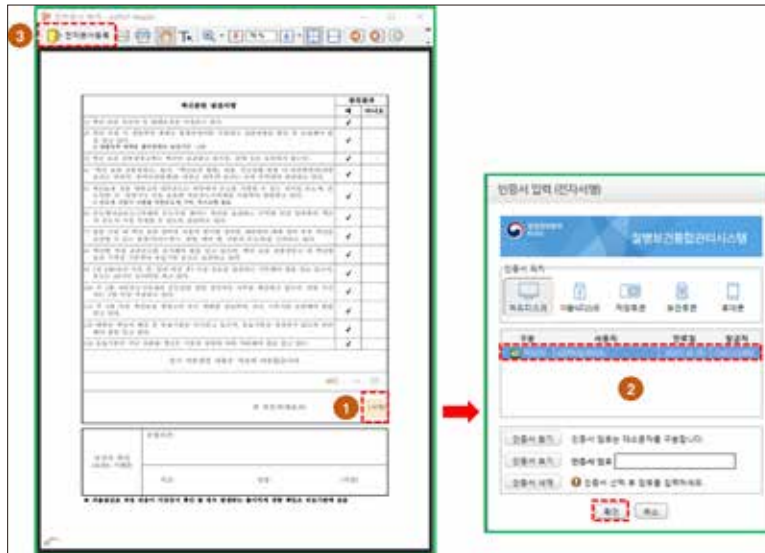
<그림 4. 통장사본 및 교육수료정보 등록>

⑥ [자율점검표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 예방접종업무 담당 인력 정보와 점검사항을 입력하고 [서명 및 제출] 버튼 클릭
- '전자문서 열기' 팝업창이 보이고 노란색 [전자문서 열기] 버튼을 클릭하면 '예방접종 업무 위탁계약서'가 새창으로 나타남

<그림 5. 자율점검표 등록(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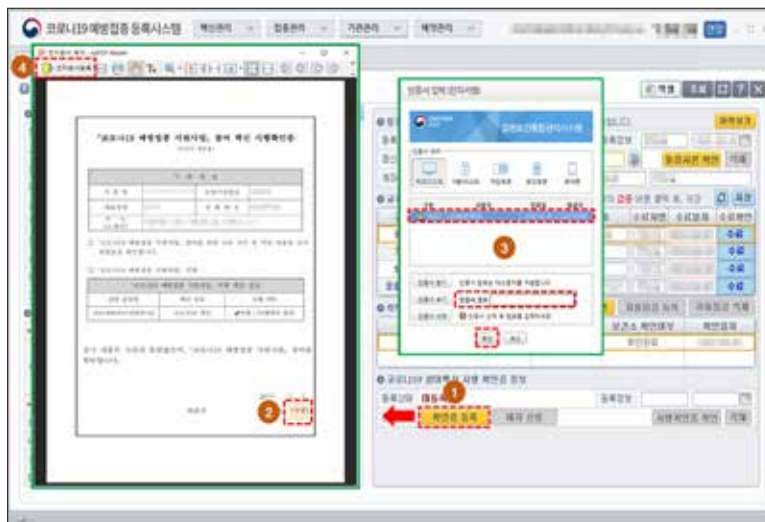
- 작성한 자율점검표 내용이 PDF 문서로 나타나며 내용 확인 후 우측 하단의 [서명] 버튼 클릭
- 인증서 암호 입력 후 [확인] 버튼을 선택하고 최종 제출을 위해 점검표 좌측 상단의 [전자 문서등록] 버튼 클릭



<그림 6. 자율점검표 등록(2)>

⑦ [시행확인증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시행확인증 내용을 확인하고 하단의 [서명] 부분 클릭
- 인증서 암호 입력 후 [확인] 버튼을 선택하고 시행확인증 좌측 상단의 [전자문서등록]을 클릭 하면 시행확인증 제출 완료



<그림 7. 시행확인증 등록>

■ 위탁계약 갱신(갱신기간 5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 → 등록시스템 → 예방접종등록시스템 → 코로나19 예방접종등록시스템 → 기관관리 → 계약관리 → 계약승인관리

① (계약서 갱신)

- [계약서 갱신] 버튼을 클릭하고 대표자 생년월일, 면허종별, 면허번호 등 입력 후 [계약서 작성] 버튼을 클릭
- '전자문서 열기' 팝업창에서 노란색 [전자문서 열기] 버튼을 클릭하면 위탁계약서가 새창으로 나타남
- 위탁계약서 내용 확인 후 서명(기관인증서) 및 문서 좌측 상단 [전자문서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최종 제출

② (참여 사업 계약 정보 현행화)

- 교육수료 정보 등 계약 정보 현행화가 필요한 경우 해당 항목에서 관련 정보 변경

<그림 8. 위탁계약 갱신>

■ 위탁계약 해지

① 참여사업 전체 계약 해지

- [전체 계약 해지 신청서 등록] 버튼 클릭하여 해지사유 입력 후 [신청서 작성] 버튼 클릭
- '전자문서 열기' 팝업창이 보이고 노란색 [전자문서 열기] 버튼을 클릭하면 '계약 해지 신청서'가 새창으로 나타남
- 해지 내용 확인 후 서명(기관인증서) 및 좌측 상단 [전자문서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최종 제출

※ 전자문서등록 완료 즉시, 참여 중인 예방접종 위탁사업이 모두 계약 해지되므로 작성 전, 전산등록 누락된 접종이 없는지 재확인 필요(해지 후 전산등록 누락 건 비용청구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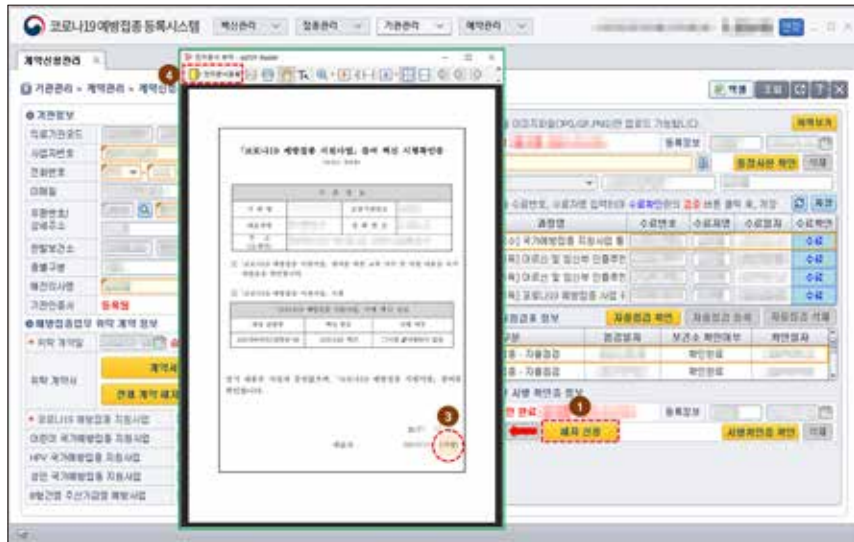


<그림 9. 위탁계약 해지신청(1)-참여사업 전체 계약 해지>

② 참여사업 중 코로나19 예방접종 해지

- '코로나19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 정보'에서 [해지 신청] 버튼 클릭
- '전자문서 열기' 팝업창이 보이고 노란색 [전자문서 열기] 버튼을 클릭하면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이 새창으로 나타남(시행여부는 자동으로 '시행하지 않음'으로 체크되어 보임)
- 시행확인증 내용 확인 후 서명(기관인증서) 및 좌측 상단 [전자문서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해지 신청

※ 계약해지 후 전산등록 누락 건 비용청구 불가하므로 해지 전, 누락접종 여부 확인 필요



<그림 10. 위탁계약 해지신청(2)-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해지>

3

예방접종내역 전산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접속

- 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하며, 처음 접속할 경우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 예방접종관리 → 국가예방접종사업 → 등록시스템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클릭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구성

- ① 의료기관 기본정보 ② 당월 비용상환내역 ③ 신생아 임시번호 접종자의 인적정보 변경내역 및 행안부 오류내역 ④ 예방접종등록 메뉴 바로가기 ⑤ 최근 6개월간의 비용상환 내역 ⑥ 공지사항 ⑦ 즐겨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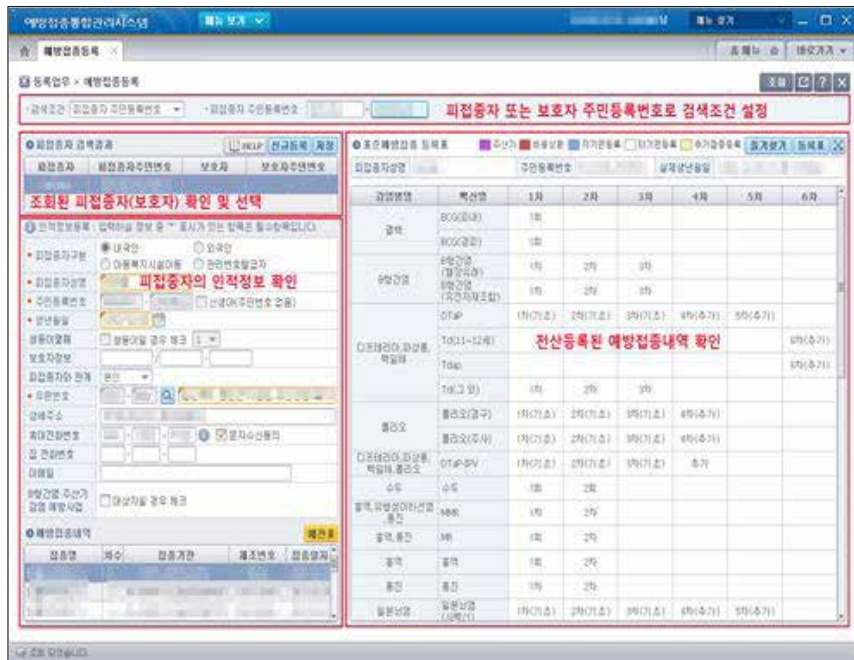


<그림 1.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홈 화면>

나. 예방접종내역 등록

■ ‘예방접종등록’ 메뉴로 이동

- 상단 '메뉴보기' → '등록업무' → '예방접종등록' 또는 좌측의 '예방접종등록 바로가기'



<그림 2. 예방접종등록 화면>

- ② 피접종자의 인적정보를 등록하며, 인적정보가 등록된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피접종자 인적정보를 조회합니다.

※ 피접종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집전화번호)는 반드시 입력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생아의 경우 보호자(母를 원칙으로 함) 인적정보를 함께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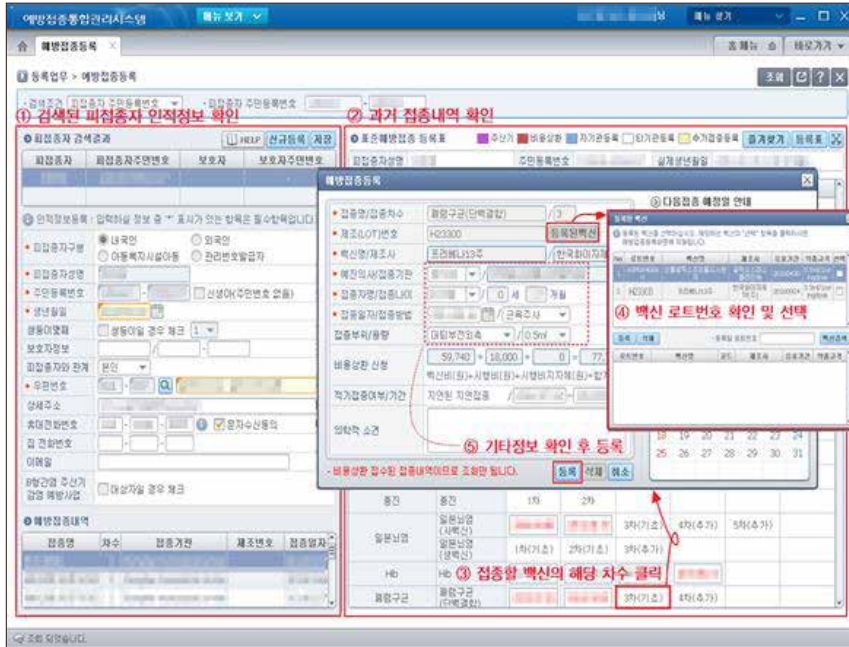
※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외 인적정보가 변경된 경우 수정 가능

※ 휴대전화번호 등록 시 ‘문자수신동의’ 항목을 체크할 경우 다음접종 사전 안내문자 자동 전송

- ③ ‘표준예방접종 등록표’의 등록할 백신 차수를 선택하고 접종기록을 등록합니다.

※ 접종 전 반드시 과거접종 내역 확인 필수

- ④ 팝업창에서 ‘등록된 백신’을 선택하고, 기타정보(접종일자, 접종방법, 접종부위, 용량 등)를 확인한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등록 완료시 접종일자가 표기됨).



<그림 3. 예방접종등록(접종정보)>

※ 접종내역 등록 시 참고사항

- 재접종(동일한 백신, 동일한 접종차수) 기록 등록은 해당 접종차수에 마우스를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
- DTaP 접종이 지연된 7세 이상 대상자가 Td백신으로 접종한 경우에 'Td(그 외)'란에 등록

다. 비용상환 신청

① 접종기록 등록시 생성된 팝업창에서 '비용상환 신청' 항목의 비용을 확인하고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비용상환 신청됩니다.

※ 비용상환 신청금액은 접종별로 자동입력되나, 파내용 BCG 백신(다인용)의 경우 백신을 개봉하고 첫 번째 시행한 건에 대해 백신비 청구

※ 비용상환 신청되면 '표준예방접종 등록표'의 해당 접종기록에 빨간색 날짜로 표시됨

<그림 4. 비용상환 신청(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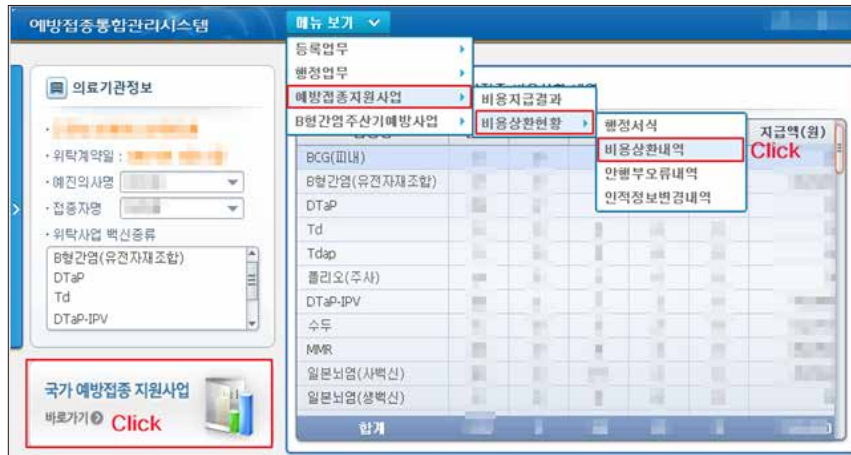
- ② 동일백신, 동일차수의 재접종에 대한 점종기록은 해당 점종차수 위치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중복등록하며, 타당한 의학적 소견으로 재접종할 경우 '의학적 소견'의 사유를 선택·기입합니다.

※ 의학적 사유가 타당한 경우 비용상환 가능

<그림 5. 비용상환 신청(2) - 의학적 소견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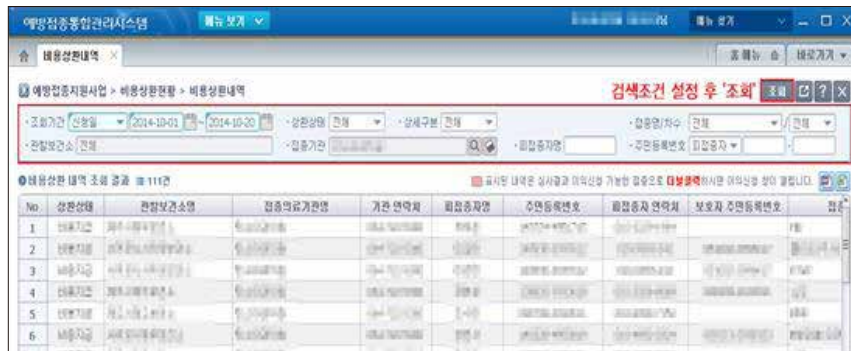
라. 비용상환 신청내역 확인

- ① 메뉴보기 → 예방접종지원사업 → 비용상환현황 → 비용상환내역 또는 메인화면 좌측의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림 6. 비용상환 신청내역 확인(1)>

- ② '비용상환내역'에서 상환신청내역의 심사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7. 비용상환 신청내역 확인(2)>

- ③ 상환불가(분홍색으로 표시)내역의 이의신청은 해당 내역을 더블클릭합니다.

※ 이의신청은 '상환불가'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 가능('지급취소'건은 재심사 불가)



<그림 8. 비용상환 신청내역 확인(3)-이의신청>

마. 비용지급결과 확인

- ① '메뉴보기 → 예방접종지원사업 → 비용지급결과'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특정 보건소의 지급내역 조회는 조회 결과의 해당 보건소를 더블클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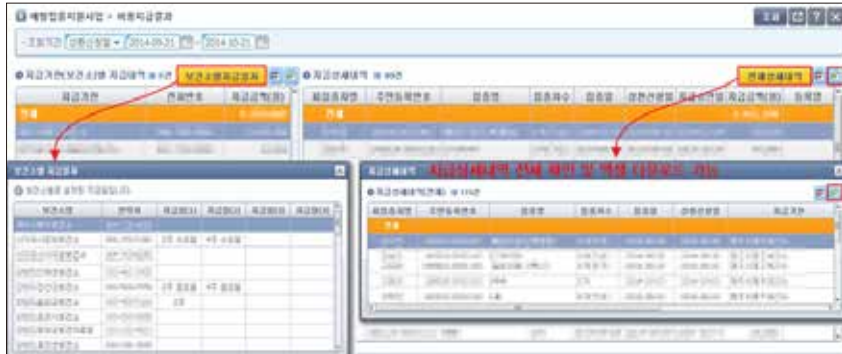
※ 지급승인일: 보건소에서 해당의료기관에게 비용지급을 완료한 날짜



<그림 9. 비용지급결과 확인>

- ② 보건소별 비용지급일은 '보건소별 지급일자'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며, '전체상세 내역'을 클릭하면 설정된 기간 내 지급된 전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접종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비용상환 청구



<그림 10. 보건소별 비용지급일정 및 전체상세내역 조회>

바. 주민등록번호 인증 오류내역 수정

‘메뉴보기 → 예방접종지원사업 → 비용상환현황 → 행안부오류내역’ 또는 메인화면 우측 ‘행안부 오류내역’에서 수정합니다.



<그림 11. 행안부 오류내역>



<그림 12. 오류 인적정보 수정>

사. 다음 예방접종 문자 안내 설정

① 메인화면 오른쪽 상단 '바로가기 → 문자알림서비스'에서 다음 예방접종 문자알림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등록' 메뉴에서 인적조회 후 바로가기를 통한 문자서비스 메뉴이동 시 조회된 해당 인적에 대한 문자 알림 설정가능

※ 다음 예방접종일정 미입력 시, 앞차수 접종일을 기준으로 다음 차수 접종당일(10:00 이후)에 접종시기임을 환기 하는 문자가 자동 발송

<그림 13. 다음 예방접종 사전알림 서비스(1)>

② 문자 발송 예약 및 전송 이력 확인은 '메뉴보기' → '행정업무' → '문자관리' → '예약문자관리', '문자전송이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14. 다음 예방접종 사전알림 서비스(2)>

아. 행정서식

- ① ‘메뉴보기 → 행정업무 → 행정서식’에서 예방접종 실시대장을 다운로드하거나, 연간지급완료 내역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림 15. 행정서식-예방접종 실시대장>

- ② ‘메뉴보기 → 예방접종지원사업 → 비용상환현황 → 행정서식’에서 예방접종 비용상환 내역 등 행정서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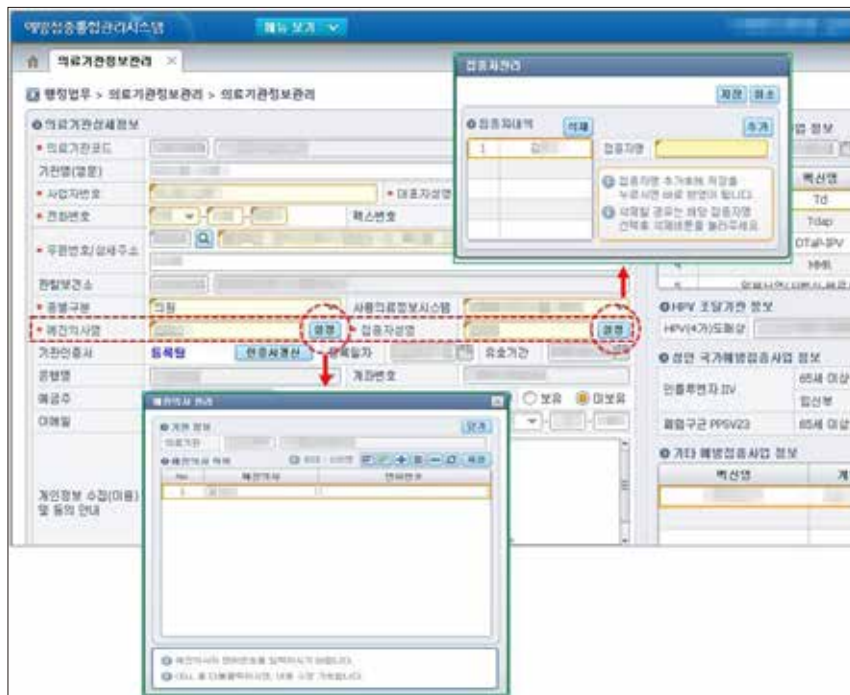


<그림 16. 행정서식-비용상환 현황>

자. 의료기관 정보 관리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 → 예방접종관리 → 국가예방접종사업 → 등록시스템 →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 상단 메뉴보기 → 행정업무 → 의료기관정보관리 → 의료기관정보관리’ 메뉴에서 의료기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상세정보’란에서 예진의사명과 접종자명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위탁계약 관련 사항(계약번호, 확인증 갱신, 교육수료정보 업데이트 등)은 계약신청관리 메뉴에서만 처리 가능



〈그림 17. 의료기관 정보〉

차. 부가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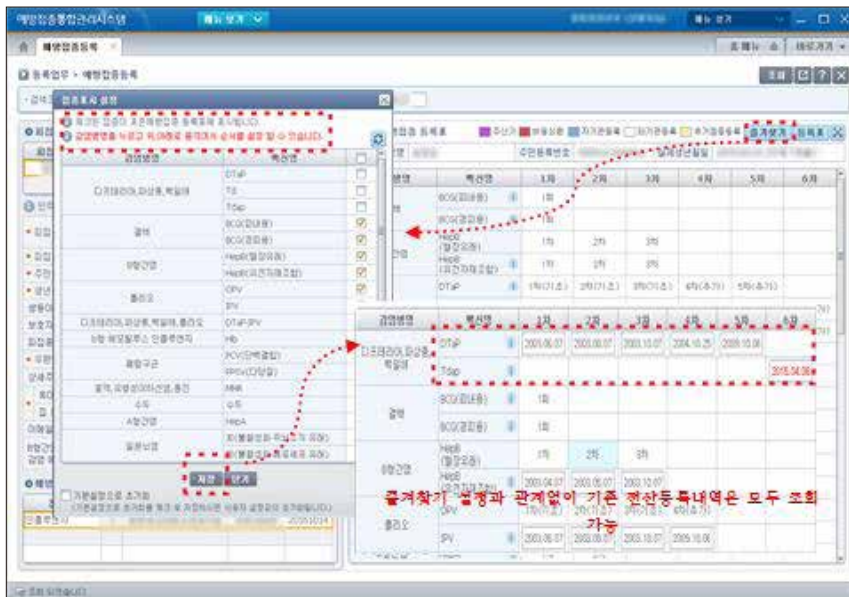
- ① ❶ 여러 창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❷ 단일창('내보내기' 또는 'F3키')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림 18. 부가기능(1)>

- ② 실제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는 백신만 설정하는 방법은 '예방접종등록 → 즐겨찾기'에서 백신을 선택하고, 위치를 조정하면 백신 배열 순서도 변경됩니다.

※ 즐겨찾기 기능 설정과 관계없이 타 기관에서 등록한 접종내역은 모두 확인 가능



<그림 19. 부가기능(2)>

4

자율점검 신청 매뉴얼



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우측 상단의 '예방접종관리'를 선택하고 화면 좌측에서 '국가예방접종사업 > 등록시스템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순으로 클릭합니다.



<그림 1.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들어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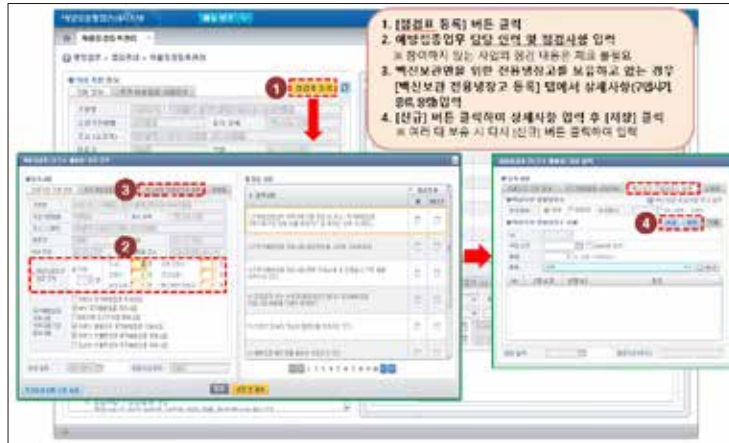
- ②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화면 상단 메뉴보기에서 '행정업무 > 점검관리 > 자율점검등록관리' 메뉴 순으로 클릭합니다.



<그림 2. 자율점검-자율점검표 등록 메뉴 경로>

③ [점검표 등록] 버튼을 클릭하고 점검 내용을 입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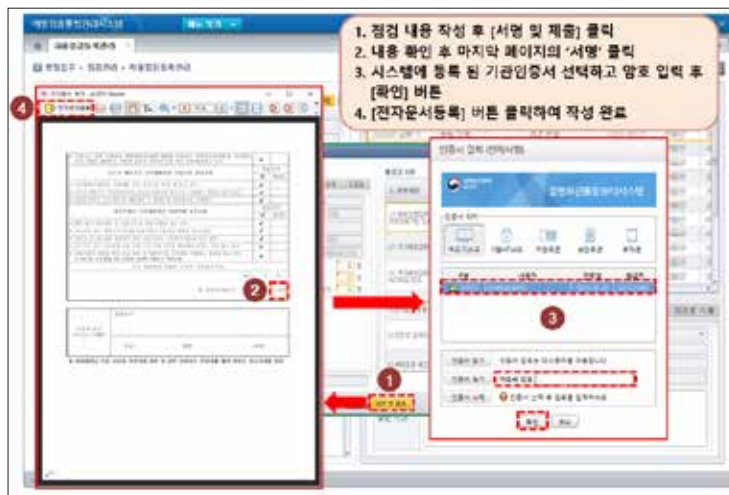
- '자율점검표 자료 입력' 창에서 예방접종업무 담당 인력 입력 및 점검 사항 체크
- 백신보관 전용 냉장고를 보유하고 있다면 냉장고 정보(구입시기, 종류, 용량 등) 입력
- ※ 예방접종업무 담당 인력에서 '백신관리 전담자' 인원은 총인원에 합산되지 않음
- ※ 백신보관 전용 냉장고 여러 대 보유 시 [신규] 버튼 클릭하여 입력



<그림 3. 자율점검-자율점검표 작성 1>

④ [서명 및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 '전자문서 열기' 팝업창이 보이고 노란색 [전자문서 열기]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한 자율점검표가 새창으로 나타남
- '서명'에서 기관인증서로 서명하고 점검표 좌측 상단의 [전자문서등록] 버튼 클릭
- ※ '서명' 버튼이 보이지 않는 경우 모니터 해상도를 권장 설정으로 변경 후 작성



<그림 4. 자율점검-자율점검표 작성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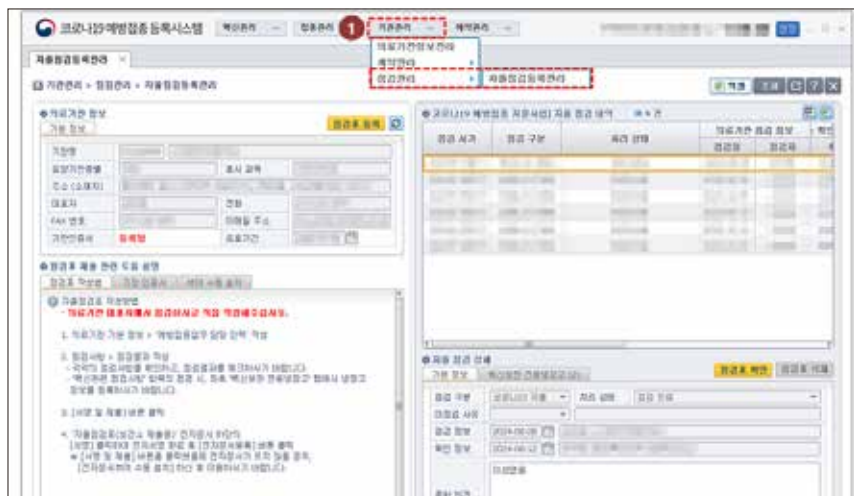
나. 코로나19 예방접종등록시스템

- 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우측 상단의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를 선택 화면 좌측에서 등록시스템 > 예방접종등록시스템 순으로 클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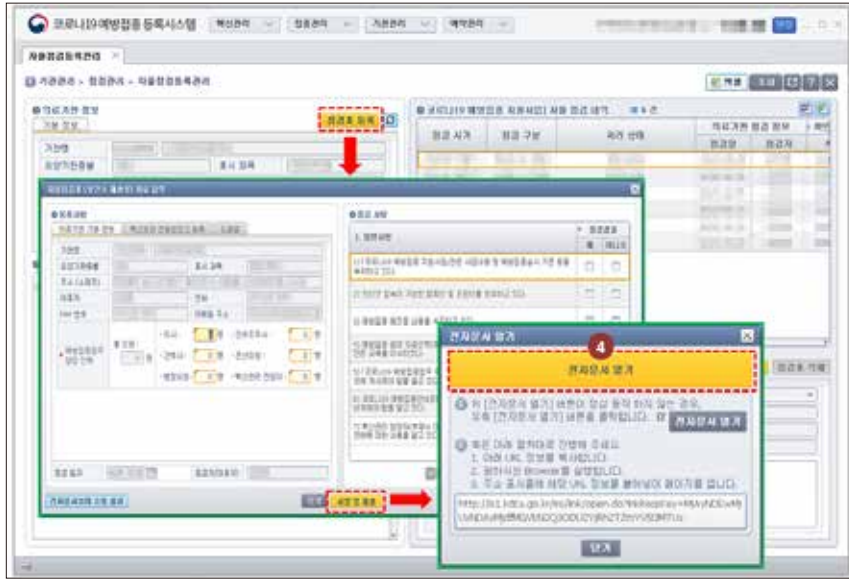
<그림 1. 자율점검-코로나19 자율점검표 작성 경로>

- ② 코로나19 예방접종등록시스템 화면 상단 메뉴에서 '기관관리 > 점검관리 > 자율점검등록관리' 순으로 클릭합니다.



<그림 2. 자율점검-코로나19 자율점검표 등록 메뉴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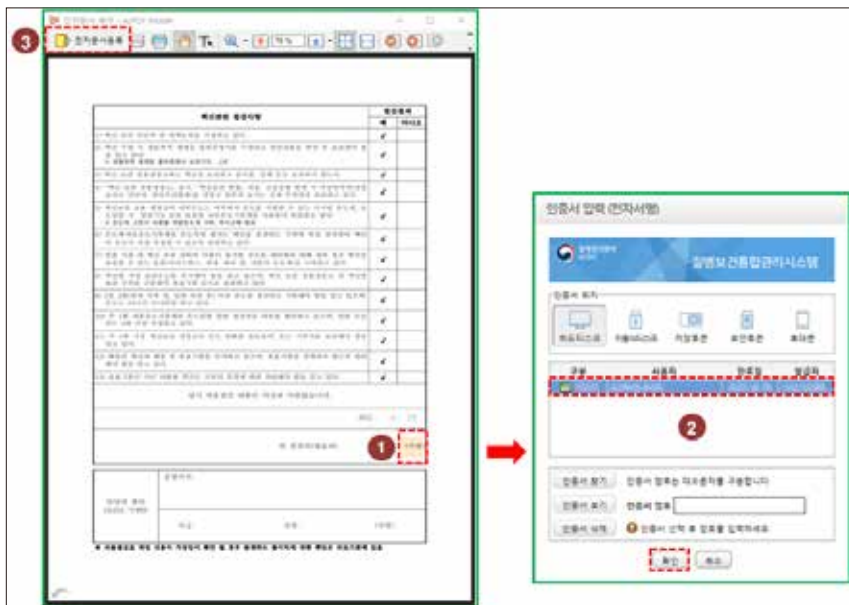
- ③ [점검표 등록] 버튼을 클릭하고 점검 내용을 입력합니다.
- '자율점검표 자료 입력' 창에서 예방접종업무 담당 인력 입력 및 점검 사항 체크
 - 백신보관 전용 냉장고를 보유하고 있다면 냉장고 정보(구입시기, 종류, 용량 등) 입력
 - ※ 예방접종업무 담당 인력에서 '백신관리 전담자' 인원은 총 인원수에 합산되지 않음
 - ※ 백신보관 전용 냉장고 여러 대 보유 시 [신규] 버튼 클릭하여 입력



<그림 3. 자율점검-코로나19 자율점검표 작성 1>

④ [서명 및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 '전자문서 열기' 팝업창이 보이고 노란색 [전자문서 열기]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한 자율점검표가 새창으로 나타남
- '서명'에서 기관인증서로 서명하고 점검표 좌측 상단의 [전자문서등록] 버튼 클릭
- ※ '서명' 버튼이 보이지 않는 경우 모니터 해상도를 권장 설정으로 변경 후 작성



<그림 4. 자율점검-코로나19 자율점검표 작성 2>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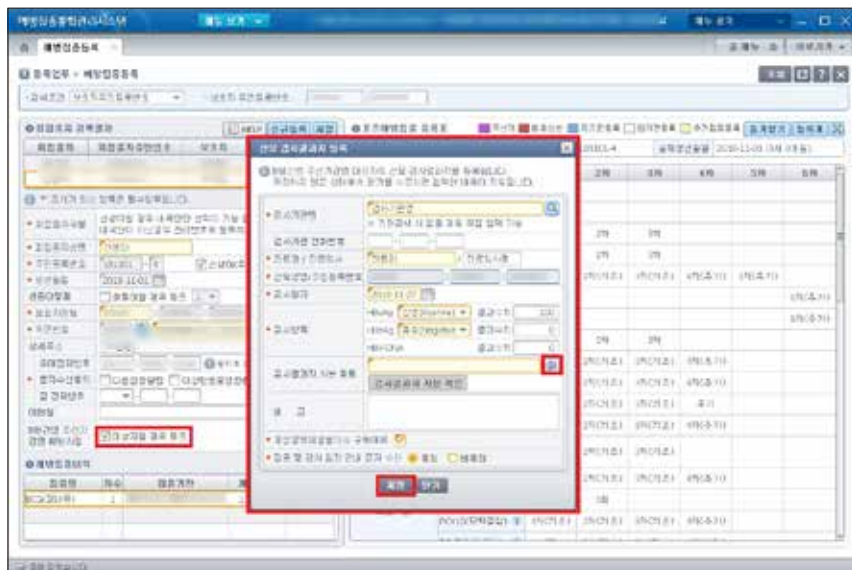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시스템 사용방법



가.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 승인 신청

① (신규 대상자 승인신청) 산모 B형간염 검사결과 입력 및 결과지 업로드

※ 대상자 승인이 완료되어야 다음 차수 등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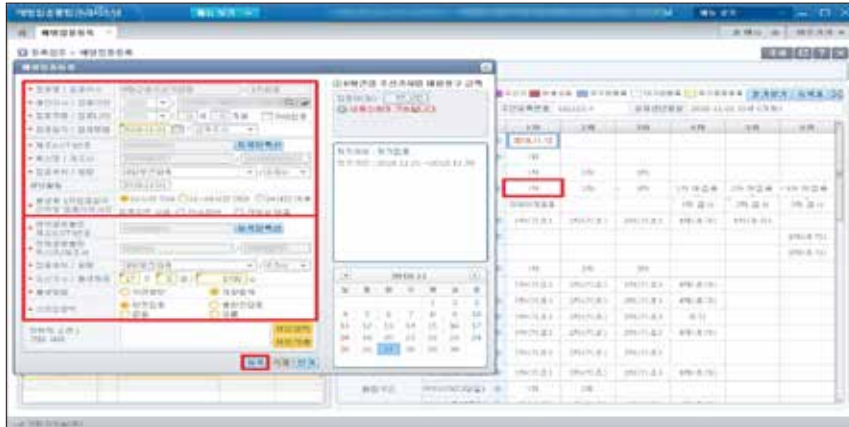


〈그림 1. 신규대상자 신청〉

② (쿠폰대상자 전환 승인신청) 2013년 이전 사업에 참여한 쿠폰지원 대상자의 경우 사업참여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구독 후 관할 보건소로 대상자 전환승인 요청 후 접종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가능

나.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처리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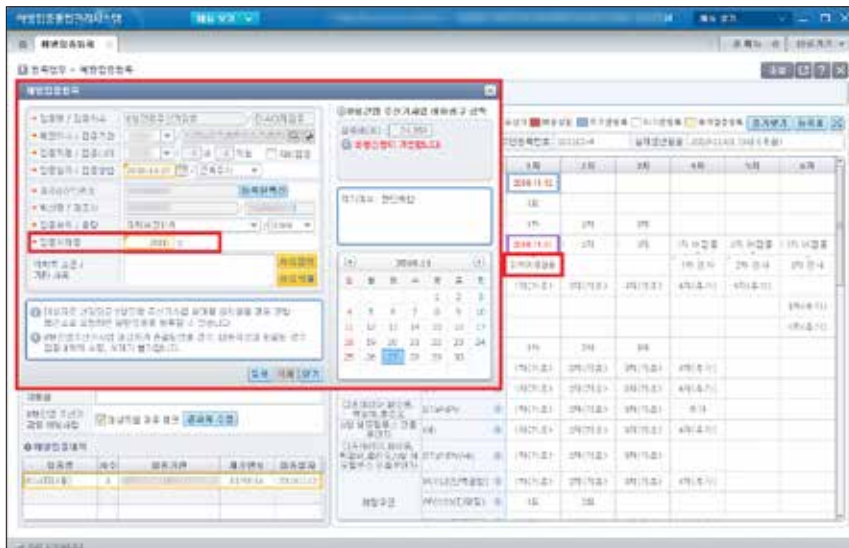
① 출생 시 면역글로불린(HBIG) 및 B형간염 1차 접종



<그림 2. 면역글로불린 및 B형간염 1차 접종 등록 화면>

② (미숙아 접종) 미숙아 재접종 등록 시에는 피접종자의 재접종 시 체중 추가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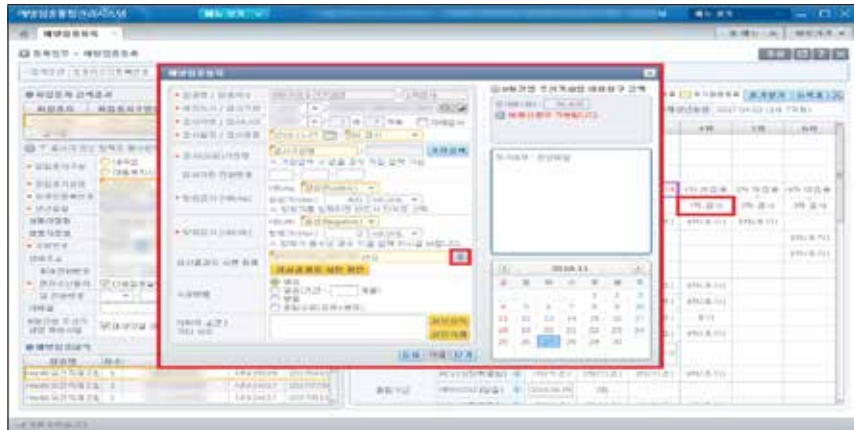
※ 37주 미만이면서 동시에 출생 몸무게가 2.0kg 미만인 경우



<그림 3. 미숙아 재접종 등록 화면>

③ B형간염 항원·항체 검사결과 등록 및 결과지 업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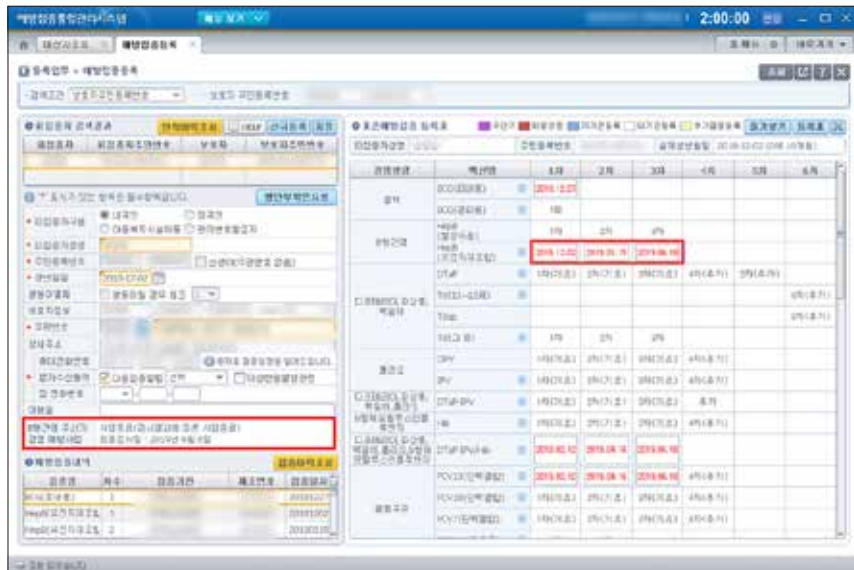
※ 2019년부터는 검사결과지 업로드 필수, 개인정보는 생년월일까지 표기



<그림 4. 항원·항체 검사결과 등록 화면>

④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종료 시

- 예방처치일정이 종료되면 예방접종등록화면 일정표가 한 줄로 변경됩니다.
- 검사결과를 잘못 등록한 경우는 피접종자 주소지 보건소로 연락하여 검사결과 삭제 요청 후 재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림 5.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종료 화면>

※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작성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침 참조

6

HPV 국가예방접종사업 시스템 사용방법



가. 저소득층 대상자 확인

① 접종 등록 시 확인 경로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상단 메뉴보기 → 등록업무 → 예방접종등록 → 접종할 HPV 차수 등록란 클릭 → 의학적 소견/기타사유 사유입력 클릭 → 18~26세 여성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택 → 행복e음 확인 클릭 → ☒ 표시여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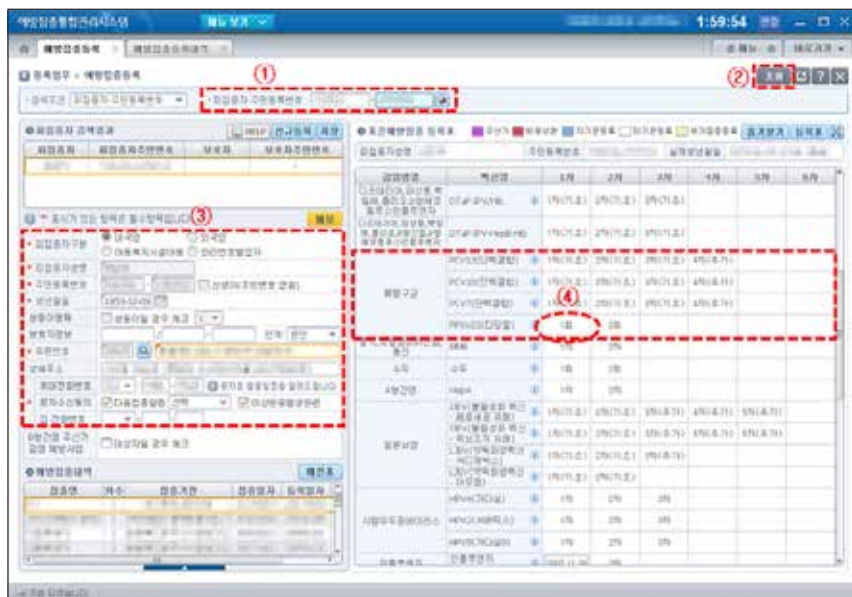
7

65세 이상 폐렴구균 시스템 사용방법



가. 접종 대상자 인적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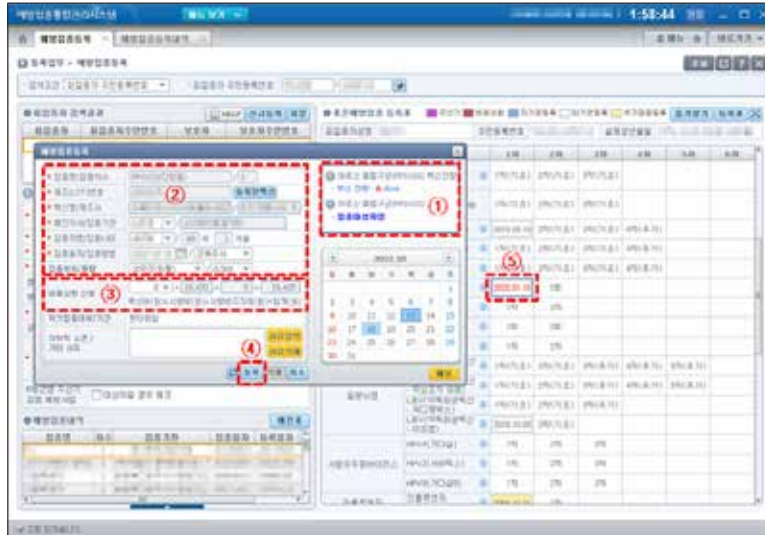
- ①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메뉴보기 → 등록업무 → 예방접종등록' 메뉴를 선택합니다.
- ② 피접종자 인적정보(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며, 인적정보가 없는 경우 인적을 신규 등록합니다.
- ③ 조회된 인적에 대한 상세 내역을 확인하고, 표준예방접종 등록표에서 폐렴구균(PPSV23, PCV13) 과거 접종력 확인 후, PPSV23 접종차수 클릭합니다.



나. 예방접종 대상자 확인 및 비용상환 신청 방법

- ① PPSV23 접종차수 클릭하면 팝업창 우측 상단에 PPSV23 접종 대상자 및 백신 잔량을 확인합니다.
 ※ 접종대상자가 아니면, '접종대상자 아님' 표시(과거 접종력과 접종간격 고려)
 ※ 백신잔량이 '0' 은 비용상환 신청 불가하며, 백신추가입고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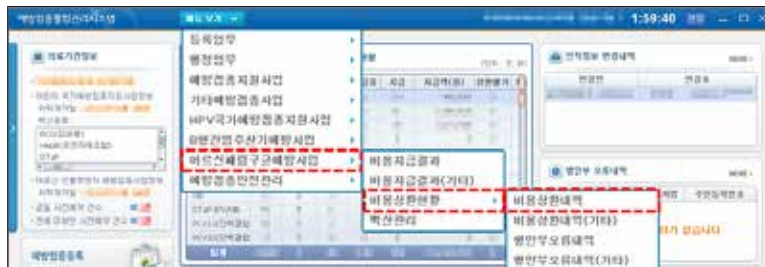
- ② PPSV23 접종 후, 예방접종 정보(백신정보, 접종일자, 접종방법, 예진의사 등)를 입력합니다.
- ③ '비용상환 신청'에서 비용을 확인 후, '등록'하여 비용상환 신청을 완료합니다.
- ④ 실시간준에 준한 접종은 비용상환 신청하면, 접종일자가 빨간색으로 표기됩니다.



다. 비용상환 신청 내역 확인 방법

- ① '비용상환내역'에서 상환 신청내역의 심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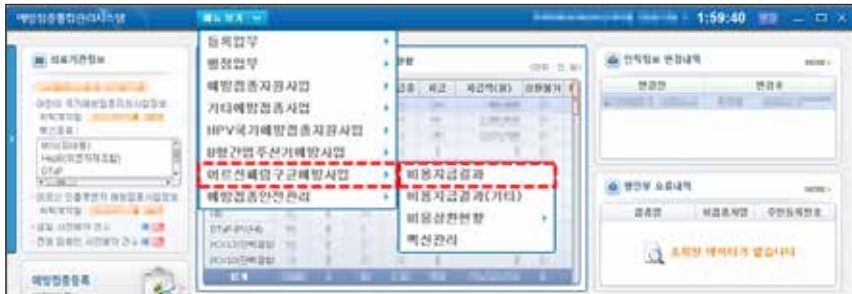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상단 메뉴보기 → 65세 이상 폐렴구균예방접종사업 → 비용상환현황 → 비용상환내역



라. 비용지급 결과 확인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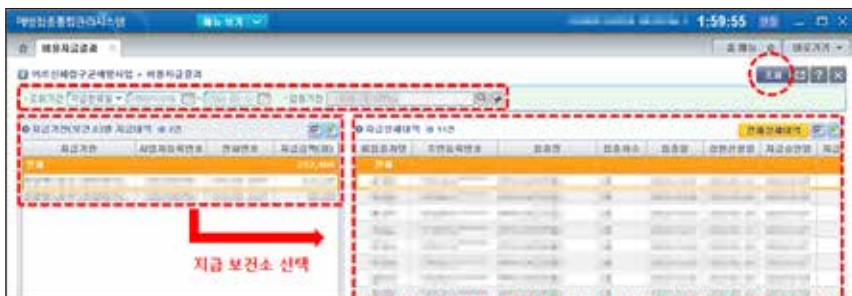
① ‘메뉴보기 → 65세 이상 폐렴구균예방접종사업 → 비용지급결과’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지급승인일 : 보건소에서 해당의료기관에서 비용지급을 완료한 날짜



② ‘비용지급결과내역’에서 화면좌측의 지급보건소를 선택하면 보건소별 지급상세 내역이 확인 가능하며, ‘전체상세내역’을 선택하면 설정된 기간내 지급된 전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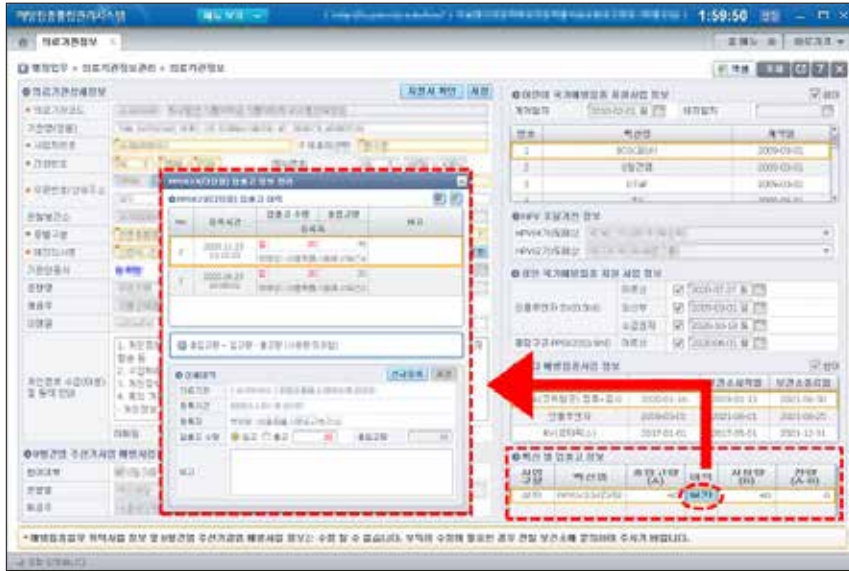
※ 접종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비용상환 청구



마. PPSV23 백신 입·출고 확인 방법

①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상단 메뉴보기 → 행정업무 → 의료기관정보관리 → 의료기관정보’를 선택합니다.

② 의료기관 정보 우측 하단 ‘백신별 입출고 정보’에서 65세 이상 폐렴구균 백신의 입고량, 사용량, 잔량 확인 가능하며, ‘보기’를 클릭하면 위탁의료기관의 백신 입·출고 내역이 확인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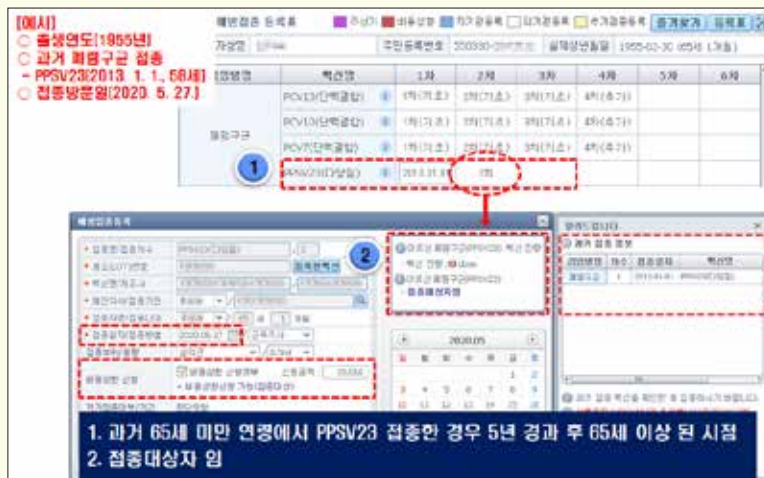


(참고) 과거 접종력에 따른 PPSV23 접종대상 판단 예시

- ※ (65세 이상) 접종시행 연도 - 출생연도 = 65세 (예) 2022년도 - 1957년생 = 65세
- ※ (65세 미만) 접종시행 연도 - 출생연도 = 63세 (예) 2020년도 - 1957년생 = 63세

■ 접종대상자임

1) 과거 65세 미만 연령에서 PPSV23을 접종한 경우, 5년 경과 후 65세 이상되는 경우



2) PPSV23 접종력이 없는 65세 이상이고, 과거 PCV13 접종일로부터 1년(최소 8주) 경과한 경우

[예시]

- 출생연도(1955년)
- 과거 폐렴구균 접종 - PCV13(2015. 7. 21.)
- 접종방문일(2020. 5. 27.)

과제명	백신명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PCV13(단백질)	2015.07.21	2차(가.초)	3차(가.초)	4차(초.가)			
PCV13(단백질)	1차(가.초)	2차(가.초)	3차(가.초)	4차(초.가)			
PPSV23(2가)	1차	2차					

1. PPSV23 접종력이 없는 65세 이상 이고,
2. 과거 PCV13 접종일로부터 1년(최소 8주)가 경과한 경우
3. 접종대상자임

3) 과거 65세 미만 연령에서 PPSV23을 접종하고 5년 경과와 과거 PCV13 접종일로부터 1년(최소 8주) 경과 65세 이상되는 경우

[예시]

- 출생연도(1955년)
- 과거 폐렴구균 접종 - PCV13(2016. 5. 26.)
- PPSV23(2013. 1. 1., 68세)
- 접종방문일(2020. 5. 27.)

과제명	백신명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PCV13(단백질)	2016.05.26	2차(가.초)	3차(가.초)	4차(초.가)			
PCV13(단백질)	1차(가.초)	2차(가.초)	3차(가.초)	4차(초.가)			
PPSV23(2가)	2013.01.01	2차					

1. 65세 미만 연령에서 PPSV23 접종일로부터 5년 경과 후 65세 이상 되는 연령
2. 과거 PCV13 접종일로부터 1년(최소 8주)이 경과된 경우
3. 접종대상자임

■ 접종대상자 아님(접종완료)

1) 65세 이상 연령에서 PPSV23 접종한 경우

[예시]

- 출생연도(1950년)
- 과거 예방구분 접종
- PPSV23(2016. 7. 21. 65세)
- 접종완료일(2020. 5. 27)

접종구분: 1

접종일자: 2020. 5. 27

접종대상자 아님(접종완료)

1. 과거 65세 이상 연령에서 PPSV23 접종력이 있는 경우
2. 접종대상자 아님(접종완료)

■ 접종대상자 아님(추후접종)

1) 과거 65세 미만 연령에서 PPSV23 접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예시]

- 출생연도(1965년)
- 과거 예방구분 접종
- PPSV23(2019. 1. 1. 64세)
- 접종완료일(2020. 5. 27)

접종구분: 1

접종일자: 2019. 1. 1

접종대상자 아님(추후접종)

1. 65세 미만 연령에서 PPSV23 접종일로부터 다음 접종간격 5년 미도래
2. 접종대상자 아님(추후접종)
→ 65세 미만 연령에 PPSV23 접종일로부터 5년 미도래로 2024. 1. 1. 이후 접종가능

2) PPSV23 접종력이 없는 65세 성인이고, 과거 PCV13 접종일로부터 1년(최소 8주) 경과하지 않은 경우

【예시】

- 출생연도(1955년)
- 과거 폐렴구균 접종 - PCV13(2020. 5. 1.)
- 접종방문일(2020. 5. 27.)

1. PPSV23 접종력이 없는 65세 이상이고,
 2. 과거 PCV13 접종력이 1년(최소 8주) 경과하지 않은 경우
 3. 접종대상자는 아님(추후접종)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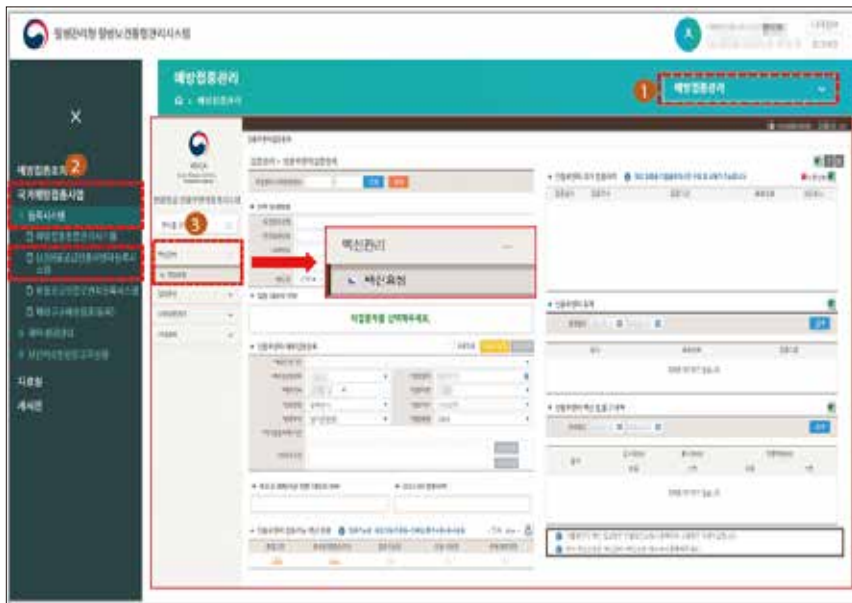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시스템 매뉴얼



가. 백신관리(사전 현물공급 기관)

1-1. 백신 예상수요량 등록

- ① 65세 이상 및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인플루엔자 계약이 완료되면 ‘현물공급 인플루엔자 등록시스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②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메뉴의 ‘예방접종관리’ > ‘국가예방접종사업’ > ‘등록시스템’ > ‘현물공급 인플루엔자등록시스템’을 클릭하여 실행합니다.
- ③ 현물공급 인플루엔자등록시스템 좌측 메뉴의 ‘백신관리’ > ‘백신요청’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림 1. 백신관리>

- ④ [예상수요량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예상수요등록 팝업창이 나타나며 ‘백신보관 가능량’과 사업 대상자별 ‘예상수요량’을 입력하고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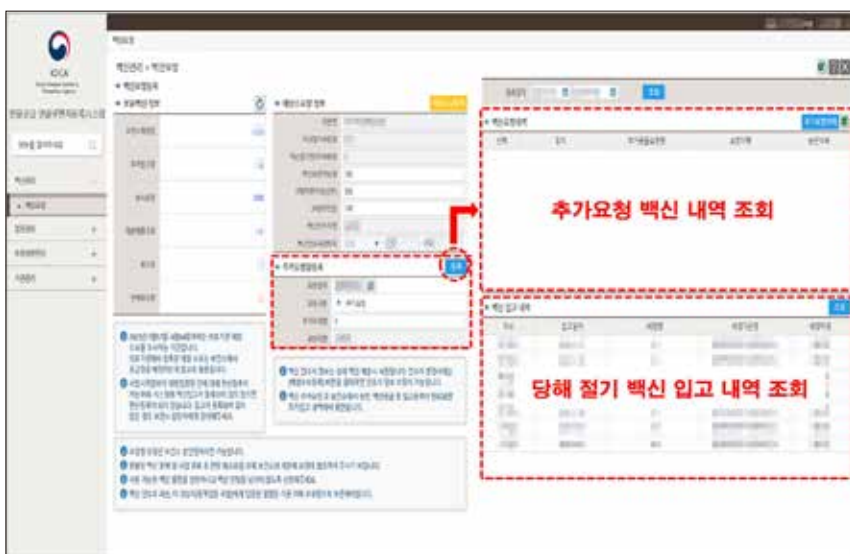
* 예상수요량 등록은 점검표 미등록, 교육수료정보 및 계약일이 만료된 경우 입력이 불가하며, 등록한 예상수요량은 보건소 승인 전까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림 2. 예상수요량 등록>

1-2. 백신 추가 수요 요청

- ① 사업시작일 이후부터 백신 추가 수요 요청이 가능합니다.
- ② 먼저 추가 요청 필요시 '추가요청량 등록'란에 수량을 입력하고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 우측 상단의 백신 요청내역에 추가됩니다.
- ③ 보건소 승인 후 백신 입고가 이루어지면 우측 하단의 백신입고내역에서 입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3. 추가요청량 등록>

나. 접종관리(총량구매-사전현물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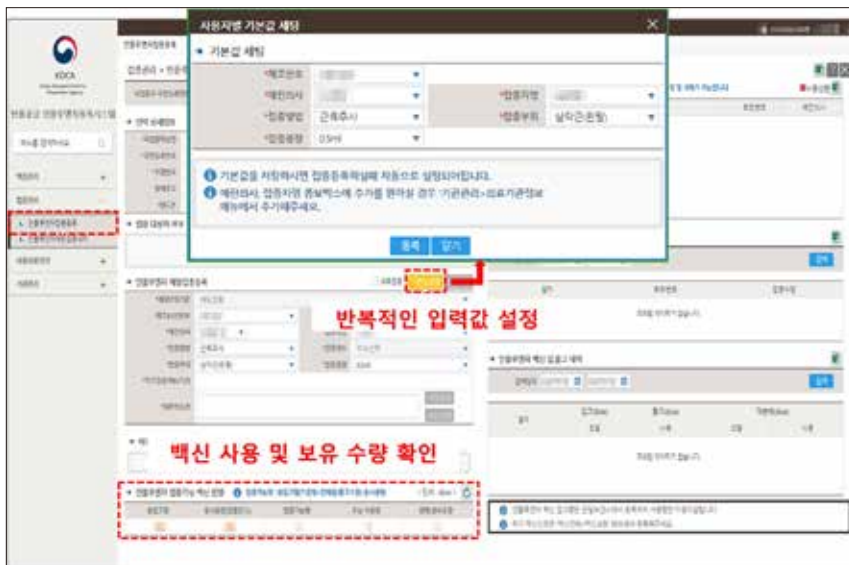
1-1. 기본값 등록

- ① 현물공급 인플루엔자등록시스템의 좌측 메뉴 '접종관리' > '인플루엔자 접종등록'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 백신 입고완료 후 화면 좌측 하단의 현재 총보유량이 존재해야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② 먼저 [기본값 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제조번호, 접종방법, 접종부위 등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접종 정보를 설정하면 보다 편리하게 접종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백신 제조번호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기본값 설정'에서 제조번호 변경 후 사용합니다.



〈그림 4. 접종 기본값 설정〉

1-2. 접종등록

- ① 접종할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합니다. 만약 인적 정보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피접종자 인적 정보를 생성합니다.
- ② 조회된 인적의 '접종대상자 여부' 칸에서 피접종자의 접종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③ 기본으로 설정한 값이 예방접종등록 화면에 자동으로 선택되어 보여집니다. 조회한 피접종자가 접종 가능 대상자이면 [접종등록] 버튼이 활성화되고 접종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④ 접종등록이 완료되면, 화면 좌측 하단의 '오늘 사용량'이 업데이트되며 '현재 총보유량'에서 자동차감 됩니다.

* 화면 좌측에서 65세 이상 폐렴구균 접종대상 여부 및 코로나19 접종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5. 인적 및 접종 등록>

⑤ 화면 우측 상단의 '인플루엔자 과거 접종이력'에서 전산 등록된 인플루엔자 접종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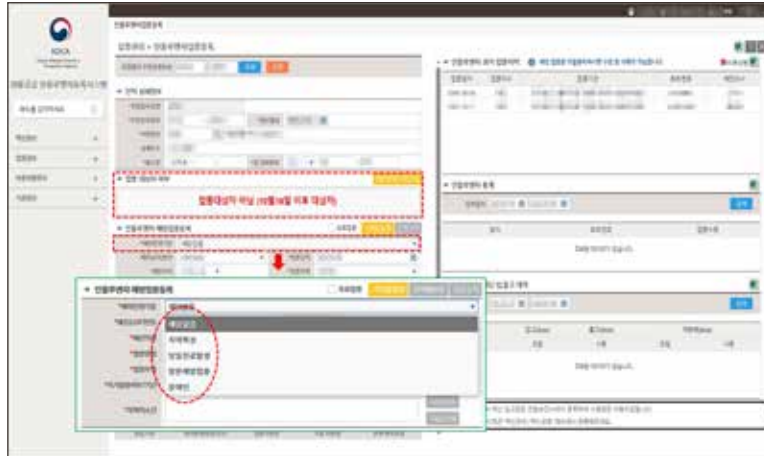
* 접종등록 시 자동으로 비용상환 신청이 되며, 행안부 검증을 거쳐 보건소에서 신청·접수하게 됩니다.

⑥ 인플루엔자 통계 및 백신 입·출고 내역에서 일자별 백신 사용량과 백신 입·출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6. 접종 등록 및 각종 내역 화면>

1-2-1. 예외인정 접종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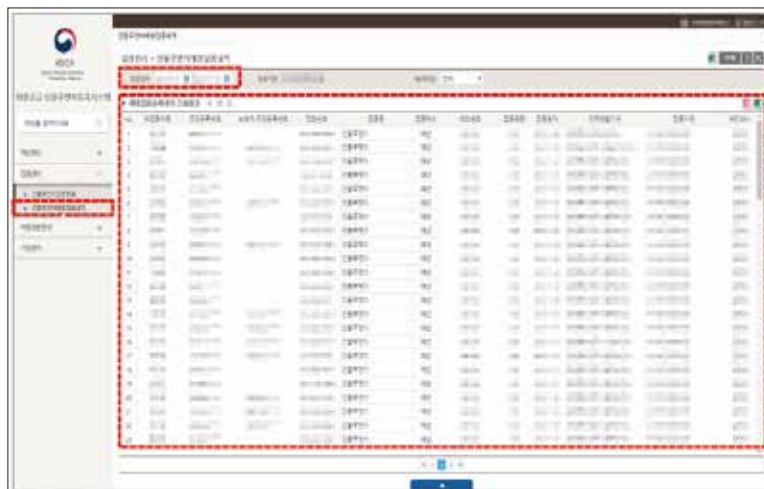
- ① 접종 가능 시기보다 이르게 접종한 사업 대상자의 접종이 예외인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인정기준' 목록에서 사유를 선택하고 접종을 등록합니다.(예외인정 사유 : 지역특성, 당일진료 발생, 방문예방접종, 장애인)



<그림 7. 인플루엔자 예외인정 접종등록>

1-3. 접종등록내역

- ① 현물공급 인플루엔자 등록시스템의 좌측 메뉴 '접종관리'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내역'을 클릭 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 ② 접종일자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③ 해당기관에서 접종기간에 접종한 내역이 나타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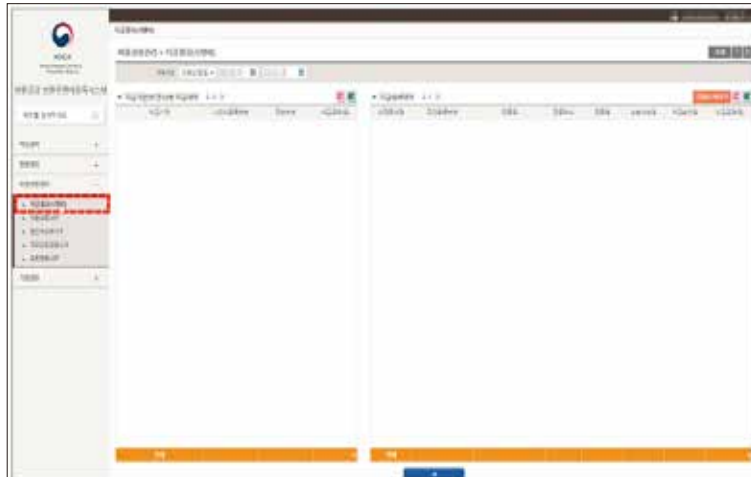
<그림 8.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내역 조회>

다. 비용상환관리

1-1. 지급결과

- ① 현물공급 인플루엔자등록시스템의 좌측 메뉴 '비용상환관리' > '지급결과(시행비)'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 접종 등록 후 인적 관할 보건소에서 비용상환 지급 완료된 건이 조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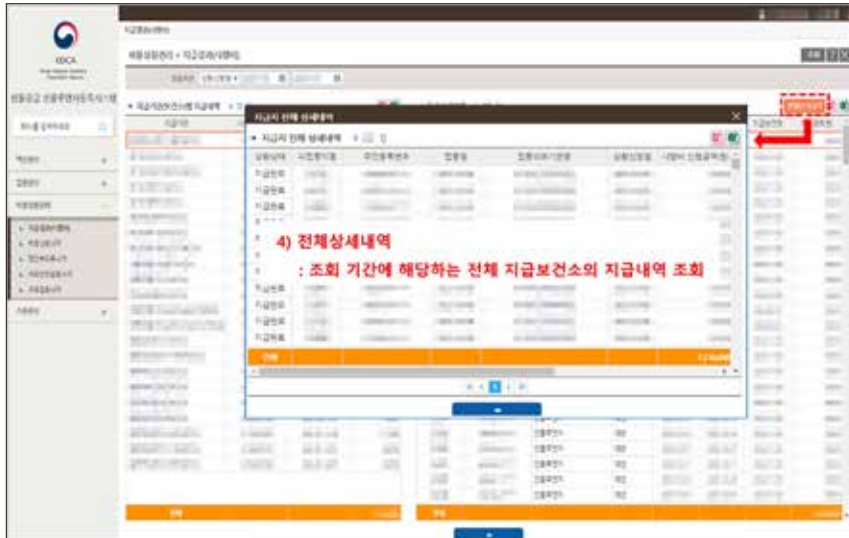
<그림 9. 지급결과(시행비) 화면>

- ② 조회기간을 상환신청일 또는 지급 승인일을 기준으로 설정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화면 왼쪽 내역에 보건소별로 지급된 내역이 보입니다.
 ④ 화면 왼쪽 내역의 보건소를 더블 클릭하면 우측 지급상세내역에 선택한 보건소의 상세 지급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림 10. 지급결과(시행비) 조회>

- ⑤ [전체상세내역] 버튼을 클릭하면 조회 기간의 전체 지급 상세내역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⑥ 팝업창 우측 상단의 [엑셀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내역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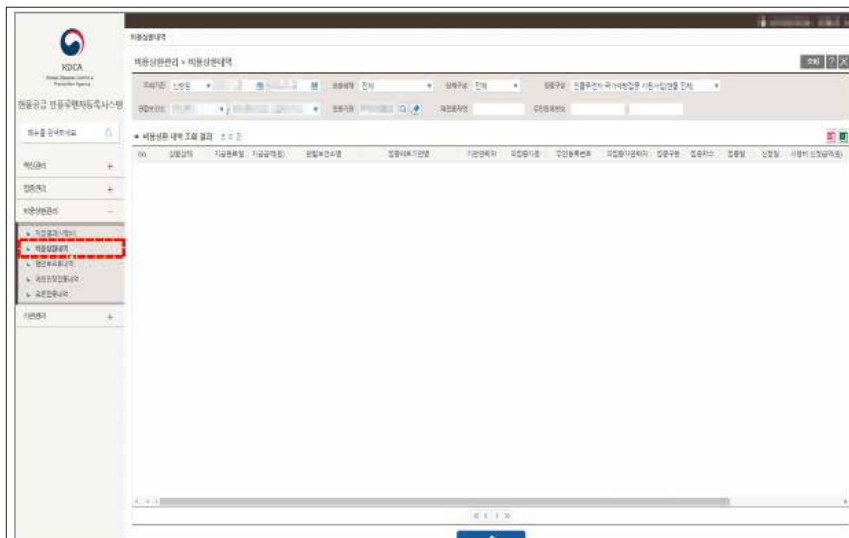


<그림 11. 지급결과(시행비) 전체 조회>

1-2. 비용상환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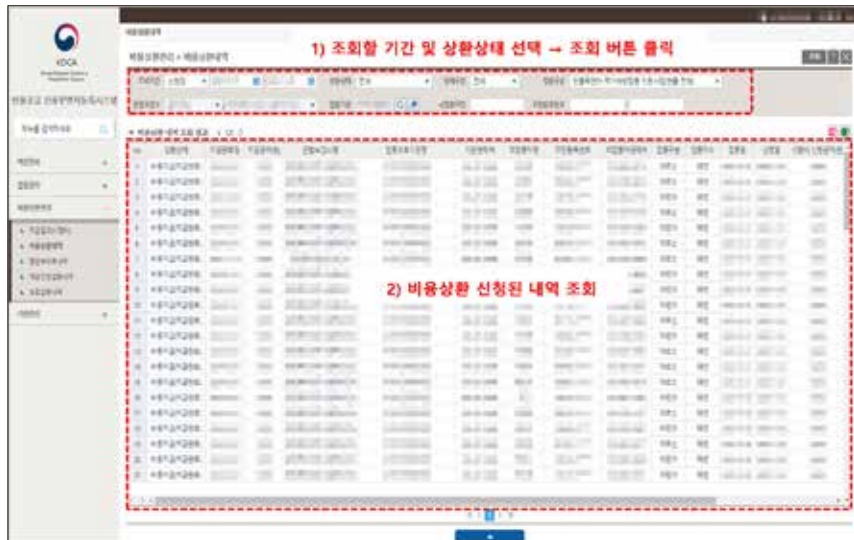
- ① 현물공급 인플루엔자등록시스템의 좌측 메뉴 '비용상환관리' > '비용상환내역'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 의료기관에서 신청한 비용상환내역을 조회함



<그림 12. 비용상환 메뉴 선택>

- ② 조회할 기간 및 상환상태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③ '비용상환 내역 조회결과' 화면에 의료기관에서 신청한 비용상환 내역이 조회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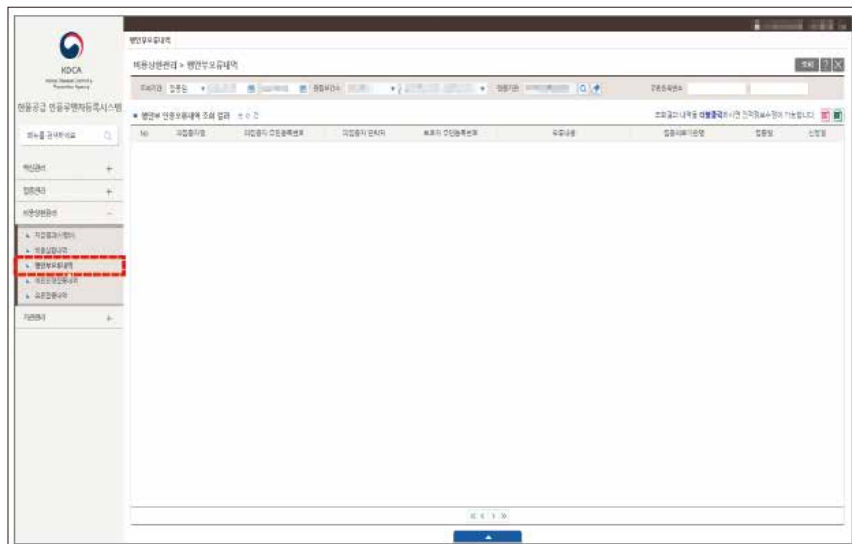


<그림 13. 비용상환 내역 조회>

1-3. 행안부 오류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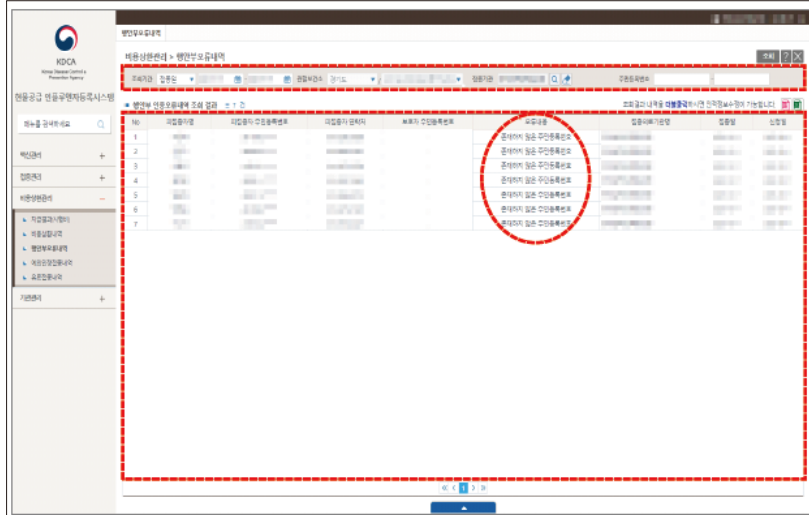
- ① 현물공급 인플루엔자 등록시스템의 상단 메뉴 '비용상환관리' > '행안부오류내역'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 행안부 확인 결과 오류로 확인된 내역을 조회함



<그림 14. 행정안전부 오류내역 메뉴 선택>

- ② 조회 기간을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③ 아래 내역에 행안부 확인결과 오류로 확인된 내역이 조회됩니다.



<그림 15. 행정안전부 오류내역 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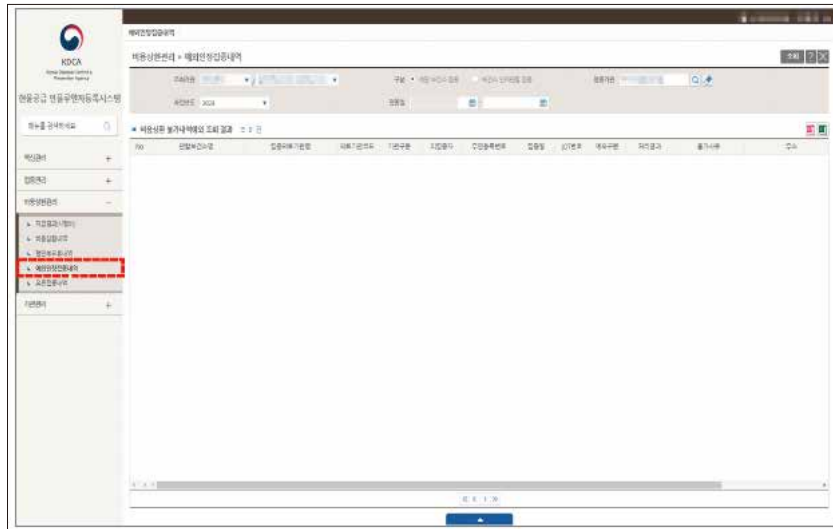
- ④ 행안부 오류내역을 수정하기 위하여 해당 오류 내역을 더블 클릭합니다.
- ⑤ 인적 정보 수정 창에 오류내용을 확인한 후 피접종자의 정보를 수정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 하면 수정이 완료됩니다.
- * 이후 수정된 내역은 다시 한 번 행안부 확인을 거친 후 지급 처리됩니다.
- ⑥ 행안부 오류내역 수정 없이 신규로 재등록 시 백신수량의 오차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행안부 오류내역 발생 시 수정 또는 삭제 후 신규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림 16. 행정안전부 오류내역 인적수정>

1-4. 예외인정 집중내역 확인

- ① 현물공급 인플루엔자등록시스템의 좌측 메뉴 '비용상환관리' > '예외인정집중내역'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림 17. 예외인정집중내역 메뉴 선택>

- ② 조회할 기간을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의료기관에서 65~69세 성인이 70세 이상 성인 사업기간에 집중한 비용상환 등록내역 및 70~74세 성인이 75세 이상 성인 사업기간에 집중한 비용상환 등록내역과 예외기준별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18. 예외인정집중내역 조회>

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기록 전산등록 방법

- ① 생애 첫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 이후에 1회 접종 후 4주 간격으로 2회로 완료하며, 접종기록은(처음접종) 1차, 2차에 순차적으로 등록함

감염병명	백신명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사람유두종바이러스	HPV9(가다실9)	2019년 4월 출생아, 생애 첫 인플루엔자 2회 접종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처음접종)	2019. 10. 23	2019. 11. 21				
	인플루엔자 (매년접종)	매년	접종추가				
신증후군출혈열	신증후군출혈열	1차	2차	3차			

* 만약, 과거 접종력 확인이 어려운 경우 첫째 접종자로 간주하고 2회 접종

- ② 이전 절기에 생애 첫 인플루엔자 예방접종(2회)을 완료한 대상은 해당 절기부터는 1회 접종 대상으로, (매년접종) 1차에 매년 등록함

감염병명	백신명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사람유두종바이러스	HPV9(가다실9)	2018년 12월 출생아, 생애 첫 인플루엔자 2회 접종 완료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처음접종)	2018. 10. 30	2018. 11. 30				
	인플루엔자 (매년접종)	매년	접종추가				
신증후군출혈열	신증후군출혈열	해당 절기 1회 접종 기록은 (매년접종) 1차에 등록					

* 이전에 인플루엔자 접종을 받은 적이 있는 6개월~9세 미만 소아들도 백신주에 따라서 2회 접종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매 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을 권고

- ③ 이전 절기에 생애 첫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1회 접종을 하였다면, 해당 절기에 2회 접종을 완료하며, 1회 접종에 대한 접종기록은 (처음접종) 1차에 등록함

감염병명	백신명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사람유두종바이러스	HPV9(가다실9)	2018년 3월 출생아, 이전 절기 1회 접종, 해당 절기 2회 접종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처음접종)	2019. 09. 20	2018. 10. 26				
	인플루엔자 (매년접종)	20190920 20180925	접종추가				
신증후군출혈열	신증후군출혈열	해당 절기 1회 접종 기록은 (처음접종) 1차에 등록					

- ④ 9세 이상 예방접종 대상자는 매년 1회 접종으로, 해당절기 1회 접종에 대한 접종기록은(매년접종) 1차에 등록함

감염병명	백신명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사람유두종바이러스	HPV9(가다실9)	만 9세 이상 접종 대상자는 매년 1회 접종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처음접종)	2010. 09. 24	2010. 11. 19				
	인플루엔자 (매년접종)	2019. 09. 23	접종추가				
신증후군출혈열	신증후군출혈열	20181110 20171110	2차	3차			
	장티푸스(경구)	해당 절기 1회 접종 기록은 (매년접종) 1차에 등록					

⑤ 임신부 예방접종 대상자는 해당절기 1회 접종에 대한 접종기록을 (매년접종) 1차에 등록함

감염병명	백신명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사람유두종바이러스	HPV9(가다실9)	2018.06.18	2018.12.18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처음접종)	1차	2차				
	인플루엔자 (매년접종)	2017.11.08	접종후가				
신증후군출혈열	신증후군출혈열	2018.11.2	2차	3차			
		2017.1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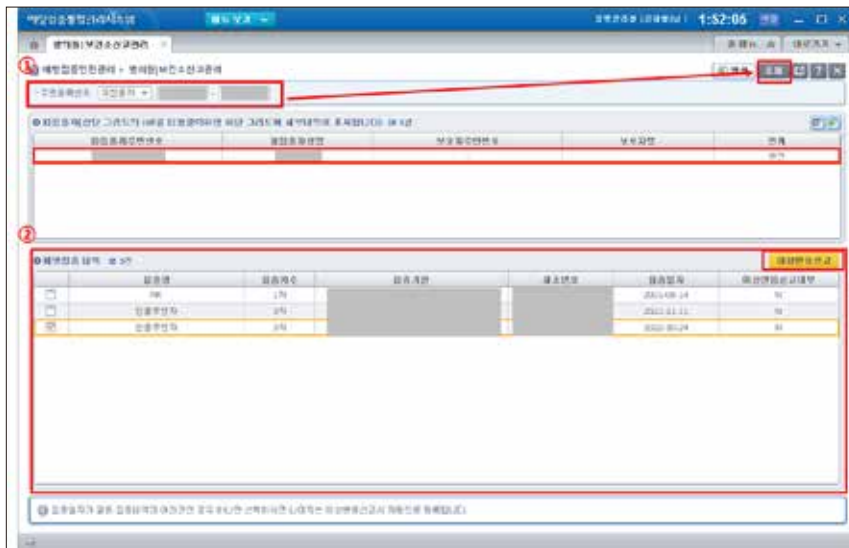
⑥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 동시 접종 시 접종부위를 달리 하여 접종하고 접종부위를 선택하여 등록함

마. 이상반응 전산관리

■ 이상반응 신고방법(보건소 및 의료기관 신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kdca.go.kr>) → 예방접종관리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메뉴보기 → 예방접종안전관리 → 병의원/보건소 신고관리

※ (코로나19의 경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 → 이상반응관리 → 병의원/보건소 신고관리



〈그림 1.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병의원/보건소 신고〉

- ① 아래의 검색조건 중 하나를 선택 → [조회] 버튼 클릭
 - 피접종자 주민등록번호,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등
- ② 피접종자 검색결과에서 해당 대상자 클릭 → 해당 접종내역 클릭 → [이상반응 신고] 버튼 클릭

<그림 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병의원/보건소 신고>

① 이상반응환자 인적정보 확인(임신부의 경우 임신 관련 추가정보 입력)

② 접종기관, 예방접종정보 확인

③~④ [이상반응 종류 및 진행상황 입력버튼] 클릭

※ 이상반응 종류와 진행상황을 반드시 체크(해당 이상반응이 없는 경우 기타 누르고 내용 입력)

⑤~⑥ 이상반응 진단기관정보 확인

⑦ 입력내용 확인 후 [저장] 버튼 클릭

※ 인적정보, 접종기관정보, 예방접종정보, 신고기관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직접 입력함



9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접종 등록 매뉴얼



■ 65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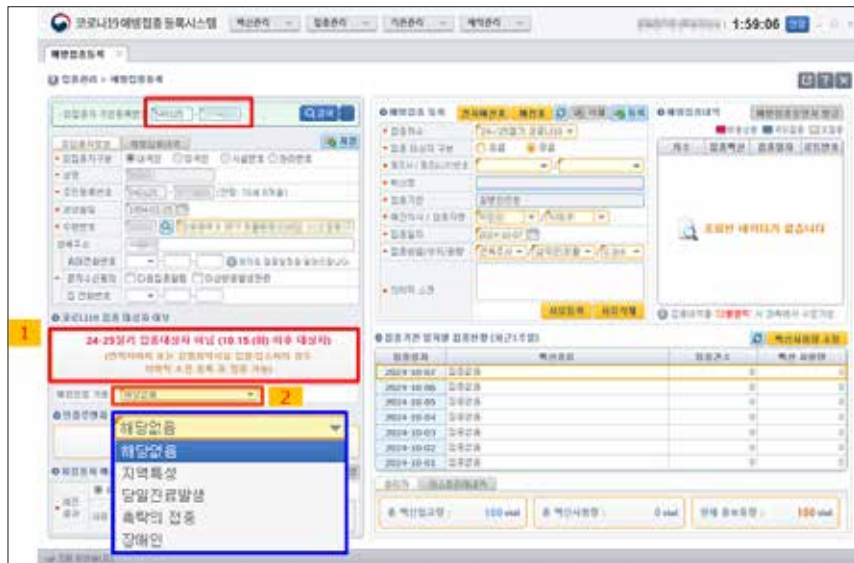
The screenshot displays the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COVID-19 Vaccination Management System) interface. The top navigation bar includes links for '접종관리' (Vaccination Management), '접종등록' (Vaccination Registration), '접종조회' (Vaccination Search), and '접종관리' (Vaccination Management). The main content area is divided into several sections:

- 접종대상자 관리** (Vaccination Target Management): This section contains a search bar and a list of vaccination targets. A red box highlights the '접종대상자' (Vaccination Target) button.
- 접종대상자 등록** (Vaccination Target Registration): This section contains a form for registering vaccination targets. A red box highlights the '접종대상자' (Vaccination Target) button.
- 접종대상자 조회** (Vaccination Target Search): This section contains a table of vaccination targets. A red box highlights the '접종대상자' (Vaccination Target) button.

<그림 1. 65세 이상>

- ① 피접종자의 주민등록번호 조회 시 사업 대상 여부가 표기됩니다.
- ② 65세 이상 대상자일 경우 접종대상자 구분값이 자동으로 “무료”로 체크됩니다.

■ 예외 접종



<그림 2. 예외 접종>

- ① 65세 이상이나 접종일정에 맞지 않는 대상자일 경우 “접종대상자 아님(접종가능 시기 안내)”으로 표기합니다.
- ② 예외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준 체크박스를 클릭하여 사유를 선택합니다.

* 지역특성, 당일진료, 촉탁의, 장애인

■ 65세 미만(비용상환)



<그림 3. 65세 미만(비용상환)>

- ① 65세 미만 대상자(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의료인)의 경우 “해당 정기 접종대상자 아님”으로 표기됩니다.
- ② 접종대상자 구분을 “무료”로 체크합니다.
- ③ “사유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유를 선택합니다.

■ mRNA 백신 접종 연기자 또는 금기자



<그림 4. mRNA 백신 접종 연기자 또는 금기자>

- ① mRNA 백신 접종 연기자 또는 금기자의 경우 노바백스JN.1백신을 선택합니다.
- ② “사유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mRNA 백신 접종 연기/금기자>를 선택하여 등록합니다.

* 해당 사유는 노바백스JN.1백신 선택시에만 활성화됩니다.



■ 65세 미만 접종 등록(유료)

The screenshot shows the 'Korea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NHIS) Vaccination Registration System' interface. The main form is titled '접종등록' (Vaccination Registration). It includes fields for '접종대상자 구분' (Vaccination Target Category) and '접종대상자 여부' (Vaccination Target Status). The '접종대상자 여부' field is set to '아님' (Not). The '접종대상자 구분' field is set to '유료' (Paid). Below the form is a table titled '접종기록' (Vaccination Record) with columns for '접종일자' (Vaccination Date), '접종종류' (Vaccination Type), '접종결과' (Vaccination Result), and '접종비율' (Vaccination Rate). The table contains several rows of data. At the bottom, there are summary statistics: '총 접종접수량' (Total Vaccination Registrations) is 100, '총 접종사양량' (Total Vaccination Supply) is 0, and '현재 총보유량' (Current Total Inventory) is 100.

<그림 5. 65세 미만 접종 등록(유료)>

- ① 65세 미만 대상자의 경우 “해당 절기 접종대상자 아님”으로 표기됩니다.
- ② 접종대상자 구분을 “유료”로 체크합니다.

10

예방접종 교육시스템 사용방법(학습자)



■ (회원가입) 교육시스템 사용 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GPKI 등 개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및 학습자 권한 신청

-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 → 좌측 권한정보 클릭 → 교육관리 User(학습자) 권한 신청
-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 문의 : 043-719-8272, 8282(HelpDesk)
- ※ 회원가입 시 입력한 학습자 정보로 수료증이 출력되며, 수료 이후에는 정보 수정 불가

■ (수강신청)

- ① 학습자 권한 승인 이후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https://edu.kdca.go.kr>)에서 인증서 로그인
 - ※ 구글 크롬(Chrome) 및 마이크로소프트 엣지(Microsoft Edge), 네이버 웨일 웹 브라우저 사용
- ② 상단의 '과정안내' 클릭 후 가운데 보이는 소속명 클릭 → 예방접종관리과 선택 후 오른쪽 돋보기 그림 클릭 → 이수하고자 하는 교육과정명을 검색하여 수강신청
 - ※ 회원가입 시 소속기관 정보(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따라 수강 가능한 교육과정 표시



③ '나의 강의실 입장 후' 순차적으로 학습

- ※ 수강 도중 강의실 창을 닫으면 정상적으로 수료되지 않을 수 있음을 주의
- ※ 수강 중 30분 이상 차시나 챕터 이동이 없으면 자동 로그아웃

■ (수료확인) 수강 종료 후 화면 상단의 '수료증 출력' 메뉴에서 수료 확인 가능



■ (문의하기) 시스템 관련 문의사항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Q&A 게시판(묻고 답하기)에 문의하고 결과를 확인

※ 교육시스템 관한 승인 및 이용관련 문의 : 043-913-2352



11

전자예진표 사용 매뉴얼 (대국민, 의료기관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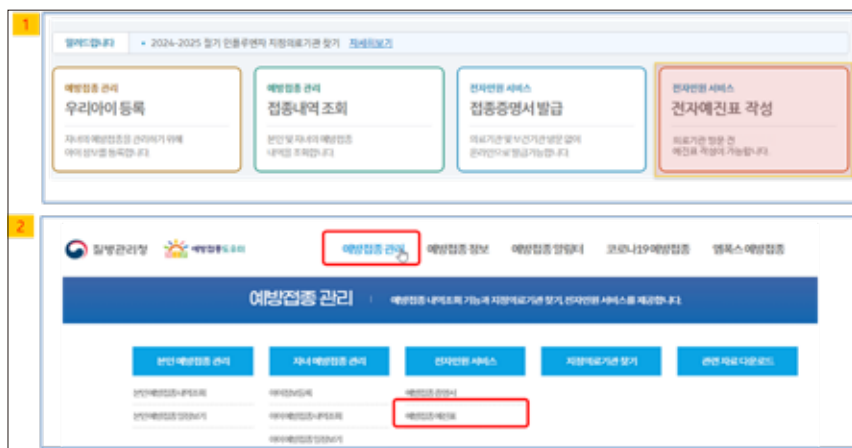


■ 대국민용

- ① 메인화면의 <전자예진표 작성> 또는 상단 메뉴의 <예방접종관리-전자민원서비스-예방접종예진표> 클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모바일)>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PC)>

② 대상자 인적 정보 및 현재 건강상태 등 입력

※ 접종대상자가 출생미신고자일 경우 '신생아 여부'에 체크

The form consists of three steps:

- Step 1: Recipient Information** (대상자 인적 정보). Fields include Name, Sex, Date of Birth, and Address. A checkbox for 'Newborn' (신생아 여부) is highlighted with a blue box.
- Step 2: Current Health Status** (현재 건강상태). Fields include Current Health Status (현재 건강상태), Current Medication (현재 복용 중인 약물), and Current Allergies (현재 알레르기). Radio buttons for 'Yes' (예) and 'No' (아니오) are present for each field.
- Step 3: Confirmation** (확인). A summary of the entered information is shown, with 'Yes' (예) and 'No' (아니오) radio buttons for each field.

③ 작성자와 피접종자와의 관계 선택 후 저장

※ 접종대상자가 출생미신고자일 경우 보호자 인적정보 추가 입력

The form consists of two steps:

- Step 1: Relationship Selection** ("접종대상자에 대한 확인사항"). A dropdown menu for 'Relationship' (피접종자와의 관계) is shown with 'Parent' (보호자) selected. Buttons for 'Save' (저장) and 'Cancel' (취소) are at the bottom.
- Step 2: Guardian Information** ("접종대상자에 대한 확인사항"). Fields for 'Guardian Name' (보호자 성명) and 'Guardian ID Number'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are shown. Buttons for 'Save' (저장) and 'Cancel' (취소) are at the bottom.

④ 작성한 내용 확인 후 서명.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하기' 클릭. 제출 동의 서명 팝업에 서명 후 '제출' 버튼 클릭

The form consists of two steps:

- Step 1: Confirmation** (예방접종 예진표 확인). A summary of the entered information is shown. A red box highlights the 'Save' (저장) button, and a yellow box highlights the 'Modify' (수정하기) button.
- Step 2: Signature** (제출 동의 서명). A text box for the signature is shown with the name '홍길동' (Hong Gil-dong) entered. A red box highlights the 'Submit' (제출) button, and a yellow box highlights the 'Cancel' (취소) button.

■ 의료기관용

① 등록시스템에서 피접종자 인적정보 조회 시 알림 표시

The screenshot shows the 'COVID-19 Vaccination Registration System' interface. A red box highlights a notification message: '작성된 전자예진표가 있습니다. 등록을 꼭 확인하십시오.' (You have a completed electronic pre-examination form. Please be sure to check the registration.) Below the notification, there is a '확인' (Check) button. The interface also displays various fields for registration,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and vaccination detai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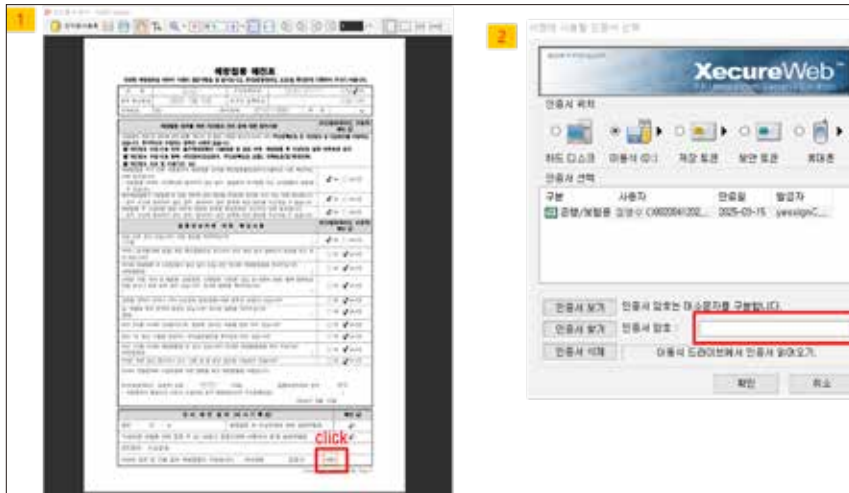
② '전자예진표' 클릭

The screenshot shows the same interface as the previous one, but with a red box highlighting the '전자예진표' (Electronic Pre-examination Form) button in the top right corner. This button is used to access the electronic pre-examination fo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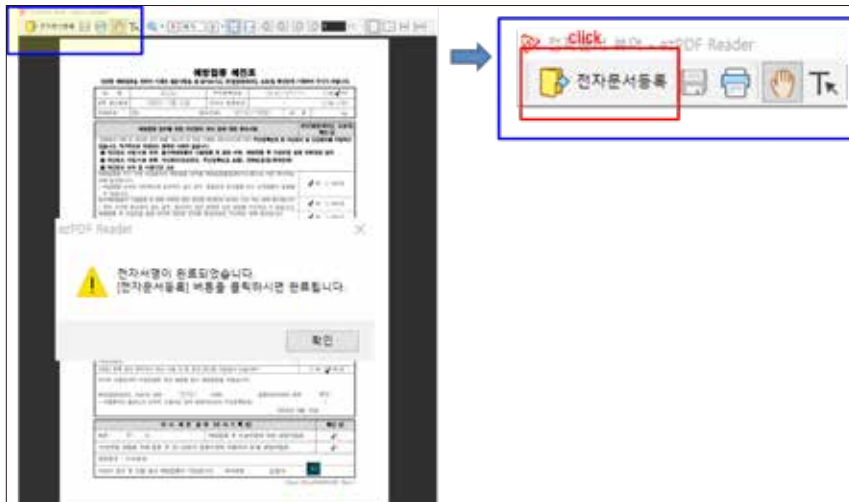
③ 피접종자 예진표 목록에서 작성된 예진표를 클릭하여 내용 확인. 예진 결과 입력 후 '서명 및 제출' 버튼 클릭

The screenshot shows the 'COVID-19 Vaccination Registration System' interface with a list of pre-examination forms. A red box highlights the '전자예진표' (Electronic Pre-examination Form) button in the top right corner. Below the list, there is a '서명 및 제출' (Sign and Submit) button. The interface also displays various fields for registration,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and vaccination details.

- ④ 전자문서 하단 '서명' 클릭하고, 인증서 선택창이 열리면 사용할 인증서 선택 후 암호 입력
 ※ 예진 의사 성명과 인증서 사용자 성명이 불일치할 경우 오류 발생



- ⑤ 전자서명이 정상처리되면 왼쪽 상단의 '전자문서등록' 버튼 클릭하여 저장
 ※ 상단 메뉴가 보이지 않을 경우 키보드의 'Alt'키를 클릭하고 보기항목에서 '기본도구' 체크



■ 전자예진표 5년간 시스템에 보관 조회

- 접종 완료된 예진표는 예방접종 등록메뉴의 '전자예진표' 버튼을 클릭하여 열리는 팝업창 왼쪽 '예진표 목록'에서 확인 가능

[illegible]

IV

부록





1 관련 법령

179p

필수 임시예방접종 실시	179p
필수 임시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180p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	182p
예방접종 내역 사전확인	182p
예방접종 내역의 제공	182p
필수예방접종 다음접종 사전 안내	183p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183p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보고 및 시스템 구축·운영	184p
이상반응 신고 및 피해보상	185p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별표 1]	189p

1

관련 법령



필수·임시예방접종 실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12.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3. 폐렴구균 14. 인플루엔자 15. A형간염 16.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7.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18.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제25조(임시예방접종)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6조(예방접종의 공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예방접종을 할 경우에는 예방접종의 일시 및 장소, 예방접종의 종류, 예방접종을 받을 사람의 범위를 정하여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변경 사항을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3호)」	
제1조(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티푸스 2. 신증후군출혈열

필수·임시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필수예방접종)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임시예방접종)

-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한 기관을 공고해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예방접종업무의 위탁범위에 관한 사항
 2. 위탁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3. 위탁계약 조건에 관한 사항
 4.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 ③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예방접종 비용 산정 및 비용 상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6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 수행에 필요한 위탁의 방법과 내용을 정함으로써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위탁계약 체결 등)

-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이하 “예방접종업무”라 한다)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당해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위탁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제3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 의료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
2. 위탁 의료기관이 제2조제3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때
3. 기타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하며 위원장은 의료안전예방국장으로 한다.

1. 의료안전예방국장

2. 의료단체가 추천한 자 3인
3. 관련 학계에서 추천한 자 3인
4.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각각 추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관련 전문가 2인
5.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3인
- ③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 등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예방접종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질병관리청 소속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 ④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공무원인 위원장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예방접종비용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예방접종비용 산정과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예방접종비용)

- ① 예방접종비용은 제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비용을 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1. 백신비
 2. 예방접종 시행비용

제6조(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 ① 위탁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비용 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비용 상환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등록 및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예방접종 비용 상환 심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 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한다. 이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 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 관련 보완자료 요청)

-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비용 상환 심사 시 위탁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만으로는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 의료기관에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보완을 요청받은 위탁 의료기관이 동 기간 내에 보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위탁 의료기관이 책임진다.

제9조(예방접종 비용 심사결과의 통보)

-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비용 상환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비용 상환 인정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비용 상환액을 지급하기 전 지급불능사실이 발생할 경우 당해 위탁 의료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8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보완을 요청받은 위탁 의료기관이 보완한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소요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접종비용 상환 인정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탁 의료기관 또는 위탁의료기관으로 백신을 공급하는 기관에 예방접종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비용 상환 이의신청)

- ① 위탁 의료기관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비용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비용 상환 불인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5일전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 의료기관이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심의결과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질병관리청장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조정 요청을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5일전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질병관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특별자치도·시·군·구가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부담한다.

3.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예방접종을 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제65조(시·도가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시·도가 부담한다.

5. 제46조에 따른 건강진단, 예방접종 등에 드는 경비

제66조(시·도가 보조할 경비)

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는 제64조에 따라 시·군·구가 부담할 경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제68조(국가가 보조할 경비)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2.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시·도가 부담할 경비의 2분의 1 이상

예방접종 내역 사전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

① 보건소장 및 제24조제2항(제2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예방접종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의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예방접종을 확인하는 경우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

법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하는 보건소장과 법 제24조제2항(법 제2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예방접종을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이하 “보건소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2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한다는 사실
2. 예방접종 내역에 대한 확인 방법

예방접종 내역의 제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6(예방접종 내역의 제공 등)

-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3조의4제4항 전단에 따라 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자녀의 예방접종 내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열람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문자전송, 전자메일, 전화, 우편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3조의4제4항 전단에 따라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직접 발급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와 연계하여 발급할 수 있다.

필수예방접종 다음접종 사전 안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필수예방접종)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아동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2(필수예방접종의 사전 알림)

-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리는 경우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전화, 우편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 알림에 동의한 사람에만 해당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알림에 동의하지 않거나 필요한 개인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약사법」 제58조제1호에 따른 용법 및 용량 등을 따르되,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시기 및 주의사항은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다.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고시 제2025-3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에서 적용되는 질병 및 예방접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규정한 질병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중 법 제6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를 법 제66조에 따라 시·도가 보조하고, 이를 법 제68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보조하는 예방접종(이하 “국가예방접종”이라 한다)
2. 법 제25조 각 호에 따른 임시예방접종 중 법 제6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를 법 제66조에 따라 시·도가 보조하고, 이를 법 제68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보조하는 임시예방접종

제3조(대상 및 표준접종시기)

-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예방접종 대상 및 표준접종시기는 별표 1과 같다.
- ②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가 보조하는 임시예방접종 대상 및 표준접종시기는 질병관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예진표)

- 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 본인(이하 “본인”이라 한다),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아동복지법」 및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보호자’ 정의를 준용한다)(이하 “본인등”이라 한다)는 예방접종 실시 전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해야 한다.
- ② 예방접종 예진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등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예방접종 예진표를 전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5조(실시)

- ① 예방접종은 보건소장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이하 “보건소장등”이라 한다)이 제3조에서 정하는 대상과 표준접종시기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 ② 예방접종은 보건소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이하 “보건소등”이라 한다) 내에서 실시해야 한다. 다만,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때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한 바에 따라 보건소등 외의 장소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에게 예방접종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국가예방접종 대상에게 제3조에 따른 표준접종시기 외 접종을 한 경우에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주의사항)

- ① 보건소장등은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전 본인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본인의 예방접종 실시 여부
 2. 법 제26조의2에 따른 예방접종 내역
 3. 충분한 병력청취와 신체진찰, 예진표 및 접종 금기사항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 가능 여부
- ② 보건소장등은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전 본인등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1. 예방접종 전후의 주의사항
 2. 예방접종의 이점과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

제7조(이상반응 신고)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보고받거나 진단한 경우 법 제11조 및 규칙 제7조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신고해야 한다.

제8조(효과평가)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문서의 작성과 보관)

- ① 보건소등은 제4조에 따라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일에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보관하거나, 질병관리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과 보관을 한 것으로 본다.
- ② 보건소등은 법 제28조 및 규칙 제23조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에 기록하고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보관한 경우 기록한 것으로 보며, 질병관리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기록 및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기타 예방접종 권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2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질병 및 예방접종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권고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호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3월 7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보고 및 시스템 구축·운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

-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한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의4(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 ①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질병관리청장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다)
 2.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이름, 접종명, 접종일시 등 예방접종 실시 내역
 3.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개설 정보,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보고 내용, 제29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내용, 제71조에 따른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내용 등 그 밖에 예방접종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 ③ 보건소장 및 제24조제2항(제2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하면 제24조제2호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5(예방접종 정보의 입력)

보건소장등이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의4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지체 없이 입력해야 한다.

1.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 가. 성명
 - 나. 주민등록번호. 다만,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외국인이거나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말한다.
2. 예방접종의 내용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 가. 예방접종 명칭
 - 나. 예방접종 차수
 - 다. 예방접종 연월일
 - 라. 예방접종에 사용된 백신의 이름
 - 마. 예진(豫診)의사 및 접종자의 성명

이상반응 신고 및 피해보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 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제13조(보건소장 등의 보고 등)

- 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그 내용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이를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제1급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질병관리청장: 예방접종의 효과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

제30조(예방접종피해조사반)

- ①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장애·사망의 원인 규명 및 피해 보상 등을 조사하고 제72조제1항에 따른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 ① 국가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2. 장애인이 된 사람: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 ② 제1항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및 예방·치료 의약품 투여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청구, 제3항에 따른 결정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등)

- ① 국가는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예방·치료 의약품의 투여자 등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71조에 따른 피해보상을 하였을 때에는 보상액의 범위에서 보상을 받은 사람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 ② 예방접종을 받은 자,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자 또는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국가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제71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상금을 잘못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2조의2(손해배상청구권)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을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하여 입원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등 이 법에 따른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제73조(국가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 등 금지)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보상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진료비

가. 지급 기준: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금에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다만, 제3호에 따른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나. 신청기한: 해당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2. 간병비: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3.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가. 지급 기준

-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0
-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55
- 3) 1) 및 2) 외의 장애인으로서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해당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의 기준별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신청기한: 장애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4.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가. 지급 기준: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나. 신청기한: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5. 장제비: 30만원**제30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대상자)**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본인
2. 법 제71조제1항제3호의 경우: 유족 중 우선순위자

② 법 제7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형제자매를 말한다.

- ③ 유족의 순위는 제2항에 열거한 순위에 따르되, 행방불명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사람은 제외하며, 우선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일 때에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한다.

제3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절차)

-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청구서에 피해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서류(이하 “피해보상청구서류”라 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피해보상청구서류를 받은 시·도지사와 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청구서류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지체 없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한 후 피해보상청구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상을 하기로 결정한 사람에 대하여 제29조의 보상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 심의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③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법 제71조제2항·제3항 및 이 영 제31조제3항·제4항에 따른 보상(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이 영 제29조제1호가목에 따라 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진료비가 30만원 미만인 보상으로 한정한다)의 결정 및 지급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사 등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또는 소속 부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상반응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 ②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제47조(보상의 신청 등)

- ① 법 제71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진료비 및 간병비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3호서식의 진료확인서 1부
 2.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② 법 제71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4호서식의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의 경우
 - 가. 사망진단서
 - 나. 부검소견서.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시신 화장 등으로 인하여 부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 2)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신청인이 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
 - 다.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유족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장애인 일시보상금의 경우
 - 가.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 나. 보상금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 기준에 관한 고시(질병관리청고시 제2020-4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지급대상(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은 제외한다) 및 보상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1. 「국민연금법」
2. 「공무원연금법」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그 밖에 국가가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을 인정하는 법률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보상기준 및 금액)

예방접종 등에 따른 이상반응으로 제2조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4호에 따라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장애(장해) 피해에 대한 일시보상금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제4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시예방접종 후 신고하여야 하는 이상반응 범위 등에 관한 고시(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1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관련 별표 3에 따라 임시예방접종 후 신고하여야 하는 이상반응의 범위와 그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임시예방접종 후 신고하여야 하는 이상반응자의 범위와 신고의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 7일 이내
3.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 42일 이내
4. 심근염 : 42일 이내
5. 심낭염 : 42일 이내
6. 그 밖에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 : 기한 없음
7. 제1호부터 제6호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제3조(엠폭스 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엠폭스 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범위와 그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인과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 기한 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제4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별표 1]

국가예방접종 대상 및 표준접종시기

① B형간염

○ 대상

- 12세 이하 모든 영유아

○ 표준접종시기

- 생후 0개월, 1개월, 6개월에 3회 접종을 실시한다.
- 다만, 모체의 B형간염 표면항원 결과가 양성이거나 검사결과를 알지 못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접종을 실시
 - ① 모체가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인 경우: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및 B형간염 백신 1차 접종을 출생 직후(12시간 이내) 각각 다른 부위에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2차, 3차 접종은 생후 1개월, 6개월에 실시한다.
 - ② 모체의 B형간염 표면항원 검사 결과를 알지 못하는 경우: B형간염 백신 1차 접종을 출생 직후(12시간 이내)에 실시하고, 모체의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밝혀지면 가능한 빠른 시기(늦어도 7일 이내)에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을 백신을 접종한 위치와 다른 부위에 접종한다. 이후 B형간염 2차와 3차 접종은 생후 1개월, 6개월에 실시한다.

② 결핵(피내용)

○ 대상

- 12세 이하 모든 영유아

○ 표준접종시기

- 생후 1개월 이내에 1회 접종을 실시한다.

③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 대상

- 12세 이하 모든 영유아

○ 표준접종시기

- 생후 2개월(DTaP), 4개월(DTaP), 6개월(DTaP)에 3회 기초 접종을 실시한다.
- 생후 15~18개월(DTaP), 4~6세(DTaP), 11~12세(Tdap)에 3회 추가 접종을 실시한다.
(단, 백일해포함백신(aP) 금기자의 경우, Tdap 백신을 해당 연령에 허가된 Td 백신으로 대체 가능)

④ 폴리오

○ 대상

- 12세 이하 모든 영유아

○ 표준접종시기

-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에 3회 기초 접종을 실시한다.
(단, 3차 접종은 생후 6개월~18개월까지 접종 가능)
- 4~6세에 추가 접종을 실시한다.

⑤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대상

- 12세 이하 모든 영유아

○ 표준접종시기

-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에 3회 기초 접종을 실시한다.
- 생후 12~15개월에 1회 추가 접종을 실시한다.

⑥ 폐렴구균

○ 대상

- 12세 이하 모든 영유아
- 65세 이상 노인

○ 표준접종시기

- 영유아는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으로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에 3회 기초접종을 실시하고, 생후 12~15개월에 1회 추가 접종을 실시한다.
- 65세 이상 노인은 폐렴구균 다당질 백신으로 1회 접종을 실시한다.

⑦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 대상

- 12세 이하 모든 영유아

○ 표준접종시기

- 사람-소 재배열 백신은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 사람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생후 2개월, 4개월에 접종을 실시한다.

⑧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 대상

- 12세 이하 모든 영유아

○ 표준접종시기

- 생후 12~15개월과 4~6세에 2회 접종을 실시한다.

⑨ 수두

○ 대상

- 12세 이하 모든 영유아

○ 표준접종시기

- 생후 12~15개월에 1회 접종을 실시한다.

⑩ A형간염

○ 대상

- 12세 이하 모든 영유아

○ 표준접종시기

- 생후 12~23개월에 1차 접종 후, 6~12개월(또는 6~18개월) 뒤에 2차 접종을 실시한다.

⑪ 일본뇌염

○ 대상

- 12세 이하 모든 영유아

○ 표준접종시기

- 불활성화 백신은 생후 12개월~23개월 중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여 기초접종을 완료하고, 생후 24~35개월(기초 1차 접종 1년 후), 6세, 12세에 3회 추가 접종을 권장한다.
- 햄스터 신장세포 유래 약독화 생백신은 생후 12~23개월에 1회 접종하고, 12개월 후 2차 접종을 실시한다.

⑫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대상

- 12~26세 여성
- * 단, 18~26세 여성은 저소득층으로 한정함

○ 표준접종시기

- 12~14세 여성은 0개월, 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을 실시한다.
- 15~26세 여성은 0개월, 2개월, 6개월 간격으로 3회 접종을 실시한다.

⑬ 인플루엔자

○ 대상

- 65세 이상 노인
- 생후 6개월~13세 영유아 및 어린이
- 임신부

○ 표준접종시기

- 매년 국가예방접종사업 시기 내 1회 접종을 실시한다.
- 단, 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첫 해에 1회만 접종받은 6개월 이상 9세 미만 소아에게는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이후 매년 1회 접종을 실시한다.

⑭ 장티푸스

○ 대상

- 다음의 대상자 중 위험요인 및 접종환경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접종을 실시한다.

- ① 장티푸스 보균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사람(가족 등)
- ② 장티푸스가 유행하는 지역으로 여행하는 사람 및 체류자
- ③ 장티푸스 균을 취급하는 실험실 요원

○ 표준접종시기

- Vi polysaccharide 백신은 2세 이상에서 1회 접종을 실시한다.
- 경구용 생백신은 5세 이상에서 격일로 3회 투여를 실시한다.
- 장티푸스에 걸릴 위험에 계속 노출되는 경우에는 3년마다 추가접종을 실시한다.

⑮ 신증후군출혈열

○ 대상

- 다음 대상자 중 위험 요인 및 접종환경들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접종을 실시한다.

- ① 군인 및 농부 등 직업적으로 신증후군출혈열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집단
- ②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 출혈열) 바이러스를 다루거나 쥐 실험을 하는 실험실 요원
- ③ 야외활동이 빈번한 사람 등 개별적 노출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자

○ 표준접종시기

-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2차 접종 후 12개월 뒤에 3차 접종을 실시한다.



2 참고 자료

195p

가. 주요 서식

<서식 I-1>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195p
<서식 I-2>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	197p
<서식 I-3>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	198p
<서식 I-4>	성인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 확인증	199p
<서식 I-5>	코로나19 예방접종업무 참여백신 시행확인증	200p
<서식 I-6>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 확인증	201p
<서식 I-7>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202p
<서식 I-8>	HPV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 확인증	203p
<서식 I-9>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공급 협약서	204p
<서식 I-10>	표준 여성 청소년 건강상담 체크리스트	205p
<서식 I-11>	국가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계약 해지 신청서	206p
<서식 I-12>	국가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계약 해지 통지서	206p
<서식 I-13>	국가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표	207p
<서식 I-14>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표	212p
<서식 I-15>	코로나19 백신보관용 냉장고 체크리스트	215p
<서식 I-16>	백신 보관 장비의 온도 기록 일지	216p
<서식 I-17>	코로나19 백신 수령 및 확인 양식[위탁의료기관]	217p
<서식 I-18>	코로나19 백신 입고기록 양식	218p
<서식 I-19>	코로나19 백신 관리 대장 양식	219p
<서식 I-20>	방문접종 등을 위한 백신 관리대장 양식	220p
<서식 I-21>	백신별 인식표	221p
<서식 I-22>	오늘의 백신(접종기관용) - 유효기한·백신종류 안내	222p
<서식 I-23>	다종 코로나19 백신 접종 체크리스트	223p
<서식 I-24>	예방접종 예진표	224p
<서식 I-25>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신고(보고)서	226p
<서식 I-26>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서	228p

2

참고 자료



가. 주요 서식

〈서식 I-1〉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앞 쪽)

제1조	계약목적	수탁기관은 위탁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필수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 ※ 위탁기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수탁기관: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제2조	“수탁기관”	의료기관명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종별		표시 과 목	
		주소(소재지)			
		전 화		전자우편주소	
		대표자		생년월일	
		면허종별		면허번호	
		의료정보시스템	[] 사 용 [] 미사용 ※ 사용시 업체명:		
제3조	위탁계약 조건	별지 뒷면 참조			
제4조	신의성실 및 위탁 계약의 해지	-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이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항을 위반하였거나, 제3조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수탁기관의 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계약기간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2부를 작성하여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기관〉기관명: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탁기관〉의료기관명: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접종비용상환용 통장사본 1부, 사업 참여 확인증	수수료 없음
------	----------------------------	--------

210mmx27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위탁계약조건 〉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예방접종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위탁의료기관의 의료인(의사)은 국가예방접종사업 수행을 위하여 예방접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④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과거 예방접종력을 조회하고 접종기록을 등록하며 비용상환을 신청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에 따라 예방접종기록을 등록한다.
- ⑤ 예방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을 준수한다.
- ⑥ 개인의 과거접종력 조회와 정보 활용 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진료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 ⑦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계약범위는 사업별 '사업 참여 확인증' 제출로 확인하며, 참여 내용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현행화하여야 한다.

〈서식 1-2〉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전자(또는 서면)-○○-○○○호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

1. 의료기관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예방접종업무 위탁범위:

귀 기관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서식 1-3〉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

어린이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

(보건소 제출용)

기 관 정 보			
의료기관명		요양기관번호	
대표자		전화	
주 소 (소재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시행 백신정보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시행여부	
B형간염	HepB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결핵	BCG(피내용)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Tdap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Td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폴리오	IPV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DTaP-IPV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Hib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DTaP-IPV/Hib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B형간염	DTaP-IPV-Hib-HepB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폐렴구균	PCV13(단백결합백신 13가)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PCV15(단백결합백신 15가)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PPSV23(다당백신 23가)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로타바이러스	RV1(로타릭스)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RV5(로타텍)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수두	VAR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A형간염	HepA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일본뇌염	IJEV(불활성화 백신-베로세포 유래)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IJEV(약독화 생백신-씨디제박스)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인플루엔자	IIV(불활성화 인플루엔자 백신) 3가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상기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20	
		대표자	(서명)

〈서식 I-4〉 성인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 확인증

성인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 확인증

(보건소 제출용)

기 관 정 보			
의료기관명		요양기관번호	
대표자		전화	
주 소 (소재지)			
「성인 국가예방접종사업」 시행 백신 정보			
대상 감염병	사업 대상	백신 종류	시행 여부
인플루엔자	65세 이상	IIV(불활성화 인플루엔자 백신) 3가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임신부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폐렴구균	65세 이상	PPSV23(0.5ml)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상기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성인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를 확인합니다.			
20 대표자 (서명)			

〈서식 1-5〉 코로나19 예방접종업무 참여백신 시행확인증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참여 백신 시행확인증

(보건소 제출용)

기 관 정 보			
기 관 명		요양기관번호	
대표자명		전 화 번 호	
주 소 (소재지)			
1.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참여를 위한 교육 이수 및 사업 내용을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시행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시행 백신 정보			
대상 감염병	백신 종류	시행 여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19 백신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상기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참여를 확인합니다.			
20 . . .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식 I-6〉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 확인증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 확인증

(보건소 제출용)

기 관 정 보			
기관명		요양기관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 소 (소재지)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 정보			
항 목		시행여부	
면역글로불린(HBIG) 투여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B형간염 예방접종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항원·항체검사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상기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를 확인합니다.			
20 대표자 (서명)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는 반드시 본인(법정대리인, 보호자)이 직접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llegible]

〈서식 I-8〉 HPV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 확인증

HPV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 확인증

(보건소 제출용)

기 관 정 보			
의료기관명		요양기관번호	
대표자		전화	
주 소 (소 재 지)			
「HPV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 정보			
항 목		시 행 여 부	
HPV 예방접종 및 건강상담* 시행 * 건강상담은 12세 여성 대상		☐ 시행 ☐ 시행하지 않음	
상기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HPV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를 확인합니다.			
20 . . . 대표자 (서명)			

〈서식 1-9〉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공급 협약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공급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중 [□가다실, 또는 □서바릭스] 공급에 대한 협약이다.

제2조(공급방법)

“갑”은 국가예방접종 사업 수행을 위해 “을”에게 위의 백신공급을 요청하고, “을”은 “갑”이 요청한 백신을 지정한 장소에 직접 운반·납품 한다.

제3조(보관 및 수송)

“을”은 백신의 보관 및 수송시에는 「생물학적제제의 제조·판매관리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다.

제4조(백신비 지급)

“갑”이 예방접종 실시 후 보건소에 비용상환을 요청하고, 보건소의 지급심사에서 상환결정된 건은 보건소에서 조달계약업체(정부 조달계약에 의해 결정)로 지급을 하며, “을”은 조달계약업체를 통해 상환 받는다.

※ 보건소의 지급심사 결과는 질병관리청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아래의 경우에 해당될 때는 “갑”은 “을”에게 백신비를 직접 지급한다.

- 보건소의 지급심사에서 상환불가로 결정된 건(중복접종, 이른접종 등)
 - 접종자의 과실로 인해 백신 오염이 발생하여 예방접종에 사용하지 못하게된 경우
 - “갑”이 공급 요청하고 “을”이 납품을 완료한 백신 중 유효기간이 도래시까지 접종하지 못한 백신
- 국가예방접종사업 외 백신은 국가에서 비용상환이 불가하므로, “갑”은 최근 접종건 등을 고려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소진 가능한 범위내에서 “을”에게 백신 공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백신공급기관 변경)

“갑”이 백신공급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을”에게 변경의사를 통보해야하며, 백신공급기관이 변경 승인된 시점에 “을”이 공급한 백신이 남아있는 경우 “갑”은 “을”에게 잔여 백신에 대한 백신비를 지급한다.

제6조(자원사업 수행)

“갑”은 이 협약을 체결한 후 이 협약서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로부터 위 내용에 관한 승인을 받은 후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제7조(기타)

동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운영세칙)에 따른다.

20 년 월 일

“갑”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

주 소:
연 락 처:
의료기관명:
요양기관번호:
대 표 자:

(인)

“을” 백신공급기관

주 소:
연 락 처:
회 사 명:
사업자번호:
대 표 자:

(인)

〈서식 I-10〉 표준 여성 청소년 건강상담 체크리스트

표준 여성 청소년 건강상담 체크리스트

건강상담에 동의한 경우 아래 문항에 표시하면서 사춘기의 특징적인 신체 발달에 대해 알아보고,
평소 궁금했던 점을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 보세요.

☐ 상담 대상자 이름 :

☐ 생년월일:

[1] 건강상담 동의

- ☐ 동의합니다(☞ [2]번 문항으로 넘어가세요.)
☐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래 [2]~[5]번 문항은 표시하지 마세요.)

[2] 초경 여부 확인

- ☐ 예 (년 월) ☐ 아니오 (☞ [5]번 문항으로 넘어가세요.)

[3] 월경력 확인

1. 최근 월경 시작일 :
 2. 월경 주기 : ☐ 규칙적 ☐ 불규칙적
 3. 월경 기간 : ☐ 2-7일 ☐ 2일 미만 혹은 8일 이상

[4] 월경 관련 증상

1. 월경통 ☐ 있음 ☐ 없음
 * 월경통이 있다면 ()점 (매우 심한 경우 10점)

 * 학교생활에 지장을 주는 월경통인가요?
☐ 예 ☐ 아니오
 * 진통제를 복용한 경험이 있나요?
☐ 예 (복용 시 효과가 있었나요? ☐ 예 ☐ 아니오) ☐ 아니오
 2. 월경 양 (해당사항 모두 표시해 주세요.)
☐ 1-2시간 마다 생리대를 바꿔야 한다. ☐ 밤에 생리대를 바꾸기 위해 잠에서 깬다.
☐ 일주일 이상 월경이 지속된다. ☐ 월경 양이 많아 학교생활이 힘들다.
☐ 월경 때 피곤하고 어지럽거나, 숨이 찬 적이 있다.
☐ 위 내용 모두 해당사항 없다.
 3. 월경 주기 : ☐ 21-45일 ☐ 21일 미만 혹은 46일 이상

[5] 유방 발달

- 아래는 유방 발달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경우를 골라주세요.
☐ 1단계: 유방이 발달하지 않았음
☐ 2단계: 젖방울이 생기고 만져짐
☐ 3단계: 유방이 점점 커지고 유륜(젖꼭지 주위의 피부보다 진하고 둥근 부분)도 넓어짐
☐ 4단계: 커진 유방 위로 유륜이 언덕처럼 튀어나옴
☐ 5단계: 튀어나왔던 유륜이 유방 전체와 같은 면으로 들어가고 젖꼭지만 튀어나옴

**[6] 사람유두종바이러스
(HPV) 감염증 예방
접종력**

1. 접종여부 : ☐ 있음 (접종일: 년 월 일) ☐ 없음
 2. 이전에 접종한 적이 있는 경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었나요?
☐ 있음 ☞ 어떤 증상이었나요? ☐ 없음

아래 문항은 상담 후 의사 선생님이 작성해 주십시오.

구분	확인 내용	확인 ☒
[1]	2차 성징과 초경에 대한 안내 자료를 제공하였음	☐
[2]	초경 여부를 확인하였음	☐
[3]-1	(초경을 한 경우라면) 월경과다 여부를 확인하였음	☐
[3]-2	비정상 자궁출혈(월경 양, 간격 등) 여부를 확인하였음	☐
[3]-3	월경통 여부를 확인하였음	☐
[4]	(초경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2차 성징 발현 여부를 확인하였음	☐

작성일:

의료기관명:

의사성명:

(서명)



질병관리청

〈서식 I-11〉 국가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계약 해지 신청서

국가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계약 해지 신청서

의료기관	기관명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종별		표시과목	
	대표자		연락처	
	해지사유 및 요청사항			

본 의료기관은 「어린이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 해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해지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식 I-12〉 국가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계약 해지 통지서

국가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계약 해지 통지서

수신: ○○○ 의료기관장

○○ 의료기관은 다음과 같이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합니다.

- 다 음 -

의료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해지사유:
해지일자:

※ 계약 해지일 전 비용상환 신청한 접종내역은 심사 후 지급예정

20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서식 I-13〉 국가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표

국가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자율 점검 표

(보건소 제출용)

※ 의료기관 대표자께서 점검하시고 점검결과 란에 직접 기재하여 주십시오.

등록 사항			
요양기관번호		의료기관명	
요양기관종별		표시과목	
주소(소재지)			
대표자		전 화	
FAX번호		이메일 주소	
예방접종업무 담당인력	총 인원: 명	☐ 의사: 명 ☐ 간호사: 명 ☐ 행정요원: 명	☐ 간호조무사: 명 ☐ 전산요원: 명 ☐ 백신관리 전담자: 명
국가예방 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 참여구분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 HPV 국가예방접종사업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국가 예방 접종 시행 여부	어린이 국가예방 접종사업	예방접종비용 지원	
		☐ B형간염 ☐ BCG(피네) ☐ DTaP ☐ Tdap ☐ Td ☐ IPV ☐ Hib ☐ DTaP-IPV ☐ DTaP-IPV/Hib ☐ DTaP-IPV-Hib-HepB ☐ 폐렴구균 (PCV13, 단백결합) ☐ 폐렴구균 (PCV15, 단백결합) ☐ 폐렴구균 (PPSV23, 다당) ☐ 로타바이러스 (RV1, 로타릭스) ☐ 로타바이러스 (RV5, 로타텍) ☐ MMR ☐ 수두 ☐ A형간염 ☐ 일본뇌염 불활성화백신 (베로세포 유래) ☐ 일본뇌염 약독화생 백신(씨디제박스) ☐ 인플루엔자	
		☐ HPV 4가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 HBIG 투여 ☐ B형간염 예방접종 ☐ 항원·항체 검사	
		☐ 성인 국가예방 접종사업 ☐ 폐렴구균 (PPSV23, 65세 이상) ☐ 인플루엔자(65세 이상) ☐ 인플루엔자(임신부)	
	기타 예방접종	☐ BCG(경피) ☐ 일본뇌염(약독화 생백신-세포배양(이모젠주)) ☐ HPV 9가	

일반사항 및 접종관련 점검사항	점검결과	
	예	아니오
1. 일반사항		
1)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 또는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인증서」를 방문자가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다.		
2)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백신을 사전에 구비해둔다.		
3)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련 지원내용 및 접종실시 기준 등을 숙지하고 있다.		
4)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에게 「국가예방접종사업」 내용을 자세히 안내한다.		
5) 예방접종안내문(VIS: Vaccine Information Statements)을 비치하고 있다.		
6) 보건소 방문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알고 있다.		
7) 예방접종 예진 의사 부재* 시,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없음을 알고 있다. * 예진 의사 휴가 등으로 의료기관내 예방접종 예진이 불가능한 전반적인 상황		
8) 현재, 한방병원 및 치과병원에 의과 진료과목이 개설되어 있고, 의사가 재직하고 있다.		
9) 한방병원 및 치과병원은 예방접종 예진이 가능한 의사가 모두 퇴사하여 의과 진료과목 설치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그 즉시 보건소로 통보하여 위탁의료기관 계약을 해지해야 함을 알고 있다.		
2. 예방접종 실시 전 준비사항		
1) 예방접종 예진표를 충분히 비치(보유)하고 있다.		
2)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에게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도록 한다.		
3)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등으로 접종 대상자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4) 예진시, 예방접종 시행 및 예방접종 일정안내 문자서비스 수신을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한다.		
5)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한 예방접종 예진표를 확인하면서 접종대상자를 예진하고 진찰소견 등을 기록한다.		
6) 예방접종 실시 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및 예방접종수첩 등으로 반드시 피접종자의 과거 접종력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7)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에게 예방접종 전·후의 주의사항 및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을 설명한다.		
8)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에게 '예방접종안내문(VIS: Vaccine Information Statements)'을 제공한다.		
3. 예방접종 실시		
1) 준비된 백신의 유효기간, 처방내용이 일치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한다.		
2) 백신을 접종하기 전 손을 비누로 씻거나 소독제로 소독한다.		
3) 예방접종 백신의 종류와 투여방법을 설명한다.		
4) 정확한 접종부위, 접종용량, 접종방법을 준수하여 접종한다.		
5) 주사 후 마른 솜이나 거즈로 주사부위를 뽀 부위를 가볍게 수초간 눌러준다.		
4. 예방접종 후		
1)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에게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보호자 신고제도를 설명한다.		
2)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에게 다음 예방접종일을 안내하고, 20~30분 동안 접종의료기관에 머물도록 하여 이상반응을 관찰한다.		
5. 기록보존		
1) 예방접종 예진표를 정해진 기간 동안 보존한다. ※ 보관기간: 5년		
2) 접종대상자의 인적정보를 확인하고 변경사항(휴대전화번호 등)은 수정한다.		
3) 예방접종기록은 접종 당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전산보고)하고 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접종기록을 작성하고 제출		

6. 비용상환			
1) 국가예방접종비용은 전액 무료로 피접종자에게 추가 진료비 등을 청구하지 않는다.			
2) 접종 후 전산등록을 지연하여 중복접종으로 등록했다면 먼저 전산등록한 의료기관에 비용상환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3) 참여 백신의 시행정보가 변경되면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을 현행화 하여 비용상환 신청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함을 알고 있다.			
백신관련 점검사항		점검결과	
		예	아니오
1) 백신 관리 전담자 및 대체요원을 지정하고 있다.			
2) 백신구입 또는 입고 시 생물학적제제 출하증명서를 수령하고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보관한다. ※ 생물학적제제 출하증명서 보관기간: 5년			
3) 백신보관 냉장고에는 백신만 보관하고 음식물, 검체 등을 함께 보관하지 않는다.			
4) 「백신전용 냉장고」표식 및 「백신의 보관관리」내용을 냉장고 외부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관리하고 있다.			
5) 백신보관 냉장고는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성애가 끼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다.			
6) 냉장고 내부의 안쪽 또는 외부에 온도계를 부착하고 있다. ※ 온도계 고장시 사용될 여분온도계 구비, 즉시교체 필요			
7) 백신은 동결되지 않도록 백신 보관온도를 2~8℃ 유지한다.			
8) 1일 2회(일과 시작 전, 일과 마친 후) 이상 온도를 점검하고 기록한다.			
9) 과거 5년 동안의 온도기록지를 보관하고 있다. ※ 최소 5년 이상 보관			
10) 주기적으로 백신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가까운 백신은 냉장고내 앞쪽에 위치하도록 하여, 백신의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11)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은 분리한 후, 관리방침에 따라 폐기처분하고 있다.			
HPV 국가예방접종사업 점검사항		점검결과	
		예	아니오
1) 13세 이상에서 HPV 예방접종만 제공하는 것을 알고 있다. ※ 건강상담 미제공			
2) 대상자의 1차 접종 시기에 따라 총 지원 횟수가 달라짐을 알고 있다.			
3) HPV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 중 저소득층* 기준에 대해 잘 알고 있다. *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4) 12세 대상자에게 건강상담과 예방접종은 반드시 동시에 제공되어야 하며,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두가지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공할 수 없음을 알고 이행하고 있다.			
5) 표준 여성 청소년 건강상담 체크리스트를 비치하고 있으며, 상담 전 대상자에게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6) 상담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진료실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7) '표준 여성 청소년 건강상담 체크리스트' 바탕으로 상담흐름도(Flowchart)에 따라 필요한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8) 상담 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와 자궁경부암,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 향후 자궁경부암 검진의 필요성 등을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9) '표준 여성 청소년 건강상담 체크리스트'의 의료인 항목을 작성하고 있다.			
10) 상담 시 사춘기 성장발달과정과 무월경·월경이상·월경통 등 여성 청소년에게 흔히 발생하는 월경 관련 질환 등을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11) 상담 대상자가 작성한 '표준 여성 청소년 건강상담 체크리스트'를 보관하고 있다. ※ 보관기간: 5년			
12) 상담 대상자가 상담을 거부하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접종력 등록 시 '상담안함' 항목을 체크하고 있다.			
13) 18~26세 저소득층 여성이 지원대상 기준에 부합하는지 전산 시스템 또는 자격 증명서류를 확인 후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14) HPV 예방접종 및 상담은 전액 무료로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 등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 일반사항	점검결과	
	예	아니오
1) 사업내용(지원대상, 지원기준, 예방처치 일정 등)을 잘 알고 있다.		
2) B형간염 산모가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3)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에게 사업 내용과 중요성, 일정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4)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리플렛 등 홍보물을 비치하여 안내 시 활용하고 있다.		
5) 사업대상 산모에게 사업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구득하고, 보관하고 있다. ※ 보관기간: 5년(단, 예방처치 관리 일정이 5년 내 종료되지 않은 경우는 관리 종료 시까지 추가보관)		
6) 보호자에게 받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동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고 있으며, 산모 외 타인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7)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산모의 임신 중(또는 분만 후 7일 이내) B형간염 검사결과(HBsAg 양성 또는 HBeAg 양성)를 제출해야 함을 알고 있다. ※ 산모검사 결과지는 시스템 업로드		
8) 기초접종, 항원-항체 정량검사, 재접종, 재검사 등 권장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해야 함을 알고 있다.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 면역글로불린 투여 관련 점검사항	점검결과	
	예	아니오
1) 출생 후 12시간 내 HBIG 및 B형간염 백신 접종을 부위를 달리하여 실시하고 있다.		
2) 출생 후 12시간 내 투여하는 HBIG과 B형간염 백신 접종은 분만시기(주말/심야 등)에 관계없이 항상 이루어지고 있다.		
3) 체중 2KG 미만인 저체중아에게도 출생 12시간 내에 HBIG 투여를 실시하고 있다.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 접종 관련 점검사항	점검결과	
	예	아니오
1) 미숙아(출생시 체중이 2KG 미만)는 총 4회 접종이 필요함을 알고 있으며, 준수하여 시행하고 있다.		
2) B형간염 백신 접종은 대퇴부 전외측에 실시하고 있다.		
3) 접종/검사 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서 과거 내역 및 예방처치일정을 확인하여 다음 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4) 3차 접종 시 기초접종 완료 후 면역 획득여부 확인을 위해 생후 9~15개월에 항원-항체 검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함을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있다.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 항원항체 검사관련 점검사항	점검결과	
	예	아니오
1) 대상자의 B형간염 항원-항체검사는 권장되는 정량검사법으로 실시하고 있다.		
2) 면역획득 확인을 위한 1차 항원-항체 검사는 정확한 검사결과를 얻기 위하여 생후 9개월 이후에 실시하고 있다. ※ 1차 항원항체 검사 권장시기: 생후 9~15개월		
3) 검사 시행 후 검사 결과를 설명하고 결과에 따른 다음 일정(사업 종료/재접종/재검사 등)을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4) 검사 시행 후 검사 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결과지를 업로드하고 있다.		
5) 감염으로 인한 사업종료 대상(보호자)에게 배포할 감염관리 안내문(보호자용)을 비치하여, 추가 감염을 예방하고,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안내 등에 활용하고 있다.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점검사항	점검결과	
	예	아니오
1) 사업내용(지원대상, 지원내용, 접종 실시기준 등)을 잘 알고 있다.		
2) 피접종자(또는 보호자)에게 '예방접종 후 안내문'을 숙지하도록 안내한다.		
3) 65세 이상 폐렴구균 백신(PPSV23)은 '총량구매-사전현물공급' 방식으로 시행됨을 알고 있다.		
4) 65세 이상 폐렴구균 백신(PPSV23) 폐기 최소화를 위해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 또는 지자체가 설정한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소진이 어렵다면, 관할 보건소에 사전 재분배 등을 요청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점검사항	점검결과	
	예	아니오
1) 해당 절기 사업대상 및 지원기간 등 사업 내용을 알고 있다.		
2) 65세 이상은 연령별 사업기간이 구분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		
3) 어린이 중 2회 접종 대상자는 사업기간이 구분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		
4) 임신부는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5) 인플루엔자 사업은 백신 공급 방식 및 사업시기를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상기 자율점검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위 점검자(대표자) (서명)		

담당자 확인 (보건소 기재란)	종합의견:
	직급: 성명: (서명)

※ 자율점검표 작성 내용이 거짓임이 확인 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의료기관에 있음

〈서식 1-14〉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표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자율 점검 표

(보건소 제출용)

※ 의료기관 대표자께서 점검하시고 점검결과 란에 직접 기재하여 주십시오.

등록사항				
요양기관번호		기관명		
요양기관종별		전문과목 (표시과목)		
주 소 (소재지)				
대표자명		전화번호		
FAX번호		이메일 주소		
예방접종업무 담당인력	총 인원: 명	☐ 의사: 명 ☐ 간호조무사: 명 ☐ 간호사: 명 ☐ 전산요원: 명 ☐ 행정요원: 명 ☐ 백신관리 전담자: 명		
일반사항 및 예방접종관련 점검사항				점검결과
				예 아니오
1. 일반사항				
1)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관련 사업내용 및 예방접종 실시 기준 등을 숙지하고 있다.				
2)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 및 프린터를 보유하고 있다.				
3) 예방접종 예진표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				
4) 예방접종 시행하는 의사 모두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계약 체결 및 갱신 전 해당 교육을 이수하였다.				
5) 「코로나19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를 방문자가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함을 알고 있다.				
6) 코로나19 예방접종안내문(VIS: Vaccine Information Statements)을 비치해야 함을 알고 있다.				
7) 백신관리 담당자(부재시 대리자)를 지정하였고, 담당자는 백신관리 전반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다				
2. 예방접종 실시 전 준비사항				
1) 예방접종 예진표를 비치할 공간을 준비했다.				
2) 사업 내용(사업 대상 및 사업 지원 기간 등)을 알고 있다.				
3) 접종받은 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에게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도록 함을 알고 있다.				
4)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등으로 접종 대상자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5) 예진 시, 예방접종 시행 및 예방접종 일정안내 문자서비스 수신에 대해 접종받은 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해야 함을 알고 있다.				
6) 접종받은 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한 예방접종 예진표를 확인하면서 접종대상자를 예진하고 진찰소견 등을 기록해야 함을 알고 있다.				
7) 예방접종 실시 전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접종받은 자의 과거 접종력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8) 접종받은 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에게 예방접종 전후의 주의사항 및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하여 설명해야 함을 알고 있다.		
9) 접종받은 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안내문(VIS: Vaccine Information Statements)'을 제공해야 함을 알고 있다.		
3. 접종실시		
1) 접종 전 준비된 백신의 종류, 유효기간, 처방내용이 일치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함을 알고 있다.		
2) 백신 접종을 위한 준비 공간을 별도로 확보하고 있다.		
3) 다인용 백신의 경우 접종 전 적정온도를 준수하여 분주해야 함을 알고 있다.		
4) 백신을 접종하기 전 개인 보호구 착용, 손 소독(비누로 씻거나 소독제로 소독) 등을 해야 함을 알고 있다.		
5)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의 종류와 투여방법에 대하여 설명해야 함을 알고 있다.		
6) 정확한 접종부위, 접종용량, 접종방법에 따라 접종해야 함을 알고 있다.		
7) 주사 후 마른 솜이나 거즈로 주사부위를 뺀 부위를 가볍게 수초 간 눌러줘야 함을 알고 있다.		
4. 접종 후		
1) 접종받은 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에게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제도에 대해 설명해야 함을 알고 있다.		
2) 접종받은 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에게 다음 예방접종일을 안내하고, 20~30분 정도 접종의료기관에 머물도록 하여 관찰해야 함을 알고 있다.		
3) 접종 후 분리된 별도 공간에서 이상반응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4) 급성 이상반응 발생 시 원활한 대응을 위한 응급처치 의약품(에피네프린) 등이 구비되어 있다.		
5) 응급환자 발생 시 관내 이송 가능한 의료기관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6) 필요 시 코로나19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를 출력하여 제공해야 함을 알고 있다.		
5. 기록보존		
1) 예진표를 정해진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함을 알고 있다. ※ 보관기간: 5년		
2) 필요 시 접종대상자의 인적정보를 확인하고 변경사항(휴대전화번호 등)을 수정해야 함을 알고 있다.		
3) 예방접종기록은 접종 당일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등록(전산보고)해야 함을 알고 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접종기록을 작성하고 제출		
6. 비용상환		
1) 코로나19 예방접종비용은 전액 무료로 접종받은자에게 추가 진료비 등을 청구하지 않음을 알고 있다.		
2) 오접종이 발생한 경우 비용상환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백신관련 점검사항	점검결과	
	예	아니오
1) 백신 관리 담당자 및 대체요원을 지정하고 있다.		
2) 백신 수령 시 생물학적 제제 등 출하증명서를 수령하고 관련내용을 확인 후 보관해야 함을 알고 있다. ※ 생물학적 제제 등 출하증명서 보관기간: 5년		
3) 백신 보관 전용냉장고에는 백신만 보관하고 음식물, 검체 등은 보관하지 않고 있다.		
4) 「백신 보관 전용냉장고」 표식, 「백신보관 현황」 내용, 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연락처(관할 보건소 담당자, 장비수리업체)를 냉장고 외부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관리하고 있다.		
5) 백신보관 전용 냉장고의 내부온도는 외부에서 온도를 식별할 수 있는 디지털 온도계, 온도이탈 시 알람기능 등을 보유한 자동온도기록계를 사용하여 관리하고 있다. ※ 온도계 고장 시 사용될 여분온도계 구비, 즉시교체 필요		
6) 온도계 자동온도기록계의 온도측정 센서는 백신을 보관하는 구역에 인접 설치하여 백신의 온도가 직접 측정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7) 접종 기간 내 백신 보관 장비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 장비 혹은 백신을 보관할 수 있는 물품(아이스박스, 냉매, 에어 캡, 여분의 온도계)을 구비하고 있다.		
8) 백신별 적정 보관온도를 유지해야 함을 알고 있으며, 백신 보관 전용냉장고 내 백신별 보관 구역을 구분하여 유효기한 순으로 보관하고 있다.		

담당자 확인 (보건소 기재란)	종합의견:
	직급: 성명: (서명)

※ 자율점검표 작성 내용이 거짓임이 확인 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의료기관에 있음

〈서식 I-15〉 코로나19 백신보관용 냉장고 체크리스트

일일 점검사항	확인결과					
	월	화	수	목	금	토
○ 장비 운영 확인 사항						
- 백신보관용 냉장고의 전원공급은 안정적인가? * 누전, 차단 가능성, 전용 콘센트 사용 등 확인 필요						
- 백신보관용 냉장고의 문은 정확히 닫혀 있는가?						
- 백신보관용 냉장고에는 시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가?						
○ 백신보관 냉장고 관리						
- 디지털 온도계·자동온도기록계 센서위치는 적정(백신 근처)한가?						
- 자동온도기록계의 온도이탈 경보는 점검하였는가?						
○ 온도이탈 등 긴급 상황 대비						
- 백신냉장고 옆에 긴급상황 대비 물품*을 구비하고 있는가? * 아이스박스, 냉매(아이스팩 등), 에어캡, 백신고정용 상자, 온도계 등						
○ 백신별 유효기한 확인						
- 유효기한(자체·냉장)이 경과한 백신이 있는가? * 유효기한이 지난 경우, 접종하지 말고 즉시 보건소에 보고						
- 72시간 이내에 유효기한(자체·냉장)이 도래하는 백신이 있는가? * 유효기한 내 접종완료 필요 → 불가한 경우 즉시 보건소에 보고						
☞ 점검시간						
☞ 점검자 확인						
○ 기타사항 - 주말, 공휴일, 야간 등 장시간 접종기관을 비우는 경우 ▶퇴근 전 점검, ▶백신냉장고 등 정상 가동 확인, ▶긴급 상황 대비 연락처 구비 등 필요 - 백신관리자는 온도이탈 push 앱 알람 시 확인 철저						
☞ 기관명 :						

※ 체크리스트는 일일 2회 작성 후 접종기관에서 자체 보관(5년간)

※ (주의) 모든 접종기관 담당자는 퇴근 前 반드시 점검

〈서식 I-16〉 백신 보관 장비의 온도 기록 일지

※ 접종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백신 보관 장비 1대당 1장씩 작성 필요

백신 보관 장비 온도기록지											
접종기관명						보관장비명		예) 접종실 냉장고 ②			
점검기간		2021. 5. 1. ~ 5. 31.				백신관리담당자		홍길동			
일자	시간	보관장비 내부온도(℃)	실내온도 (℃)	점검자	일자	시간	보관장비 내부온도(℃)	실내온도 (℃)	점검자		
1	오전	10:00	6.2℃	22.5℃	홍길동	16	오전	11:30	4.7℃	27.0℃	고길동
	오후	17:30	5.3℃	20.0℃	홍길동		오후	16:30	7.0℃	25.8℃	고길동
2	오전				17	오전					
	오후					오후					
3	오전				18	오전					
	오후					오후					
4	오전				19	오전					
	오후					오후					
5	오전				20	오전					
	오후					오후					
6	오전				21	오전					
	오후					오후					
7	오전				22	오전					
	오후					오후					
8	오전				23	오전					
	오후					오후					
9	오전				24	오전					
	오후					오후					
10	오전				25	오전					
	오후					오후					
11	오전				26	오전					
	오후					오후					
12	오전				27	오전					
	오후					오후					
13	오전				28	오전					
	오후					오후					
14	오전				29	오전					
	오후					오후					
15	오전				30	오전					
	오후					오후					
-	-				31	오전					
-	-					오후					

〈서식 I-17〉 코로나19 백신 수령 및 확인 양식[위탁의료기관]

* 지자체 및 접종 위탁의료기관과 상호간 확인하고 보관

* 기관 간 백신 이송시, 유통업체에서 배송시 사용된 소분박스에 고정해서 이동할 것

* 백신 이송 전, 백신관리 담당자는 이송용 박스의 콜드체인 유지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코로나19 백신 운송·수령					
제품명		화이자/모더나/노바백스		수량	vial/PFS
저장방법		냉장			
보 건 소	기관명				
	포장형태				
	출고일시				
수 령 자	의료기관명 (기관번호)				
	주소				
	포장형태/온도	예) 수송용기/4℃	유효기간 (로트번호)	2025.6.30. ABC123	
			*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냉장 해동 후 백신유효기간 기재		
위와 같이 코로나19 백신을 수령·확인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자체 담당자 000 (서명 또는 날인) 의료기관 백신관리 담당자 000 (서명 또는 날인)					

〈서식 I-18〉 코로나19 백신 입고기록 양식

* 위탁의료기관이 유통업체에서 백신 수령 시, 입고 기록시 사용
* 백신보관장비 문이나 근처에 두고 사용, 상황에 맞춰 수정하여 사용 가능

코로나19 백신 입고 기록지

접종기관명			보관장소		① 냉장고	
입고기간		2024. 10. 7.(월) ~ 10. 8.(화)				
연번	입고일시	백신명	로트번호	수량 (vial)	입고자 이름	백신관리 담당자
1	10. 7. 11:00	화이자JN.1	ABC123	50	홍길동	나백신
2	10. 8. 15:00	모더나JN.1	XYZ123	30	고길동	나백신

위와 같이 코로나19 백신을 백신보관장치에 입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000 접종기관 백신관리 담당자 000 (서명 또는 날인)

〈서식 I-19〉 코로나19 백신 관리 대장 양식

* 백신보관장비(냉동고, 냉장고) 문이나 근처에 두고 사용

* 위탁의료기관 등 상황에 맞춰 수정하여 사용 가능

코로나19 백신 관리 대장						
의료기관명				보관장소		① 냉장고
백신관리기간		2024. 10. 10.(목) ~ 10. 30.(수)				
연번	반출일시	백신명	로트 번호	수량 (vial)	반출자 이름	비고
1	10. 14. 12:00	화이자JN.1	ABC123	30	홍길동	
2	10. 21.14:00	모더나JN.1	XYZ123	5	가나다	

위와 같이 코로나19 백신을 백신보관장치에서 반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000의료기관 백신관리 담당자 (서명 또는 날인)

〈서식 I-20〉 방문접종 등을 위한 백신 관리대장 양식

* 보건소 및 의료기관이 방문접종 등을 위해 보건소 외부로 백신을 반출 시 사용하며, 사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가능

방문접종 ☐☐☐ 백신 관리 대장

일 자: 년 월 일

관리기관: 000 보건소 또는 000 예방접종센터

※ 동일 일자에 반출-사용-반납된 현황을 1일 1대장으로 정리(필요시 페이지 추가)

〈백신 반출 현황〉						
연번	반출시간	백신 반출 목적	제품명	로트번호	수량(vial)	반출자 이름
1	10:00	A시설 거주자 a명 접종	가	abc123	5	홍길동
2						
3						

〈백신 사용 현황〉						
연번	사용시간	백신 사용 내역	제품명	로트번호	수량(vial)	사용자 이름
1	10:00~14:00	A시설 거주자 b명 접종	가	abd123	4	홍길동
2						
3						

〈백신 반납 현황〉						
연번	반납일시	백신 사용 내역	제품명	로트번호	수량(vial)	반납자 이름
1	14:00	A시설 거주자 b명 접종 후 남은 잔량	가	abd123	1	홍길동
2						
3						

위와 같이 코로나19 백신을 반출, 사용, 반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반출자 홍 길 동 (서명 또는 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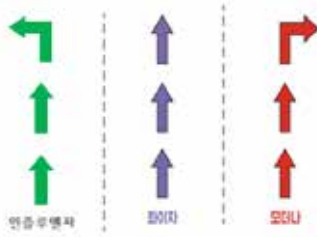
사용자 홍 길 동 (서명 또는 날인)

반납자 홍 길 동 (서명 또는 날인)

보건소 백신관리 담당자 고 길 동 (서명 또는 날인)

〈서식 I-21〉 백신별 인식표

표시해주세요!

백신별 대상별 인식표 색상 및 모양		
● 화이자(12세 이상)	★ 영유아용 화이자	
● 모더나	▲ 소아용 모더나	★ 영유아용 모더나
● 인플루엔자(독감)	● 노바백스	
백신명을 표시해주세요.	대상자에게도 표시해주세요.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인플루엔자(독감)		
동선에도 표시해주세요.	예진표에도 표시해주세요.	
		

※ 유의사항

- ▶ 백신별 고유색은 모두가 동일하게 인지하도록 자체적으로 변경하지 않음
- ▶ 백신명은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 (인플루엔자 또는 독감)
- ▶ 예방접종 접수 시 접종백신에 따라 ①접종대상자에게 스티커·목걸이 등을 제공하고, ②예진표는 컬러용지·스티커 등을 활용하여 구분
- ▶ 동시접종 시 백신이 혼동되지 않도록 인식표를 접종부위 팔에 부착하는 등 구분

〈서식 1-22〉 오늘의 백신(접종기관용) 유효기간·백신종류 안내

오늘의 백신은

화이자	00. 0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모더나	00. 0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인플루엔자(독감)	코로나19와 동시접종 가능합니다

※ 유효기한 내에서는 남은 일수와 관계없이 효과성과 안전성이 동일합니다.

날짜 :

의료기관명 :

〈서식 I-23〉 다중 코로나19 백신 접종 체크리스트

안전접종을 위해 매일매일 체크해주세요!		
연번	점검사항	확인결과
《접종대상자 관리》		
1	▶ 접수 단계에서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 예약현황, 접종 이력, 백신 종류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있다.	☐ 예 ☐ 아니오
2	▶ 대상자에게 백신별 인식표(스티커·목걸이 등)를 배부하여 접종대상자를 구분하고 있다. ※ 백신 상호명은 영문 및 축약형이 아닌 반드시 한글로 표시함	☐ 예 ☐ 아니오
《오접종 예방》		
3	▶ 백신 접종 전에 접종 대상자에게 백신 종류 등을 구두로 안내하며, 대상자 본인 및 예진표·인식표 등과 교차 확인하고 있다. ※ 접종 직전 “OOO 백신 접종하겠습니다.” 등 구두로 백신 종류 등 안내	☐ 예 ☐ 아니오
4	▶ 백신 접종 전에 백신별 접종방법, 적정 용량, 유효기한 등을 확인하고 있다.	☐ 예 ☐ 아니오
《백신 관리》		
5	▶ 백신별 냉장고 외관 등에 백신 종류를 반드시 표기하고, 동일 냉장고 사용 시 백신별 층·칸을 구분하고 있다. ※ 백신별 별도 보관 냉장고 사용 시, 냉장고별로 디지털 온도계 설치	☐ 예 ☐ 아니오
6	▶ 백신 보관 냉장고의 온도를 1일 2회 이상 점검·기록하고, 문 닫힘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온도계 및 온도 이탈 시 알람 기능 구비	☐ 예 ☐ 아니오
7	▶ 백신의 유통기간·유효시간을 확인 및 백신 폐기(물) 처리 절차를 숙지하고 있으며, 유효시간이 지난 다회용 백신·백신잔량을 별도로 보관할 폐기물함을 두고 있다.	☐ 예 ☐ 아니오
《이상반응 관리》		
8	▶ 접종 전 접종 대상자에게 이상반응에 대해 안내하고, 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위한 공간 및 응급물품을 확보하고 있다.	☐ 예 ☐ 아니오
9	▶ 백신별 이상반응 종류, 응급상황 시 대처 방법 및 이상반응 발생 시 신고절차를 숙지하고 있다.	☐ 예 ☐ 아니오
《비상연락망 구축》		
10	▶ 온도이탈·오접종 발생에 대비하여 보건소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있다.	☐ 예 ☐ 아니오

※ 위탁의료기관은 접종실에 체크리스트를 비치하여 상시 확인할 것
 ※ 코로나19 접종, 인플루엔자 접종 모두 수행하는 기관의 경우도 작성

〈서식 1-24〉 예방접종 예진표

예방접종 예진표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하여 아래의 질문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본인(법정대리인, 보호자) 확인란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종 대상자 인적 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남, □여)	
실제 생년월일		외국인 등록번호	- (□남, □여)	
전화번호	(집)	(휴대전화)	체 중	kg
예방접종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등에 대한 동의사항				본인 확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3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① 수집·이용 목적: 예방접종의 다음접종 및 완료 여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여부 관련 문자 및 모바일앱 알림 서비스 제공 ② 수집·이용 항목: 개인정보(민감정보, 주민등록번호 포함), 전화번호(집/휴대전화) ③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예방접종을 하기 전에 접종 대상자의 예방접종 내역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으로 사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예방접종 내역의 사전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의료인은 예방접종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접종 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예 □아니오
예방접종의 다음 접종 및 완료 여부에 관한 정보를 문자 및 모바일앱으로 수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알림 수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의하지 않은 항목에 대한 정보를 수신할 수 없습니다.				□예 □아니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여부와 관련된 알림을 문자 및 모바일앱으로 수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알림 수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의하지 않은 항목에 대한 정보를 수신할 수 없습니다.				□예 □아니오
접종 대상자에 대한 확인사항				본인 확인 ☒
1. 최근 1개월 이내에 받은 예방접종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방접종명을 적어 주십시오. ()				□예 □아니오
2. 과거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상반응과 해당 예방접종명을 적어 주십시오. ()				□예 □아니오
3. 오늘 아픈 곳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픈 증상을 적어 주십시오. ()				□예 □아니오
4. (여성) 현재 임신 중이거나 다음 한 달 동안 임신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5. 약이나 음식물(예: 계란) 혹은 백신 접종으로 두드러기, 알레르기 증상(예: 발진, 아나필락시스: 쇼크, 호흡곤란, 의식소실, 입술/입안의 부종 등)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6. 암, 백혈병 혹은 면역계 질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병명을 적어 주십시오. ()				□예 □아니오
7. 최근 3개월 이내에 스테로이드제, 항암제, 방사선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8. 최근 1년 동안 수혈을 받았거나 면역글로불린을 투여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9. (코로나19) 혈액응고장애를 앓고 있거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십니까? 그렇다면 질환명 또는 약 종류를 적어 주십시오. ()				□예 □아니오
10. 경련을 한 적이 있거나 기타 뇌신경계 질환(예: 길랭-바레 증후군 포함)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1. 그 외 선천성 기형, 천식 및 폐질환, 심장질환, 신장질환, 간질환, 당뇨 및 내분비 질환, 혈액 질환(혈액응고장애 외)으로 진찰 받거나 치료 받은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병명을 적어 주십시오. ()				□예 □아니오
의사의 진찰결과와 이상반응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방접종을 하겠습니다. 본인(법정대리인, 보호자) 성명: (서명) 접종대상자와의 관계: () * 접종대상자가 출생신고 이전의 신생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년 월 일				
의사 예진 결과 (의사기록란)				확인 ☒
체온: °C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설명하였음		☐
‘이상반응 관찰을 위해 접종 후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야 함’을 설명하였음				☐
문진결과:				
이상의 문진 및 진찰 결과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의사성명:	(서명)

〈별지〉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본 문진표는 면역저하자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 접종 대상자에 해당하는 질환인지를 확인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이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	-	(□남, □여)
전화번호	(집)	(휴대전화)		
면역저하질환 확인사항				
▷ 다음 중 현재 귀하에게 해당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과거에 해당했으나 현재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표기하지 않음)				
■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인한 항암 치료 중			☐	
■ 장기이식 수술 후 면역억제제 복용			☐	
■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 혹은 2년 이상 경과 후 면역억제제 치료 중			☐	
■ 일차(선천)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Aldrich syndrome 등)			☐	
■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 치료 중			☐	
■ 상기 기준에 준하는 면역저하질환(이 항목은 의사와 상의 후 표기) ☐ 질환명: _____				
▷ 본인은 상기 표기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본인(법정대리인, 보호자) 성명: (서명) 접종대상자와의 관계: 년 월 일				

《서식 1-25》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신고(보고)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6. 4.>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신고(보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신고방법 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또는 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19세 미만인 경우 보호자 성명)						
	전화번호		직업	성별	[] 남 [] 여		
	주소	우편번호					
	[] 거주지 불명 [] 신원 미상						
(임신부)	[] 출산예정일: 년 월 일 (또는 [] 마지막 생리일): 년 월 일						
	[] 신고 시 이미 출산 한 경우, 출산일: 년 월 일						
예방접종 일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분						
	(임신부) 재태주수 주 - 재태주수를 모르는 경우: [] 임신 초기(0-13주) [] 임신 중기(14-27주) [] 임신 후기(28주 이상)						
예방접종 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예방접종 종류 및 제품명	제조회사	제조번호	유효기간(연월일)	예방접종 부위	예방접종 방법	과거 접종 횟수	
최근 4주 이내에 접종한 백신의 종류 및 접종일							
임신기간 동안 접종한 백신의 종류 및 접종일							
접종일	예방접종 종류 및 제품명	제조회사	제조번호	유효기간 (연월일)	예방접종 부위	예방접종 방법	과거 접종 횟수
접종 전 특이사항	[] 5세 이하인 경우 ※ 해당 시 접종 전 체온(℃) 출생 체중(kg)						
	[] 선천성 기형 [] 그 밖의 기저질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사항	이상반응 발생 일시(년/월/일/시/분)						
	이상반응 진단 일시(년/월/일)						
	이상반응 종류	국소 이상반응	[] 접종 부위 농양 [] 림프선염(화농성림프선염 포함)				
			[] 심한 국소 이상반응 [] 연조직염				
		신경계 이상반응	[] 급성 마비 [] 뇌증 혹은 뇌염				
		[] 경련 [] 길랭바레증후군					
	그 밖의 전신 이상반응	[] 알레르기 반응 [] 아나필락시스양 반응 []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 발열 [] 관절염 [] 골염 혹은 골수염							
[] 전신파종성 비씨지감염증 [] 혈소판 감소 자반증							
	[] 그 밖에 접종 후 4주 이내에 발생한 중대하거나 특이한 이상반응						
이상반응 진행상황	1. 진행 중	[] 생명위중 [] 입원치료 [] 외래치료 [] 치료 안함					
	2. 상태종료	[] 완전회복 [] 경미장애/후유증 [] 영구장애/후유증 [] 사망					
	3. 모름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기록	요양기관 지정번호						
	진단(한)의사 성명			면허번호			
	(서명 또는 날인)						

(뒤쪽)

작성방법

서명란은 컴퓨터통신 이용 시에는 생략합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종류

1. 국소 이상반응

- ☐ 접종부위 농양
 - 발열에 관계없이 접종부위에 체액이 고인 병변이 발생한 경우
 - 세균성: 화농, 염증 증후, 발열, 그람 염색 결과 양성, 세균배양 양성, 분비물 내의 중성백혈구의 증가 소견 등으로 세균성 농양이 의심됨. 다만, 위의 소견 중 일부가 없다고 하여 세균성 농양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 무균성: 세균성 감염의 증거가 없는 경우
- ☐ 림프선염(화농성 림프선염 포함)
 -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림프선이 1cm 이상 (어른 손가락 굵기 정도) 커지거나
 - 림프선에 체액이 유출되는 구멍이 형성된 경우
 - 거의 대부분 비씨지 접종에 의하여 발생하며, 접종 후 2~6개월 사이에 접종부위와 같은 쪽(대부분 거드랑이)에 나타남
- ☐ 심한 국소 이상반응
 - 접종부위를 중심으로 발적(發赤), 부어오름과 함께 다음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
 - 접종부위에서 가장 가까운 관절 부위 너머까지 부종이 나타남
 - 통증·발적·부어오름·경결(硬結) 등이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 ☐ 연조직염
 - 피부에 발생하는 급성, 감염성, 팽창성 염증으로 접종부위 통증, 홍반, 부기, 열감이 나타나는 경우

2. 신경계 이상반응

- ☐ 급성 마비
 - 경구용 폴리오 백신 접종 4~30일 이내, 혹은 백신 접종자와 접촉한 후 4일~75일 이내에 이완성 마비가 급성으로 발생하여, 신경학적 이상이 60일 이상 지속되거나 사망한 경우
- ☐ 뇌 증(腦症)
 - 예방접종 후에 급성으로 발생하면서 다음 소견 중 2가지 이상을 동반한 경우
 - ① 뇌전증발작
 - ② 1일 이상 지속되는 의식 혼탁
 - ③ 1일 이상 지속되는 특이 행동
 - ※ 백신의 종류에 따라 뇌증의 발생 가능 기간이 다음과 같이 다름(예: DT, DTaP, DTP, DTP-Hib 등은 72시간, MMR은 5~15일)
- ☐ 뇌염
 - 뇌증에서 언급한 증상과 함께 뇌염증의 증후를 동반하여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뇌척수액 검사상 세포증다증을 보이거나 바이러스가 분리됨

- ☐ 경련
 - 경련이 수 분~15분 이상 지속되며, 국소 신경학적 증상이나 증후를 동반하지 않음
- ☐ 길랭 바레(Guillain-Barre) 증후군
 - 진행성, 상행성 이완성 마비가 좌우대칭으로 급속히 발생하고, 마비 발생 당시 발열은 없고 감각 이상을 동반하며, 뇌척수액 검사상 단백세포 해리가 중요한 진단 소견임

3. 기타 전신 이상반응

- ☐ 알레르기 반응
 - 다음의 증상 중 하나 이상을 동반하는 경우
 - ① 피부 병변(두드러기, 습진)
 - ② 천명(쌩쌩거림)
 - ③ 안면 부어오름 또는 전신 부어오름
- ☐ 아나필락시스양 반응
 - 예방접종 후 2시간 이내에 급성으로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 ① 기관지 수축으로 인한 천명(쌩쌩거림)과 호흡곤란
 - ② 후두 연축/부종
 - ③ 한 개 이상의 피부 병변(예: 두드러기, 안면 부어오름, 전신 부어오름)
- ☐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 예방접종 직후 순환기 기능부전(예: 의식혼탁, 저혈압, 말초맥박소실, 말초혈액 순환부전으로 인한 차갑고 축축한 손발)이 나타나고, 기관지 연축, 후두 연축/부종 등으로 호흡곤란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음
- ☐ 발열
 - 직장 체온이 39℃ 이상인 경우
- ☐ 관절염
 - 관절염이 주로 사지의 작은 관절에 나타남
- ☐ 골염 혹은 골수염
 - 비씨지 접종으로 인한 골감염(접종 후 8개월~16개월 이내에 발생함) 또는 다른 세균성 감염에 의하여 발생한 골감염임
- ☐ 전신파종성 비씨지감염증
 - 비씨지 접종 후 1개월~12개월 이내에 일어나는 전신성 감염으로 Mycobacterium bovis 비씨지 균주를 분리하여 확진함
- ☐ 혈소판 감소 자반증
 - 혈중 혈소판의 수가 50,000/mm³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자가면역질환 등의 다른 원인이 없는 경우라야 함
 - 주로 홍역 백신(MMR)과 관련하여 나타나며 7~30일 이내에 증상 출현

〈서식 1-26〉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서

1. 조사경위						
조사 주체	시(도) 역학조사관 (연락처:)					
조사 일시	년 월 일 ~ 년 월 일					
조사 대상 정보	○ 성명: ○ 성별: ○ 접종 당시 연령: 세 ○ 주민등록번호: - ○ 주소지: ○ 이상반응 의료기관 진단명: (질병 코드:)					
	[임신부인 경우] ○ 출산예정일: 년 월 일 (또는 [] 마지막 생리일): 년 월 일) ○ 신고 시 이미 출산 한 경우, 출산일: 년 월 일					
조사 분류	☐ 피해보상 신청건 조사 ☐ 신속대응건 조사 (☐ 중증 이상반응 ☐ 집단 이상반응 ☐ 기타)					

2. 조사내용															
예방접종 내역	<table><tr><th>예방접종종류</th><th>제품명</th><th>제조회사</th><th>제조번호</th><th>유통기간</th></tr><tr><td> </td><td> </td><td> </td><td> </td><td> </td></tr></table>					예방접종종류	제품명	제조회사	제조번호	유통기간					
	예방접종종류	제품명	제조회사	제조번호	유통기간										
예방접종 예진의 및 접종자	○ 접종일시 (년/월/일/시간): ○ 접종부위: (좌/우) ○ 접종방법: ☐ 근주 ☐ 피내 ☐ 피하 ☐ 경구 ○ 접종 후 관찰: ☐ 유 ☐ 무 ○ 접종 후 주의사항 교육: ☐ 유 ☐ 무														
	[임신부인 경우] ○ 접종 시 재태주수 주 - 주수 모르는 경우: ☐ 임신 초기(0-13주) ☐ 임신 중기(14-27주) ☐ 임신 후기(28주 이상) ☐ 모름														
피해발생경위	○ 최초 증상 및 증상 발생 일시: ○ 신고 경위: ○ 임상 경과 (증상, 일시, 주요 검사, 방문 의료기관 등을 포함하여 상세히 기재) - - ○ 조사 당시 임상 결과(완쾌, 회복 중, 입원(일반, 중환자실), 사망, 영구적 장애 등):														
이상반응 중증도	☐ 경증 ☐ 중증 (☐ 입원 또는 입원 연장, ☐ 영구적인 장애, ☐ 선천성 기형, ☐ 생명 위협, ☐ 사망)														

피해자의 과거력	○ 기저 질환 및 의학적 과거력: ○ 가족력: ○ 발육상태: ○ 임신 여부(성인 여성인 경우): ○ 과거 동일 예방접종 접종력: ○ 접종 전후 급성 질환 발생력: ○ 접종 전후 약물 복용력: ○ 알레르기 기왕력:
주요 검사 소견 (검사 시행 날짜 병기)	○ 임상 진찰 소견: ○ 실험실적 검사 소견: ○ 영상학적 검사 소견: ○ 기타:
관련자 면담	○ 예진의: ○ 접종자: ○ 보호자/환자 면담: ○ 담당의사: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자의 이상유무	○ 동일 제조번호, 동일 의료기관, 동일 일자 접종자 :()명 중 이상반응 없는 사람 ()명, 이상반응자 ()명(이상반응 종류:)
백신관리사항	○ 백신보관 상태: ○ 정전여부: ○ 백신 구입량: ○ 백신 사용량: ○ 생물학적제제출하증명서: ☐ 유 ☐ 무 (특이사항:) ○ 백신냉장고: ☐ 유 ☐ 무 (특이사항:) ○ 냉장고 온도: (예방접종약품 보관냉장고 점검표) ○ 온도측정방법: 외부측정장치 ☐ 유 ☐ 무 ○ 자동온도기록장치: ☐ 유 ☐ 무 ○ 콜드체인 유지: ☐ 양호 ☐ 불량 ○ 자가발전기: ☐ 유 ☐ 무
관련 문헌 검토 사항	○ WHO GACVS: ○ 미국 IOM: ○ WHO AEFI Guideline: ○ 기타 연구 문헌(연구 디자인 병행 기재, 예) 사례-대조군 연구, 사례 보고 등):
인과성 평가 결과	○ 백신 자체의 문제: ○ 예방접종 과정상 오류: ○ 진단기준 부합 여부(이상반응 역학조사 지침, Brighton Collaboration case definition 등) - - ○ 알려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인지 여부(출처 포함) - - ○ 타 요인에 의한 질환 발생 가능성 평가(질환의 알려진 주요 원인, 선행 증상, 검사 결과 등)
잠정결론	(인과성 평가: definite, probable, possible, unlikely, definitely not related)



나. 예방접종 관련 정보 안내

1. 어린이 표준예방접종일정표(2025)	232p
2. 백신 접종법	234p
3. 각 백신의 최소 접종간격	236p
4. 미접종 소아의 예방접종 일정표	237p
5. 접종 시작 연령에 따른 권장 접종일정	238p
6. 국가예방접종 장애요인별 지침서(의료인용)	239p
7. 국가예방접종 커뮤니케이션 전략 지침서(의료인용)	240p
8.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감염자관리 안내문(보호자배포용)	241p
9. 표준 여성 청소년 건강상담 안내문(대상자용)	242p
10. 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 후 안내문	243p
11. 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 후 안내문(교정기관용)	244p
12. 예방접종 주의사항 안내문	245p
13.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안내문	246p
14. 2025-2026절기 코로나19 안내문	247p
15. 국가예방접종 백신 유통 현황('25. 08. 기준)	248p
16. 절기접종(인플, 코로나19) 65세 이상 접종시기 연령구분에 따른 지역특성 예외인정 가능 지역	250p

2025년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

나. 예방접종 관련 정보 안내

1. 어린이 표준예방접종일정표(2025)

 어린이가 건강한 대한민국		대상 감염병	백신 종류 및 방법	횟수	출생시	4주 이내	1개월	2개월
국 가 예 방 접 종	B형간염	HepB ¹⁾	3	HepB 1차			HepB 2차	
	결핵	BCG(파내용) ²⁾	1		BCG 1회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³⁾	5					DTaP 1차
		Tdap ⁴⁾	1					
	폴리오	IPV ⁵⁾	4					IPV 1차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Hib ⁶⁾	4					Hib 1차
		PCV ⁷⁾	4					PCV 1차
	폐렴구균 감염증	PPSV ⁸⁾	—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RV1 ⁹⁾	2					RV 1차
		RV5 ¹⁰⁾	3					RV 1차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¹¹⁾	2					
	수두	VAR ¹²⁾	1					
	A형간염	HepA ¹³⁾	2					
	일본뇌염	JEV(불활성화 백신) ¹⁴⁾	5					
		JEV(약독화 생백신) ¹⁵⁾	2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HPV ¹⁶⁾	2					
	인플루엔자	IIV ¹⁷⁾	—					

• **국가예방접종:** 국가에서 권장하는 필수예방접종(국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과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을 정하고, 이를 근거로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음)

① **HepB(B형간염):**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인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는 분만 직후 12시간 이내 B형 간염 면역글로불린(HBIG) 및 B형간염 백신(1차)을 동시에 접종하고, 2차와 3차 접종은 2차 생후 1개월 및 6개월에 실시, DTaP-IPV-Hib-HepB(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B형간염) 6가 혼합백신 병용시, 출생시 단독백신을 접종하고, 생후 2, 4, 6개월에 6가 혼합백신으로 접종

② **BCG(결핵):** 생후 4주 이내 접종

③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또는 DTaP-IPV/Hib(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또는 DTaP-IPV-Hib-HepB(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B형간염) 혼합백신으로 접종 가능

④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11~12세에 Tdap 백신으로 접종 이후 10년마다 Tdap 또는 Td 백신 추가접종 실시
※ 단, 백일해 포함 백신(aP)급/자외선의 경우, Tdap 백신을 해당 연령에 하위 Td(파상풍·디프테리아) 백신으로 대체 가능

⑤ **IPV(폴리오):** 3차 접종은 생후 6개월부터 18개월까지 접종 가능하며,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또는 DTaP-IPV/Hib(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B형간염) 혼합백신으로 접종 가능

⑥ **Hib(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생후 2개월~5세 미만 모든 소아를 대상으로 접종하며, 5세 이상은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감염 위험성이 높은 경우(기능적 또는 해부학적 무비중(감상적결핵, 비장 절제술 후), 면역결핍질환(특히 IgG2 이상 결핍), 항암치료에 따른 면역 저하, HIV 감염, 초기 요소 보체결핍증, 조혈모세포이식술을 받은 경우) 접종, DTaP-IPV/Hib(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또는 DTaP-IPV-Hib-HepB(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B형간염) 혼합백신으로 접종 가능

⑦ **PCV(폐렴구균 단백결합):** 13가와 15가 백신 교차 접종 가능

⑧ **PPSV(폐렴구균 다당결합):** 2세 이상의 폐렴구균 감염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여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담당 의사와 충분한 상담 후 접종

※ 폐렴구균 감염의 고위험군
- 면역 기능이 저하된 소아: HIV 감염증, 만성신부전과 신중후군, 면역억제제나 방사선 치료를 하는 질환(악성 종양, 백혈병, 림프종, 호지킨병) 또는 고령 장기 이식,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 기능적 또는 해부학적 무비중 소아: 감상구 비열 또는 헤모글로빈증, 무비중 또는 비장 기능장애
- 면역 기능은 정상이나 다음과 같은 질환을 가진 소아: 만성 심장 질환, 만성 폐 질환, 만성 간 질환, 당뇨병, 뇌척수액 누출, 인공와우 이식 상태

⑨ **RV1(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생후 2, 4개월 2회 접종(경구투여)

⑩ **RV5(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생후 2, 4, 6개월 3회 접종(경구투여)

⑪ **MMR(홍역 유행성이하선염·풍진):** 홍역 유행 시 생후 6~11개월에 MMR 백신 접종이 가능하나 이 경우 생후 12개월(1세가 되는 생일) 이후에 MMR 백신으로 알맞게 맞추어 접종

⑫ **VAR(수두):** 생후 12~15개월에 1회 접종

⑬ **HepA(A형간염):** 1차 접종은 생후 12~23개월에 시작



표준예방접종일정표(2025)

4개월	6개월	12개월	15개월	18개월	19~23개월	24~35개월	4세	6세	11세	12세
	HepB 3차									
DTaP 2차	DTaP 3차		DTaP 4차				DTaP 5차			
									Tdap 6차	
IPV 2차		IPV 3차					IPV 4차			
Hib 2차	Hib 3차	Hib 4차								
PCV 2차	PCV 3차	PCV 4차								
						고위험군에 한하여 접종				
RV 2차										
RV 2차	RV 3차									
		MMR 1차					MMR 2차			
		VAR 1회								
			HepA 1~2차							
			UJEV 1~2차		UJEV 3차		UJEV 4차		UJEV 5차	
			LJEV 1차		LJEV 2차					
									HPV 1~2차	
IV 매년 접종										

하고 2차는 1차 접종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후 (재조사에 따라 추천 접종간격이 다름) 접종

14 UJEV(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1차 접종 1개월 후 2차 접종을 실시하고, 추가 접종은 2차 접종으로부터 11개월 후, 6세, 12세에 접종

15 LJEV(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 1차 접종 12개월 후 2차 접종

16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1~12세 여아에서 6~12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

17 IIV(인플루엔자 불활성화 백신): 생후 6개월~9세 미만 소아에서 접종 첫 해는 최소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이 필요하며, 이듬해부터는 매년 1회 접종. 접종 첫 해에 1회만 접종 받았다면 다음 해에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해야 할 이전에 인플루엔자 접종을 받은 적이 있는 생후 6개월~9세 미만 소아도 유행주에 따라서 2회 접종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매 달기 인플루엔자 사업 내용* 참고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 예방접종 정보 > 예방접종 지시참고 > 예방접종 지침

백신 두문자어

백신종류	두문자어	백신
B형간염	HepB	Hepatitis B vaccine
결핵	BCG(파내용)	Intradermal Bacille Calmette-Guérin vaccine
	DTaP	Diphtheria and tetanus toxoids and acellular pertussis vaccine adsorbed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Tdap	Tetanus toxoid, reduced diphtheria toxoid and acellular pertussis vaccine, adsorbed
	Td	Tetanus and diphtheria toxoids adsorbed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DTaP-IPV	DTaP, IPV conjugate vaccine
폴리오	IPV	Inactivated poliovirus vaccine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Hib	Haemophilus influenzae type b vaccine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DTaP-IPV/Hib	DTaP, IPV, Haemophilus influenzae type b conjugate vaccine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B형간염	DTaP-IPV-Hib-HepB	DTaP, IPV, Haemophilus influenzae type b conjugate, Hepatitis B vaccine
폐렴구균	PCV	Pneumococcal conjugate vaccine
	PPSV	Pneumococcal polysaccharide vaccine
로타바이러스	RV1	Rotavirus vaccine(monovalent)
	RV5	Rotavirus vaccine(pentavalent)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MMR	Measles, mumps, and rubella vaccine
수두	VAR	Varicella vaccine
A형간염	HepA	Hepatitis A vaccine
일본뇌염	UJEV	Inactivated Japanese encephalitis vaccine
	LJEV	Live-attenuated Japanese encephalitis vaccine
사람유두종바이러스	HPV	Human papillomavirus vaccine
인플루엔자	IIV	Inactivated influenza vaccine

발행일자: 2025.03.07.

2. 백신 접종법



백신 접종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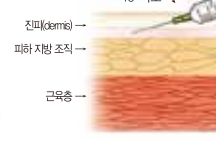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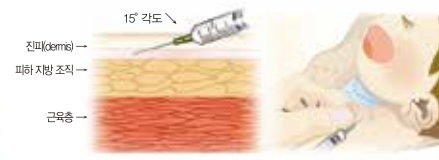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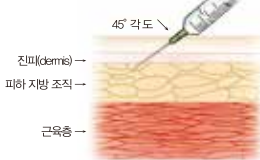
2 예방접종 방법



피하주사 * 주사부위 : 대퇴부 외측 또는 상완외측면(상두근 바깥쪽 상부) * 12개월 미만 : 대퇴부 외측 상완외측면(상두근 바깥쪽 상부) * 12개월 이상 : 상완외측면(상두근 바깥쪽 상부)



피내주사 주사부위 : 상완의 삼각근



3 백신의 투여 용량 및 투여 방법 (2025. 5월 기준)

백신종류	분류	제조 수입사	제품명	Dose	경로	접종부위
B형간염 (유전자재조합)	불활성화백신	SK바이오사이언스(주)	해파문프리필드시린지	11세 미만: 0.5mL 11세 이상: 1.0mL	근육주사	대퇴부전외측 또는 삼각근
			유박스비주			
			유박스비프리필드주			
BCG(피내)	약독화생백신	(주)에스피마	피내용건조비씨자백신A.V주	1세 미만: 0.05mL 1세 이상: 0.1mL	피내주사	삼각근부위
BCG(경피)		(주)한국백신	경피용건조비씨자백신	제품설명서	경피주사	제품설명서 참조
DTaP	불활성화백신	(주)보령바이오파마	보령디타이피백신주	0.5mL	근육주사	대퇴부전외측 또는 삼각근
폴리오	불활성화백신	(주)보령바이오파마	아이피박스주	0.5mL	근육/피하	대퇴부전외측 또는 삼각근/ 대퇴부 외측 또는 상완외측면
DTaP-IPV	불활성화백신	(주)시노파-아벤티스코리아	테트락심주	0.5mL	근육주사	대퇴부전외측 또는 삼각근
		글락소스미스클라인(주)	인판릭스아이피브이주			
DTaP-IPV/hb	불활성화백신	시노파사티라(주)	멘탁심주	0.5mL	근육주사	대퇴부전외측 또는 삼각근
		글락소스미스클라인(주)	인판릭스아이피브이합주			
DTaP-IPV-Hib-HepB	불활성화백신	(주)시노파-아벤티스코리아	해사심프리필드시린지	0.5mL	근육주사	대퇴부전외측 또는 삼각근
Td	불활성화백신	(주)에스피마	디타부스터주	0.5mL	근육주사	대퇴부전외측 또는 삼각근
		(주)녹십자	녹십자디타백신프리필드시린지주			
Tdap	불활성화백신	(주)시노파-아벤티스코리아	아다셀주	0.5mL	근육주사	대퇴부전외측 또는 삼각근
			아다셀프리필드시린지			
			부스트릭스프리필드시린지			
MMR	약독화생백신	한국엠에스디(주)	열열열주	0.5mL	피하주사	대퇴부 외측 또는 상완외측면
		글락소스미스클라인(주)	프리오릭스주			
		(주)녹십자	녹십자-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일본뇌염	불활성화백신	(주)보령바이오파마	보령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3세 미만: 0.25mL 3세 이상: 0.5mL	피하주사	대퇴부 외측 또는 상완외측면
		(주)글로백스	씨디제백스			
		(주)한독	이모젠(이모젠주백신)			
수두	약독화생백신	(주)녹십자	백리셀라주	0.5mL	피하주사	대퇴부 외측 또는 상완외측면
		보관파마	바라-엘백신			
		SK바이오사이언스(주)	스카이바리셀라주			
대상포진*	약독화생백신	한국엠에스디(주)	조스타박스	0.65mL	피하주사	상완외측면
		SK바이오사이언스(주)	스카이조스타주	0.5mL		
		글락소스미스클라인(주)	싱그릭스주	0.5mL		
정티푸스	불활성화백신	(주)보령바이오파마	지로티프주	0.5mL	근육/피하	대퇴부전외측 또는 삼각근/ 대퇴부 외측 또는 상완외측면
	약독화생백신	(주)에스피마	비보티프캡슐	1 capsule	경구투여	경구

근육주사 주사부위 : 대퇴부 전외측과
삼각근

- 영아(3세 미만): 대퇴부전외측의 대퇴사두부근
- 소아와 성인(3세 이상): 상완의 삼각근



경구투여 뺨 안쪽 면과 잇몸 사이를 통해
입안 뒤쪽으로 천천히 주입



* 국가예방접종 사업 미지원 백신

백신종류	분류	제조사/수입사	제품명	Dose	경로	접종부위
신종수근골육염	불활성화 백신	(주)녹십자	한타박스	0.5mL	근육/피하	대퇴부전외측 또는 삼각근/ 대퇴부 외측 또는 상완외측면
Hib	불활성화 백신	(주)LG화학	유히브주	0.5mL	근육주사	대퇴부전외측 또는 삼각근
A형간염	불활성화 백신	글락소스미스클라인(주)	하브릭스주	1세~18세 미만: 0.5mL 18세 이상: 1.0mL	근육주사	대퇴부전외측 또는 삼각근
		(주)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아박스160J성인용주*	(성인용) 16세 이상: 0.5mL(160J)		
		한국엠에스디(주)	빅타프리필드시린지	19세 미만: 0.5mL 19세 이상: 1.0mL		
		(주)보령바이오파마	보령A형2항백신프리필드시린지	1세~15세 이하: 0.5mL 16세 이상: 1.0mL		
폐렴구균 (단백결합)	불활성화 백신	한국화이자제약(주)	프리벤13주	0.5mL	근육주사	대퇴부전외측 또는 삼각근
폐렴구균 (23가다당질)	불활성화 백신	한국엠에스디(주)	프리디악스-23 프리필드시린지		근육/피하	대퇴부전외측 또는 삼각근/ 대퇴부 외측 또는 상완외측면
HPV	불활성화 백신	한국엠에스디(주)	가다실프리필드시린지	0.5mL	근육주사	삼각근
		한국엠에스디(주)	가다실9프리필드시린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주)	서바릭스프리필드시린지			
로타바이러스	약독화 생백신	한국엠에스디(주)	로타텍액	2.0mL	경구투여	경구
		글락소스미스클라인(주)	로타릭스프리필드	1.5mL		
수막구균*	불활성화 백신	글락소스미스클라인(주)	멘비오	0.5mL	근육주사	대퇴부전외측 또는 삼각근
			백세로프리필드시린지			
		(주)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메나트라			
인플루엔자	불활성화 백신	(주)보령바이오파마	보령플루백신M1테트라백신주	0.5mL	근육주사	대퇴부전외측 또는 삼각근
			보령플루백신V테트라백신주	0.5mL		
		(주)녹십자	지씨플루쿼드라밸런트프리필드시린지주	0.5mL		
		(주)보령	비알플루테트라백신주*	0.5mL		
		(주)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백씨그리프테트라주	0.5mL		
			예플루엔다테트라프리필드시린지*	0.5mL		
		글락소스미스클라인(주)	플루아릭스테트라프리필드시린지	0.5mL		
		일양약품(주)	테라텍트프리필드시린지주	0.5mL		
		(주)메디팜	플루아드쿼드프리필드시린지*	0.5mL		
		SK바이오사이언스(주)	스카이셀4가프리필드시린지	0.5mL		
코로나19	mRNA 백신	한국화이자제약(주)	코미나티제이엔원주(브레토티메란) (사스코로나바이러스-2 mRNA백신)	0.3mL	근육주사	위쪽 삼각근
		모더나코리아(주)	스파이크박스제이엔주 (사스코로나바이러스-2 mRNA백신)	0.5mL	근육주사	위쪽 삼각근
		유전자 재조합 백신	에스케이케미칼(주)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2024-2025 조성)	0.5mL	근육주사
옐록스	약독화 생백신	비바리안노르딕	진네오스(JYNNEOS)(3세대)	0.5mL	피내주사	삼각근

발행일자: 2025.01.02.

3. 각 백신의 최소 접종간격



각 백신의 최소 접종간격¹⁾

대상 감염병	백신	접종차수	접종 권장시기	최소 접종연령	다음 접종간격	다음 접종 최소 접종간격
B형간염	HepB	1차	출생 시	출생 시	1개월	4주
		2차	생후 1개월	생후 4주	5개월	8주
		3차 ²⁾	생후 6개월	생후 24주	-	-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DTaP	1차	생후 2개월	생후 6주	2개월	4주
		2차	생후 4개월	생후 10주	2개월	4주
		3차	생후 6개월	생후 14주	6~12개월	6개월 ³⁾
		4차	생후 15~18개월	생후 12개월	3년	6개월
		5차	4~6세	4세	-	-
디프테리아·파상풍	Tdap ⁴⁾	-	11세 이상	11세	-	-
		-	11~12세	7세	10년	5년
폴리오	IPV	1차	생후 2개월	생후 6주	2개월	4주
		2차	생후 4개월	생후 10주	2~14개월	4주
		3차	생후 6~18개월	생후 14주	3~5년	6개월
		4차	4~6세	4세	-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Hib ⁵⁾	1차	생후 2개월	생후 6주	2개월	4주
		2차	생후 4개월	생후 10주	2개월	4주
		3차	생후 6개월	생후 14주	6~9개월	8주
		4차	생후 12~15개월	생후 12개월	-	-
폐렴구균 감염증	PCV ⁵⁾ (단백결합)	1차	생후 2개월	생후 6주	8주	4주
		2차	생후 4개월	생후 10주	8주	4주
		3차	생후 6개월	생후 14주	6개월	8주
		4차	생후 12~15개월	생후 12개월	-	-
	PPSV ²³⁾ (23가 다당)	1차	-	2세	5년	5년
		2차	-	7세	-	-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⁷⁾	RV (경구용 생백신)	1차	생후 2개월	생후 6주	2개월	4주
		2차	생후 4개월	생후 10주	2개월	4주
		3차	생후 6개월	생후 14주	-	-
홍역·유행성 이하선염·풍진	MMR	1차	생후 12~15개월 ⁸⁾	생후 12개월	3~5년	4주
		2차	4~6세	생후 13개월	-	-
수두 ⁹⁾	VAR	-	생후 12~15개월	생후 12개월	4주	4주
A형간염	HepA	1차	생후 12~23개월	생후 12개월	6~18개월	6개월
		2차	생후 18개월	생후 18개월	-	-
일본뇌염	IJEV (불활성화 백신)	1차	생후 12~23개월	생후 12개월	1개월	4주 ¹⁰⁾
		2차	생후 13~23개월	생후 12개월	11개월	6개월
		3차	생후 24~35개월	생후 18개월	3~4년	2년
		4차	6세	5세	6년	5년
		5차	12세	11세	-	-
	IJEV (약독화 생백신)	1차	생후 12~23개월	생후 12개월	12개월	4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¹¹⁾	HPV(2회 접종)	1차	11~12세	9세	6~12개월	5개월
		2차	11~12세	9세	-	-
	HPV(3회 접종)	1차	11~12세	9세	(HPV4) 2개월	4주
		2차	11~12세	9세	(HPV4) 4개월	12주 ¹²⁾
		3차	11~12세	9세	-	-
인플루엔자	IIV ¹³⁾ (불활성화 백신)	-	생후 6개월 이상	생후 6개월	1개월	4주

- 1) 혼합백신(combination vaccines) 사용이 가능하다. 허가받은 혼합백신 사용이 동일한 성분의 개별 백신 접종보다 선호된다. 혼합백신을 접종할 때 최소 접종연령은 개별 백신의 최소 접종연령 중 가장 높은 연령이며, 최소 접종간격은 개별 백신의 최소 접종간격 중 가장 큰 간격이다.
- 2) B형간염의 3차 접종과 2차 접종 간의 최소 접종간격은 8주이고, 3차 접종은 1차 접종 16주 이후이면서 생후 24주 이후에 접종하여야 한다.
- 3) DTaP 3차 접종과 4차 접종 사이에 권장되는 최소 접종간격은 6개월 이상이다. 그러나 4차 접종이 생후 12개월 이상에서 DTaP 3차 접종과 4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실시하였으면, 4차 접종을 반복할 필요는 없다.
- 4) 백일해 포함백신(aP) 금기자의 경우, Tdap백신을 해당 연령에 허가된 Td(파상풍·디프테리아)백신으로 대체 가능하다.
- 5) Hib 백신과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은 첫 접종을 생후 7개월 이후에 시작한 경우 전체 접종 횟수가 적다.
- 6) 23가 다당 백신은 침습 폐렴구균 감염의 위험이 높은 상태에 있는 2세 이상의 소아에게 추천되며, 마지막 단백결합 백신 접종 시점으로부터 최소 8주 간격을 두고 접종한다. 2차 접종은 중증 폐렴구균 감염증의 위험이 높은 경우와 폐렴구균 항체 역가의 급속한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에 권장된다.
- 7) 로타바이러스 백신의 최초 접종은 생후 6주~14주 6월까지 투여되어야만 하며, 생후 15주 이상의 영아에게 투여되어서는 안 된다.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생후 8개월 0일까지 영아에게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1가 로타바이러스 백신의 경우는 2회 접종하여 3차 접종은 필요하지 않다.
- 8) 홍역 유행 시 또는 유행지역으로 여행하는 경우 생후 6~12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MMR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그러나 생후 12개월 이전에 MMR 백신을 접종 받은 영아도 표준접종일정에 따라 생후 12~15개월과 4~6세에 MMR 백신을 접종 받아야 한다.
- 9) 생후 12개월~13세 미만의 소아는 수두 백신 1회 접종한다. 13세 이상인 경우 4~8주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접종받아야 한다.
- 10) 일본뇌염 유행국가에 30일 이상 체류 등으로 가족접종이 필요한 경우 2차 접종은 1차 접종 후 최소 7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접종 가능하다.
- 11) HPV 4가 백신은 9~26세의 남녀에게 허가되어 있다. HPV 예방접종은 9~14세에 첫 접종을 시작한 경우 6~12개월 간격을 두고 2회 접종으로 완료할 수 있다. 단, 면역저하자이거나 15세 이후 첫 접종을 시작한 경우 3회 접종이 필요하다.
- 12) HPV 3차 접종은 1차 접종 5개월 이후에 접종해야 한다.
- 13) 생후 6개월~9세 미만의 소아에게 인플루엔자 백신을 처음으로 접종하는 해에는 최소한 4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2회 접종하며, 다음 해부터는 1회 접종한다. 유행주에 따라 접종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매 달기 인플루엔자 사업 내용을 참고한다.

발행일자: 2025.03.07.

4. 미접종 소아의 예방접종 일정표



미접종 소아의 예방접종 일정표*

○ 지연시 예방접종(생후 4개월~6세)*

접종백신	최소접종연령	1·2차 최소접종간격	2·3차 최소접종간격	3·4차 최소접종간격	4·5차 최소접종간격
B형간염 ¹⁾	출생시	4주	8주(1차 접종 16주 후)	-	-
DTaP ²⁾	생후 6주	4주	4주	6개월	6개월
IPV ³⁾	생후 6주	4주	4주	6개월(마지막 접종의 최소 연령은 4세)	-
Hib ⁴⁾	생후 6주	4주 : 생후 12개월 이전에 1차 접종한 경우 8주(마지막 접종) : 생후 12~14개월 사이에 1차 접종을 한 경우 더 이상 접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생후 15개월 이후에 1차 접종을 한 경우	4주 : 현재 연령이 생후 12개월 미만이고 1차 접종을 생후 7개월 이전에 한 경우 8주(마지막 접종) : 1차 접종을 생후 7~11개월에 한 경우로 생후 12개월 이후 실시 - 또는 현재 연령이 생후 12~59개월이며 1차 접종을 생후 12개월 미만에서 하고 2차 접종을 생후 15개월 미만에서 한 경우 더 이상 접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이전 접종을 생후 15개월 이상에서 한 경우	8주(마지막 접종) : 생후 12개월 이전에 3번의 접종을 한 생후 12~59개월 소아만 필요	-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⁵⁾	생후 6주	4주	4주	-	-
PCV ⁶⁾	생후 6주	4주 : 생후 12개월 이전에 1차 접종한 경우 8주(마지막 접종) : 건강할 소아로 생후 12개월 이후에 1차 접종을 한 경우 더 이상 접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건강할 소아로 1차 접종을 PCV13으로 생후 24개월 이후에 한 경우 단, PCV10으로 접종한 경우 8주 간격으로 접종(마지막 접종)	4주 : 현재 연령이 생후 12개월 미만이고 이전 접종을 생후 7개월 이전에 한 경우 8주(마지막 접종) : 건강할 소아로 이전 접종을 생후 7~11개월에 한 경우로 생후 12개월 이후 실시 - 또는 현재 연령이 생후 12개월 이상이며 1회 이상 생후 12개월 이전에 접종한 경우 더 이상 접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건강할 소아로 이전 접종을 생후 24개월 이후에 한 경우	8주(마지막 접종) : 생후 12개월 이전에 3번의 접종을 한 생후 12~59개월 소아 또는 접종연령에 관계없이 3회 접종받은 고위험군	-
MMR ⁷⁾	생후 12개월	4주	-	-	-
수두	생후 12개월	-	-	-	-
A형간염 ⁸⁾	생후 12개월	6개월	-	-	-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⁹⁾	생후 12개월	4주	6개월	2년	5년
일본뇌염灭毒화 생백신 ¹⁰⁾	생후 12개월	4주	-	-	-

* 지연된 예방접종이란, 권장접종시기보다 1개월을 초과하여 접종을 한 경우임. 접종이 지연되었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접종하지 않고 지연된 접종부터 접종함

- B형간염: 3차접종의 최소 연령은 생후 24주임
- DTaP: 4차 접종을 4세 이후에 접종하더라도 5차 접종은 생략
- IPV: 3차 접종을 4세 이후에 실시할 경우에는 2차 접종과 3차 접종이 6개월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하고, 6개월 이상 유지되지 않은 경우 4차 접종이 필요함
- Hib: 5세 이상의 건강할 소아에서는 일반적으로 권장하지 않음
-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첫 접종이 최대 연령은 14주 6일이며, 15주 0일 이후에는 접종을 시작하지 않음. 접종할 수 있는 최대 연령은 8개월 0일까지임. 로타리브(Rotarix)는 2회, 로테크(Rotateq)는 3회 접종
- PCV: 5세 이상의 건강할 소아에서는 일반적으로 권장하지 않음
- MMR: 2차 접종이 표준 접종 시기는 4~6세지만 해당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최소접종간격으로 접종할 수 있음
- A형간염: 접종 간격은 계층에 따라 6~36개월이며, 접종받지 않은 2세 이상 소아는 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
-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1~2차 최소접종간격은 4주이나, 일본뇌염 유행국가에 30일 이상 체류 등으로 계속접종이 필요한 경우 최소 7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접종 가능함. 3차 접종을 4~9세에 한 경우에는 4차 접종을 12세 이후에 실시하고 접종을 종료하며, 3차 또는 4차 접종을 10세 이후에 실시한 경우에는 더 이상 추가접종을 하지 않음. 11세 이후에 기초접종을 시작한 경우에는 총 3회 접종으로 완료함
- 일본뇌염灭毒화 생백신: 국내에서는 생후 12개월부터 접종하나 국외에서는灭毒화 생백신은 생후 8개월부터, 개조화 키메라 바이러스 생백신은 생후 9개월부터 접종을 추천함

○ 지연시 예방접종(7~18세)*

접종백신	최소접종연령	1·2차 최소접종간격	2·3차 최소접종간격	3·4차 최소접종간격
B형간염	-	4주	8주(1차 접종 16주 후)	-
Tdap/Td ¹⁾	7세	4주 : DTaP 첫 접종을 생후 12개월 이전에 한 경우 6개월(마지막 접종) : DTaP 첫 접종을 생후 12개월 이후에 한 경우	6개월 : DTaP 첫 접종을 생후 12개월 이전에 한 경우	-
IPV ²⁾	-	4주	6개월	-
MMR	-	4주	-	-
수두 ³⁾	-	4주	-	-
A형간염	-	6개월	-	-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⁴⁾	-	4주	6개월	2년
일본뇌염灭毒화 생백신	-	4주	-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⁵⁾	9세	관장 간격을 지킨다		

* 지연된 예방접종이란, 권장접종시기보다 1개월을 초과하여 접종을 한 경우임. 접종이 지연되었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접종하지 않고 지연된 접종부터 접종함.

- Tdap/Td: 기초접종 3회 접종 중 1회는 Tdap 백신으로 접종하는데, 가능하면 첫 접종을 Tdap 백신으로 접종
- IPV: 3차 접종을 4세 이후에 실시할 경우에는 2차 접종과 3차 접종이 6개월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하고, 6개월 이상 유지되지 않은 경우 4차 접종이 필요함
-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1~2차 최소접종간격은 4주이나, 일본뇌염 유행국가에 30일 이상 체류 등으로 계속접종이 필요한 경우 최소 7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접종 가능함. 3차 접종을 4~9세에 한 경우에는 4차 접종을 12세 이후에 실시하고 접종을 종료하며, 3차 또는 4차 접종을 10세 이후에 실시한 경우에는 더 이상 추가접종을 하지 않음. 11세 이후에 기초접종을 시작한 경우에는 총 3회 접종으로 완료함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HPV 예방접종은 9~14세에 첫 접종을 시작한 경우 6~12개월 간격을 두고 2회 접종으로 완료할 수 있음. 단, 면역저하자이거나 15세 이후 첫 접종을 시작한 경우 3회 접종이 필요함.

발행일자: 2025.01.02.

5. 접종 시작 연령에 따른 권장 접종일정



접종 시작 연령에 따른 권장 접종일정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시작 연령에 따른 권장 접종일정

백신	첫 번째 접종 시 연령	기초접종 횟수 및 간격	추가접종 시기 및 횟수
Hib	생후 2~6개월	3회, 2개월 간격	생후 12~15개월 ¹⁾ 에 1회
	생후 7~11개월	2회, 2개월 간격	생후 12~15개월 ¹⁾ 에 1회
	생후 12~14개월	1회 ²⁾	2개월 후에 1회
	생후 15~59 ³⁾ 개월	1회 ²⁾	-

① 이전 접종과 최소 8주 간격을 두고 접종

② 침습성 Hib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소아. 즉, 기능적 또는 해부학적 무비증(경상적혈구증, 비장 절제술 후), 항암치료에 따른 면역저하, HIV 감염, 초기 요소 보체결손증, 특히 IgG2 아형 결핍 등의 체액면역결핍질환 환자에서는 연령에 따라 1~2회 접종(2회 접종 시 2개월 간격)

③ 고위험 환자 중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소아는 5세 이상에도 접종

○ PCV 접종 시작 연령에 따른 권장 접종일정

백신의 종류	첫 번째 접종 시 연령	기초접종 ¹⁾	추가접종 ²⁾ 시기 및 횟수
PCV13/PCV15	생후 2~6개월	3회	생후 12~15개월에 1회
	생후 7~11개월	2회	생후 12~15개월에 1회
	생후 12~23개월	2회	-
	생후 24 ~ 59개월(건강한 소아)	1회	-
	생후 24~71개월 (폐렴구균 감염 고위험군) ³⁾	2회	-

① 생후 12개월 미만에 접종 시 최소 접종간격은 4주, 그 이후의 최소 접종간격은 8주일. 최소 접종연령은 생후 6주일

② 이전 접종으로부터 최소 8주의 간격을 두고 접종

③ 폐렴구균 감염 고위험군(19세 미만 소아청소년)³⁾ 참고

○ 폐렴구균 감염 고위험군(19세 미만 소아청소년에서 폐렴구균 백신接种의 대상이 되는 기저질환들)

위험군	질환
정상면역 소아청소년	만성 심장 질환 ¹⁾ , 만성 폐 질환 ²⁾ , 당뇨병, 뇌척수액 누출, 인공와우 이식 상태, 만성 간 질환
기능적 또는 해부학적 무비증 소아청소년	겸상구 빈혈 또는 헤모글로빈증, 무비증 또는 비장 기능장애
면역저하 소아청소년	HIV 감염증, 만성 신부전과 신증후군, 면역억제제나 방사선 치료를 하는 질환(악성 종양, 백혈병, 림프종, 호지킨병) 또는 고형 장기 이식 선전 면역결핍질환 ³⁾

① 특히 선천성 청색 심질환과 심부전

②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경구로 복용하는 천식환자도 포함함

③ B세포(체액면역) 또는 T세포 결핍증, 보체결핍증(특히, C1, C2, C3 및 C4 결핍증), 탐식구 질환(만성 육아종 질환은 제외)

6. 국가예방접종 장애요인별 지침서(의료인용)



국가예방접종 장애요인별 지침서 (의료인용)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권장시기에
예방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세요.**

● 기저질환 병력이 있을 때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지침서 내용을 참고하여 정확하게 안내하세요.

● 다문화 가정의 아이

정확한 연락처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엄마, 아빠 모두의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하세요.

출신 국가를 확인하여 해당 언어로 작성된 다문화 가정용 안내서를 제공해 주세요.

● 해외 거주자 및 잦은 출입국자

정확한 연락처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연락처가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하여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부모의 연락처를 입력해 주세요.

반드시 ‘거주한 나라의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여 자녀의 해외에서 접종기록을 전산등록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세요.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접종내역 전산등록

의료기관에서의 예방접종 내역 전산등록은 중복 접종, 접종 누락을 방지하고 가능하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미접종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안전한 예방접종 실시를 위해 접종 전 전산등록자료 및 예방접종수첩 등을 통해 반드시 과거 접종력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 접종해 주세요.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접종하고, 접종기록은 앞차수부터 순차적으로 등록하세요.

접종기록은 앞차수부터 순차적으로 등록하고, 동일차수에 재접종한 경우(접종력 불인정에 따른 재접종 등)

재접종기록은 해당 접종차수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해 주세요.

피접종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핸드폰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세요.

★ 출생신고전 신생아의 경우 피접종자의 엄마(母)의 인적정보를 반드시 함께 등록하세요.

★ 인적정보가 변경되지 않았는지 병원 방문시마다 확인하시고,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수정해주세요.

★ ‘문자수신동의’ 항목을 체크하여 다음접종일 사전알림 문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에서
‘사용자 가입 및 인증서 등록’ 및 인증서 로그인 이후 예방접종업무 권한을 신청해야 합니다.

발행일자: 2025.01.02.

7. 국가예방접종 커뮤니케이션 전략 지침서(의료인용)



(의료인용)

국가예방접종 커뮤니케이션 전략 지침서

**당신이 이야기하면 부모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권장시기에 예방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세요.**

당신이 이야기하면 부모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당신은 부모들이 가장 신뢰하는 전문가입니다. 당신은 환자 및 보호자가 예방접종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방접종을 완료하도록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진료 중 아이의 건강 및 발달 상태를 확인하는 중에 예방접종에 관한 안내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줄 압니다. 하지만 예방접종을 적기에 접종 완료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Tip!

● 미접종 내역 안내

환자가 병원에 방문하면 예방접종 일정표에 따라 접종이 완료되었는지, 혹시 미접종 내역은 없는지 확인하세요. 미접종한 내역이 있거나 접종 시기가 된 예방접종이 있으면 접종 가능한 모든 접종을 시행하세요. 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전산등록이 미등록된 경우 접종을 등록해주시거나, 접종받은 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세요.

● 아이가 감기, 설사, 중이염 등 경미한 급성질환을 앓고 있어도 접종이 가능합니다.

● 다음 예방접종 날짜를 미리 안내하고 다음 방문을 예약해 주세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보호자와 약속한 다음 예방접종 날짜를 예약하세요.

● 보호자가 예방접종에 대하여 상담하고 싶을 때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서로 주고받는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자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당신이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예방접종을 선택하도록 돕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담 후 예방접종의 안전성과 필요성에 관한 안내서를 건네주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예방접종을 거부하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어 하지 않을 때

당신도 그들의 자녀의 건강을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세요.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여 대화를 주도하세요. 당신이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 가는지가 부모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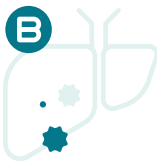
예방접종은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함을 주저함 없이 적극적으로 권유하여야 합니다.

8.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감염자관리 안내문(보호자배포용)



보호자용

B형간염 감염자 관리 안내문



- Ⓢ B형간염은 주로 혈액을 통해 전파되며,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 Ⓢ B형간염은 어린 시기에 감염될수록 만성화의 가능성이 높아 **신생아기에 감염된 경우 90%가 만성 간염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 B형간염에 감염되면 다양한 경과를 보이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전문의와 상담하여 꾸준히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B형간염은 B형간염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간염 질환으로, 출산할 때 만성 B형간염 엄마에게서 아기로의 전염이 흔합니다. 대부분 출산 시 예방 처치로 면역력이 생기지만 적절한 처치를 받은 경우에도 100명 중 2~3명 정도는 출생 시 B형간염에 걸리게 됩니다. 만성 B형간염으로 진행될 경우 수십 년 후에 4명 중 1명은 간경화나 간세포암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B형간염은 어떻게 전파되나요?

- ☑ 주요 감염 경로는 출산시에 엄마로부터 아기에게 전파되는 주산기 감염, 오염된 혈액이나 체액에 의한 피부 및 점막을 통한 감염, 면역력이 없는 사람이 B형간염 간염 보유자와의 성 접촉 등에서 전파될 수 있습니다. 유치원, 학교, 기숙사 등에서의 일상생활로 감염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 아이가 B형간염 양성인 경우 어떻게 관리하면 되나요?

- ☑ B형간염 바이러스는 간 손상을 일으키고, 더 진행되면 간경화, 간세포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어, B형간염으로 확인되면 전문의에게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적절한 관리를 받아 간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B형간염 아이와 매일 긴밀한 접촉을 하는 가족이 B형간염에 대한 면역력이 없다면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낼 수 있나요?

- ☑ B형간염은 함께 밥을 먹거나 손을 잡는 등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조절되지 않는 물어뜯는 버릇이 있거나 전신 가려움증으로 피가 자주 나가거나, 출혈성 질환이 있다면 의사선생님과 상의 후 어린이집(유치원)에 가도록 합니다. 또한 담임선생님에게 B형간염이 있음을 미리 알려져 상처가 생긴 경우에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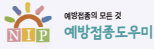
📄 아이가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나요?

- ☑ 진료 시 의사선생님에게 아이의 B형간염을 미리 알려서, 주사를 맞거나 혈액을 채취할 때 아이의 혈액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게 적절한 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약 처방을 받을 때도 약물의 오염을 막도록 합니다.

📄 다른 아이들과 공동생활을 할 때 지켜야 할 생활수칙이 있나요?

- ☑ 일상적인 접촉을 하는 집단생활은 전염의 위험이 없습니다. 다만, 축구, 복싱 등 상처가 생겨 피가 날 수 있는 운동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아이가 상처를 함부로 만지지 않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양치도구, 귀걸이, 면도기와 같은 도구도 다른 아이들과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9. 표준 여성 청소년 건강상담 안내문(대상자용)



여성의 비밀스러운 성장과정으로 알려진 초경,

누구와 상의하고 궁금한 점을 풀어야 할지 고민이 시작됐나요?
초경은 건강한 여성으로 성장하기 위한 첫 출발입니다.



Q 초경은 자연스러운 성장과정 중의 일부입니다.

사춘기는 2차 성징이 발현되며 생식능력을 얻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사춘기 발달과정은 유방 발달 • 음모와 액모모 발달 • 급격한 키 성장 • 초경 • 배란 순서로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유방 발육이 시작된 후 약 2~3년이 지난 후에 초경이 시작됩니다.



젖멍을



거드랑이털 출현



키 급증



초경

Q 초경은 언제 시작하나요?

초경을 시작하는 평균 나이는 12~13세입니다. 일반적으로 2차 성징(유방, 음모 발달)이 있으나, 15세까지 초경이 없거나, 2차 성징이 13세까지 시작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차성 무월경이 의심되므로 전문가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Q 비정상 출혈은 어떤 경우인가요?

초경 후 2년이 경과했는데 월경 주기가 21일 미만 혹은 45일 이상 간격이거나, 7일 이상 지속된다면 비정상 출혈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출혈이 많다면, 전문가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궁 내막

자궁 경부

질벽

Q 초경 이후 월경은 어떤가요?

초경 후 2년까지는 약 50~80%에서 월경주기가 무배란 성으로 불규칙하고, 2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규칙적인 배란주기를 갖게 됩니다. 초경 후 2년 이내라면 기다려 주세요.

Q 월경통이 있어요!

월경통은 월경 주기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나타나는 주기적인 골반통증을 말하며, 월경을 하는 여성의 50%가 경험할 정도로 흔한 증상입니다. 자궁, 난소, 혹은 골반 내에 특별한 원인 질환 없이 월경기간 분비되는 호르몬 (프로스타글란딘)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월경통을 일차성 월경통으로, 골반장기의 이상에 의한 월경통을 이차성 월경통으로 분류합니다.

일차성 월경통인 경우 소염진통제를 통증이 있는 기간에 복용하면 70~90%에서 호전됩니다.

월경통 관련 진통제는 정해진 용량과 용법에 맞게 복용해야 하며, 복용 후에도 월경통이 호전되지 않고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전문가를 만나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0. 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 후 안내문



폐렴구균 예방접종 안내문



65세 이상 어르신은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균혈증을 동반한 폐렴, 뇌수막염, 심내막염 등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사업대상

65세 이상 연령에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어르신

※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기준이며, 자세한 내용은 지정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문의

사업내용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지원

접종기준

65세 이후에 접종하셨어요? → 더 이상 접종하지 않아요!

65세 이전에 접종하셨어요? → 의사와 추가접종을 상의해주세요.

접종기관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
 보건소는 여건에 따라 예방접종을 미 실시 할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 필요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

- 건강 상태가 좋은 날, 예방접종이 가능한지 접종기관에 사전 확인 후 방문합니다.
- 접종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코로나19 증상이 있다면 내원 전 알립니다.
- 예방접종 전 반드시 의사에게 예진을 받아야 합니다.
-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은 백신선택(다당 백신 또는 단백결합 백신) 및 접종 시기 등에 대해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 접종 후 20~30분 동안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한 후 귀가합니다.
- 접종 부위는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 접종 당일은 반나절 이상 충분히 쉬고, 음주나 지나친 운동은 피합니다.
-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 증상이 심해지거나 장기간 지속되면, 반드시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

국소반응

접종 부위 통증, 발적, 부종 등

전신반응

발열, 근육통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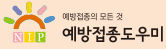
※ 국소반응은 예방접종 후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수일 이내에 호전됩니다.
 만약,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 증상이 심해지거나 장기간 지속되면, 반드시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정부는 예방접종으로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심의하여 **진료비를 보상하는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접종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 후 안내문(교정기관용)



폐렴구균 예방접종 후 안내문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 ☐ 접종 후 20~30분 동안 접종기관에 머물러 관찰해야 합니다.
- ☐ 접종당일 음주나 지나친 운동, 샤워는 금하고, 반나절 이상 안정을 취합니다.
- ☐ 접종부위는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경미한 증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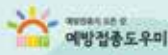
- ☐ 폐렴구균 예방접종 후에는 접종부위 통증, 발적, 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매년 접종하는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과 비교하여 증상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 이러한 증상은 예방접종 후에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정상 면역반응이며, 수일 이내에 저절로 호전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 다만, 증상이 장기간 지속되면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심한 증상〉

- ☐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는 매우 드물지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이상반응이며, 예방접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접종기관에서 20~30분 동안 머물러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 예방접종 후 전신 발진 및 두드러기, 호흡곤란, 실신 등의 증상이 즉시 또는 수십분 내의 심한 전신적 알레르기 반응
- ☐ 그 밖에 평소와 다른 심한 전신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교정기관 부속의원 의료인에게 상담하도록 합니다.

-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관할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정부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발생 시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을 심의하여 진료비를 보상하는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예방접종 주의사항 안내문



예방접종 주의사항 안내문

안전한 예방접종이 될 수 있도록,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에 따라주세요.

- 예방접종 전, 반드시 의사의 예진을 받아야 합니다.
- 접종 후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면서 심각한 급성 이상반응(아나필락시스 등) 발생 여부를 관찰한 뒤 귀가합니다.
- 접종 부위는 청결하게 유지합니다.
- 접종 당일 음주나 지나친 운동은 자제하고, 반나절 이상 안정을 취합니다.

예방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을 안내 드립니다.

- 국소 이상반응 : 접종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름, 붓기, 통증 등
- 전신 이상반응 : 발열, 근육통, 두통 등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 예방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은 대부분 경미한 이상반응이며 일반적으로 수일 이내 호전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다만, 증상이 심해지거나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또는 평소와 다른 심한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②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발생시,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을 하는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안내문

질병관리청

모두의 예방접종이 질병을 이길 병으로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

어린이 2012. 1. 1. ~ 2025. 8. 31. 출생자	
임신부 임신이 확인된 사람	
65세 이상 1960. 12. 31. 이전 출생자	

일정

어린이	2회 접종 대상자 9. 22.(월) ~ 1회 접종 대상자 9. 29.(월) ~
임신부	9. 29.(월) ~
65세 이상	75세 이상 10. 15.(수) ~ 70 ~ 74세 10. 20.(월) ~ 65 ~ 69세 10. 22.(수) ~

→ 2026년 4월 30일까지 시행

백신

3가 백신 1회 접종
단, 6개월 ~ 9세 미만 어린이 중 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기존에 1회만 접종받은 자는 2회 접종

기관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단, 접종 가능 여부는 반드시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사전 확인 필요

이런 분들은 예방접종을 해서는 안 됩니다!

- ☒ 과거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중증(생명에 위협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 ☒ 인플루엔자 백신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이런 분들은 예방접종에 주의해야 합니다!

-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6주 이내 길랭-바레 증후군의 과거력이 있는 사람
- ☒ 중등증 또는 중증 급성질환자는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접종 연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

☒ 국소 이상반응 : 접종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름, 통증	☒ 전신 이상반응 : 발열, 무력감, 근육통, 두통 등
--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기면

- ☒ 경미한 이상반응은 예방접종 후 나타날 수 있으며, 1~2일 이내 호전됩니다
- ☒ 다만 증상이 심해지거나 장시간 지속되는 경우, 그 밖에 다른 증상이 나타난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14. 2025-2026절기 코로나19 안내문

질병관리청

모두의 예방접종이 질병을 이길 병으로

2025-20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

65세 이상
1960. 12. 31. 이전 출생자

면역저하자
생후 6개월 이상

감염취약시설 입원·업소자
생후 6개월 이상

일정

65세 이상	75세 이상	10. 15.(수) ~
	70 ~ 74세	10. 20.(월) ~
	65 ~ 69세	10. 22.(수) ~
면역저하자	10. 15.(수) ~	
감염취약시설 입원·업소자	10. 15.(수) ~	

→ 2026년 4월 30일까지 시행

백신

모더나(L.P.8.1), 화이자(L.P.8.1) 백신 1회 접종
단, 아직 기초접종을 미완료한 12세 미만 고위험군의 경우 기초접종 완료 필요

기관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단, 접종 가능 여부는 반드시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사전 확인 필요

이런 분들은 예방접종을 해서는 안 됩니다!

- ☑ 과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생명에 위협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 ☑ 코로나19 백신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이런 분들은 예방접종을 연기해야 합니다!

- ☑ 발열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백신 접종 연기
- ☑ 코로나19 백신(mRNA)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발생이 확인된 경우, 안전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연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

- ☑ 국소 이상반응 : 접종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름, 통증
- ☑ 전신 이상반응 : 발열, 무력감, 근육통, 두통 등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기면

- ☑ 경미한 이상반응은 예방접종 후 나타날 수 있으며, 1~2일 이내 호전됩니다
- ☑ 다만 증상이 심해지거나 장시간 지속되는 경우, 그 밖에 다른 증상이 나타난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15. 국가예방접종 백신 유통 현황('25. 08. 기준)

백신종류	분류	제조사	제품명	규격	제조방법	유효기간
BCG(피내)	생백신	(주)엑세스파마	피내용건조비씨지백신AJV주	1.0ml/vial	완제품수입	24개월
B형간염	사백신	SK바이오사이언스(주)	헤파큐프리필드시린지	1.0ml/PFS	국내제조	36개월
		(주)LG화학	유박스비주	0.5,1.0ml/vial	국내제조	36개월
			유박스비프리필드주	1.0ml/PFS	국내제조	36개월
DTaP	사백신	(주)보령바이오파마	보령디티에이파백신주	0.5ml/PFS	원액수입제조	24개월
IPV	사백신	(주)보령바이오파마	아이피박스주	0.5ml/PFS	원액수입제조	36개월
DTaP-IPV	사백신	(주)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테트락심	0.5ml/PFS	완제품수입	36개월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	인판릭스아이피브이주	0.5ml/PFS	완제품수입	36개월
DTaP-IPV/Hib	사백신	(주)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펜탁심	0.5ml/PFS	완제품수입	36개월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	인판릭스아이피브이합주	0.5ml/PFS	완제품수입	36개월
DTaP-IPV-Hib-hepB ¹⁾	사백신	(주)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헥사심프리필드시린지주	0.5ml/PFS	완제품수입	48개월
Tdap	사백신	(주)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아다셀주	0.5ml/vial	완제품수입	36개월
			아다셀프리필드시린지	0.5ml/PFS	완제품수입	36개월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	부스트릭스프리필드시린지	0.5ml/PFS	완제품수입	48개월
Td	사백신	(주)엑세스파마	디티부스터주	0.5ml/PFS	완제품수입	36개월
		(주)녹십자	녹십자티디백신프리필드시린지	0.5ml/PFS	국내제조	36개월
MMR	생백신	한국엠에스디(주)	엠엠알II주	0.5ml/vial	완제품수입	24개월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	프리오릭스주	0.5ml/vial	완제품수입	24개월
일본뇌염	사백신	(주)녹십자	녹십자-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0.4,0.7ml/vial	원액수입제조	36개월
		(주)보령바이오파마	보령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0.4,0.7ml/vial	원액수입제조	36개월
	생백신	(주)글로박스	씨디.제박스	0.5ml/vial	완제품수입	24개월
수두	생백신	(주)녹십자	배리셀라주	0.5ml/vial	국내제조	24개월
		SK바이오사이언스(주)	스카이바리셀라주	0.5ml/vial	국내제조	24개월
		보란파마	바리-엘백신	0.5ml/vial	완제품수입	18개월
장티푸스	사백신	(주)보령바이오파마	지로티프주	0.5ml/vial	원액수입제조	20개월
신증후군출혈열	사백신	(주)녹십자	한타박스	0.5ml/vial	국내제조	24개월
Hib	사백신	(주)LG화학	유히브주	0.5ml/vial	국내제조	36개월
A형간염	사백신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	하브릭스주	0.5ml/PFS	완제품수입	36개월
		한국엠에스디(주)	박타프리필드시린지	0.5ml/PFS	완제품수입	36개월
		(주)보령바이오파마	보령A형간염백신프리필드시린지주	0.5ml/PFS	원액수입제조	36개월

백신종류	분류	제조·수입사	제품명	규격	제조방법	유효기간
폐렴구균 (단백결합)	사백신	한국화이자제약(주)	프리베나13주	0.5ml/PFS	완제품수입	36개월
		한국엠에스디(주)	박스뉴반스프리필드시린지	0.5ml/PFS	완제품수입	24개월
폐렴구균 (23가다당질)	사백신	한국엠에스디(주)	프로디악스23 프리필드시린지	0.5ml/PFS	완제품수입	28개월
HPV	사백신	한국엠에스디(주)	가다실프리필드시린지	0.5ml/PFS	완제품수입	36개월
로타바이러스	생백신	한국엠에스디(주)	로타텍액	2.0ml/tube	완제품수입	24개월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	로타리크스프리필드	1.5ml/PFS	완제품수입	36개월
인플루엔자 3가*	사백신	(주)녹십자	지씨플루프리필드시린지	0.5ml/PFS	국내제조	12개월
		(주)보령바이오파마	보령플루백신V주	0.5ml/PFS	국내제조	12개월
			보령플루백신VIII-TF주	0.5ml/PFS	원액수입제조	12개월
		(주)한국백신	코박스플루PF주	0.5ml/PFS	국내제조	12개월
			코박스인플루PF주	0.5ml/PFS	국내제조	12개월
		일양약품(주)	일양플루백신프리필드시린지주	0.5ml/PFS	국내제조	12개월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	플루아릭스프리필드시린지	0.5ml/PFS	완제품수입	12개월
		(주)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박씨그리프주	0.5ml/PFS	완제품수입	12개월
		SK바이오사이언스(주)	스카이셀플루프리필드시린지**	0.5ml/PFS	국내제조	12개월

* 인플루엔자 백신은 2025-2026절기 국가예방접종 참여 백신 기준

** 인플루엔자 세포배양 방식 제조 백신

16. 절기접종(인플, 코로나19) 65세 이상 접종시기 연령구분에 따른 지역특성 예외 인정 가능 지역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상 최소 행정구역이 시·군·구로 되어 있으므로, 예외인정 적용은 시·군·구까지로 함

1. 지역특성에 따른 예외인정 가능 지역(총괄)

구분	해당 시·군·구
대구	군위군
인천	서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울산	울주군
경기	가평군, 동두천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안산시, 화성시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진천군, 충주시, 제천시
충남	공주시, 금산군,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전북	고창군,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군산시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목포시, 여주시
경북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영덕군, 영주시, 영양군, 영천시,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김천시, 안동시, 경산시
경남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진주시, 창원시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강원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춘천시, 강릉시

2.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고시」 제2조(의료취약지)(보건복지부고시 2024-261호) (시행 2024. 12. 30.)

구분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1. 대구	군위군
2. 인천	강화군, 옹진군
3. 경기	가평군, 동두천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4. 강원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5.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진천군, 충주시
6. 충남	공주시, 금산군,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7. 전북	고창군,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8.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9. 경북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영덕군, 영주시, 영양군, 영천시,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10. 경남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11. 제주	서귀포시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섬·벽지 지역 (시행 2025. 1. 1.)

가. 섬지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섬)
인천	서구	원창동	세어도
	중구	무의동	팔미도
	옹진군	북도면	신도, 시도, 장봉도, 모도
		연평면	대연평도, 소연평도
		백령면	백령도
		대청면	대청도, 소청도
		덕적면	덕적도, 소야도, 문갑도, 백야도, 울도, 굴업도, 선미도, 지도
		자월면	자월도, 이작도, 승봉도
		영흥면	부도
	강화군	삼산면	서검도, 미법도
		서도면	주문도, 볼음도, 아차도, 말도
경기	안산시	풍도동	풍도, 육도
	화성시	우정읍	국화도, 입파도
충남	서천군	장항읍	유부도
	보령시	오천면	효자도, 월도, 허육도, 육도, 추도, 소도, 외연도 녹도, 호도, 삼시도, 고대도, 장고도, 대화사도, 시루섬
	서산시	대산읍	웅도
		지곡면	우도, 분점도
		팔봉면	고파도
	홍성군	서부면	죽도
	태안군	안면읍	외도, 내파수도
		근흥면	가외도, 웅도
	당진시	석문면	난지도
전북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연도, 어청도 관리도, 방축도, 비안도, 명도 말도, 두리도, 죽도
	고창군	부안면	죽도
	부안군	위도면	위도, 식도, 거륵도, 상왕등도, 하왕등도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섬)
전남	무안군	망운면	탄도
		해제면	저도
	목포시	달동	달리도, 외달도
		율도동	율도
	여수시	화정면	월호도, 자봉도, 개도, 제도, 상화도, 하화도 사도, 추도, 여자도, 송여자도
		남 면	금오도, 수향도, 안도, 부도, 대두라도, 소두라도 나발도, 대횡간도, 소횡간도, 연도
		삼산면	거문도, 서도, 동도, 초도, 손죽도, 소거문도, 평도, 광도
		율촌면	송도, 대늑도, 소늑도
		화양면	운두도
		월호동	소경도, 야도
		시전동	장도
		삼일동	삼간도
		돌산읍	송도, 금죽도
	고흥군	도양읍	시산도, 상화도, 하화도, 득량도
		도화면	죽도
		포두면	첨도
		봉래면	수락도, 애도
		과역면	진지도
		남양면	우도
		금산면	연흥도
	보성군	별교읍	장도, 동도, 지주도, 해도
	진도군	진도읍	저도
		고군면	금호도
		의신면	모도, 구자도
		조도면	상조도, 하조도, 서거차도, 동거차도, 옥도, 가사도 소마도, 라베도, 맹골도, 성남도, 죽향도, 독거도 청등도, 모도, 진목도, 대마도, 눌옥도, 외병도 내병도, 관매도, 관사도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섬)
전남	해남군	화산면	하마도, 상마도, 중마도
		송지면	어불도
		화원면	시화도
	영광군	낙월면	상낙월도, 하낙월도, 임병도, 송이도 각이도, 석만도, 영외도, 신기도, 오도 죽도, 안마도
		금일읍	평일도, 원도, 신도, 소랑도, 장도, 충도 다랑도, 섭도, 우도, 황제도
	완도군	노화읍	노화도, 마삭도, 노록도, 넙도, 서넙도, 어룡도, 대장구도, 대제원도, 후장구도, 죽굴도, 마안도
		군외면	사후도, 고마도, 토도, 흑일도, 백일도, 서화도, 동화도, 양도
		신지면	모항도
		고금면	넙도, 초완도
		청산면	청산도, 장도, 여서도, 소모도, 대모도
		소안면	소안도, 당사도, 횡간도, 구도
		금당면	금당도, 화도, 허우도, 비건도
		보길면	보길도, 예작도
		생일면	생일도, 덕우도
	신안군	지도읍	어의도, 대포작도, 소포작도, 선도, 울도
		증도면	병풍도, 대기점도, 소기점도, 소악도, 화도
		임자면	재원도, 부남도
		비금면	본도, 상수지도, 하수지도
		도초면	본도, 우이도, 동소우이, 서소우이, 죽도
		흑산면	본도, 영산도, 장도, 다물도, 대둔도, 홍도, 상태도 중태도, 하태도, 만재도, 가거도
		하의면	본도, 개도, 장병도, 문병도, 능산도, 장재도, 신도 대야도, 옥도
		신의면	본도, 고사도, 평사도, 기도
		장산면	본도, 마진도, 울도, 백야도, 막금도
		안좌면	박지도, 반월도, 사치도, 부소도, 요령도
		암태면	당사도, 초란도
		압해읍	가란도, 효지도, 외안도, 고이도, 꽃섬 항마도, 매화도, 마산도
경북	울릉군	울릉읍 등	울릉도, 죽도, 독도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섬)
경남	사천시	동서동	신수도, 신도, 저도, 마도
		서포면	진도, 월등도
	진주시	귀곡동	귀곡도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곤리도, 학림도, 연대도, 만지도 추도, 오곡도, 송도, 저도
		용남면	지도, 수도, 어의도
		도산면	연도, 읍도
		광도면	입도, 저도
		육지면	육지본도, 국도, 봉도, 초도, 갈도, 연화도, 우도 상노대도, 하노대도, 납도, 두미도
		한산면	한산본도, 비산도, 좌도, 추봉도, 용초도, 비진도 죽도, 매물도, 소매물도, 가왕도, 장사도
		사랑면	상도, 하도, 수우도
	거제시	일운면	지심도, 내도, 외도
		장목면	이수도
		사등면	고개도
		둔덕면	화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노도
		미조면	(미조리)조도, 호도
	창원시	구산면	큰닭섬, 실리도
		진동면	양도, 송도, 수우도
		웅천동	연도, 우도
		태평동	잠도
	고성군	하일면	자란도
		삼산면	와도
제주	제주시	추자면	횡간도, 추포도, 추자도
		한림읍	비양도
		우도면	우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 마라도

나. 벽지지역 <개정 2024. 12. 30.>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리·부락)	경감지역(도로명 주소)
강원	홍천군	내면	울전2리	문바위길 119~176, 내린천로 638~704 살둔길, 살둔강변길 9~200
			울전3리	밤바치길, 밤바치길 45번길 밤바치길 431번길, 밤바치길 210번길
			방내2리	여차동길, 여차동길 499번길 여차동길 386번길
			광원리	삼봉휴양길 276
	춘천시	동면	품안리	품안리길
			품걸1리, 품걸2리	품걸길, 야시대로
			신이리	연엽골길, 신이리길, 우무골길
		북산면	내평리	내평길
			부귀리	삼막길6-4~67, 부귀로782-8~954, 텃골길
			물로1리	삼다리길, 갈골길
			물로2리	물로길, 절골길
			대동리	대동길
			대곡리	더운샘길
			추전리	북산로1039~1053, 소양호로650~652
			청평2리	삼막길 534~663
	횡성군	청일면	(봉명리)안구저비	봉명로 129번길 6~233, 봉명로 227번길 6~68, 봉명로 593번길 1~103
		강림면	(월현1리)덕초현	월안길 215~596, 월안1길 1~113
	강릉시	강동면	(연별1리)단경골	단경로928-9~1389
		연곡면	(삼산3리)부연동	부연동길579~1056, 부연동1길70~96-14
	삼척시	하장면	(중봉리)소내, 터골	중봉당골길 1127-85~1159
		노곡면	개산리	개산길 430-140, 430-424~549-33
		가곡면	(풍곡리)덕품, 삼방, 광업소	덕풍길 984-131~1113
	평창군	진부면	(봉산리)모리재, 봉두곶리, 발왕동, 지칠지	신기봉산로 670~1424
	속초시	설악동	-	설악산로 1119-542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리·부락)	경감지역(도로명주소)
강원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2리3반)가잔동	부연동길 1318~1459-58, 1459-71
			법수치리	법수치길 548~1176
			면옥치리	면옥치길 127~510, 송이로 1471~1516, 노루골길 384~456
		서면	오색리	대청봉길1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연포	연포길 530~794
		화암면	(북동리)한바위	함바위길
		북평면	(숙암리)단임	단임길 397~1207-53, 숙암장재터길
		임계면	(임계4리)평양촌	평양마을길 178~658, 노루마당길 37~272-55
			(도전2리)내도전	내도전길 460~748
	화천군	화천읍	동촌1리	호음로 473~1322, 운봉동길 35~153
			동촌2리	비수구미길 461-2056, 평화로 2393~3481-90
		간동면	방천1리	신내길, 갓골길, 간척월명로 573-1~1490-69
			방천2리	운수길
	양구군	양구읍	상무룡1리	상무룡로 358-29~798-20
			상무룡2리	서호길, 간척월명로 1504~1537 간척월명로 1863번길 327, 남발길 513
	인제군	남면	수산리	수산로 328~1095, 무학길
		기린면	진동2리	곰배령길, 설파발길 조침령로 2092-13~2250
			(방동2리)조경동, 아침가리	방동약수로 677-817
		상남면	미산1리	왕성동길, 내린천로 1130~1875, 1883~2164, 개인약수길
		북면	용대리	백담로 1759, 백담로 1925, 백담로 1220
	고성군	간성읍	탑동2리	탑동길 494~724-69, 관대바위길 491
		현내면	마달리	백두대간로 775-19~888-19, 마달1길 1-12~90, 마달2길 11~52, 89-3, 유천쌍계길 245, 건봉사로 747-6~747-8
			명호리	통일전망대로 452~457, 동해대로 9375~9386
			사천리	동해대로 9049~9109
울산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한실	한실길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리·부락)	경감지역(도로명주소)
경남	밀양시	산내면	(용전리)오치마을	산내용전1길 290~422, 용전리 1807
		단장면	(고례리)바드리마을	바드리길 385~643-4
		부북면	(대항리)평전마을	평발길 19~80-13, 화악산길 351~487
		상동면	(도곡리)솔방마을	도곡1길 97-29~162
		무안면	(운정리)노리실마을	운정안길 1-6~200
	산청군	신안면	(안봉리)둔철	둔철산로, 둔철산로438번길, 둔철산로472번길
		오부면	(일물리)일물	방실일물길, 참새미로, 오동로, 오동로598번길
		금서면	(오봉리)오봉	화계오봉로
		시천면	내대리	세석길 217-573
			중산리	지리산대로 320-103
		삼장면	유평리	치발목길 428
	함양군	마천면	강청리	백무동로 373
경북	김천시	증산면	수도리	수도길 865-13~1438
			황점리	황점1길 70-100~807
	안동시	임동면	사월리(보마골)	한철골길 356-384
			(박곡리)지례	지례예술촌길 390~427
	영주시	단산면	마락리	영단로 1236-1~1522-4
	상주시	외서면	(대전2리)갈골	하나동1길, 하나동2길, 송죽동1길, 송죽동2길, 행복동길, 낙원동길
		은척면	장암2리	수예길 16~132
		화남면	동관2리	평온동관로 379-1~385, 비룡동관로 967~1162, 동관2길, 동관3길
	문경시	가은읍	수예리	수예길, 작약로 412~652
		동로면	명전1리	당곡길, 명전길 468~702
		농암면	내서3리	승리동길, 백합동1길, 백합동2길, 다락갈골길 220-9~279-72
	경산시	용성면	매남4리	구룡마을길 58길
			매남리	구룡마을길 187-9
	청송군	안덕면	근곡리(안нат실)	현실날실길 397-46~423
		현서면	(무계2리)칠미기	면봉산길 685-1017
	영양군	영양읍	무학리	비리동천길 403~635-28
		석보면	포산리	포산길 280-14~319
		수비면	(신암리)새신	새신길 26~225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리·부락)	경감지역(도로명주소)
경북	영덕군	지품면	옥류리	내옥류길 246-17~359, 외옥류길
		축산면	조항리	조항길, 칠성길 843-5~846
	봉화군	소천면	(고선2리)구마동	구마동길 307-45~1518
			남회룡리	개내골길 8, 138, 남회룡로 199~1291
			(두음리)듬골	두음길 528-20~934-16
			(분천1리)풍애	풍애길 258~566-39
			(분천2리)원곡	원곡길 22-37~124, 승부길 1158-158
		재산면	갈산2리(우련전)	개내골길 92~189, 남회룡로 9~79-121 일월산길 14-28~194
		석포면	승부리	승부길 358~1162-55, 마무이길 26~139 교동길 40~142
			(석포1리)반야	반야길 475~895-25
	울진군	금강 송면	왕피1리, 왕피2리	한내길, 양지길, 동수골길, 거리고길, 병위길, 병위 1길, 병위 3길, 병위 4길, 병위 5길, 왕피길 589~1762-8
			(전곡리)원곡	전곡2길
			전내	전곡1길 165-12~901
		근남면	(구산3리)원심	원심길
			오르마	왕피천로 534-1~840
		매화면	(길곡리)내길	길곡길마길 236~240
충북	충주시	양성면	(영죽리)상영죽마을	상영죽길 111~212-1, 영죽요골길 47~189 영죽고개길 411~644
		산척면	(석천리)명암마을, 합천마을, 석문마을	명암길 5~40, 석천길 54~522, 화수길 4~53, 회고길 8~81, 석문길 6~184, 송골길 6~38, 월천길 6~123
	제천시	청풍면	오산리	호반로 2086~2217, 호반로1길
			단돈리	호반로 2681, 2686~2866, 2914~2914-1, 호반로3길
			방흥리	호반로 2408~2524, 2524-1
			진목리	호반로 2065, 호반로2276, 갈골만지길 47~62
전북	임실군	운암면	(금기리)시랑골	금기길 326~342-209
			(청운리)거둔이	청운1길 326~384
			박실	청운2길 82~164
			(월면리)월면	월면길 398-3~422
			(지천리)지천	지천길 180~437-12
	남원시	산내면	부운리	와운길 324
전남	장흥군	관산읍	농안리	칠관로 842-1150
경기	개성시		개성공업지구	개성공업지구

※ 벽지지역 해당 여부가 리·부락에 의한 때와 도로명 주소에 의한 때가 다른 경우나 도로명 주소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리·부락 기준을 우선으로 한다.

3

민원사례집



가. 공통 문의

(1) 사업 운영(총괄)

• (사업대상) 2025년 「국가예방접종사업」 사업대상은 누구인가요?

- ① 12세 이하 어린이(2012. 1. 1. 이후 출생자)
- ②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HPV) 12~17세(2007. 1. 1.~2013. 12. 31. 출생자) 여성 청소년 및 18~26세(1998. 1. 1.~2006. 12. 31. 출생자) 저소득층* 여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 (12세 건강상담 대상) 2012. 1. 1.~2013. 12. 31. 출생자

- ③ 폐렴구균(PPSV) 65세 이상(1960. 12. 31. 이전 출생자)

※ 절기접종(인플루엔자(IV), 코로나19(COVID-19)) 사업 대상자 사업시작 전 별도 안내

• (계약체결) 기존에 사업 참여를 하였으나 폐업하여 타 지역으로 병원을 이전하였습니다. 계약 체결을 다시 하여야 하나요?

- 예방접종업무는 시·군·구청장이 관할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것이므로, 타 지역으로 이전했다면, 이전한 지역 관할 보건소와 다시 신규 계약을 체결합니다. 의료기관이 폐업신고 하면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폐업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연계를 통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자동 반영됩니다.

※ 신규 계약체결 시, 최근 2년 이내의 공통필수 및 기본교육 수료정보가 필요하며, 2025년 신규로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기본교육과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의 심화교육 수료정보가 필요합니다.

• (계약체결)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아나필락시스 발생에 대비한 응급처치 장비를 구비하지 않으면 계약체결이 불가능한가요?

- 아나필락시스 발생에 대비한 응급처치 장비 구비가 계약서상에 명시된 필수조건은 아니나, 이상반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장비를 구비하여 사업을 수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 (계약체결) 전자계약 체결 후 의료기관에서 위탁의료기관 지정서 출력이 가능한가요?

- 예. 보건소에서 계약서를 포함한 위탁계약 관련 문서에 서명(승인) 완료 시 계약 체결이 성립되며, 의료기관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계약서와 지정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전자계약 체결을 위한 사전 조건이 있나요?**

- 계약 체결 전 의료기관 예진 의사는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교육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 전자계약 시 팝업 화면은 보이는데 내용 작성 후 전자문서등록 버튼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키보드의 Alt키를 눌러 상단의 보기-기본도구 클릭 시 해당 버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의료기관에서 접종실적이 없는 일부 백신 접종을 중단하여 위탁계약 참여백신 정보 수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방접종 항목이 변경되면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을 다시 제출 하도록 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해야 합니다.

※ 위탁의료기관에서 시행확인증 수정 및 제출, 관할 보건소 승인

• **(계약해지) 의사 1인당 1일 접종자 수 100명 이상 시 비용상환 또는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 안전한 예방접종 운영을 위해 예진 의사 1인당 1일 접종자 수를 100명으로 제한하며, 2회 위반 시 위탁의료기관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사업 기간 내 사업 대상에게 접종 시 비용상환은 가능하나, 위탁의료기관 계약 해지 시에는 비용상환이 불가합니다.

• **(지원대상) 출생신고가 지연된 신생아도 예방접종 비용지원이 가능한가요?**

-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법정출생신고기한(출생 후 1개월 이내) 내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신생아는 다음 접종 등록 및 비용상환 심사가 제한됩니다.

※ 신생아번호가 3개월 이상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임시관리번호 등으로 인적정보가 보완되지 않은 대상자는 추적관리 필요(대상자 추적불가 시 신생아번호관리 메뉴에서 사유 등록 후 비용지급 처리 가능)

• **(지원대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제 생년월일이 주민등록번호와 다른데, 예방접종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충분한 면역획득을 위해 백신별로 권장하는 최소접종 연령과 다음접종 과의 최소접종 간격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른접종 및 다음접종일자 등은 실제 생년월일로 결정 되므로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실제 생년월일과 다를 경우 보호자를 통해 증빙서류(출생신고서 등) 확인 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외국인도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외국인등록번호 소지자(외국인등록면제자 포함)는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합니다.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3개월 이상의 장기체류자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임시관리 번호 발급 후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무료접종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출생신고 전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생아 등도 예방접종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출생신고 전 신생아는 임시신생아번호(생년월일 및 성별 7자리)와 보호자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등록하여 비용상환을 신청합니다. 출생 후 1개월 이상 경과하였으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은 보건소에서 보호자 인적 확인 후 예방접종을 위한 임시관리번호를 발급받아 접종합니다.
※ 시설 아동은 시설아동번호(의료급여 관리번호)를 주민번호 대신 사용 가능하며, 시설아동번호 미발급 아동은 시설아동번호 발급 시까지 관리번호로 접종

• **(지원대상) 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 대상자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 (보건소)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메뉴보기 → 등록업무 → 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 (의료기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예방접종등록 화면을 통해 확인

• **(지원대상) 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 변경 전 주민등록번호의 접종력 확인 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관리 → 게시판 → Q&A → '(민원대상분류) 기타, (제목) 65세 이상 폐렴구균 접종대상 대상력 이전'을 통해 접종력 이전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방법) 모든 의료기관에서 국가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지자체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위탁의료기관)에서만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위탁의료기관은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도우미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비용)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원 백신이 제품명으로 구분되어 비용이 공고되는데 지원 금액이 다른가요? 그렇다면 백신별 예방접종 지원비용은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 아니요. 제품명에 관계 없이 동일 백신의 지원 금액은 동일합니다. 백신별 예방접종 지원비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정책자료 → 전자관보 또는 질병관리청 누리집 → 알림 → 공고/고시, 또는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국가예방접종 백신 품목(제품명) 공개는 수급 관리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신규 백신의 도입 절차를 명확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구분하여 공개중입니다.

• **(문서보관) 현재 예방접종 예진표, HPV 건강상담 체크리스트 및 B형간염 주산기감염 사업 참여 산모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 예방접종과 관련한 문서 일체의 보관에 대하여, 종이(원본) 보관 양이 많고, 공간 부족 및 사후 처치 곤란 등의 사유로 해당 문서를 스캔하여 전자문서로 보관할 수는 없나요?**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및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효력있는 전자문서와 전자서명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따라 스캔만으로는 효력있는 문서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 제5조에서는 ①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②전자문서가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③전자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수신 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을 것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종일정) 표준예방접종일정보다 접종이 지연된 경우 처음부터 재접종해야 하나요?

- 처음부터 접종하지 않고 지연된 접종 차수부터 빠른 시일 내 접종합니다. 표준예방접종 간격보다 길어지면 감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지연된 예방접종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접종 받도록 합니다.

• (접종일정) 표준예방접종일정보다 일찍 접종한 경우 처음부터 재접종해야 하나요?

- 최소접종 연령과 최소접종 간격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재접종해야 합니다. 약독화 생백신의 경우 동시 접종을 못 했거나 약독화 생백신 간 유지해야 할 최소접종간격(4주)보다 이르게 접종했다면 재접종이 필요합니다. 동시접종 시에는 다른 주사기를 사용하고, 국소 반응을 구별하기 위해 주사 부위는 적어도 2.5cm 이상의 간격을 두고 접종합니다.

※ 최소접종 연령 또는 최소접종 간격에서 4일 이하의 오차는 '단축인정기간(grace period)'으로 접종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단, 약독화 생백신 간 최소접종 간격(4주), MMR, 수두 1차 최소접종 연령인 생후 12개월은 제외

• (접종일정) 예방접종을 했지만 접종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데 다시 접종해야 하나요?

- 예방접종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과거 접종기록을 알 수 없으면 재접종을 권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접종이 면역형성에 이상을 주거나 이상반응을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재접종 시에는 백신에 따라 접종횟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종 전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종일정) 외국에 살다 귀국했는데 이후 예방접종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나라마다 질병의 역학적 특성 등에 따라 예방접종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속 거주할 나라에서 권장하는 예방접종일정에 따라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추가접종을 예방하기 위해 '영문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접종기관의 직인이나 공식 사인된 서류를 발급 받아오신 후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종방법) 1세 아동에게 근육주사 시 삼각근에 접종 가능한가요?

- 연령별 주사 부위는 근육량, 피하지방층 두께, 백신량, 주사기술에 근거해 개인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2세 연령은 대퇴부 전외측이 선호되나, 근육량이 적당한 경우 삼각근 접종도 가능합니다. 12개월 미만 영아는 가장 많은 근육량을 가지고 있는 대퇴부 전외측이 추천되며, 3세 이상은 상완 삼각근이 선호됩니다. 다만, 삼각근에 접종할 수 없는 경우 대퇴부 전외측에 접종합니다.

• **(접종오류) 접종 시 아이가 움직여서 백신의 정량이 투여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적정량의 백신이 접종되지 않은 경우 투여된 용량을 측정하기 어려워 면역효과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재접종을 권장하며, 이 때 정량으로 빠른 시일 내 접종합니다. 다만, 인플루엔자 약독화 생백신을 비강 투여한 후 재채기를 한 경우와 로타바이러스 백신 경구 투여 후 구토한 경우에는 재접종을 하지 않습니다.

• **(특수상황에서의 접종) 항암치료를 받았는데 이전에 접종한 백신의 재접종이 필요한가요?**

- 항암치료 또는 방사능 치료 이전에 접종했던 백신은 재접종하지 않습니다. 다만, 치료 중 면역 저하상태에서 접종한 불활성화 백신은 면역기능이 회복된 이후 재접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 이후 접종 시 MMR, 수두와 같은 약독화 생백신은 체내에서 백신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증식하여 면역저하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치료 후 일정 기간 간격(최소 3개월)을 두어야 합니다.

• **(특수상황에서의 접종) 질병으로 스테로이드를 투여하고 있으면 접종을 할 수 없나요?**

- 국소적*으로 스테로이드를 투여하고 있는 경우 약독화 생백신과 불활성화 백신 모두 접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량 스테로이드(프레드니손 2mg/kg/일에 해당하는 역가 이상, 또는 체중 10kg 이상 소아에서 20mg/일에 해당하는 역가 이상)를 매일 13일 이하로 투여한 경우, 투약을 중지한 후 즉시 약독화 생백신을 투여받을 수 있으며, 14일 이상 매일 투여받은 경우는 투약 중지 후 4주 이후 약독화 생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

* 피부에 도포하거나 기관지에 분무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

• **(특수상황에서의 접종) 6세 아동으로 접종을 완료했지만 조혈모세포이식 후 재접종을 하려고 할 때 얼마의 간격을 두고 접종해야 하나요?**

- 불활성화 백신은 백신에 따라 이식 후 6~12개월에 시작하고, 약독화 생백신은 24개월 이후 환자가 면역학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판단 시 접종합니다. 면역학적 판단 기준은 ①최근 3개월 이내 면역억제치료를 받고 있지 않으면서, ②만성 이식편대숙주병이 없고, ③앞서 접종받은 불활성화 백신에 대하여 적절한 면역반응을 보인 경우입니다.

• **(방문접종) 거동이 불편한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등 방문접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방문접종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다수 생활하고 있는 감염취약시설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와 재가와상환자의 경우도 응급처치 키트 등 안전 조치 대비 상태에서 방문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 **(전산등록) 아기수첩에 기록된 접종 내역도 전산등록 가능한가요?**

- 아니요. 예방접종수첩(아기수첩)은 보호자에게 자녀의 접종내역을 관리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중요한 접종정보(백신번호, 제조사명 등)가 없고, 정보의 부정확성 때문에 접종을 증명할 수 없고 전산등록도 할 수 없습니다.

• **(백신관리) 65세 이상 폐렴구균 백신이 파손되거나 바늘이 오염되어 접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품이 가능한가요?**

-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제품은 백신을 공급한 업체에서 교환이 가능합니다. 단, 인수 이후 의료기관 보관 실수 또는 접종 과정 중 백신이 파손되거나 오염되면 자체 보유 물량으로 대체하거나, 대체가 어려우면 보건소에서 백신비를 환수(공문 또는 고지서)합니다.

나. 예방접종 교육 문의

• **계약체결 전 위탁의료기관 교육여부를 확인해야 하나요?**

- 위탁의료기관과 계약체결 전, 반드시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의사의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신규 계약체결 시, 최근 2년 이내의 공통필수 및 기본교육 수료정보가 필요하며, 2025년 신규로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기본교육과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의 심화교육 수료정보가 필요합니다.

• **계약신청 메뉴의 교육수료정보에서 교육 이수 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교육정보는 교육수료증을 다운로드 후 왼쪽 상단의 10자리 교육 수료번호와 수료자명을 입력한 후 오른쪽의 검증 버튼을 클릭해서 검증하시면 교육 수료 완료 시에 수료로 바뀌며 검증이 완료됩니다. 이후, 수료 위의 저장 버튼을 눌러 교육 이수 확인 완료가 가능합니다.

※ 교육수료증은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edu.kdca.go.kr)의 수료증 출력 메뉴에서 다운로드 가능

• **교육과정은 어떻게 운영되며, 반드시 의사가 이수하여야 하나요?**

-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에서 이수가 가능하며, 예방접종 위탁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의사가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육기한이 도래되면 12개월 이내 기본교육과 참여하고 있는 사업의 심화교육을 이수해야 재계약(5년) 또는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교육시스템에 로그인을 했는데, 과정안내 항목에서 사업 관련 교육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 교육과정은 로그인 후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회원가입 시 등록한 소속구분에 따라 교육과정명이 다르게 보입니다. 교육시스템 홈페이지 “마이 페이지”에서 해당 ‘의료기관’ 소속이 아니면 탈퇴 후 재가입하여야 합니다. 탈퇴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에

로그인 후 오른쪽 상단의 “나의정보”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한 권한의 승인 상태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 로그인 후 화면 좌측의 권한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교육관리USER(학습자) 권한 승인요청 관련은 ☎043-913-2352로 문의

• **사업 참여 전 보건소 주최 사업 설명회 또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 교육 이수를 완료하였는데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당해년도 교육을 재수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본교육 수강 후 매 2년(종료 후 12개월의 유효기간 부여)마다 기본교육과 참여하고 있는 사업의 심화교육을 반드시 수강하여야 합니다.

• **봉직으로 있던 의료기관에서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기본교육을 수강하였습니다. 개업하여 의료기관 정보가 변경되었는데 교육을 재수강하여야 하나요?**

- 소속기관 여부에 상관없이 기본교육 수료 시 재수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본교육 수강 매 2년마다 교육을 추가로 수강하여야 합니다. 추가 교육 수강시, 교육 수료증의 소속기관명은 수정이 안되니 현재 의료기관으로 재가입 후 교육을 수강하시길 바랍니다.

•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은 아닌데 ‘[보수교육] 65세 이상 및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교육’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이 수료증으로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 해당 과정은 기존 65세 이상 및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참여하고 있던 의료기관을 위한 교육과정입니다. 신규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기본교육과 참여를 원하는 사업의 심화교육을 이수해야 위탁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기존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으로 참여 중입니다. 새롭게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교육 이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6세 이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참여하고 있던 의료기관이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참여를 원할 경우, 기본교육과 참여를 원하는 사업의 심화교육 과정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65세 이상, 임신부, 어린이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모두 신규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 ①기본교육, ②[심화교육]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교육, ③[심화교육] 65세 이상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교육의 3가지 과정을 이수하면 됩니다.

• **의료기관 내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의사가 다수인 경우 모든 의사가 교육을 들어야 하나요?**

-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의료인(의사)은 사업 실시 이전(또는 예방접종 예진 및 시행 이전)에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교육 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 및 사업내용 숙지를 위하여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의료인은 모두 교육 과정을 이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위탁계약 시에는 대표자(대표원장, 1인 기본)의 교육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공인인증서는 중복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접종 의사가 다수인 경우 회원가입 시 개인의 은행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도 등록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수료증 출력 시 성명란에 병원 이름 또는 타인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수정하나요?**

- 교육수료증에는 회원가입 시 성명란에 기입한 대로 출력이 됩니다. 실명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기입을 하고 이미 과정을 이수한 경우는 성명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이때는 실제 예방접종 시행 의사 실명으로 다시 회원가입 후 재수강이 필요합니다.

• **2023년도 7월에 ‘[기본교육]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올해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 예. 심화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매 2년(종료 후 12개월의 유효기간 부여)마다 이수해야 합니다. 사업참여 후 계약기간 만료 시 재계약(갱신)을 하고자 할 경우, 기존 수강한 교육의 기한이 만료된 경우 참여하고 있는 사업에 해당되는 심화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규 계약을 할 경우 최근 2년 이내의 기본교육과정만 인정하므로, 기본교육 이수 후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2025년부터 신설되는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을 다시 이수해야 합니다.



다.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 문의

1. 국가예방접종사업

(1) B형간염

• B형간염 예방접종을 3차까지 완료했는데, 10년 정도 지난 후 다시 B형간염 예방접종을 맞아야 하나요?

- 아니요. 백신 접종 후 방어면역력이 있는 10mIU/ml 이상의 표면항체가 생긴 것이 확인되었다면 이후 시간이 경과하여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전환되더라도 기억면역에 의한 B형간염 예방 효과는 지속됩니다. 따라서 추가접종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 B형간염 1차, 2차는 정확한 날짜에 접종했는데, 3차를 9주에(2달) 앞당겨 접종했습니다. 이 경우 재접종이 필요한가요?

- 최소접종 연령과 간격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재접종이 필요하며, 3차 재접종은 오접종일로부터 최소 5개월 뒤에 실시합니다.

※ B형간염 2차와 3차 접종의 최소접종 간격은 8주이고, 3차 접종은 1차 접종 16주 이후이면서 생후 24주 이후 접종

• 항원-항체 검사 결과 B형간염 항체가 양성이었다, 재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올 수도 있나요?

- 예. B형간염 백신 접종으로 형성된 항체는 시간이 흐르며 그 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후 재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면역에 의해 예방이 가능하므로 백신을 추가로 접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방어항체 역가가 10mIU/ml 근처의 값을 보이는 사람에서는 같은 검체에 대해 검사 시약을 달리하거나, 수일의 짧은 간격으로 채혈하여 재검사하는 경우 결과가 양성에서 음성, 또는 음성에서 양성으로 상반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6가 혼합백신(DTaP-IPV-Hib-HepB)은 몇 개월에 접종 가능한가요?

- 출생시 B형간염 1차 접종을 한 영아를 대상으로 생후 2, 4, 6개월에 권장되는 기초접종 시 접종 가능합니다.

* 6가백신 접종을 원할 경우 생후 1개월 권장되는 B형간염 2차 접종을 생후 2개월에 시행 필요

* 출생시 B형간염을 접종한 영아를 대상으로 6가 혼합백신(헥사심) 접종 시 B형간염은 총 4회 접종

(2) 결핵

• 3월 3일생인 아기가 병원에서 B형간염 백신의 1차 접종을 하였으며, 다음 접종일인 3월 16일에 BCG 접종 안내를 받은 경우, 4월 3일에 B형간염 백신 2차 접종과 BCG 접종을 같이 해도 되나요?

- 네. BCG 접종은 출생 후 4주 이내 접종하면 되며, 병원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생후 4주의 2차 B형간염 백신과 동시접종이 가능합니다.

• 40개월 된 여아로 생후 4주 BCG 접종을 했습니다. 며칠 전 결핵반응검사를 했을 때 아무 반응도 없어 결핵에 대한 면역력이 없다고 의사가 판단하였으며, BCG 재접종을 권고하였는데, 이 경우 재접종을 해야 하나요?

- 아니요. 결핵 피부반응 검사에서 반응이 없다고 해서 결핵에 대한 면역력이 없다고 정의할 수 없으므로 재접종은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종 후 흉터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흉터가 없더라도 접종력이 확인되면 재접종은 하지 않습니다.

• 국외에서 BCG 접종을 하지 않고 거주하던 아동이 국내에 영구 귀국한 경우, BCG 접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생아기에 BCG를 접종받지 못해 따라잡기 접종을 하는 목적은 명확한 예방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파종결핵의 예방을 위한 것으로, 파종결핵의 고위험 연령대로 알려진 5세 미만까지 접종을 권장합니다. 결핵 환자의 노출력이 없는 경우, 생후 3개월 미만은 TST 없이 접종하며, 생후 3개월 이상은 TST 후 실시하여 음성 결과 확인 후 접종합니다.

• 피내용 BCG 접종 시 바늘이 빠져 백신 용량이 적게 주입되면 어떻게 하나요?

- 권장 용량으로 다시 접종합니다. 특별한 간격을 띄우지 않고 접종 당일 재접종 하며, 접종 부위를 달리하면 반흔이 이중으로 생길 수 있으므로 같은 부위에 접종합니다.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처치 대상자는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HBIG) 투여 후 얼마의 간격을 두고 BCG 백신을 접종해야 하나요?

- 신생아에게 HBIG 투여 후 BCG 백신을 접종했을 때 BCG 백신의 효과가 감소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간격을 두지 않고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합니다. 참고로 BCG 백신은 항체 함유 혈액제제와 투여 간격에 제한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 해외에서 귀국한 13개월 영아로, MMR 백신과 수두 백신 접종 후 얼마의 간격을 두고 BCG 백신 접종을 해야 되나요?

- MMR 백신과 수두 백신 접종일로부터 최소 4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TST 후 결과에 따라 BCG 접종을 실시합니다.

MMR 생백신은 이론적으로 TST의 반응성을 낮출 수 있으므로 MMR 백신과 TST를 동시에 실시하거나, MMR 백신 접종 후 최소 4주가 지난 후에 TST를 시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TST 시행 후 MMR 백신 등의 약독화 생백신 접종시 특별히 지켜야 할 간격은 없습니다.

• **TST 후 며칠 이후에, 혹은 며칠 이내에 BCG 접종을 해야 하나요?**

-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TST는 검사 당시의 결핵균 감염 여부를 판단하므로 가능한 빨리 접종하기를 권장합니다.

• **미숙아로 출생하여 출생 직후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가 한 달 전에 퇴원한 생후 4개월 영아에게 TST 없이 BCG 백신 접종해도 되나요?**

- 일반적으로 건강한 아이가 BCG 백신 접종을 지연했다면 출생일로부터 3개월 미만까지는 TST 없이 BCG 접종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숙아나 입원이 필요한 심한 질환이 있다면 퇴원할 때까지 접종을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미숙아가 신생아집중치료실(NICU) 입원 사유로 TST를 미실시한 경우 입원기간 동안 외부와의 차단 및 격리보호 되었을 것을 고려하여 비용상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BCG 백신을 접종했다면 적합한 의학적 소견을 입력하여 전산등록(비용상환 신청)합니다.

※ 의학적 소견 : 미숙아 출생 후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 > 입원일 및 퇴원일 등록

(3)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 **DTaP 4차 접종을 하지 않은 4세 아동의 접종일정은 어떻게 하나요?**

-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4차 접종을 실시하고, 5차 접종은 생략합니다. 예방접종 기록은 순차적으로 전산등록(DTaP 4차)시 비용신청 되며, 이후 접종은 11~12세에 Tdap 백신으로 추가 접종합니다.

• **DTaP 백신 접종을 한 번도 받은 적 없는 7세 아동의 접종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Td 백신으로 3회 접종(0, 1, 6개월 간격)을 완료*하되, 이 중 1회는 Tdap 백신으로 반드시 접종하고 가능하면 첫 접종을 Tdap 백신으로 접종합니다. 이후 11~12세에 Tdap 백신 추가 접종이 필요하나, 10세 이후 Tdap 백신을 접종했다면 11~12세 Tdap 백신 접종은 불필요합니다.

※ 11~12세 접종은 Tdap

※ (전산등록) Tdap 백신 접종은 <Tdap-6차>에, Td 백신 접종은 <Td(그외)>에 순차적 등록

• **DTaP 백신 3차 접종일로부터 5개월 후 4차를 접종한 생후 18개월 아동은 재접종해야 하나요?**

- 아니요. DTaP 3차와 4차 접종의 최소접종 간격은 6개월이나, 3차 접종일로부터 4개월 후에 4차 접종을 했다면 재접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접종간격이 4개월 보다 이르게 시행된 접종은 무효가 되므로 재접종이 필요합니다.

재접종 시 디프테리아, 파상풍 함유 백신은 너무 많이 접종하면 접종부위에 국소반응이 증가하기 때문에 7세 이전에 총 6회를 초과하여 접종하지 않도록 이후 접종 일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DTaP 단독 백신으로 1차 접종 후 DTaP-IPV 혼합백신으로 교차접종이 가능한가요?**

- 동일 제조사 백신이라면 가능합니다. DTaP 백신은 제조사마다 백신 제제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초접종(1~3차)은 동일 제조사의 백신으로 접종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DTaP 1차 접종을 단독백신으로 시작했다면 이전에 접종한 백신과 동일한 백신으로 3차 접종까지 완료하도록 하며, 추가접종(4차, 5차)은 교차접종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국내 백신 수입, 유통 등의 어려움으로 동일 제조사의 백신을 구할 수 없는 경우는 교차접종을 할 수 있으나 이전과 동일한 제품을 접종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현재 유통되는 백신 중 보령바이오파마의 단독백신(DTaP)과 혼합백신(DTaP-IPV) 교차접종 가능

• **영유아 시기에 DTaP 접종을 완료한 10세 아동에게 DTaP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이후 접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DTaP 접종을 완료한 10세 아동에게 DTaP 백신 접종은 유효접종으로 간주되므로 비용상환 가능합니다. 11~12세 Tdap 백신 접종은 불필요합니다.

※ 11~12세 Tdap 백신 접종 시 비용상환 불가

• **아이가 외국에서 DTaP 5차 시기에 Td 백신으로 접종하였다면 해당 접종은 유효한가요?**

- 아니요. 7세 이전에 접종한 Td 백신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방문연령 시기에 맞춰서 5차 재접종이 필요합니다.

• **DTaP 5차 접종을 지연한 7세 이상 아동에게 Tdap 백신으로 접종하려고 하는데, 약전에 Tdap 백신 중 부스트릭스는 10세 이상~성인까지, 아다셀은 11세~64세까지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어떤 백신으로 접종 하나요?**

- Tdap 백신 부스트릭스와 아다셀 모두 가능합니다. 해당 연령 내 사용가능한 허가 약물이 없어, 백일해의 발생 및 유행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 범위 초과 사용 기준을 마련하여 권고한 바 있습니다.

※ (2018년 10월) 백일해 발생 현황과 DTaP 접종력이 불완전한 어린이 대상 허가 범위 초과 사용 기준 권고안 안내

• 1차, 2차를 펜탁심으로 접종한 아이가 지연되어 생후 13개월에 3차 접종을 하기 위해 방문 하였습니다. 펜탁심 접종이 가능한가요?

- 펜탁심(DTaP-IPV/Hib)은 기초접종 3회(생후 2, 4, 6개월)로 허가 되었습니다. 생후 12개월 이후 연령에서의 펜탁심 접종을 권장하지 않으므로 테트락심(DTaP-IPV)과 Hib백신으로 각각 접종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DTaP-IPV 보령디티에이피아이피브이 백신은 기초접종 3회(생후 2, 4, 6개월)로 허가되어 있는데 생후 12개월 이후 아동에게도 접종 가능한가요?

- 생후 12개월 이후에도 기초 3회 접종시 보령 DTaP-IPV 백신 사용이 가능합니다.

(4) 폴리오

• 폴리오 1·2차 접종 후 3차 접종 없이 2년이 지났는데 기초접종부터 다시 해야 하나요?

- 기존 2회 접종은 유효하므로 재접종하지 않으며, 가능한 빨리 3차 접종을 시행하며, 3차 접종이 4세 이후 시행되고 2차 접종과 최소 6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접종되었다면 4차 접종은 필요 하지 않습니다. 3차 접종이 4세 이전에 시행되었다면, 3차 접종과 최소 6개월의 간격을 유지 하여 4세 이후 4차 접종을 시행합니다.

• 4세 아이입니다. 아기수첩에 폴리오 1~3차 기록은 없고 작년에 1회 접종한 내역만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전 접종력이 확인되지 않고 3세 1회 접종력만 확인되므로 즉시 2차 접종을 실시하고, 6개월 뒤 3차 접종을 하여 기초접종을 완료합니다.

• 폴리오 예방접종을 생후 2, 4, 6개월에 해야 하는데 며칠씩 일찍 했습니다. 다시 해야 하나요?

- 최소 접종 연령 및 접종 간격이 지켜졌다면 재접종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보다 앞당겨 접종한 경우 면역 형성이 잘 되지 않으므로 재접종합니다.

• 9세 아이가 폴리오 예방접종이 없는 경우 몇 회 접종해야 하나요?

- 3회 접종합니다. 1차와 2차는 1~2개월 간격으로 시행하며, 3차 접종은 2차 접종 후 최소 6개월 뒤 실시합니다.

• 다른 나라에서 경구용 폴리오 백신을 2회(2, 4개월) 혹은 3회(2, 4, 6개월) 접종받은 소아가 귀국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 장기간 거주할 나라에서 권장하는 일정에 따라 접종을 실시합니다. 표준예방접종 일정은 각

국가마다 유행하는 질병에 따라 역학적 특성, 질병 양상, 취약 연령 등을 고려하여 권고되므로 나라마다 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경구용/주사용 폴리오 백신은 어떤 조합으로도 접종이 가능합니다.

• **국외에서 OPV 백신(경구용 폴리오 생백신)으로 기초(1~3차)접종을 완료한 6세 아동입니다. 4세 이후에 3차 접종한 경우 4차 접종은 생략하나요?**

- 아니요. 다른 나라에서 OPV로 접종을 시작한 경우 접종이 지연되었더라도 총 4회 접종합니다. 나머지 접종은 IPV로 실시하며 비용상환 가능합니다.

(5)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여러 종류의 Hib 백신 중 어느 것을 맞아도 상관없나요?**

- 종류에 상관없이 백신 효과가 모두 우수하여 어느 것을 접종하여도 좋습니다.

• **Hib 백신 접종력이 없는 7세 소아입니다. 지금 접종해도 되나요?**

- 일반적으로 60개월 이상 소아는 무증상 감염에 의해 Hib에 대한 면역력이 획득되므로 Hib 예방접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침습성 Hib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질환들 중 무비증, HIV 감염 환자는 5세 이상이라도 1회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조혈모세포이식술을 받은 경우 이식 6~12개월부터 과거 접종력에 관계없이 4주 이상 간격으로 3회 접종합니다.

• **면역학적 관용이 생길 가능성으로 생후 6주 미만 영아에게 접종이 금기인데, grace period (4일 이내 오차) 내 접종한 것도 접종력이 인정되나요?**

- 예. 실제 6주 이내 접종은 금기시되고 있지만, 그 근거가 3개의 신생아 접종 연구 중 1개의 연구에서 항체반응이 불량했기 때문인데 이 면역관용이 관찰된 백신은 국내에서 사용이 중지된 polyribosylribitol phosphate-Neisseria meningitidis outer membrane protein complex(PRP-OMP)였습니다. 나머지 2개의 연구에서는 신생아에게 접종해도 문제가 없었으며, 국내에서 사용되는 PRP-T, HbOC로 수행되었습니다.

• **접종이 지연된 경우 연령별로 2회 또는 3회 접종을 권고하는데 접종횟수가 감소하여도 면역 원성 및 효과에 문제가 없나요?**

- 생후 2~6개월 접종 시작 시 모두 4회 접종, 생후 7~11개월 시작 시 모두 3회, 12~13개월 시작 시 2회, 15~59개월 시작 시 1회 접종합니다. 이는 연령이 증가하면 면역반응도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늦게 접종하면 접종 횟수를 줄일 수 있지만, 접종 전 Hib 질환에 이환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접종을 미루지 말고 2개월부터 접종해야 합니다.

- DTaP 백신과 폴리오 백신은 2차까지, Hib 백신은 3차까지 접종한 생후 15개월 아동이 Hib 4차 접종을 5가(DTaP-IPV/Hib) 또는 6가 혼합백신(DTaP-IPV-Hib-HepB)으로 접종해도 되나요?

- 권장하지 않습니다. 5가(DTaP-IPV/Hib) 또는 6가 혼합백신(DTaP-IPV-Hib-HepB)은 기초 접종에 사용하도록 허가되어 있어, Hib 4차 접종 시 해당 백신 접종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6) 폐렴구균

- 폐렴구균 다당 백신이 소아에서 중이염과 부비동염을 예방할 수 있나요?

-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은 백신에 포함된 혈청형 폐렴구균에 의한 중이염의 빈도를 어느 정도 감소시킵니다. 그러나 폐렴구균 다당 백신은 중이염과 부비동염에 대한 예방효과가 없습니다.

- 천식이 있는 환자는 폐렴구균 백신을 접종받아야 하나요?

- 천식 환자는 폐렴구균 질환의 고위험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천식으로 진단받은 성인과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는 소아 천식 환자는 폐렴구균 백신을 접종받아야 합니다.

- 이전에 폐렴구균 접종력이 없는 비장적출 수술을 받기로 한 5세 소아는 언제 폐렴구균 백신을 접종받아야 하나요?

- 가능하면 비장적출술 최소 2주 전까지는 단백결합 백신 또는 다당 백신으로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응급 비장 적출을 하는 소아는 수술 후 환자의 상태가 좋아지는 대로 곧 접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결합 백신은 2세 미만에서도 효과가 있으나, 폐렴구균 다당 백신은 2세 이전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 면역억제 치료를 받을 예정인 5세 이상 환자에게 폐렴구균 백신을 접종해야 하나요?

- 이전에 폐렴구균 백신 접종력이 없는 경우 가능하면 면역억제 치료 시작 최소 2주 전까지는 단백결합 백신 또는 다당 백신으로 접종을 완료합니다.

- 폐렴구균 백신 접종 후 얼마가 지나야 인플루엔자 백신이나 다른 백신을 접종할 수 있나요?

- 인플루엔자 백신이나 다른 백신과 동시에 접종해도 되고, 접종 전이나 후에 접종해도 됩니다. 불활성화 백신 간 또는 불활성화 백신-생백신 간에는 접종 간격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

• **단백결합 백신을 접종한 후 다당 백신을 최소 접종 간격인 8주보다 일찍 접종한 경우 재접종이 필요한가요?**

- 면역저하자, 무비증, 뇌척수액 누수 및 인공와우 이식 환자가 단백결합 백신 접종일로부터 8주 미만에 다당백신을 접종받은 경우 이 다당백신 접종을 무효한 것으로 간주하고, 다당백신 접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다당백신을 다시 접종합니다.

• **2024년도(64세 7개월)에 의료기관에서 PPSV23을 접종한 1959년생인데, 5년 후 재접종을 하나요?**

- 아니요. 사업 대상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입니다.

• **과거 65세 미만 연령에서 PPSV23를 접종했는데, 이력이 있을 경우 PPSV23 재접종이 필요한가요?**

- 예. 65세 미만에서 접종한 PPSV23 접종일로부터 5년 이상의 간격을 두고, 65세 이상 연령에서 1회 재접종합니다.

• **65세 이후 PCV13을 접종받았다고 하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종기록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PPSV23 접종이 가능한가요?**

- 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필수예방접종)에 의거, 실시한 예방접종의 기록은 등록되어야 하나 성인 예방접종은 전산 등록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피접종자가 PCV13을 접종했다면 접종일로부터 1년 후(최소 8주) PPSV23을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 접종력이 전산등록되지 않은 경우 전산등록 요청 안내

• **65세 이상 폐렴구균 접종 시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은 단백결합백신(PCV) 접종을 고려해야 하나요?**

- 면역저하자, 무비증, 뇌척수액 누출, 인공와우를 삽입한 환자 등은 단백결합백신(PCV13, PCV15) 접종을 우선 고려할 수 있으니,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접종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단, 단백결합백신 접종은 지원되지 않음을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담당주치의 상담이 필요한 기저질환자 확인 목록(보건소용)

• 다음과 같은 질환이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험군	질환명	아니오	예
정상면역성인	- 만성 심혈관 질환(고혈압 제외)¹⁾ - 만성 폐 질환²⁾ - 당뇨병 - 뇌척수액 누출 - 인공와우 이식 상태 - 알코올 중독 - 간경변을 포함한 만성 간 질환 - 흡연	☐	☐
기능적 또는 해부학적 무비증을 가진 자 ³⁾	- 검상구 빈혈 혹은 헤모글로빈증 - 무비증, 비장 기능장애 및 비장제거술	☐	☐
면역저하자	- 선천성 또는 후천성 면역결핍증⁴⁾ - HIV 감염 - 만성 신부전, 신증후군 - 백혈병, 림프종 - 전신적인 악성 종양 - 면역억제제 - 장기간의 스테로이드 전신요법 및 방사선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환 - 고형 장기 이식 - 다발성 골수종 - 호지킨병 - 조혈모세포이식	☐	☐

1) 울혈성 심부전과 심근증 포함

2)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기종 및 천식 포함

3) 기능적 또는 해부학적 무비증 환자나 면역저하자는 1차 다당 백신 접종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2차 다당 백신 접종이 권장됨

4) B세포(체액면역) 또는 T세포 결핍증, 보체결핍증(특히, C1, C2, C3, 및 C4 결핍증), 탐식구 질환(만성 육아종 질환은 제외)

상기의 기저질환자 접종 안내 (예진 의사 기록란)	확인 ☒
13가/15가 단백결합백신 접종력	☐ 있음 ☐ 없음
(13가/15가 단백결합백신 접종력이 없는 경우)	
• 담당 주치의와 접종받을 백신(PCV13/15 또는 PPSV23) 및 접종시기에 대해 상담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음	☐
• 담당 주치의 상담을 안내하였으나 상담을 거부하거나 상담 받은 후에 23가 다당질백신 접종을 요구함	☐

(7)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접종받아야 하는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 로타텍은 각각 생후 2, 4, 6개월에 세 번을 접종하고, 로타릭스는 생후 2, 4개월에 한 번씩 두 번을 접종합니다. 두 가지 백신 모두 1차 접종 시작 최소연령은 6주이고, 최대 연령은 14주 6일까지입니다. 최소 접종 간격은 4주이고, 마지막 접종 가능 연령은 8개월 0일입니다. 이와 같이, 접종 시작 및 완료 나이를 제한하는 이유는 로타바이러스 백신 접종 후 장겹침증 발생의 상대 위험도는 첫 번째 접종을 받은 나이가 많을수록 증가하였다는 연구 결과 때문입니다.

• 생후 2개월에 로타바이러스 백신 1차 접종 이후 2차 접종을 하지 않은 생후 6개월 영아입니다. 이후 접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접종 간 8주 간격을 지키는 것을 추천하나, 지연된 경우 최대 생후 8개월 되는 첫째날까지*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로타릭스(RV1) 2회, 로타텍(RV5) 3회(최소 4주 접종간격 고려)

• 생후 2개월에 로타바이러스 백신 1차 접종 이후 접종을 못한 채 생후 10개월이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접종해도 되나요?

- 아니요. 로타바이러스 백신 접종은 생후 8개월 0일까지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한 연령에서의 접종 후 장중첩증(장겹침증) 발생의 상대 위험도가 증가하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접종하지 않습니다.

• 로타바이러스 백신 접종력이 없는 생후 15개월 영아인데, 접종 가능한가요

- 생후 15주 0일부터는 1차 접종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백신 모두 1차 접종을 시작할 수 있는 최대 연령은 생후 14주 6일입니다.

• 생후 15주 이상인 아이에게 우발적으로 로타바이러스 백신 1차를 접종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생후 15주 0일부터는 1차 접종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발적으로 생후 14주 6일이 지나서 로타바이러스 백신 1차 접종을 시행했다면 일상적으로 권장되는 간격으로 나머지 접종을 시행합니다. 총 접종 횟수를 완료하지 못하더라도 생후 8개월 0일 이후에는 접종해서는 안 됩니다.
※ 두 가지 백신 1차 접종 가능 최대 연령 : 생후 14주 6일
※ 로타릭스는 2회, 로타텍은 3회 접종 필요

• 로타바이러스 1차 접종은 로타릭스(RV1)로 접종하였습니다. 2차 접종은 다른 백신으로 해도 되나요?

- 아니요. 동일한 백신으로 접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통 중인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1가와 5가 두 종류입니다. 이 두 백신 간의 교차접종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전에 사용한 백신 종류를 전혀 알 수 없거나 백신 공급의 중단 등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제품으로 접종을 완료하도록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교차접종을 해야 한다면 5가 백신이 한번이라도 사용 되었거나 이전에 접종한 백신을 알 수 없을 경우는 총 접종 횟수가 3회가 되도록 접종합니다.

• **로타바이러스 백신 1차 접종을 로타릭스(RV1)로 접종한 영아에게 2차 접종 시 로타텍(RV5)으로 교차접종을 한 경우 재접종이 필요한가요?**

- 아니요. 두 가지 로타바이러스 백신간 교차접종은 안전성, 면역원성, 효과 등에 관한 연구 자료가 제한적이므로 동일 제조사의 백신으로 접종해야 합니다.

우발적인 교차접종은 접종력을 인정하여 재접종은 필요하지 않으며, 3차는 가급적 직전 차수 접종에 사용한 로타텍(RV5)으로 예방접종을 완료합니다(총 접종 횟수가 3회가 되도록 함).

•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다른 백신과 동시에 접종할 수 있나요? 동시접종이 가능한가요?**

- 네,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DTaP, Hib, IPV, B형간염, 폐렴구균 백신과 동시접종이 가능합니다. 인플루엔자 백신과의 동시접종은 연구되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불활성화 백신과 약독화 생백신의 동시접종이 가능하며 특별히 지켜야 할 접종 간격이 없습니다.

• **미숙아가 퇴원하여 BCG 접종하려고 하는데, 로타바이러스 백신과 동시에 접종할 수 있나요?**

- 네, 동시접종 가능합니다.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경구용 생백신으로 비경구용 생백신(MMR, MMRV, 수두, 대상포진, 황열, 일본뇌염 생백신, BCG) 및 인플루엔자 생백신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상호 간의 접종시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 **백신 복용 시 혹은 복용 후 토하거나 뱉어도 재접종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효과가 있나요?**

- 백신 복용 시 또는 복용 후 토하였을 때 다시 한 번 더 접종하는 것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에 대해서는 연구된 것이 없습니다. 각 백신은 구토를 고려한 용량으로 제조되어 있어 백신을 토하거나 뱉어내도 재접종하지 않으며 권장되는 일정에 따라 남아있는 다음 접종을 모두 실시하도록 합니다.

• **미숙아에게도 백신을 접종할 수 있나요? 가족 중 면역저하자나 임신부가 있는 경우 백신을 접종해도 되나요?**

- 백신을 접종받을 영아가 미숙아로 출생한 경우나 가족 중 면역저하자 또는 임신부가 있는 경우에도 백신接种의 금기사항은 아니며 접종 가능합니다.

(8)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 생백신인 MMR과 수두 백신(또는 일본뇌염 생백신)의 접종 간격은 얼마나 뒤야 하나요?

- 주사용 혹은 비강 내 투여 생백신은 서로 동시에 접종하지 않는 경우 4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접종하여야 합니다. 예방접종의 최소 접종 간격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면역이 잘 형성되지 않으며, 따라서 생백신의 접종 간격이 4주 미만인 경우 두 번째 투여된 백신은 인정되지 않으며 마지막 생백신 접종일로부터 최소 4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재접종해야 합니다. 다만, 경구용 생백신의 경우 특별히 지켜야 할 접종 간격은 없습니다.

• 홍역이 유행할 경우 7개월 된 아이에게 홍역 예방접종을 해도 괜찮은가요?

- 주위에 홍역 환자가 있거나 홍역 유행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또는 홍역 환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많은 경우 생후 12개월 이전이라도 생후 6개월 경과 시 접종 가능합니다.

• 생후 12~15개월에 MMR 백신 1차 접종 후, 홍역이 유행하여 2차 접종을 3세에 실시한 경우 추후 2차 접종을 다시 해야 하나요?

- MMR 2차의 최소 접종 연령은 생후 13개월이며 1차와의 최소 접종 간격은 4주로, 이 경우 2차 접종으로 간주하며 더 이상의 추가접종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 수혈을 받고 2개월 후 MMR 백신을 접종하였는데, 재접종이 필요한가요?

- 예. 면역글로불린 및 혈액제제는 백신의 면역원성을 저해하므로 종류와 양에 따라 접종시기의 지연이 필요하며, 혈액제제의 종류와 투여량에 따라 투여 3~11개월 후 재접종을 실시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맞은 MMR 백신은 접종 횟수로 포함하지 않으며 재접종이 필요합니다. 다만 세척적혈구(washed RBCs) 수혈을 받은 경우는 접종간격을 둘 필요가 없어 재접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일본에서 MR 2회 접종을 완료한 9세 아동입니다. 귀국 후 MMR 접종을 다시 하는 것이 좋은가요?

- MR 백신은 유행성이하선염이 제외된 홍역·풍진 백신이므로 유행성이하선염의 예방을 위해 MMR 백신의 2회 접종을 완료합니다.

• 어렸을 때 MMR 2회 접종을 완료한 가임기 여성이 풍진 항체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 재접종이 필요한가요?

- 과거 1~2회 접종했으나 풍진에 대한 항체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 MMR 백신을 1회 더 접종합니다. 단, 총 접종 횟수는 3회를 넘지 않도록 하며, 이후 추가적인 풍진 항체검사를 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9) 수두

• 자연한 수두 접종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과거에 수두를 앓은 적이 없고 접종력이 없는 12세 이하 아동은 1회 접종이 필요하고, 비용상환 가능합니다.

※ 과거 수두병력 및 접종력이 없는 13세 이상 아동은 4~8주 간격으로 2회 접종 필요

• 1세 생일이 되기 2일 전에 수두 백신 접종 가능한가요?

- 아니요. 수두 백신은 최소 접종연령의 단축인정기간(grace period)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세 생일 되기 전에 한 접종은 비용지원 불가합니다.

• 수두 백신을 접종받은 소아가 접종 4일 전 수두 환자와 접촉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예방접종이 효과가 있을까요?

- 수두에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 수두 환자에 노출된 경우, 노출 후 3일(혹은 5일) 이내 수두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 기간 내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70~100%에서 수두 발생을 예방할 수 있거나 수두가 발생하더라도 중증도가 낮았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 대상포진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수두 접종이 필요한가요?

- 아니요. 대상포진을 앓는다는 것은 과거에 수두를 앓았다는 증거이므로 수두 예방접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수두와 MMR 백신 접종 시 지켜야 할 접종 간격이 있나요?

- MMR 백신과 수두 백신은 동시접종이 가능하나, 만일 두 백신을 같은 날 접종하지 않으면 최소 4주 이상의 접종 간격을 유지하여 접종합니다.

• 수두 백신이 수두의 원인이 될 수 있나요?

- 수두 백신은 약독화된 생백신입니다. 백신 접종 후 3주 이내에 접종자의 4~6%에서 수두와 비슷한 발진이 나타날 수 있는데, 평균 5개의 발진(수포가 아닌 반구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심한 수두에 걸리는 것보다 안전합니다.

• 수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나요?

- 예. 하지만 이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백신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된 사례를 보면 백신 바이러스보다는 야생주 바이러스가 원인이었던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가족 내 접촉을 통한 백신 바이러스 전파가 드물게 보고되었는데, 백신 접종자에서 접종 후 발진이 나타난 경우였습니다.

• **수두 예방접종이 대상포진을 일으킬 수 있나요?**

- 예. 하지만 수두에 걸린 경우보다 드물며 경하게 앓게 되고, 중한 합병증은 생기지 않습니다.

(10) A형간염

• **17개월 아이입니다. 아이 예방접종일정표에 보면 A형간염을 3월, 9월에 접종하도록 되어 있는데 병원에서는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정말 접종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리고 A형간염 접종은 추후 몇 살에 접종하나요?**

- A형간염 백신은 계절에 따라 접종하는 것은 아니며, 생후 12개월 이후부터 접종할 수 있는데 권장하는 접종 연령은 생후 12~23개월입니다. 모두 2회 접종을 하는데 2차 접종은 제품에 따라 6~18개월 후에 접종합니다.

• **3세 소아인데 1차 A형간염 백신을 2년 전에 접종하고 2차 접종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새로 접종하나요?**

- 접종시기를 놓쳤다 하더라도 정한 횟수(2회)만 접종하게 되면 충분한 면역력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접종할 필요는 없으며, 가능한 빨리 2차 접종을 실시하면 됩니다.

• **A형간염 백신의 2차 접종을 실수로 3개월 만에 했습니다. 보호자에게 2차 효과가 없을 수 있으니 3개월 후에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3개월 간격으로 3번 접종하는 것이 괜찮을까요?**

- A형간염 백신의 2차 접종 시기는 백신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모두 1차 접종 6개월 이후 실시합니다. 따라서 확실한 면역을 얻기 위해 잘못 접종한 날로부터 최소접종간격인 6개월을 두고 재접종을 해야 합니다.

• **A형간염 백신의 접종 전이나 후에 항체검사를 해야 하나요?**

- 백신 접종 전 항체검사의 실시 여부는 백신 가격과 검사 비용 간의 경제적 요인 및 인구의 항체 보유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만약 백신 접종력이나 A형간염의 이환력이 없어 백신을 접종하기로 결정하였다면, 40세 미만에서는 검사 없이 백신을 접종하고, 40세 이상이라면 백신 투여 전 검사를 시행하여 항체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접종할 것을 권장합니다.

• **중국에서 A형간염 약독화 생백신으로 1차 접종했는데, 2차 접종은 국내 유통 중인 불활성화 백신으로 접종해도 되나요?**

- 아니요. WHO 자료에 따르면 A형간염 약독화 생백신은 1회 접종이 권고되므로 중국에서 약독화 생백신으로 1회 접종했다면 A형간염 접종 완료자로 판단합니다.

• **보령 A형간염 약전에는 허가연령이 12개월~2세 미만이라고 나와있는데 2세 이상의 소아에게 이 백신으로 1차 접종해도 되나요?**

- 아니요. 2세 이상 소아에게 보령 A형간염 백신프리필드시린지주로 1차 접종하면 비용상환 불가능합니다. 2차 접종은 사업대상 범위 내에서 실시기준 및 방법을 준수한 접종은 비용지원 가능합니다.

• **보령바이오파마로 1차 접종 후, 24개월 이상 아이의 2차 접종은 타제품 백신으로 교차접종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A형간염 백신은 다른 제조사의 백신과 교차접종 가능합니다.

(11) 일본뇌염

• **일본뇌염 접종이 지연되어 2세에 1차 접종을 받았습니다. 지금 3세인데 앞으로 접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백신 종류에 따라 일정이 달라집니다. 생백신인 경우 지금 바로 2차 접종을 시행하여 완료합니다. 불활성화 백신인 경우 바로 2차 접종을 시행하고 6개월 후에 3차 접종을 시행합니다. 3차 접종이 4세 이후에 시행되었다면 6세 추가접종 없이 12세에 4차 접종 후 종료합니다.

• **42개월 된 아이로 2년 전 불활성화 백신을 2차까지 받았다면 향후 접종은 어떻게 하나요?**

- 지금 바로 3차 접종을 시행하고, 6세, 12세에 각각 1회 추가접종을 시행합니다.

• **성인이 될 때까지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불활성화 백신의 경우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 11개월 후 3차 접종을 합니다. 생백신의 경우 키메라 백신으로 1회 접종합니다.

• **약독화 생백신 1차 접종 후 11개월에 2차 접종을 하였습니다. 재접종이 필요한가요?**

- 아니요. 약독화 생백신 1차 접종 후 최소 4주 이상의 간격으로 2차 접종을 실시한 경우 재접종이 불필요합니다.

• **약독화 생백신 1차를 11개월에 접종했다면, 생후 12개월에 재접종이 필요한가요?**

- 아니요. WHO에서 약독화 생백신은 8개월부터, 키메라 바이러스 백신은 9개월부터 접종하도록 권장하며, 우리나라에선 12개월에 접종을 추진하지만 9개월 이후 접종되었다면 다시 접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 10세 이후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최소 접종 간격을 지키지 않고 접종한 경우 재접종이 필요한가요?

- 아니요. 10세 이후 4·5차 접종 시, 최소 접종 간격을 준수하지 않은 접종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더라도 재접종하지 않습니다.

• 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 간 교차접종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최근에 발표된 두 약독화 생백신의 교차접종 연구 결과에 따라 교차접종이 가능하므로, 2차 접종을 국가 지원백신으로 교차 접종하면 비용지원 가능합니다.(단, 2차 접종을 국가 미지원 백신으로 접종 시 비용지원 불가)

※ 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 간 교차접종 시 비용상환 가능(2023. 8. 7.~)

• 일본뇌염 1차를 약독화 생백신으로 접종하고 2차 시기에 불활성화 백신으로 접종해도 되나요?

- 아니요. 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과 불활성화 백신 간 교차접종 효과 등에 대한 자료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으로 1차 접종했다면, 2차 접종도 약독화 생백신으로 접종을 완료할 것을 권고합니다. 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과 불활성화 백신 간 교차접종은 접종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며(불활성화 백신 1차란에 전산등록 필요) 비용상환도 제외됩니다. 다만, 첫 교차접종 이후 접종은 두 가지 백신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접종을 완료하도록 하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거 접종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세 이상에서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접종 시 0.7ml 백신이 없어 0.4ml 백신 2vial을 사용하여 접종해도 되나요?

- 아니요. 식약처 사용허가 권장기준에 따라 3세 이상은 반드시 0.7ml 백신을 사용하여 권장 용량(0.5ml)을 접종합니다. 이에, 0.4ml 백신으로 접종 시 비용상환 불가합니다.

※ 0.4ml로 접종했다면 0.7ml로 빠른 시일 내에 재접종 필요(비용지원 가능)

•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 접종을 지연하여 9세에 접종한 아동은 5차 접종을 해야 하나요?

- 네.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라 5차 접종은 필요합니다. 다만, 4차와 5차 접종의 최소접종 간격(5년)을 고려하여 접종해야 하므로 5차 시기 연령이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비용 지원은 제외됩니다.

•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3차 접종을 지연하여 4세에 접종한 아동이 6세에 4차 접종하면 해당 접종력이 인정되나요? 이후 접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아니요. 3차 접종을 4~9세에 실시했다면 다음은 12세에 접종해야 합니다. 이른접종은 유효하지 않으므로 비용상환 불가하며, 재접종은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라 12세에 접종 시 비용상환 가능합니다.

(12)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결혼한 40대 주부가 HPV 백신 예방접종을 받으면 자궁경부암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나요?

- 현재 허가된 HPV 백신의 접종 상한연령은 4가 백신 26세, 9가 백신 여성 45세, 남성 26세이며, 각 백신의 허가 연령에 맞춰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 지난번 맞은 HPV 백신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HPV 백신 접종을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나요?

- HPV 백신은 가능한 동일한 백신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앞서 접종한 백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어느 한쪽의 HPV 백신을 택하여 남은 횟수만큼 추가접종을 하여 완료합니다.

• 개인적 사정으로 HPV 백신 접종일정을 서둘러야 하는데 접종 횟수와 간격을 어떻게 계획해야 하나요?

- 첫 접종을 시작한 나이를 기준으로 접종 횟수가 결정됩니다. 15세 미만 첫 접종을 받은 경우 6~12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며, 15세 이상에 첫 접종을 받았으면 총 3회 접종합니다. 2회 접종 시 1차와 2차는 최소 5개월 간격을 두어야 하며, 3회를 접종할 때 1차와 2차는 최소 4주, 2차와 3차는 최소 12주, 1차와 3차는 최소 5개월의 간격을 두고 접종하여야 합니다.

• HPV 1차 예방접종을 받고난 뒤 임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태아에게 영향은 없을까요? 2차 접종을 받아야 할까요?

- HPV 백신 임상시험 시 임신부는 접종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임상시험에 참여한 일부 접종자에서 임신이 발견되었으며, 이들의 임신 결과를 평가하였을 때 기형을 비롯한 태아 안전성은 접종군과 대조군 사이에 의미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HPV 백신 접종과 관련된 태아 안전성이 충분히 평가된 것이 아니므로 임신부에게는 HPV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며, HPV 백신 접종은 임신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연기되어야 합니다.

• 11세 여아에게 3개월 간격으로 HPV 4가 접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접종 안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HPV 4가 백신은 14세까지 1차 접종 후 최소 5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2차 접종으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 1차와 2차 접종 간 최소접종 간격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총 3회의 접종이 필요합니다. 최소 접종간격을 미준수한 2차 접종은 비용지원이 되지 않으며, 3차 접종은 2차 접종과 최소 12주 이상, 1차 접종과는 5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접종합니다.

• HPV 1차 접종 후 18개월이 경과했습니다. 처음부터 재접종해야 하나요?

- 아니요. 접종이 지연되었더라도 처음부터 접종하지 않고 지연된 차수부터 접종하여 완료합니다. 초회 접종 연령에 따라 2차 또는 3차 접종을 완료합니다.

• 12세에 HPV 1차 접종을 하고 15세에 2차 접종 시 재접종이 필요한가요?

- 아니요. 접종이 지연되었더라도 처음부터 접종하지 않고 지연된 차수부터 접종하여 접종을 완료합니다. 이 경우 총 2회의 접종으로 완료합니다.

(13) 인플루엔자

• 인플루엔자는 어떤 질병인가요?

- 인플루엔자는 흔히 독감이라고도 불리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인플루엔자의 임상 증상은 경증에서 중증까지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입원이 필요하거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성인, 임신부, 어린이 등은 폐렴 등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입원할 위험이 높습니다.

• 인플루엔자는 어떻게 감염되나요?

- 인플루엔자는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사람 간 전파가 됩니다. 기침/재채기에 의해 다른 사람이나 물체에 묻은 비말을 만진 손을 씻지 않고 눈, 입 또는 코를 만지는 경우에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 인플루엔자 감염 시 증상은 무엇인가요?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4일(평균 2일) 후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인플루엔자는 발열, 기침, 두통, 근육통, 콧물,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소아는 오심,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발열과 같은 전신증상은 일반적으로 3~4일간 지속되지만, 기침과 인후통 등은 해열된 후에도 며칠간 더 지속될 수 있습니다.

•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발열, 인후통 등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진료나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최신 방역 수칙을 참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65세 이상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고열 등의 인플루엔자 증상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의료진의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인플루엔자로 진단받은 경우 등교나 출근을 할 수 있나요?

- 인플루엔자로 진단받은 경우는 해열제 없이 정상체온 회복 후 24시간이 경과하여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등교, 등원, 출근 등을 하지 않고 집에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단, 해열제를 투약한 경우 마지막 해열제 투약 시점부터 48시간이 경과해야 합니다.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가정 내의 65세 이상 고령자 등 고위험군과의 접촉은 피해야 하며, 병원 방문 등의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외출을 삼가야 합니다. 다시 등교나 출근을 하기 위해서는 해열제가 없이도 해열이 된 후 최소 24시간 이상 경과를 관찰해야 합니다.

• A형 인플루엔자와 B형 인플루엔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핵산 유형에 따라 크게 A형과 B형으로 나뉘는데 A형과 B형 모두 중증도 내지 중증 경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모든 연령에게 감염을 야기합니다. A형 바이러스는 표면 항원에 따라 다양한 아형이 유행합니다.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주로 소아에서 감염을 일으킵니다.

• 인플루엔자 유행은 언제 시작하고 끝나나요?

-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11~4월 사이 인플루엔자가 유행하지만,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는 매년 다르기 때문에 시작과 끝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매주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을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플루엔자는 어떻게 예방하나요?

- 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또한, 호흡기 감염병 증상자와 접촉을 피하고, 올바른 손 씻기와 손으로 눈, 코 또는 입을 만지지 않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시기에는 사람이 많은 곳은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독감을 일으킬 수도 있나요?

- 예방접종 사업 대상 백신인 인플루엔자 불활성화 백신은 바이러스 성분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성이 없습니다.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얼마나 효과가 있나요?

- 접종 후 약 2주가 지나면 방어 항체가 형성되는데 건강한 성인은 접종으로 70~90% 예방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효과는 백신과 유행 바이러스의 일치 정도, 개인 면역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백신은 감염 예방 이외에도 중증질환과 사망 위험을 낮추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효과가 사람마다 서로 다른가요?

- 연령대와 임신 여부에 따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다양합니다. 65세 이상 성인의 경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로 인한 심각한 질병, 입원, 사망의 위험을 현저히 낮춥니다. 특히 50~60%의 입원 예방효과와 80% 수준의 사망 예방효과가 알려져 있어 중증질환 및 사망을 낮추기 위해 예방접종은 매우 중요합니다. 18세 미만 소아

청소년의 경우 62~66%의 감염예방효과가 있으며 중증질환을 일으키는 심각한 인플루엔자 감염은 75% 수준으로 예방합니다. 임신부의 경우 40% 수준의 입원 예방효과와 함께, 태아에게 항체를 전달하여 임신기간과 출산 후 영아에게도 첫 몇 개월간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0~12월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2회 접종이 필요한 소아의 경우 적절한 면역획득을 위해 9월에 접종을 시작해 인플루엔자 유행 전 2차 접종을 완료하도록 합니다. 12월 이후라도 미접종자의 경우 유행 기간 내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는 보통 11월에서 다음 해 4월이고, 예방접종 후 방어항체 형성까지 2주 정도 걸리며, 면역 효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 6개월가량(3~12개월) 지속됩니다. 따라서, 너무 이른 시기에 접종을 하게 되면 다음 해 3~5월경에 항체가 방어 수준보다 낮아지면서 감염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늦게 접종을 하면 인플루엔자 방어항체가 형성되기 전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매년 필요한가요?

- 인플루엔자 백신의 면역력은 접종한 다음 해에 감소하며, 유행 주 항원성의 변화를 맞추기 위하여 대부분의 경우 해마다 유행이 예측되는 균주를 포함한 인플루엔자 백신을 매년 접종하도록 권장합니다.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했는데 인플루엔자에 걸릴 수 있나요?

- 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약 2주가량 경과되면 방어항체가 형성되나 방어항체가 형성되기 전이라면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접종한 백신의 바이러스와 당해 유행 바이러스의 종류가 다르면 백신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백신을 접종받는 사람의 연령이나 기저질환, 건강 상태에 따라서도 예방접종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으나 인플루엔자로 인한 입원과 사망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므로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합니다.

•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른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완료한 상태에서 추가로 접종해도 되나요?

- 아니요. 인플루엔자 백신 예방접종력이 없거나 1회만 접종한 9세 미만의 소아가 아니라면 매 절기 1회만 접종합니다. 접종 완료 후 추가접종의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한 자료가 없어 허가 사항에 준하여 접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이번 절기에 인플루엔자로 진단받고 치료받아 완치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예방접종을 해야 하나요?

- 예. 인플루엔자 백신은 3가지 인플루엔자 백신 주를 포함하는데, 1가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다른 유형에 대한 면역력이 획득되지 않으며,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에 다른 유형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백신에 포함된 다른 유형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접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생후 6개월 이전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할 수 없나요?

- 예. 생후 6개월 미만 연령은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의 유효성, 안전성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얻지 않은 대상입니다. 따라서 생후 6개월 미만 영아 보호를 위해 같이 지내는 가족 및 임신부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임신기간 동안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해도 괜찮은가요?

- 예. 적극 권고합니다. 임신 중에 있는 사람은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불활성화 백신 접종을 권장 하며 출산 후 모유 수유 중에도 접종 가능합니다. 임신부가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경우 일반인에 비해 합병증 위험이 크므로 이를 예방하고, 또한 임신 중 접종으로 항체가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로 전달되어 예방접종을 맞을 수 없는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도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임신부 예방 접종을 적극 권고합니다.

• 26개월 된 아기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였는데 1회만 접종하였습니다. 올해 두 번 접종을 해야 하나요?

-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첫해에 1회만 접종받은 경우 그다음 해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실시 해야 합니다. 4주 이상 간격을 유지하여 2회 접종을 권고합니다.

•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접종을 같은 날 시행해도 되나요?

- 예. 만일 동시 접종을 하는 경우 접종 부위를 달리하여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 임신부 인플루엔자 대상자 여부를 서류로만 확인하면 되나요? 해당 서류 사본 등을 보관해야 하나요? 보관해야 한다면 몇 년간 보관해야 하나요?

- 산모 수첩, 임신 확인서, 임신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임신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 하고, 예방접종력 입력 시 예방접종 당시 임신주수 및 출산예정일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서류는 별도로 보관할 필요 없습니다.

• 65~69세, 70~74세 등 어르신 사업기간 예외인정 접종 중 각 연령대별 사업 시작 시기 전에 접종한 경우 비용상환이 가능한가요?

- 예. 단, 연령대별 사업기간 준수 및 예외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접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접종해도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 사업 개시일 이전에 접종한 건은 비용상환이 불가합니다. 접종대상자의 연령 및 접종 횟수에 따른 사업 시작일 이후에 접종된 건부터 비용상환이 가능합니다. 단, 접종 내역의 전산 등록은 가능합니다.

• 65세 이상 성인이 고혈압 등 타 질환으로 진료와 예방접종이 동일한 날에 이루어지더라도 시행비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 예. 진료비와 무관하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행한 경우 시행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 임신부가 정기검진 등의 진료와 예방접종이 동일한 날에 이루어지더라도 시행비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 예. 진료비와 무관하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행한 경우 시행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 사업 기간 내에 생후 6개월이 되는 소아의 경우 국가예방접종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어린이 사업 대상은 당해 2월 말 기준 생후 6개월 도래자까지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 받는 경우 최소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 기간이 4월 30일까지로 지정된 이유는 잦은 병치레로 예정된 일정에 접종하기 어려운 상황이 흔하게 발생하여 2월 말 기준 6개월 도래자의 접종을 고려하였기 때문입니다.

국내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과거 5년간 5월에 유행주의보 해제), 접종 후 항체 형성 시기(2주~4주), 2회 접종 시 간격(4주) 등을 고려하여 사업 기간 내 완전 접종을 목표로 어린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생후 24개월 어린이가 3세 이상으로 허가된 3가 백신을 접종하였을 때 비용상환이 가능한가요?

- 아니요. 백신별로 허가연령이 다르므로 허가연령을 준수하여 접종해야 합니다. 2025-2026 절기 3세 이상에서 사용 가능한 백신은 ①일양약품: 일양플루백신프리필드시린지주 ②한국백신: 코박스인플루PF주이며, 생후 6~35개월 대상자에게 해당 백신을 접종했을 경우에는 비용상환이 불가합니다.

• **현재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이 추가로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참여를 신청하려면 통장사본을 새로 업로드해야 하나요? 또, 이 경우 계약서를 사업별로 각각 작성해야 하나요?**

- 예. 기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참여하여 위탁계약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업에 참여할 경우 관련 사업의 교육 과정을 이수 후 위탁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계좌로 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더라도 반드시 통장 사본 재업로드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의 경우 한 번만 작성합니다. 단,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별 교육을 추가 이수 후, 해당 사업별 탭에서 교육이수번호 및 사업 필요 서류를 등록한 뒤 참여 확인증만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 **65세 이상의 경우 고혈압 등 타 질환으로 진료와 예방접종이 동일한 날에 이루어지더라도 시행비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 예. 그렇습니다. 진료비와 무관하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행한 경우 시행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신부가 정기검진 등으로 진료가 있는 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동시에 이루어지더라도 시행비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 예. 그렇습니다. 진료비와 무관하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행한 경우 시행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4) 장티푸스

• **장티푸스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 접종을 원하는 경우 권장해야 하나요?**

- 접종은 가능하나, 다만 금기사항 및 주의사항,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접종해야 합니다.

• **과거에 장티푸스를 앓았는데 예방접종이 필요한가요?**

- 장티푸스를 앓았던 경우에도 재감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위험군 여부와 감염 위험성 등을 따져 선별적으로 시행하도록 권장합니다.

• **장티푸스에 걸린 환자의 가족입니다. 예방접종을 해야 하나요?**

- 장티푸스균을 1년 이상 보균하면서 소변·대변을 통해 계속 균을 배설하는 사람을 만성보균자라고 하며,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2차 감염을 일으킬 위험성이 높지 않습니다. 다만, 그 가족이나 보균자와 밀접한 접촉을 하는 사람인 경우 예방접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5) 신증후군출혈열

• 신증후군출혈열 백신을 11세 아동이 접종을 원할 경우 접종이 가능한가요?

- 신증후군출혈열 백신은 19세 이상 고위험군 성인에게 허가되었고, 소아에서 시행한 임상시험에서는 6세까지 접종한 바 있으나 자료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에서는 소아연령에서의 발생 빈도가 낮고 일반적으로 증상도 비교적 경미하므로 접종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 신증후군출혈열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동시에 가능한가요?

- 예. 두 가지 이상의 불활성화 백신이나 불활성화 백신과 약독화 생백신은 동시접종이 가능하므로 신증후군출혈열과 인플루엔자 백신 간 동시접종은 가능합니다.

(16) 코로나19

• 확진 후 2개월 만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경우 유효접종으로 인정되나요?

- 확진일과 관계없이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접종하였다면 유효접종으로 인정됩니다. 단, 확진자의 경우 자연면역을 고려하여 확진일로부터 3개월 이후로 접종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마지막 접종이 9월 1일인 경우 마지막 접종일 이후 90일이 되는 날인 11월 30일부터 접종 가능

•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도 맞지 않은 65세인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도 되나요?

- 코로나19 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및 승인 사항에 따라 12세 이상이라면 과거 접종력에 상관없이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 과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백신으로 접종이 필요할까요?

- 신규 백신은 유행하는 변이주에 맞게 새롭게 개발된 백신으로 이전 접종력에 상관없이 신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필요합니다. 65세 이상 성인과 면역저하자 등의 고위험군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시 사망 및 중증 위험이 높고, 면역지속기간이 3~6개월 정도로 짧기때문에 매년 신규 백신 접종을 권장합니다.

•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후 다른 백신 접종 시 고려해야 하는 간격이 있나요?

- 인플루엔자 백신과의 동시 접종으로 인한 면역 간섭과 안전성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인플루엔자 백신과 코로나19 백신은 동시접종이 가능합니다. 인플루엔자 백신 외 다른 국가예방접종 백신의 경우에도 권장되는 접종 간격에 제한을 둘 근거는 없으며 동시접종이 가능합니다.

• 건강한 30대의 경우 2025-2026절기 신규 백신 접종이 가능한가요?

- 예. 단, 국가에서 접종비용을 지원하는 접종권고 대상이 아니므로 유료접종을 해야하며 유료 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 또는 제약사에서 운영하는 콜센터를 확인 후 방문 바랍니다.

•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할 수 없나요?

- 모든 알레르기 반응이 예방접종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며, 백신이나 주사행위, 백신의 구성 성분과 관련이 없는 알레르기 반응은 예방접종의 금기사항이 아니므로 다음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없는 경우 접종 가능합니다. 단, 이전에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접종 후 30분간 관찰이 필요합니다.

- (화이자, 모더나 백신) polyethylene glycol(PEG) 또는 관련 성분(molecules)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금기대상
 - 트리스(히드록시메틸) 아미노메탄, 트리스 염산염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모더나 백신 접종 금기대상
 - 트로메타민(트리스(히드록시메틸)와 동일성분), 트리스 염산염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화이자 백신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 심근염·심낭염을 앓았던 경우에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가능한가요?

-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연관성이 없는 심근염·심낭염의 회복(①완전한 증상 소실, ②심장회복의 근거에 대한 검사 정상) 이후로는 접종이 가능하며,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와 상의 후 접종 바랍니다.

• 아세트아미노펜 부작용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열이 있는 경우 다른 해열 진통제를 먹어도 되나요?

- 예.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부작용 완화를 위해 파라세타몰(Paracetamol) 또는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 계열의 진통제 또는 해열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같은 소염제가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정도를 낮출 수 있다는 이론적인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진통소염제 효과에 대한 연구 및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 이전에 필러를 시술한 적이 있는 경우에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가능한가요?

- 예. 다만, 필러 시술자에서 mRNA백신(화이자, 모더나) 접종 후 얼굴 부종이 발생할 수 있으며, mRNA백신 접종 후 얼굴부종이 발생한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규 위탁계약을 위한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수료증 번호는 어디에 입력해야 하나요?

- 코로나19예방접종등록시스템 → 기관관리 → 계약관리 → 계약신청관리 탭에서 ‘코로나19’란에 교육수료정보를 입력하고 검증 버튼을 누른 후 검증이 완료되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수료증 번호 입력을 완료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참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기존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참여하고 있는 위탁의료기관은 ①기준*에 부합하고 ②코로나19 접종관련 교육 이수 및 ③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관할 보건소의 현장점검 및 계약 승인을 거쳐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 위탁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기본교육 이수 후 매 2년(종료 후 12개월의 유예기간 부여) 마다 심화교육 이수 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백신 보관관리, 접종 시행 능력, 감염관리 수준, 접종 및 이상반응 모니터링 공간 확보 등

신규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에서는 국가예방접종사업 절차에 따른 기본교육과 심화교육 이수 후 기존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참여방법과 동일하게 신청합니다.

• 전산으로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계약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등록 시스템 로그인 시 이미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있는데, 기관정보에도 기관인증서를 등록해야 하나요?

- 예. 코로나19예방접종등록시스템 로그인은 개인인증서로 하고, 이후 사업 참여 시에는 의료 기관정보에 개인인증서가 아닌 기관인증서를 등록해야만 사업 참여 서명이 가능합니다.

• 현재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이 추가로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를 신청하려면 통장 사본을 새로 업로드 해야 하나요? 또, 계약서를 사업별로 각각 작성해야 하나요?

- 예. 기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참여하여 위탁계약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업에 참여할 경우 관련 사업의 교육 과정을 이수 후 위탁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계좌로 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더라도 반드시 통장 사본 재업로드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의 경우 한 번만 작성합니다. 단,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별 교육의 추가 이수 후, 해당 사업별 탭에서 교육이수번호 및 사업 필요 서류를 등록한 뒤 참여 확인증만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말소자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가능한가요?

- 예. 보건소에서 임시관리번호를 발급받은 후 접종이 가능합니다.

• **접종 당일 예진 시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접종 연기를 권하였으나 본인(또는 보호자)이 접종을 강하게 원하는 경우 접종해야 하나요?**

- 아니요. 본인(또는 보호자)이 접종을 희망하더라도 접종 당일 예진의사가 예진 시 접종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접종이 제외됩니다. 이 경우, 예진 시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제외되었다면 정당한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의식불명, 혼탁, 혼수상태, 전신쇠약, 37.5℃ 이상의 발열 등 급성병증상태, 임종 임박 등

•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후,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예방접종증명서를 분실한 경우에도 시스템 등록이 가능한가요?**

- 아니요. 해외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접종력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코로나19) 보건소 방문 외에도 e-mail 등 온라인 신청을 통해 해외 접종력 등록이 가능한가요?**

- 아니요. 정확한 접종력 확인과 등록을 위해 반드시 보건소에 방문하여 접종 증명서류 등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의식이 없는 입원·입소자인데 법정대리인도 없는 경우 예방접종이 가능한가요?**

- 아니요. 접종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접종할 수 없습니다. 단, 법정대리인(「아동복지법」 및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보호자' 정의 준용)이 있는 경우 예진표를 활용하여 동의서를 구득합니다.

※ 본인이 아닌 경우 동의 내용에 대해 반드시 예진표에 해당 사실 별도 기록

• **감염취약시설 접종 대상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불가피하게 예진표 직접 작성이 어려울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인해 본인의 동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입원환자 및 입소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에게 예진표를 활용하여 동의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접종대상자 본인이 예진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동의 내용에 대해 반드시 예진표에 해당 사실을 별도 기록해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시설에 방문하여 예진표 작성을 할 수 없는 경우 전자예진표, 사진, 팩스 등의 방법*으로 예진표를 받아 접종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예진표는 현장에서 작성한 예진표에 부착하여 함께 보관

•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으로 방문접종이 가능한가요?**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동불편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을 때는 보건소의 관리하에 안전한 예방접종 환경을 확보한 후 방문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등에 준하는 거동불편자로 독립적으로 의료기관 왕래가 불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시면 됩니다.

•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인데 증빙서류 없이도 예방접종이 가능한가요?

-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른 면역저하자 기준에 준하는 면역저하자로서 접종이 필요하다고 의사 소견으로 판단되는 경우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면역저하자 접종 후 의료기관에서 접종등록 시 면역저하자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입력

(17) 엡폭스

• 해외여행 예정입니다. 엡폭스 예방접종이 가능한가요?

- 현재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접종을 권고하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바이러스 노출 가능성이 높은 18세 이상 성인에서 고위험군 등을 대상으로 노출 전·후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HIV 감염자도 예방접종이 가능한가요?

- 3세대 백신은 HIV 감염자에게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어 접종이 가능하며, 예방접종 전 의료진과 상의 후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 엡폭스는 임신부에게서 태아·신생아로 감염이 가능한가요?

- 감염된 임신부의 태반을 통해 태아 감염이 가능하며, 분만 중 산모와의 초기 신체적 접촉을 통해 신생아가 감염될 수 있습니다.

• 엡폭스는 어떤 질병인가요?

-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발진성 질환으로 임상 증상은 두창과 유사하나 중증도는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 엡폭스 감염 시 주요 증상은 무엇인가요?

- 발열, 오한, 림프절 부종, 피로, 근육통 및 요통, 두통, 호흡기 증상(인후통, 코막힘, 기침 등)이 나타나는데 초기에는 감기와 유사하기도 하며 대부분 1~4일 후 발진이 나타납니다. 발진은 얼굴, 입, 손, 발, 가슴, 항문생식기 근처 등에서 나타나는데 주로 반점에서 시작하여 구진, 수포(물집), 농포(고름), 가피(딱지)로 진행하며, 초기에는 뾰루지나 물집처럼 보일 수 있으며 통증과 가려움증도 동반됩니다. 이러한 임상증상은 약 2~4주 지속될 수 있습니다.

• 치명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 2022년 이후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발생 중인 서아프리카 계통 엡폭스는 대부분 2~4주 후 자연 치유되며, 치명률은 1% 미만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면역저하자, 8세 미만 소아, 습진 병력, 임신 및 모유 수유자에서 중증도가 높을 수 있으며, 풍토병 국가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중앙아프리카 계통 엡폭스의 치명률은 약 10%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 전파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 엠폭스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감염된 동물(쥐, 다람쥐, 프레리도그와 같은 설치류, 원숭이 등) 또는 오염된 물질에 접촉할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감염된 사람·동물의 체액, 피부·점막 병변(발진, 딱지 등)에 직접 접촉한 경우 감염될 수 있으며, 감염된 사람·동물이 사용한 물건, 천(의류, 침구 또는 수건) 및 표면에 접촉할 경우에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염환자의 호흡기 분비물(코, 구강, 인두, 점막, 폐포에 있는 감염비말)에 접촉한 경우에도 감염될 수 있으며, 태반을 통해 감염된 모체에서 태아로 수직감염도 가능합니다. 주로 유증상 감염 환자와의 접촉을 통해 감염되며, 비말전파도 가능하나 호흡기 감염 병에 비해 가능성이 낮고, 바이러스가 포함된 미세 에어로졸에 의한 공기전파는 아직 확인된 바 없습니다.

• 잠복기에 진단검사를 실시하면 엠폭스 감염 확인이 가능한가요?

- 엠폭스는 질병 특성상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아 감염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감염 예방을 위해 개인에게 권고되는 준수사항이 있나요?

- 손씻기 등 기본적인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오염된 손으로 눈, 코, 입 등 점막 부위를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발진이 있는 의심환자와의 직간접 접촉을 피하고, 의심환자가 사용한 물품(침구류, 수건, 의복 등)은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아프리카 고유종인 야생동물 및 반려동물 접촉 시 개인보호구 착용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엠폭스 발생 국가로부터 귀국 후 3주 이내 발열, 오한 그리고 수포성 발진 등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동거인을 포함한 주위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피부병변을 긴 옷 등으로 감싸 노출을 최소화, 침구 및 식기 등 별도 사용, 공간 분리 등). 이러한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해외 여행력 등을 의료진에게 알리는 등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2. 부대사업

(가)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처리

• (지원대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 등) 자녀는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보건소에서 예방접종내역 관리를 위한 임시관리번호 발급 후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 검사가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예방접종등록 화면 접종일에 보라색 박스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인적정보 하단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 체크란은 공란입니다. 사업 대상자가 맞나요? 이후 어떻게 해야하나요?**

- 과거 수첩(쿠폰발급) 대상자 중 예방처치일정 미완료자가 전산시스템으로 전환되지 않았다면 공란으로 보여집니다. 대상자에게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구독 후 관할 보건소가 대상자관리 메뉴에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구독완료 체크 후 대상자승인 처리 시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시스템 관리로 전환되며 다음 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 사업으로는 더 이상 비용지원이 불가능하며, 의료기관에서는 사업관리 종료자도 공란으로 보여짐

• **(지원대상) 2013년 이전 출생아로 과거 쿠폰지원 대상자입니다. 더 이상 지원받을 수 없나요?**

- 올해(2025년) 사업 대상자인 2012년 이후 출생아는 비용지원이 가능합니다. 비용지원을 위해서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구독 후, 피접종자 주소지 보건소에 전환 승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참여방법)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 등록(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 동의서를 구독 후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 예방접종등록 화면에서 사업 참여여부 체크 시 참여할 수 있으며, ①산모의 B형간염 검사결과와 ②면역글로불린 투여내역, ③B형간염 1차 예방접종 내역을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예방접종관리 → 국가예방접종사업 → 등록시스템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메뉴보기 → 등록업무 → 예방접종등록에서 피접종자 정보 입력 및 저장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 체크박스에 체크하고 산모 검사결과지, 면역글로불린 투여 내역, B형간염 1차 예방접종 내역을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완료

• **(참여방법)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만 사업 참여가 가능한가요?**

- 예. 반드시 산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구독해야만 사업 참여 및 비용지원이 가능합니다.

※ 2014년 이전 사업참여자 중 관리가 진행 중인 기존 대상자(쿠폰발급자)는 전산 등록이 불가능하며,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구독 후 전산등록 전환·승인 이후 등록 및 비용상환 가능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구독한 기관에서 5년 간 보관. 단, 관리 중 대상자는 관리 종료 시까지 보관 필요

• **(참여방법) 대상자가 뒤늦게 참여를 원하는 경우 어떻게 등록하나요?**

- 출생 시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뒤늦게 참여를 원하는 경우 당해 사업 대상자라면 중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중간 참여자는 보건소에서만 등록할 수 있으며, 대상자 등록 이후 예방처치 일정 부터 동 사업을 통해 지원됩니다.

- ※ 기신청(지급) 내역은 변경되지 않으며, 1차 접종부터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으로 비용 청구를 원한다면 비용환수 후 1차 접종부터 재등록 필요
- ※ 신규 대상자 신청 시 필요정보 및 서류 : 사업대상자 분만정보(임신기간, 분만방법, 출생체중 등), 해당아 임신 당시 산모의 검사결과지, 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 보건소 전산등록방법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등록 → 인적정보 조회 후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 사업 대상자 체크박스에 체크 후 필수정보 입력 저장

• (참여거부)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 거부 시 어떻게 되나요?

- 산전 진찰기관 또는 분만기관에서 B형간염 양성 산모에게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모가 참여를 거부하거나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에 대한 비용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B형간염 예방접종 비용은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 (참여승인) 의료기관에서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로 신생아를 등록하였습니다. 승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B형간염 대상자관리 메뉴에서 관리 상태가 신규인 아동을 선택하여 산모 검사 결과와 검사 결과지 사본을 확인 후 대상자승인 버튼을 눌러 승인합니다. 대상자 승인 완료 이후 비용상환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관리 → 국가예방접종사업 → 등록시스템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메뉴보기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 대상자관리

• (예방처치) 비활동성 B형간염 바이러스 만성 감염자인 산모입니다. 출산 후 아기에게 면역 글로불린은 바로 투여하였으나 B형간염 1차 예방접종은 6일 후에 접종하였는데 괜찮을까요? 또, 모유 수유 시 아기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나요?

- 산모가 B형간염 만성 감염자인 경우 출산 후 12시간 이내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및 백신의 동시 접종이 원칙이나, 즉각적인 예방에 역할을 하는 것은 면역글로불린이므로 6일 후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아기에게 나쁜 영향은 없습니다. 또한, 아기에게 예방조치를 실시한다면 모유 수유를 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예방처치) 항원·항체검사를 EIA, CIA, ECL 등 권장하는 정량검사법으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 비용상환이 가능한가요?

- 아니요. 사업에서 권장하는 항원·항체 정량검사법으로 실시하지 않거나, 항원 또는 항체검사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시행 시 비용상환이 불가능합니다.

• (예방처치) 기초 1~3회 접종 완료 후 1차 항원·항체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1차 재접종을 실시한 아동입니다. 2차 항원·항체검사를 하지 못하고 2차 재접종을 시행하였는데 비용상환이 가능한가요?

- 아니요. 예방접종 및 항원·항체검사 실시기준에 따른 진행순서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경우 비용지급이 불가능합니다. 1차 재접종 후 반드시 2차 항원·항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후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 및 관리를 바랍니다.

• **(결과등록) 항원·항체검사 결과 항체가 음성인데 양성으로 잘못 입력하여 수정하려고 하는데 결과등록내역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항원·항체검사 결과가 항원(음성)/항체(양성) 또는 항원(양성)/항체(음성)이면 전산등록과 동시에 사업이 종료되어 의료기관 등록화면에서는 접종력만 확인됩니다. 피접종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정보수정 또는 삭제 요청 후 재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결과등록) 산모의 인적정보를 잘못 입력하였습니다. 수정할 수 없나요?**

- 산모의 인적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검사결과지 등을 잘못 입력한 경우 대상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B형간염 민원처리를 통해 수정 가능합니다.

(나) HPV 표준여성청소년 건강상담

• **(협약서) 의료기관에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공급 협약서를 업로드했는데 보건소에서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 건가요?**

- 의료기관에서 계약구비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보건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공급 협약서와 HPV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 확인증을 모두 등록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서) 최초 계약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공급 협약서를 제출하고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백신공급기관이 변경된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백신 공급처 변경 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공급 협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변경 신청에 대한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보건소 승인 이후부터 변경 정보가 반영되니, 승인 지연 시 관할 보건소로 계약 승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계약신청관리 → 변경 협약서 업로드

• **(협약서)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협약서의 백신공급기관이 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관련 양식에 백신공급기관 정보를 작성하여 e-mail(kue02@korea.kr)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식 다운로드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공지사항 →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공급방법 안내'

• **(협약서) 의료기관에서 협약업체(백신공급기관)가 변경되었는데, 협약업체를 변경하지 않고 접종하거나, 협약업체를 변경한 후 기존 협약업체에서 공급받은 백신으로 접종하여 백신비 처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공지사항에서 협약업체로 조회 후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여 질병관리청 백신수급과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질병관리청에서 해당 접종건에 대해 등록된 협약업체를 변경하고, 조달계약업체에 변경된 협약업체를 통보하고 백신비 정산(정정) 조치 요청합니다.

• **(오등록) HPV 백신 접종력 등록 시 백신정보를 잘못 입력했습니다. 이미 비용지급 됐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접종내역을 삭제하고 재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비용지급된 내역이 있다면 보건소에서 차감·삭제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질병관리청 담당자에게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HPV 접종내역 삭제) 보건소는 ①지급한 시행비를 환수하고 ②삭제할 접종정보 및 해당 의료기관 백신계약정보를 아래 양식에 작성하여 질병관리청 백신수급과 담당자 E-mail(kue02@korea.kr)로 제출 후 연락 바랍니다(043-719-6816~6818).

백신종류	피접종자명	주민번호	접종일	백신비 청구일	백신비 지급일	의료기관명
요양기관 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의료기관 주소	의료기관 연락처	제조번호	협약 공급업체	

(백신비용) 질병관리청에서 내역 삭제 후 조달계약업체에 통보, 보건소는 조달계약업체에 해당 백신비를 환급 또는 정산조치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담비가 지급된 경우 상담비를 환수하지 않고 새로 등록하는 접종력에 지급 정보 이전 처리

• **(지원내용) 12세 여아에게 건강상담 또는 HPV 예방접종서비스를 의료기관이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나요?**

- 아니요. 위탁의료기관은 반드시 건강상담과 HPV 예방접종서비스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 다만, 사업 대상자 본인이 상담을 원하지 않을 경우 예방접종서비스만 제공 가능

• **(지원내용) 예방접종 대상자가 건강상담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예방접종 대상자가 건강상담 점검표의 건강상담에 동의하지 않음으로 표시한 경우 건강상담을 거부한 것으로, 예방접종내역 전산등록 화면 하단에 '건강상담 동의안함'에 체크하여 저장 합니다. 또한 건강상담을 시행하지 않은 건은 건강상담비용(진료비) 청구가 불가하니 주의 합니다.

• **(지원내용) 의료급여자(1종·2종환자)가 의료급여의뢰서를 가지고 오지 않아도 건강상담비용(초진진찰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 12세 여성청소년에게 HPV 예방접종 및 건강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진료 행위를 수반하지 않으면 진료비 청구 시 요구되는 의료급여의뢰서를 지참하지 않아도 건강상담비용(진찰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의료급여자의 보험자부담금 청구 관련 문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안내

• **(지원대상)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주민등록말소자,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등은 HPV 예방접종과 건강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없나요?**

- 건강보험 자격 상실자 등 건강보험 미적용 대상은 가까운 보건소에서 HPV 예방접종 및 건강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상담대상자(12세)가 아닌데 상담을 받아도 되나요?**

- 12세 여아는 초경 등으로 인해 신체적, 정서적으로 큰 변화를 겪는 시기로 표준 여성 청소년 건강상담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HPV 확대 대상자 대부분은 초경 시기가 지나 상담을 권고하지 않으며, 건강상담비도 지원 불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2007년 1월생 여아인데, HPV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이 17세까지로 올해 2월 나이 18세가 되면 HPV 접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나요?**

- 아니요. 2025년 HPV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은 2007~2013년생 여성 청소년으로 2007년생은 생일이 지났더라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저소득층 대상자가 예방접종등록시스템 행복e음으로 자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격을 확인할 수 있나요?**

- 행복e음으로 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접종 당일 발급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류로 자격을 확인합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 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연금(차상위초과부기급여는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지원대상) 저소득층 여성 대상자가 1차 접종 후 저소득층 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 자격 상실 후 접종내역을 등록해도 비용상환이 되나요? 다음 접종도 비용지원이 가능한가요?**

- HPV 저소득층 사업 대상은 접종 당일의 저소득층 계층 여부를 확인 후 접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접종 당일 저소득층임이 확인되었다면 예방접종 지원 가능합니다. 중간에 자격이 상실 되면 저소득층 자격 상실 통보일 다음날부터는 저소득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용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지급확인) 상담비 지급 내역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상단 메뉴보기 → HPV 국가예방접종사업 → 상담비지급결과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지급확인) 건강상담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단부담금은 지급이 완료되었는데, 상담비(본인부담금)에 대한 지급 내역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나요?**

- 상담비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다음의 정보를 우선 확인하고, 피접종자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접종내역 등록 시 상담동의여부 등록정보

② 건강보험 청구 시 상담코드 기재여부

* 코드(상병분류기호 R688, 특정내역구분 MT002, 상담대상자코드 F012) 누락 건은 질병관리청에서 확인 불가하므로 코드 기재 후 재청구 필요

③ 접종비 지급심사 결과(실시기준 미준수 등 비용상환 제외 건은 상담비 지급 불가)

④ 진료일(요양개시일)과 접종일자 동일여부

⑤ 접종비 및 상담비 청구시점

* 접종비와 상담비 모두 시행 당일 청구하지 않고, 청구시점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상담비 지급 지연될 수 있음 주의

⑥ ①~⑤ 모두 정상 확인 시 심평원 심사년월 확인 후 질병관리청 Q&A 문의

• (진찰료 산정방법)

연번	질의	답변
일반 1	건강보험 이외 의료급여, 보훈 대상자 포함 여부	건강보험(차상위 포함) 이외 의료급여, 보훈 포함
일반 2	외래 및 입원 시 여성청소년 대상 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 사업에 따라 예방접종과 진찰·상담이 실시된 경우 본인부담률 산정 방법	외래·입원 구분에 따른 각각의 본인부담률 적용
수가 1	여성청소년 대상 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 사업에 따른 진찰료 산정 시 야간·공휴 가산 적용 여부	현행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가-1-가. 초진 진찰료 산정과 동일하게 야간·공휴·토요 가산 적용함
수가 2	같은 날 동일 의사에게 HPV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 제공하는 진찰·상담 이외 별도로 질환에 대하여 진료받은 경우 진찰료 산정 방법	현행 진찰료 산정기준에 따라,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에 따른 진찰·상담에 대한 진찰료 1회만 산정 ※ 다만,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 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담당 의사가 별도 질환을 진찰한 경우는 진찰료를 각각 산정 가능(분리청구)
수가 3	예외인정 대상(예 : 면역저하자에게 3회 접종하거나 조혈모세포이식 등 타당한 의학적 사유로 재접종이 필요한 경우)의 경우 진찰료도 3회 산정 가능한지 여부	표준 여성청소년 건강상담 시 발생하는 진찰료는 대상자당 최대 2회까지 인정
수가 4	HPV 예방접종 시행일 외 다른 날짜에 방문하여 표준 여성 청소년 건강상담을 하는 경우 진찰료 인정 여부	여성청소년 대상 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 사업에 따른 진찰료는 예방접종 시행 당일 동시에 표준 여성 청소년 건강상담을 제공한 경우에만 인정
청구 1	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 사업에 따른 진찰료 청구 시 기재하는 상병분류기호는?	R688(기타 명시된 전신 증상 및 징후)
청구 2	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 사업에 따른 진찰료 청구 시 기재내역은?	특정기호 F012(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사업 지원 대상자)

라. 비용상환 문의

(1) 공통

• 계약 체결 후 비용상환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체결 후 예방접종 건부터 비용상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 관할 보건소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승인한 비용상환 참여일 기준

• 비용 지급에 사용할 계좌정보를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예. 위탁계약 체결 이후 계좌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신청 메뉴에서 통장 사본을 다시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업로드한 통장 사본을 보건소에서 승인한 이후부터 변경된 계좌정보로 비용이 지급됩니다.

• 위탁의료기관의 비용상환 절차와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접종내역 등록 시 자동으로 비용상환이 신청되며, 행정안전부 주민정보시스템에서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약 1일 소요) 후 피접종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비용상환 접수·심사 후 지급합니다.
※ 단, 실시간 미준수, 백신제조번호 미등록 등 불안전한 접종내역은 비용상환의 신청이 불가능

• 예방접종의 실시 후, 비용상환의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비용상환 신청 기한은 2015년 폐지되었으나, 중복접종의 방지를 위해 접종 당일 전산등록을 권고합니다(중복접종 발생 시 먼저 전산등록한 의료기관에 비용 지급).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서 과거 접종력이 없고 보호자도 접종이력을 기억하지 못해 우선 접종을 시행하였으나, 나중에 보호자의 예방접종수첩 등으로 접종력을 확인했다면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 접종 당시 과거 접종력 확인이 불가능했던 경우에는 비용상환이 인정되나, 원칙적으로 과거 접종력 확인이 가능한 상황에서 실시한 중복접종은 비용상환이 불가능합니다.

• 접종을 완료한 대상자가 조혈모세포이식 후 의학적 소견(재접종)을 등록하여 비용상환 신청을 하였습니다. 비용상환이 가능한가요?

- 예. 조혈모세포이식 환자는 이식 후 재접종이 필요하며,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예방접종 일정을 준수하여 접종했다면 비용상환이 가능합니다.
※ (예) 12세에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 이식일로부터 3년간(36개월 하루 전까지) 비용지원 가능

• **백혈병 등의 혈액종양 또는 고형종양으로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을 받은 경우 재접종 시 비용상환이 가능한가요?**

- 일반적으로 항암치료 또는 방사선치료 이전에 접종받았던 백신을 재접종하는 것은 불필요하나, 면역저하 상태 동안 접종한 불활성화 백신은 면역기능이 회복된 이후에 재접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인 사유로 접종이 필요했다면 비용상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접종 등록방법 : 중복등록할 차수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추가 등록하고, 의학적소견을 선택(면역저하 상태 동안 받은 접종의 재접종(항암치료 후 등))하거나, 필요에 따라 상세사유를 작성하여 신청

• **65세 이상 폐렴구균 접종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접종했는데 비용상환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백신잔량 또는 접종정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신잔량) 백신잔량이 0인 경우에는 비용상환이 신청되지 않으니 중복접종 방지를 위해 접종기록을 우선 등록한 후, 관할 보건소에서 백신 재분배 및 입고등록을 실시합니다. 재분배 후 의료기관은 기존 접종기록의 완전 삭제 후 접종정보(실제 접종일 등록, 제조번호 등)를 재등록합니다.

(접종정보확인) 의료기관에서 접종정보를 정확하게 등록하지 않으면 비용상환 신청되지 않으니 접종력을 완전히 삭제 후 재등록 합니다. 만약, 비용신청이 안 된다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Q&A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 비용상환의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요?**

- 보건소 비용상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상환불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합니다.

• **(이의신청) 비용상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보건소는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의신청 재심의 결과 결정기한 만료 5일 전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상환기준

• **B형간염 기초접종 후 항체검사 결과가 음성이라 재접종 시 비용상환이 가능한가요?**

- 아니요. 건강한 소아청소년은 기초접종 완료 후 일률적인 항체 검사를 권장하지 않으며, 해당 검사 결과에 따른 추가접종은 비용상환 불가합니다.

다만, B형간염 고위험군(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가족, 혈액제제를 자주 수혈 받아야 하는

환자,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 등)은 검사가 필요하며, 해당 결과에 따라 재접종이 필요하다면 비용상환 가능합니다.

• HBsAg 상태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출생 시 체중 2.0kg 미만으로 태어난 경우 B형간염 비용 상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산모의 HBsAg 상태를 알 수 없거나 양성인 산모에게서 출생 시 2.0kg 미만인 신생아는 총 4회의 접종이 필요하며, 4회 모두 비용지원됩니다.

[접종일정] ①분만 직후(12시간 이내) 접종(기초접종 횟수에 미포함), ②생후 1개월에 1차 재접종*, ③생후 2개월에 2차 접종, ④생후 6~7개월에 3차 접종

* 1차 재접종 등록 시 의학적 조건 : 이전 접종력 불인정으로 인한 재접종 > B형간염 미숙아 접종 > 출생 주수 및 출생 시 체중 입력

- 산모의 HBsAg이 음성이라면 총 3회 접종비용 지원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처치 대상은 예방접종 비용을 별도 관리

• 과거 접종력이 없는 11세 아동에게 B형간염 접종 시 지원되나요?

-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라 11세 이상 연령은 1.0ml 백신으로 접종하고, 1.0ml 백신비용을 상환합니다.(2018. 8. 24.부터 지원 적용)
※ 전산등록 되지 않은 접종력을 우선 확인하고, 접종력이 없다면 기초접종 3회 가능

• 피내용 BCG 접종이 지연된 경우 TST 비용도 지원되나요?

- 아니요. BCG 예방접종을 지연한 생후 3개월 이상의 연령은 결핵균의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투베르쿨린 피부 반응검사(tuberculin skin test: TST)가 필요하나, 검사 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생아기에 BCG 접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파종 결핵의 고위험 연령대로 알려져 있는 5세 미만 어린이의 TST 결과가 음성이라면 피내용 BCG 지연접종 시 비용을 지원합니다.

• 피내용 BCG 예방접종 후 반흔이 없는데, 재접종이 필요한가요?

- 아니요. BCG의 반흔은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히 없어질 수 있습니다. 접종을 완료했다면 반흔 유무로 재접종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재접종 시 비용상환 불가합니다.

• 해외에서 귀국한 BCG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6세 아동인데 BCG 백신 접종을 해야 되나요?

- 아니요. BCG 백신 접종은 결핵 중 소아 파종결핵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파종결핵의 고위험군 연령대인 5세 미만의 아동에게 접종을 권장하며, 그 이상의 연령은 접종을 권장하지 않으므로 비용지원 불가합니다.

• 생후 18개월에 DTaP 4차 접종을 DTaP-IPV 혼합백신으로 접종하고 4차(추가)에 등록했습니다. 비용상환이 가능한가요?

- 아니요. 비용상환 불가합니다. DTaP 4차 접종 권장시기의 DTaP-IPV 혼합 백신 접종 시 DTaP 접종력은 유효하나, IPV 접종력은 최소접종 연령(4세)을 준수하지 않은 무효 접종으로 4~6세에 재접종을 실시합니다.

• DTaP 접종을 완료한 10세 아동에게 Tdap 백신을 접종했다면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향후 접종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네. DTaP 접종을 완료한 아동은 11~12세에 Tdap 백신으로 접종하여야 하나, 우발적으로 10세 아동에게 Tdap 백신을 접종했다면 유효접종으로 간주하므로 비용상환 가능하며, 11~12세 Tdap 백신은 생략 가능합니다.

• DTaP 기초접종(3차)을 완료한 6세 아동에게 Tdap 백신을 접종하였습니다.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향후 접종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네. Tdap 백신은 7세 이상에서 사용 가능하나, 우발적으로 DTaP 기초접종을 완료한 6세 아동에게 Tdap 백신을 접종했다면 유효접종으로 간주하여 비용상환 가능하며, 향후 11~12세에 Tdap 백신을 접종합니다.

• DTaP 기초접종(3차)을 미완료한 6세 아동에게 Tdap 백신을 접종하였습니다.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향후 접종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아니요. DTaP 기초접종을 미완료한 6세 아동에게 Tdap 백신 접종은 무효접종으로 비용상환 불가하며, 오접종일로부터 최소 4주 간격을 두고 DTaP 백신으로 재접종이 필요합니다. 이후 11~12세에 Tdap 백신을 접종합니다.

• 8세에 Td 백신으로 기초 3회를 0, 1, 6개월 간격으로 접종한 아동이 11세에 Tdap 백신을 접종해도 되나요? 비용상환은 가능한가요?

- 네. 11~12세 접종은 Tdap 백신으로 실시하도록 합니다. 국내 백일해의 지속적인 발생 등으로 인해 권장접종간격(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6차 추가접종 시기인 11~12세에 Tdap 백신으로 접종 할 수 있으며 비용상환도 가능합니다.

• DTaP 추가접종(5차)를 미완료한 7세 아동에게 Td 백신을 접종하였습니다.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향후 접종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DTaP 접종이 지연된 7세 이상의 소아는 Tdap/Td 따라잡기 일정을 준수하여 접종 시 비용상환 가능합니다.

다만 7~10세에서 우발적으로 Tdap 백신 대신 Td 백신으로 접종한 경우에도 접종력을 인정하여 비용상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12세 추가 접종시기에는 백일해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Tdap 백신으로 접종해야 하며, 백일해 백신 금기자 외 Td 백신접종 시 비용상환 불가합니다.

• 7세 소아가 조혈모세포이식 후 DTaP 백신으로 접종을 시작하여 2차 접종일로부터 4주 후 3차 접종하였는데 비용상환 되나요?

- 조혈모세포이식 후 접종 일정에 따라 7세 이상 소아는 DTaP 백신으로 접종 가능하지만 2~3차 최소접종 간격(6개월)을 미준수 시 비용지원 불가합니다.

※ DTaP/Tdap/Td 조혈모세포이식 후 접종 : 7세 이상은 2~3차 최소 6개월 간격

• 8세 소아가 조혈모세포이식 후 Tdap-Td-Td(0-1-6개월 간격) 일정으로 접종 후 12세에 Tdap 백신으로 접종하면 비용상환이 가능한가요?

- 조혈모세포이식 후 접종 일정에 따라 접종을 완료한 7~9세 대상자가 Tdap/Td 따라잡기 일정을 준수하여 11~12세에 Tdap 접종 시 비용지원 가능합니다.

• 9세 11개월 소아가 조혈모세포이식 후 Tdap 백신으로 접종을 시작하여 10세 8개월에 Td 백신으로 3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이후 12세에 Tdap 백신 접종하면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 조혈모세포이식 후 접종 일정에 따라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서 10세 이후 Tdap 접종력이 없다면 Tdap/Td 따라잡기 일정을 준수하여 11~12세 Tdap 접종 시 비용지원 가능합니다.

• 생후 2개월에 폴리오 백신 1차 접종 후 다음 접종이 지연된 4세 아동이 2차와 3차를 4주 간격으로 접종했는데, 이후 접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용상환은 가능한가요?

- 4세 이상에서 폴리오 백신 3차 접종 시 2차 접종과 최소 접종간격(6개월)을 미준수했다면 오접종일로부터 6개월 이후 4차 접종이 필요합니다. 심사기준을 미준수한 3차 접종은 비용상환 불가능하며, 4차 접종 시 비용상환 가능합니다.

※ 4세 이상에서 폴리오 백신 3차 접종 시 2차 접종과는 최소 6개월 간격

• 6세 소아가 조혈모세포이식 6개월 후 폴리오 접종을 시작하였고 2차 접종 4주 후 IPV 백신으로 3차 접종하면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 조혈모세포이식 후 폴리오 재접종 시 4세 이상의 2~3차 최소접종 간격은 6개월이므로 미준수 시 비용지원 불가합니다.

• Hib 백신 접종력이 없는 6세 아동의 Hib 접종 후 비용상환 신청이 가능한가요?

- 침습 Hib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5세 이상 소아가 Hib 접종력이 없다면 1~2회 접종이 필요하며 의학적 소견을 등록하여 비용상환 신청 가능합니다.

※ 침습 Hib 감염의 고위험군 : 기능적 또는 해부학적 무비증(검상적혈구증, 비장절제술 후), 항암치료에 따른 면역저하, HIV 감염, 초기 요소 보체결손증, 특히 IgG2 이형 결핍 등의 체액면역결핍질환 환자에서는 연령에 따라 1~2회 접종 가능(2회 접종 시 8주 간격)

• **폐렴구균 백신 접종력이 없는 6세 아동의 비용지원이 가능한가요?**

- 아니요. 일반적으로 건강한 5세(생후 60개월) 이상 소아는 폐렴구균 백신 접종이 권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폐렴구균 감염 위험이 높은 면역저하자 등의 5세 이상 소아는 과거 접종력이 없으면 폐렴구균 백신 접종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의학적 소견을 등록하여 비용상환 신청 가능합니다.

• **생후 24~59개월 연령에서 폐렴구균 백신 1차 접종을 15가 백신으로 시작한 경우 8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이 권장되는데 생후 58~59개월에 1차 접종을 한 경우, 2차 접종을 할 시기에는 60개월이 넘는데, 2차 접종비용지원 가능하나요?**

- 아니요. 일반적으로 건강한 5세(생후 60개월) 이상 소아는 폐렴구균 접종을 권고하지 않으므로 15가 백신으로 폐렴구균 1차 접종 후 2차 접종 연령이 5세 이상(생후 60개월)이면 2차 접종은 불필요하며, 비용지원 불가합니다.

• **면역저하 질환이 있는 3세 소아입니다. 이전에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으로 4회 모두 접종하였고 폐렴구균 다당 백신으로 추가접종하면 비용지원 가능하나요?**

- 네.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른 폐렴구균 감염 고위험군(면역저하자 등)은 13가 또는 15가 단백결합 백신으로 접종을 완료하였더라도 2세 이상에서 다당 백신으로 추가접종이 가능하며, 의학적 소견을 등록하여 비용상환 신청 가능합니다.

•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의 최대 접종가능 연령을 지나서 접종하면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 아니요.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이 가능한 최대 연령은 생후 8개월 0일까지이며, 최대 연령 이후 접종은 비용상환 불가능합니다.

• **로타바이러스 백신 2차 접종 시 1차 접종에 사용한 백신과 다른 백신으로 교차하여 접종하였다면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 아니요.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교차하여 접종하면 비용상환 불가합니다.

다만, 1차와 2차 접종 백신이 교차하여 접종된 대상은 3차 접종 시 RV 교차접종 예외인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차접종 시 RV5 백신이 한 번이라도 사용되었다면 총접종 횟수 3회가 되도록 접종하여야 하므로 3차 접종 시 직전 차수 사용 백신으로 접종하고 적합한 '의학적 소견(이전 교차접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시행된 교차접종)'을 입력한 후 비용상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차접종 등록) 2차 접종에 사용한 백신으로 3차 접종 후 순차적 등록

※ 예 : RV1 > RV5 > RV5 3차 등록, RV5 > RV1 > RV1 2차 중복등록

• **MMR 백신 2차 접종을 받은 소아가 가와사키병으로 1주 만에 면역글로불린을 투여 받았습
니다. MMR 백신 재접종 시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 네. MMR 백신접종 후 2주 안에 면역글로불린을 투여하면 백신의 효과를 얻기 어려우므로
면역글로불린 주사 후 최소 11개월 뒤에 재접종을 권장합니다. 의학적 필요에 의한 재접종은
비용상환 가능합니다.

• **유행 상황이 아닌데, 생후 11개월에 MMR 백신 1차 접종하였습니다.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 아니요. 1차 최소 접종연령(생후 12개월)을 미준수한 이른접종은 유효하지 않으므로 비용상환
불가합니다. 최소 접종연령보다 이른접종은 무효로 간주하고 재접종해야 하며, 재접종은 의학적
소견을 등록하여 비용상환 신청 가능합니다.

※ MMR 1차 최소 접종연령은 4일 이하 오차(grace period) 적용 제외(2023. 8. 7.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
법」 지침 개정(제6판))

• **홍역 유행 상황이 발생한 지역에 거주하면 생후 12개월 이전에 MMR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나요?
비용상환은 가능한가요?**

- 네. 홍역 유행상황 시 해당 유행지역에 거주하는 생후 6~11개월 영아는 MMR 가속접종이 필요
하므로 비용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가속접종은 접종 횟수에 포함 시키지 않고 권장 접종연령(생후 12개월 이후)에 2회 접종을
완료하도록 합니다(총 3회 접종).

• **1세 생일이 되기 1일 전에 MMR 백신 1차 접종하면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 MMR 백신 1차 접종은 최소접종 연령의 단축인정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세 생일이 되기
전에 접종한 경우 비용지원이 불가합니다.

※ MMR 1차 최소 접종연령은 4일 이하 오차(grace period) 적용 제외(2023. 8. 7.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지침 개정(제6판))

• **9세 소아가 조혈모세포이식 후 수두 백신 1차 접종 후 4주 뒤에 2차 접종 시 비용상환 가능한
가요?**

- 조혈모세포이식 후 접종 일정을 준수한 재접종은 비용지원 가능합니다. 9세 소아는 수두 백신 1차
접종 후 최소 3개월 간격을 두고 2차 접종을 시행하며, 실시기준 미준수 시 비용지원 불가합니다.

※ 조혈모세포이식 후 수두 접종 : 13세 미만은 최소 3개월 간격, 13세 이상은 최소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필요

마. 백신 수급관리 문의

• (인플루엔자) 총량구매-사전현물공급 받은 백신을 어린이(생후 6개월~13세) 또는 임신부에게 접종해도 되나요?

- 백신 공급 방식에 따라 사업 대상에게 다르게 접종해야 합니다. 사전현물공급 방식으로 공급 받은 위탁의료기관의 경우 사업 대상별 구분 없이 접종 가능하나, 의원급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민간개별구매 방식으로 구매한 백신(어린이·임신부)과 총량구매-사전현물공급 방식으로 공급받은 백신(65세 이상)을 구분하여 접종해야 합니다.

• (인플루엔자) 총량구매-사전현물공급 위탁의료기관 백신 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보건소에서 지역 내 인구수, 목표접종률, 위탁 의료기관 대상별 사업 초기 3주 이내 접종 건, 총공급량, 잔여량 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위탁의료기관별 백신 배정량을 결정합니다.

• (인플루엔자) 위탁의료기관에서 총량구매-사전현물공급 백신의 예상 소요량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작성 시 사업 기간 내 소요량을 작성하면 되나요? 그리고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하나요?

- 백신 예상 소요량 작성 시 사업 기간 내 소요량을 모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작년 동기간 (인플루엔자 사업 기간)에 의료기관 내원자 수, 지난 절기 백신 공급량·사업 초기 3주 이내 접종 건·총사용량·회수량, 백신 보관 가능량 및 예진 의사 1명당 하루 100명이라는 상한 조건을 고려하여 최대한 구체적인 수요를 산출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백신 포장단위가 10도즈 이므로 최소 10도즈부터 공급이 가능하며, 낱개로는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 (인플루엔자) 위탁의료기관의 총량구매-사전현물공급 방식의 백신 공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위탁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예상 수요량을 보건소에서 검토·확정하여 백신 배정량을 결정합니다. 결정된 백신 배정량의 90~95%는 사업 시작 1주일 전까지 의료기관으로 공급이 완료되며, 그 외 5~10%는 보건소에서 보관하고, 의료기관의 추가수요가 있을 시 공급하게 됩니다 (단, 백신 배정률은 지역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사업 기간 내 의료기관의 백신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관할 보건소에 사·도를 통해 백신을 추가공급 요청하면 질병관리청에서 검토 후 추가 공급을 실시합니다.

• (인플루엔자) 공급받은 총량구매-사전현물공급 백신을 모두 소진하고 백신 추가 신청 건의 공급이 늦어지는 공백기가 생긴다면 의료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다른 백신으로 먼저 접종한 뒤 추후에 백신을 공급받아도 되나요?

- 아니요. 국가사업용으로 공급된 백신 외에 의료기관에서 자체 보유하고 있는 백신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백신이 소진되기 전 관할 보건소에 추가공급 요청을 통해 사전에 백신을 확보 하시기 바랍니다.

• **(인플루엔자) 위탁의료기관에서 신청한 총량구매-사전현물공급 백신을 사업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하지 못해 백신이 남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처리되나요? 의료기관에 그에 따른 불이익은 없나요?**

- 신청한 백신이 남을 경우 사업 기간이 종료된 이후 남은 백신은 보건소에서 전량 회수 예정입니다. 과다하게 백신을 신청하여 사업 종료 후 백신이 많이 남거나, 백신이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의 재분배 요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다음 절기 백신 배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플루엔자) 총량구매-사전현물공급 백신이 파손되거나 바늘이 오염되어 접종하지 못하는 경우 반품이 가능한가요?**

-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제품은 백신을 공급한 업체를 통해서 교환이 가능합니다. 단, 인수 이후 의료기관 보관 실수로 백신이 파손되거나 오염된 경우 위탁의료기관 자체 보유 백신으로 접종 또는 반납해야 하며, 반납이 불가능한 경우 상황에 따라 보건소에서는 해당 백신비에 대해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인플루엔자) 의원급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어린이·임신부 예방접종사업 백신 공급은 민간개별 구매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추가 구매(확보)가 어려운 경우 보건소로부터 백신을 재분배(추가공급) 받아 접종할 수 있나요?**

- 예. 이 경우 보건소로부터 사전현물공급 백신을 재분배(추가공급) 받아 접종이 가능하며 단, 사전현물공급 백신으로 실시한 예방접종은 시행비만 지급됩니다.

※ 보건소는 재분배 전산 등록 시점 이후 시행비만 지급되므로 반드시 위탁의료기관(의원급 소아청소년과) 백신 소진 완료 확인 후 재분배 실시(재분배 등록 시 의료기관 보유수량으로 접종한 경우라도 시행비만 지급 처리됨)

• **(인플루엔자) 민간개별구매 방식을 적용받는 의료기관은 어떤 진료과인가요? 의원급 의료기관 내 여러 진료과가 있는 경우 어떤 공급 방식을 적용받나요?**

- 민간개별구매 방식은 어린이·임신부 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 소아청소년과만 해당됩니다. 아동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및 의원급 소아청소년과를 제외한 기타 과의 경우 사전현물공급 방식을 적용받습니다. 내과, 소아청소년과 등 여러 진료과가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대표개설자의 진료과가 소아청소년과인 경우 민간개별구매 방식을, 타 진료과인 경우 총량구매-사전현물공급 방식을 적용합니다.

•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4가 백신은 제품별로 허가사항이 다른가요?**

-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4가 백신은 허가연령이 상이한 제품이 있어 사용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방접종 시행 전 예진 의사와 상담 후 해당 연령에 맞는 백신으로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바. 이상반응 관리 문의

• 국가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하나요?

- 질병관리청은 이상반응 신고체계를 통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을 감시하고 중증 이상반응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심의를 거쳐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해주는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는 등 예방접종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이 의심되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시고,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겼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조치하나요?

- 이상반응 신고를 받게 되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메뉴 보기 → 예방접종안전관리 → 병의원/보건소 신고관리에서 신고합니다.

• 보호자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 인터넷 신고를 하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 사실이 확인된 사례는 확인완료 즉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병의원/보건소 신고관리로 전환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사망 등 중증이상반응이 생겼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조치하나요?

- 중증이상반응 신고를 받게 되면 위의 방법에 따라 이상반응 신고를 우선하고, '중증이상반응 신고관리'에서 다시 한 번 중증이상반응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메뉴보기 → 예방접종안전관리 → 중증 이상반응 신고관리

• 예방접종한 부위가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예방접종 후 주사부위의 통증, 단단하게 굳음, 빨갛게 부어오른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나 대부분 저절로 회복됩니다. 다만, 며칠간 주의 깊게 지켜보시고 증상이 악화되거나 지속되면 의사에게 진료를 받기 바랍니다.

• 너무 많은 접종은 면역체계에 부작용을 가져온다는데 사실인가요?

- 예방접종으로 항체를 만들 때에는 우리 몸 면역체계의 아주 일부분만이 사용되며, 예방접종은 면역체계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면역체계를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 백신이 자폐증 등 질병을 유발한다는데 사실인가요?

- 아니요. 과학적 연구 및 문헌고찰 등에 의하면 백신이 자폐증이나 다른 행동 장애, 영아돌연사 증후군을 유발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 **백신에 포함된 티메로살, 알루미늄 성분이 위험하다는데 사실인가요?**

- 백신에 첨가된 첨가물은 백신의 효과를 증대하거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매우 적은 양을 사용하며, 어떠한 첨가물도 위험하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또한, 현재 사용중인 백신에는 티메로살이 함유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백신 개발 시 충분한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았다는데 사실인가요?**

- 아니요. 백신 개발시 안전성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진행합니다. 판매전에는 반드시 여러 차례의 임상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사용허가 이후에도 이상사례, 효과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감염병에 의한 위험보다 백신의 위험성이 더 크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아니요. 예방접종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 질병에 걸려 사망하거나 합병증을 얻을 가능성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감염병은 지역사회 면역수준이 낮아지면 다시 유행할 수 있습니다.

• **같은 날 여러 가지 백신을 동시에 접종해도 안전하나요?**

- 네. 대부분의 백신은 다른 백신과 동시접종이 가능하며, 같은 날 접종하면 병원을 자주 방문하실 필요가 없고 아이가 받는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 **아토피나 알러지가 있으면 예방접종을 하면 안되나요?**

- 아니요. 아토피가 심한 경우에도 예방접종은 안전하며, 백신성분 외의 물질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도 예방접종의 금기사항이 아닙니다.

• **기침, 콧물, 미열이 있으면 예방접종을 하면 안되나요?**

- 아니요. 기침, 콧물 등 감기 증상이 있거나, 중이염이 있거나, 배가 아프거나, 혹은 38℃ 미만의 미열이 있는 등 경미한 질환을 앓고 있을 때에는 예방접종 예정대로 진행하셔도 안전합니다. 다만, 중등도 이상의 질환을 앓고 있을 때에는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 후 미열, 통증 등 이상사례가 생겼다면, 다음 예방접종을 하면 안되나요?**

- 아니요. 예방접종으로 접종부위에 미열, 통증 등 가벼운 이상증상이 생겼더라도 예방접종 금기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특정 백신 접종 후 혹은 특정 백신성분에 대하여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했던 경우에는 해당 백신의 접종은 금기사항이므로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역이 유행하여 MMR 접종을 실시하였는데, 접종 4일 후 몸에 발진이 나타나며 홍역에 감염되었습니다. 이상반응인가요?**

- 아니요. 홍역의 잠복기는 약 12일 정도로 이 동안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이 경우 예방접종을 받기 전 홍역에 이미 감염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역 예방접종의 이상반응으로 나타나는 발진은 대개 접종 후 7~10일이 경과한 후 나타납니다.

• 65세 이상 폐렴구균 백신의 과거 접종 기억이 불명확하고, 과거 접종기록도 확인되지 않아 예방접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실제로 접종하였다면 반복적으로 접종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이상반응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나요?

- 이전 접종력을 모른다면 감염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접종하도록 합니다. 국소반응은 첫 번째 접종보다 두 번째 접종 후에 더 흔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기는 하지만, 증상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국소반응 발생 후 5일 이내 소멸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3회 이상 접종에 대해서는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므로 일반적으로 추천되지 않습니다.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은 무엇이 있나요?

-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의 15~20%에서 나타나는 접종 부위 발적과 통증이 있으나, 대부분 1~2일 이내에 사라집니다. 전신반응으로 발열, 무력감, 근육통, 두통 등의 증상이 1% 미만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보통 백신 접종 후 6~12시간 이내에 발생하여 1~2일간 지속됩니다. 드물게 두드러기, 혈관부종, 아나필락시스 등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상반응이 지속되거나 그 외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피해보상 신청 기준이 있나요?

- 예방접종의 실시 기준 및 방법에 명시된 백신 및 접종대상자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고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피해보상 신청 시 보상 결정 처리 절차와 보상금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은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보상이 결정되면 질병관리청에서 해당 보상금을 피해보상신청자에게 지급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일부개정에 따라, 본인부담금 30만원 기준으로 보상결정처리 절차가 나뉘어집니다.

※ 보상 관련 세부 사항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참고하거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정책과(043-913-2217, 719-8367)로 문의

본인부담금	보상결정처리 절차
30만원 미만	① (접종받은 자 또는 보호자)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 ② (보건소) 보상 관련 구비서류, 소액절차 요건 충족 확인서 제출 → ③ (시·도) 피해조사 후 인과성 심의 및 결과 통보* → ④ (질병관리청) 피해보상금 지급 * 시도 → 보건소 → 신청자
30만원 이상	① (접종받은 자 또는 보호자)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 ② (보건소) 보상 관련 구비서류 → ③ (시·도) 기초피해조사 → ④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정밀 피해조사 후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 ⑤ (질병관리청) 결과통보* 및 피해보상금 지급 * 질병관리청 → 시도 → 보건소 → 신청자

사.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문의

• 전산으로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위탁계약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 시 이미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있는데, 기관정보에도 기관인증서를 등록해야 하나요?

- 예.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은 개인인증서로 하고, 이후 전자계약 시에는 의료기관 정보에 개인인증서가 아닌 기관인증서를 등록해야 계약 시 서명이 가능합니다.

• 계약에 필요한 기관인증서는 어떤 인증서를 등록하면 되나요?

-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방문 후 한국정보인증사이트에서 발급한 공동인증서*를 등록합니다.
※ 인증서 갱신 시 의료기관정보 갱신(재등록) 필요

• 기관인증서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계약신청 화면에서 좌측 상단 기관정보 내 기관인증서 유효기간을 확인한 후 갱신 버튼을 클릭하여 새로운 인증서를 등록합니다. 인증서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기관정보 내 사업자 번호가 정확한지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정보에서 기관인증서 등록을 클릭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했는데 ‘사업자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 창이 뜹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의료기관정보에 등록된 사업자번호와 기관인증서의 사업자번호가 다른 경우입니다. 의료기관 정보 메뉴 왼쪽 상단의 사업자번호(숫자10자리)를 확인하여 올바른 번호로 변경 저장 후 기관 인증서를 다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번호가 올바름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사업자번호와 동일하지 않습니다.’라는 오류 메시지가 발생할 경우 인증서 발급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인증서 등록을 완료했는데 계약신청 메뉴에서 전자문서 작성 후 전자서명 단계에서 ‘서명에 실패했습니다’라는 메시지 창이 뜹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기관인증서 등록 이후에 기관인증서를 재발급(갱신)한 경우는 기존 인증서가 유효하지 않으므로, 전자서명이 불가능합니다. 작성 중인 전자문서를 닫은 후 의료기관정보에 등록된 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은 인증서로 갱신(재등록)한 후 다시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의 이전 등으로 인해 위탁의료기관의 요양기관코드번호가 변경되면 어떻게 하나요?**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로그인 후 화면 상단의 ‘내정보’에서 회원 탈퇴 후 변경된 소속기관으로 신규 가입하여 필요한 업무권한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변경된 요양기관 정보로 위탁계약을 다시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소만 이전된 경우에는 ‘권한부가정보’에서 예방접종권한 미승인 처리 후, 이전한 관할 보건소를 승인기관으로 재지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의료기관정보가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관리’ → ‘국가예방접종사업’ → ‘등록시스템’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메뉴보기’ → ‘행정업무’ → ‘의료기관정보관리’ → ‘의료기관 정보관리’
- ②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행정업무’ → ‘계약관리’ → ‘계약신청관리’에서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 관할보건소, 요양기관번호가 변경된 경우는 위탁계약 해지 및 재체결 필요

• **예방접종 전산등록(IR) 의료기관의 기관정보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행정업무’ → ‘의료기관정보관리’ → ‘의료기관정보 관리’에서 정보 확인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 위탁계약 관련 내용은 보건소에서 수정 가능하며 의료기관에서는 확인만 가능

※ 위탁계약정보 외 정보(예진의사, 접종자, 기관인증서 등)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수정 가능

• **예방접종관리에 대한 권한 신청 시 “권한정보가 부적합 합니다.” 등의 오류 메시지가 발생하여 신청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도구’ → ‘호환성보기설정’ → ‘kdca.go.kr’ 추가 후 재신청합니다.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인증서 로그인을 했는데 메뉴에 ‘예방접종관리’ 폴더가 보이지 않습니다.**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가입완료) 후 화면좌측의 '권한정보'에서 예방접종 관리업무에 대한 권한 승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권한이 승인되면 메뉴에서 예방접종 관리 폴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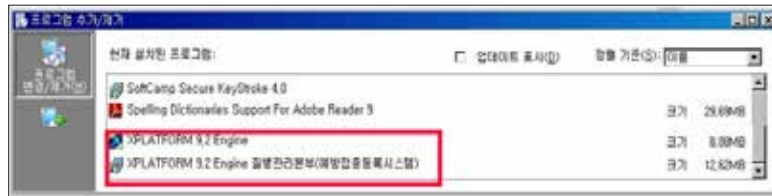
• 의료정보업체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예방접종 내역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의료정보업체에 질병관리청으로 전산등록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업데이트 요청하신 후 의료정보업체 프로그램에서 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방접종기록(비용사업) 연계가 가능한 업체명 : 비트컴퓨터, 브레인컨설팅, 네오소프트뱅크, 다솜정보, 유비케어, 포인트닉스, 전능아이티, 병원과컴퓨터, 중외정보기술, 메디칼소프트, 메디컴코리아, 엠디소프트, 금우병킹소프트, 포닥터, 케이컴, 서전정보개발, 나은소프트, 대일전산, 메트로소프트, 엔지테크, 지누스, 자인컴, 메딕스, 이헬스플러스, 뉴마테크, 지센커뮤니케이션,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등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었으나 오류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 [시작] → [제어판] → [프로그램 및 기능(프로그램 추가/제거)]에서 'XPLAFORM 9.2 Engine', 'XPLAFORM 9.2 Engine 질병관리본부(예방접종등록시스템)'을 삭제합니다. 삭제 완료 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해당 업무 경로로 들어갑니다. 프로그램 재설치 안내에 따라 진행을 완료하고 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형식에 맞지 않는 주민등록번호라고 합니다. 어떻게 등록하나요?

-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되어 있는 번호가 맞는지 보호자에게 재확인하고, 올바른 주민등록번호임에도 계속 오류가 발생하면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043-913-23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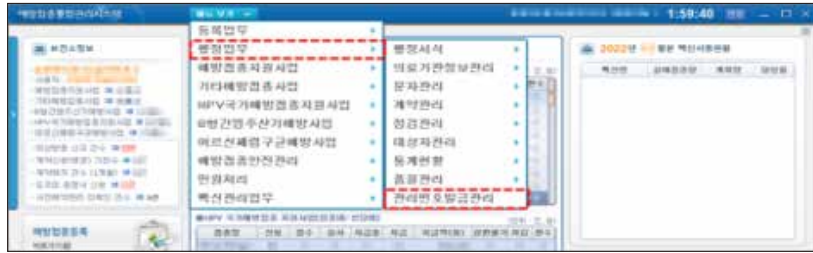
• 등록된 피접종자의 인적정보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 등록된 피접종자의 인적정보 중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는 의료정보업체 프로그램(차트프로그램) 또는 '예방접종통합 관리시스템'에서 수정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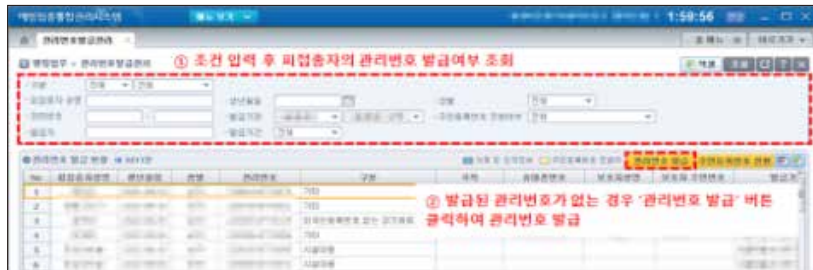
• 주민등록번호 미발급자, 시설아동, 미등록 외국인의 접종내역은 어떻게 등록하나요?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보건소에서 관리번호를 발급받아 예방접종내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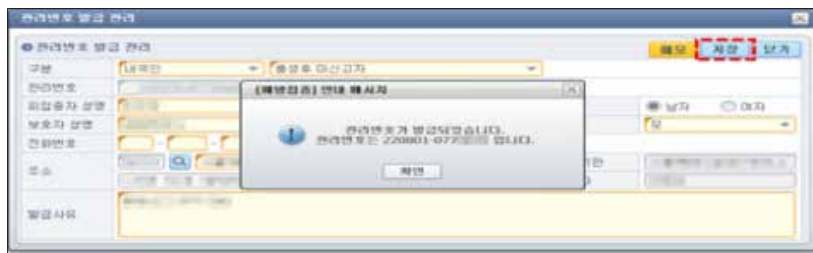
①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메뉴보기' → '행정업무' → '관리번호발급관리'를 클릭합니다.



② 우선 기존에 발급된 적이 있는지 피접종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으로 조회합니다. 발급된 번호가 있다면 기존 번호를 사용하도록 하고, 관리번호가 없는 경우는 '관리번호 발급'을 클릭하여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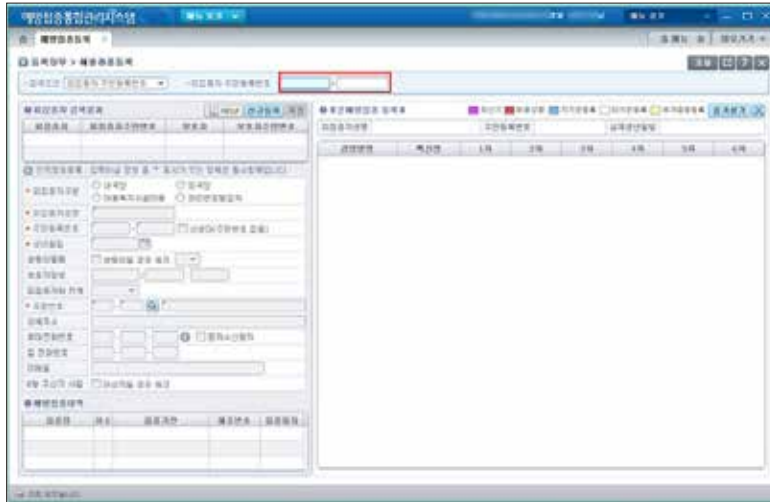


③ '관리번호 발급 관리' 창에서 구분(내·외국인, 발급사유), 피접종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보호자 정보, 주소, 연락처 등을 입력 후 '저장'을 클릭하여 관리번호 발급을 완료합니다.



④ 발급된 관리번호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에 기입하여 접종 내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관리번호를 발급받은 외국인 중 등록 면제자는 내국인에 준하여 비용지원되며,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은 관리번호 발급 후 접종 가능(단, 3개월 미만 단기체류 외국인은 관리번호 발급 불가)



•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의 접종내역은 어떻게 등록하나요?

- 모(母)의 인적정보(이름/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신생아 인적정보를 등록하며, 1개월 이후에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면 보건소에서 관리번호를 발급받아 예방접종 내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피접종자의 이름은 수정할 수 없나요?

- 이름은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수정할 수 없으며, 접종력이 등록된 이 후 행정안전부 전산망을 거쳐 다음날 정보가 갱신됩니다. 다만, 증명서 발급 등 당일 이름 수정이 필요하면 예방접종 관리과로 요청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제외한 주소, 전화번호 등은 '예방접종통합 관리시스템' → '예방접종등록' 메뉴에서 인적조회 후 수정이 가능합니다.

•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과 실제 생년월일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 실제 생년월일로 변경을 희망하면 생년월일 증빙서류로 확인 후 시스템의 '예방접종 등록'의 '생년월일'란에 실제 출생일을 입력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과 실제 생년월일이 6개월 이상 차이되면 보건소에서 수정되지 않으므로 예방접종관리과 (☎043-913-2352)로 수정 요청

• “행정안전부에서 존재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로 접종하여 등록(수정)을 할 수 없습니다. 주민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에 확인바랍니다.”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주민등록번호 오류), 보호자에게 올바른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후(주민등록등본 등) 예방접종관리과(☎043-913-2352)로 연락하시어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번호로 접종해온 아동이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나왔을 경우 접종력 이전 및 인적정보를 어떻게 변경하나요?**

- ‘예방접종관리’ → ‘행정지원’ → ‘기타지원’ → ‘관리번호발급관리’에서 관리번호를 조회 후 “주민등록번호 전환” 버튼을 클릭하여 정보를 변경합니다.

• **관리번호 발급 시 보호자의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본인확인을 위해 여권번호가 필요하며, 본인의 여권번호가 없으면 반드시 보호자의 여권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설/주민등록 미신고(시설아동이나 출생신고 지연의 경우)된 내국인은 보호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여 관리 하도록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접종내역을 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병관리청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정요청하거나, 올바른 주민등록번호로 새로 인적정보를 등록한 후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로 연락하여 접종내역 이전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접종내역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데 재접종한 기록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 동일백신, 동일차수에 중복등록이 필요하면 해당 접종차수 접종일에 마우스 커서를 위치한 후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접종내역 추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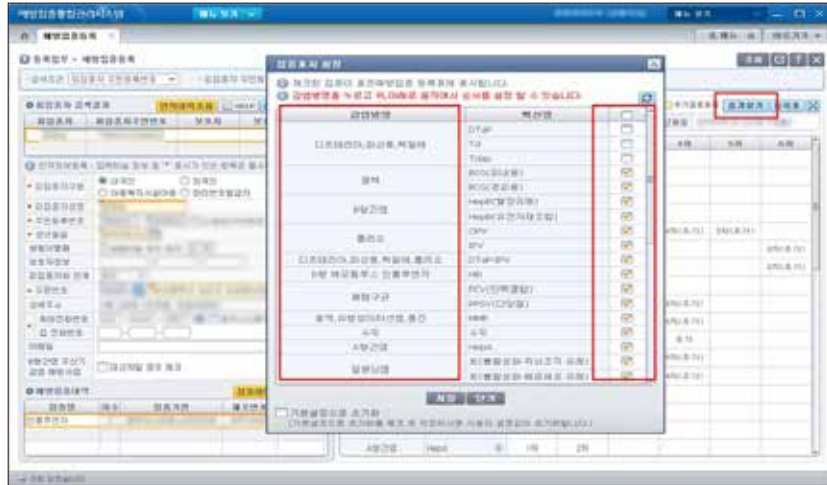
※ 접종정보가 중복으로 등록되면 접종일 박스가 노란색으로 변경됨

• **접종내역 중 백신제조번호가 9999는 무엇인가요?**

- 접종내역 등록 시 백신제조번호가 미 입력된 경우로 예방접종증명서로 접종내역을 등록하면 백신제조번호가 9999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표준예방접종 등록표’는 의료기관에서 자주 등록하는 접종만 따로 설정할 수는 없나요?**

- 현재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는 백신만 볼 수 있도록 설정이 가능합니다. 등록화면 오른쪽 상단의 ‘즐거찾기’를 클릭하여 기관에서 접종하는 백신을 선택하거나 감염병 명을 Drag&Drop하여 순서를 변경한 후 저장하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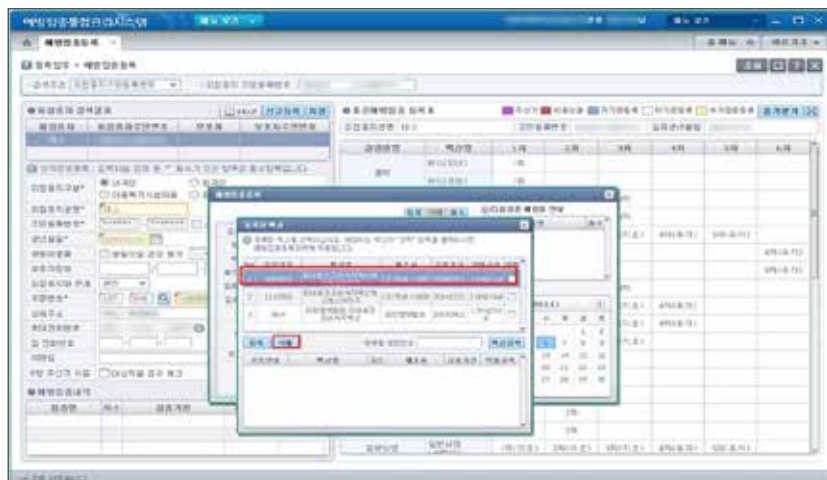
• 예진의사명, 접종자명 등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 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관리' → '국가예방접종사업' → '등록시스템'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메뉴보기' → '행정업무' → '의료기관정보관리' → '의료기관 정보관리'
- ②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행정업무' → '계약관리' → '계약신청관리'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위탁계약정보 외 기관정보(전자서명용 기관인증서 등) 직접 수정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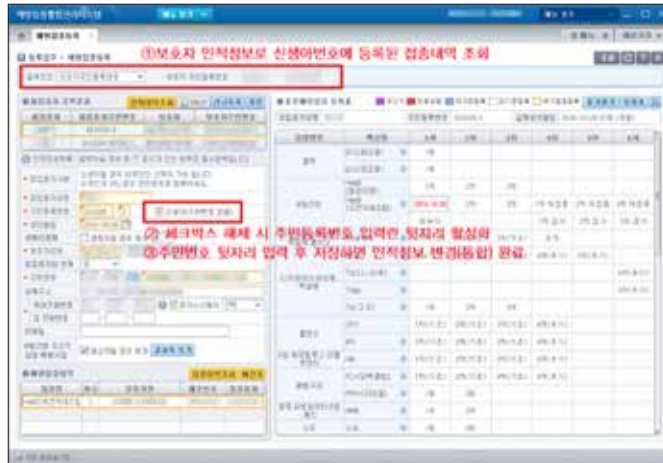
• 접종내역 등록 시 매번 백신제조번호를 검색해야 하나요?

- 자주 사용하는 백신제조번호를 설정(등록/삭제)할 수 있습니다. 등록화면의 차수 선택 시 생성된 팝업창에서 '등록된백신' 검색 후 조회목록에서 해당 백신의 제조번호를 선택 후 '등록'해 상단 목록에 추가합니다.



- 보호자의 주민번호로 신생아번호 접종내역을 조회합니다. 신생아(주민번호없음) 체크박스 선택해제 시 주민번호 뒷자리가 활성화되고,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후 저장하면 주민번호 정보로 통합됩니다.

※ 신생아번호의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이 다르면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043-913-2352)로 인적 및 접종정보 통합 요청



- 보건소에서 예방접종관리업무 권한 승인 후 의료기관에서 다시 로그인하여 부가정보를 입력
해야 조회됩니다.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로그인 후 화면 상단의 '내정보'에서 탈퇴 후 변경된 소속기관으로 신규 가입하여 필요한 업무 권한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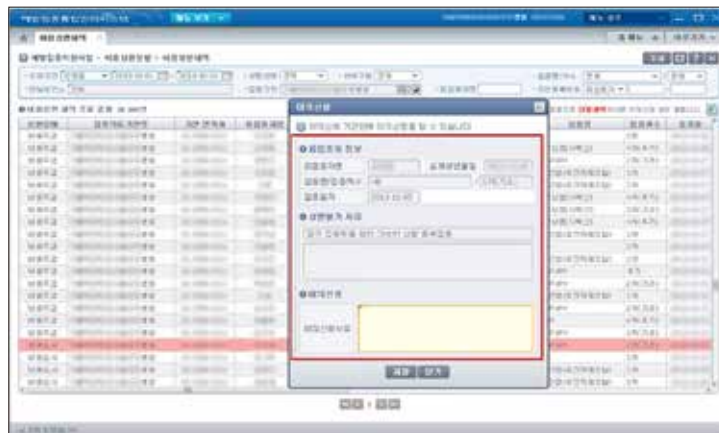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가입완료) 후 화면좌측의 '권한정보'에서 아래 예방접종관리 업무의 권한 승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사용자는 '예방접종관리 User(보건소)', 보건지소 또는 진료소 사용자는 '예방접종관리 User(보건지소/진료소)'의 권한을 신청·승인받은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비용상환) 과거 접종력을 조회하였는데 이미 다른 의료기관에서 비용상환 신청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다른 의료기관에서 접종기록이 등록된 동일백신 동일차수의 중복접종은 비용 상환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타당한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B형간염 고위험군, 조혈모세포 이식 후 재접종 등)는 의학적 소견을 입력하면 비용상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비용상환) 비용상환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비용상환내역’ 메뉴에서 비용상환 신청건 중 상환불가로 심사된 내역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상환불가 내역’을 더블클릭 후 ‘이의신청 팝업창’에 이의신청 사유를 작성하여 저장하면 완료되며, 이의신청된 내역은 보건소에서 확인 후 재심사 과정을 거칩니다.



• (비용상환) 폐업 의료기관의 과거 비용신청 된 내역은 어디서 조회가 가능한가요?

- 폐업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서 접종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직접 관할 보건소로 연락하시어 과거 비용상환 신청내역 확인을 요청 하시면 보건소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 (비용상환) 비용상환 신청건에 대한 행정안전부 오류내역을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메뉴보기’ → ‘예방접종지원사업’ → ‘비용상환현황’ → ‘행안부오류 내역’에서 내역 조회 후 수정 할 데이터를 더블 클릭하여 피접종자 주민등록번호 등 오류내용을 수정 후 ‘수정’을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 (비용상환) 비용상환 지급계좌번호를 수정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메뉴보기’ → ‘행정업무’ → ‘계약관리’ → ‘계약신청 관리’ 메뉴에서 등록된 계좌정보 확인 후 통장사본을 새로 등록하고, 관할 보건소에 변경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담당자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메뉴보기' → '행정업무' → '계약관리' → '계약 승인 관리' 메뉴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통장사본 정보를 확인 후 승인처리합니다.

[illegible]

- **(비용상환) 1년간 비용상환 지급받은 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어느 메뉴에서 확인 가능한가요?**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상단의 '메뉴보기' → '행정업무' → '행정서식' → '연간지급완료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비용상환) 상환결정이 아닌 예외인정, 상환불가, 전문심사의뢰는 반드시 한 건씩 처리해야 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예외인정(의학적 소견 입력), 상환불가, 전문심사의뢰 등은 반드시 개별심사를 하여야 하며 일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 **(비용상환) 의료기관에서 비용상환 신청한 내역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메뉴보기' → '예방접종 지원사업' → '비용상환현황' → '비용상환내역'을 클릭하면 비용상환 신청, 심사, 지급관련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비용상환) 기관정보관리의 계약서 갱신일이 지나면 해당 의료기관은 비용상환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네, 위탁계약서 갱신일이 지나면 해당 의료기관은 비용상환 신청이 불가능(접종력 등록은 가능)하므로, 반드시 만료일 이전 계약 갱신해야 합니다. 위탁계약서 갱신 후 접종력을 다시 등록하면 비용신청 가능합니다.

• **(비용상환) 어떤 경우에 전문심사를 의뢰하고, 어떻게 처리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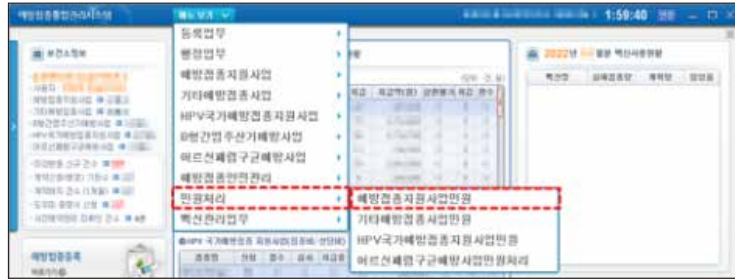
- 해당 보건소에서 피접종자의 기저질환 등으로 상환결정 판단을 하기 어려우면 질병관리청에 전문심사의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심사의뢰 시에는 반드시 요청사유를 입력해야 하며 전문심사결과를 참고하여 해당내역의 비용상환 심사를 다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또는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 등에서 판단 가능한 지연접종, 이른접종 등은 전문심사 의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비용상환) 의료기관별로 비용상환 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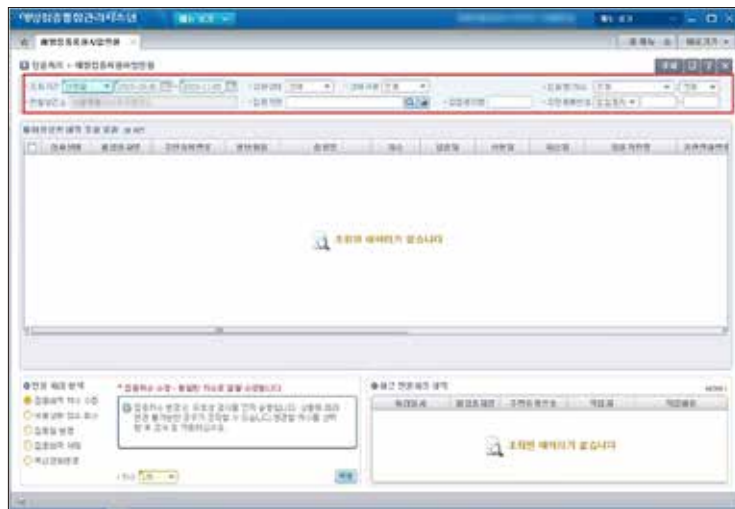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상단의 '메뉴보기' → '예방접종지원사업' → '비용상환현황' → '비용상환현황' 및 '비용지급관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비용상환) 비용상환 신청내역에서 접수취소, 접종차수변경, 접종내역삭제 등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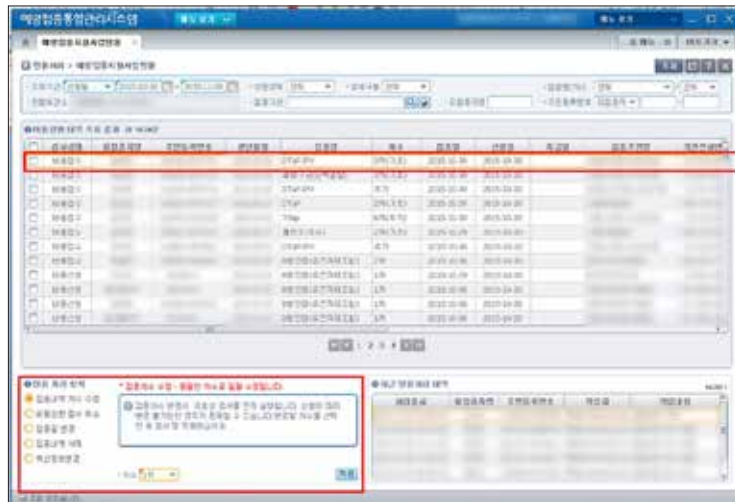
- 비용상환 신청내역 변경은 민원처리 기능을 이용하여 처리합니다.
①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상단 '메뉴보기' → '민원처리' → '예방접종사업민원'을 클릭합니다.
※ 사업별로 민원처리 가능



② 검색조건을 설정하여 해당내역을 '조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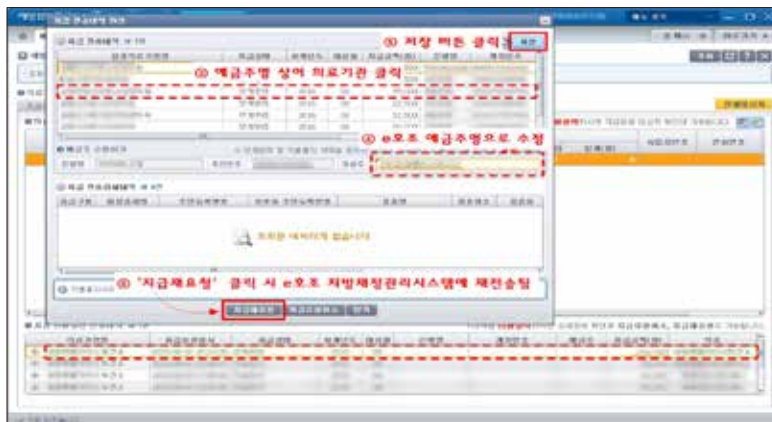


③ 수정이 필요한 내역의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하단의 민원처리 항목에서 처리항목을 선택 후 '적용'을 클릭하면 유효성검사 후 처리가 완료됩니다.





② 수정완료 후 지급재요청을 클릭하여 다시 요청합니다.



- (e-호조) e-호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대량계좌 오류내역을 반려하였습니다. 반려 후 오류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나요?

- 계좌검증 오류 시 오류내역을 저장하지 않고 연계 반려하면 계좌검증 오류내역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계좌검증 오류내역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는 '비용지급관리' → 지급요청전 탭에서 지급재요청한 후 대량계좌검증을 다시 해야 합니다.

- (e-호조) e-호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계좌검증 시 예금주명이 아닌, 은행계좌번호나 은행명 오류가 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 예금주명이 오류이면 기존방식대로 반려하여 예금주명을 수정한 후 지급 재요청을 하면 되나, 계좌명이나 계좌번호 오류이면 다음의 절차 순으로 처리합니다. ①반려시킴 → ②반려된 내역을

더블클릭 → ③지급 요청 취소 우선 처리 → ④계좌정보 수정 → ⑤비용지급관리 메뉴의 지급 요청 전 내역 탭에서 지급요청 완료 → ⑥e-호조 시스템에서 계좌검증

• (e-호조+) 비용차감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고 환수를 해야하면 시스템으로 어떻게 처리하나요?

- 비용환수기능은 e호조+ 연계에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작업(공문시행 및 고지서 발부)으로 비용을 환수처리 후, 아래 절차에 따라 환수한 접종건을 상환불가 또는 삭제 사용 가능합니다.

- (상환불가) 예방접종지원사업 → 비용지급심사 → 비용환수관리 메뉴에서 처리
- (오지급된 비용상환건 삭제) 비용차감관리 또는 비용환수관리에서 처리한 후 예방접종지원사업 민원처리메뉴에서 접종내역 삭제 가능

• (교육)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에 로그인시 “권한이 없습니다.” 또는 “아이디 또는 패스워드가 맞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로그인이 되지 않습니다.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에 로그인하여 왼쪽의 ‘권한정보’에서 ‘교육 관리 User(학습자)’ 권한을 요청하여 승인받은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예방접종 업무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교육시스템 관리자 변경 요청은 어떻게 하나요?

- 교육시스템 관리자 권한은 보건소의 위탁의료기관 계약업무 담당자 1~2인에게 부여되므로, 시스템의 ‘예방접종관리’ → ‘행정지원’ → ‘기타지원’ → ‘교육관리자변경 요청관리’ → ‘조회’ 클릭 → 공지에 안내된 절차 및 양식에 따라 관리자 변경 신청

• (교육) 위탁의료기관의 수료증은 어디에서 출력할 수 있나요?

-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에서 위탁의료기관 예진의사 교육 수료 현황 관리가 가능합니다.
※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 로그인 → ‘관리자시스템’ → 통계모니터링 → ‘회원별교육신청/수료자현황’ → 이름&기관명 검색 → 이름 클릭 → 수료여부 확인

• (교육) 보건소 대상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수료증은 어디에서 발급 받나요?

- 수료여부는 교육시스템 홈 화면 상단의 ①‘수료증 출력(또는 수강과정)’ 메뉴의 ②‘수강종료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

(의료기관용-1권)

- **창간:** 2009년 1월
 - **발행:** 2025년 3월
 - **주소:** (2816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00,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 **팩스:** 043-719-8379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https://nip.kdca.go.kr>
-

ISBN 979-11-6860-504-6(95510)

2025년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

의료기관용 - 1권